

연구 2008-21-1

2008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ird 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
Descriptive Report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보고서 2008-21-1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김미곤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1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19-0 93330

머 리 말

오늘날 대부분의 정책 수립 및 평가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은 정책 수립과 평가의 첫 걸음에 해당된다. 하지만, 복지관련 기초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는 안정화된 데 비해,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실업의 증가, 가계의 소비 위축과 부채 증가 등 사회지표들은 개별가구들의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가구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전국 대표성을 띤 패널데이터가 부족하였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가구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6년 『한국복지패널』의 출범 이후 제3차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보고서의 발간은 우리나라의 사회조사통계사(史)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사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본원의 『차상위·빈곤패널』,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한 결과의 산물이다. 2006년 1차연도 『한국복지패널』은 7,072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단일패널로서 국내 최대규모의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2차 연도인 2007년에는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세계 최고 표본 유지율(92.1%)을 달성하였고, 3차 연도인 2008년에도 세계 최고 표본 유지율(86.7%)을 달성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사표는 가구특성, 가구 경제상황, 가구원의 경제활동,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현황과 수급욕구, 여가 및 일상생활, 사회적 자본과 가치관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분석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몇 년 내에 『한국복지패널』이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로

서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의심치 않는 바이다. 특히 금년에는 1·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제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의 발전과 정책 형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본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원에서는 김미곤 연구위원과 손창균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여유진 부연구위원, 김계연 선임연구원, 유현상·오지현·송치호·임미진·김은주 연구원이 조사연구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이봉주 교수의 책임 하에 김태성·강상경·구인회 교수 그리고 임세희·안서연·김혜진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널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조사원과 자료정리를 해준 정희라 선생과 본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도세록 연구위원과 김태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복지패널』이 국가 통계와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발전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많은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도 더불어 기대한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이용자를 위하여

-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제33109호)로서 매년 4월~7월 사이에 조사되어 당해 연도 12월말에 보고서가 발간되며, 익년 9월말 학술대회와 더불어 조사자료 공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에서 웨이브별 원시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을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의 각 문항별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수록한 것이며, 1차~3차 웨이브까지의 연도별 자료의 비교는 각 연도별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통계수치는 표준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므로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원시자료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료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되는 기술통계와 각 연도 기초분석보고서상의 통계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연도별 조사항목 중 문항의 정의나 세부 항목의 변경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의 통계분석시 변경내용을 각주로 처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 및 원시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연구팀 (02) 380-8149, 8352, 827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Abstract	33
요 약	35
제 I 부 조 사 개 요	
제1장 서 론	91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91
제2절 조사개요	95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98
제2장 표본추출 및 가중치 조정	101
제1절 표본의 규모	101
제2절 3차년도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104
제3절 소득변수 결측치에 대한 대체방법	118
제4절 오차의 관리	121
제3장 조사 내용	127
제1절 조사표의 구성	127
제2절 조사문항	130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151
제1절 현지조사방법	151
제2절 조사자료처리	153

제 II 부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제5장 가구 및 가구원 특성	157
제1절 조사대상 가구 특성	157
제2절 조사대상 가구원 특성	159
제3절 조사대상 가구원의 교육수준	166

제6장 경제활동	177
제1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177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180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190
제4절 가구구성원의 직업기술과 직종	197

제7장 가구경제	202
제1절 소득	202
제2절 지출	218
제3절 재산 및 부채	225

제8장 주거	236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236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245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247

제9장 건강 및 의료	258
제1절 건강상태	258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262
제10장 가족	267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267
제2절 가족문제	271
제11장 생활실태·만족 및 자원활동	289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289
제2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294
제3절 가구의 생활여건, 식생활, 주관적 최저생계비	295
 제 III 부 복지욕구 및 수급실태	
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305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305
제2절 건강보험 가입 실태	316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319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322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325
제13장 공공부조	330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330
제2절 수급 및 탈피	333
제3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337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	338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338
제2절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354
제3절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368
제4절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386

제 IV 부 장애인 부가조사 결과

제15장 장애인 부가조사	409
제1절 응답자 특성	409
제2절 (공통1) 장애 원인 및 상황	411
제3절 (공통2) 일상생활	434
제4절 (개별1)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452
제5절 (개별2)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461
제6절 (개별3)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467
 참고문헌	 477
 부 록	 479

표 목 차

〈표 1-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대상	96
〈표 1-1-2〉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98
〈표 1-1-3〉 3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비교	99
〈표 2-1-1〉 복지패널 조사의 개요	101
〈표 2-1-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103
〈표 2-1-3〉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분포현황	103
〈표 2-2-1〉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105
〈표 2-2-2〉 3차년도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105
〈표 2-2-3〉 3차년도 지역별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 표본의 탈락률 비교	107
〈표 2-2-4〉 3차년도 지역별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자의 소득구분에 따른 분포	108
〈표 2-2-5〉 3차년도 장애인 부가조사를 위한 표본배분결과	108
〈표 2-2-6〉 지역별 가구원 및 가구원 구분에 따른 장애인 분포	109
〈표 2-2-7〉 지역별 장애 유형별 분포	110
〈표 2-2-8〉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113
〈표 2-2-9〉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114
〈표 2-2-10〉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114
〈표 2-2-11〉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116
〈표 2-2-12〉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117
〈표 2-2-13〉 대체 후 분산에 관한 정보	120
〈표 2-2-14〉 다중대체에 의한 모수 추정	121
〈표 3-1-1〉 3차년도 패널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129
〈표 3-2-1〉 3차년도 패널조사 영역	130
〈표 3-2-2〉 조사 주제별 구성	132

〈표 3-2-3〉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134
〈표 3-2-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	135
〈표 3-2-5〉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 주요항목	144
〈표 3-2-6〉 부가조사표(장애인) 주요항목	149
〈표 5-1-1〉 가구형태	157
〈표 5-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158
〈표 5-1-3〉 가구규모	159
〈표 5-2-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60
〈표 5-2-2〉 가구주 제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63
〈표 5-3-1〉 가구주의 최종 학력	167
〈표 5-3-2〉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168
〈표 5-3-3〉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169
〈표 5-3-4〉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170
〈표 5-3-5〉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171
〈표 5-3-6〉 가구원의 최종 학력	172
〈표 5-3-7〉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173
〈표 5-3-8〉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174
〈표 5-3-9〉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175
〈표 5-3-10〉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176
〈표 6-1-1〉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177
〈표 6-1-2〉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178
〈표 6-1-3〉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179
〈표 6-1-4〉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179
〈표 6-2-1〉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180
〈표 6-2-2〉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181
〈표 6-2-3〉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183
〈표 6-2-4〉 취업 가구주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183

〈표 6-2-5〉	가구주의 사직 혹은 폐업의 구체적 이유	184
〈표 6-2-6〉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184
〈표 6-2-7〉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185
〈표 6-2-8〉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186
〈표 6-2-9〉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188
〈표 6-2-10〉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188
〈표 6-2-11〉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의 구체적 이유	189
〈표 6-2-12〉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189
〈표 6-3-1〉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190
〈표 6-3-2〉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191
〈표 6-3-3〉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	191
〈표 6-3-4〉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192
〈표 6-3-5〉	가구주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193
〈표 6-3-6〉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193
〈표 6-3-7〉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194
〈표 6-3-8〉	가구원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194
〈표 6-3-9〉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	195
〈표 6-3-10〉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196
〈표 6-3-11〉	가구원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197
〈표 6-3-12〉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197
〈표 6-4-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198
〈표 6-4-2〉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199
〈표 6-4-3〉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200
〈표 6-4-4〉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201
〈표 7-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203
〈표 7-1-2〉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203
〈표 7-1-3〉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유무	204

〈표 7-1-4〉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205
〈표 7-1-5〉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	206
〈표 7-1-6〉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208
〈표 7-1-7〉	세부 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209
〈표 7-1-8〉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212
〈표 7-1-9〉	세부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213
〈표 7-1-10〉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분포	216
〈표 7-2-1〉	월간 총가계지출	218
〈표 7-2-2〉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219
〈표 7-2-3〉	지출항목별 월간 생활비	221
〈표 7-2-4〉	소득수준별 지출항목별 월간 지출구성	224
〈표 7-3-1〉	총재산액	225
〈표 7-3-2〉	순재산액	226
〈표 7-3-3〉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226
〈표 7-3-4〉	소유형태별 소유부동산액	227
〈표 7-3-5〉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227
〈표 7-3-6〉	점유형태별 점유부동산액	228
〈표 7-3-7〉	총 금융자산	228
〈표 7-3-8〉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	229
〈표 7-3-9〉	총 농기계 가격	229
〈표 7-3-10〉	보유형태별 농기계 가격	230
〈표 7-3-11〉	총 농축산물 가격	230
〈표 7-3-12〉	사육형태별 농축산물 가격	231
〈표 7-3-13〉	자동차 가격	232
〈표 7-3-14〉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가격	232
〈표 7-3-15〉	소유형태별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	233
〈표 7-3-16〉	총 부채액	233

〈표 7-3-17〉 부채형태별 부채액	234
〈표 7-3-18〉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액	235
〈표 8-1-1〉 2007년 1년간 이사경험 여부	236
〈표 8-1-2〉 주택의 유형	237
〈표 8-1-3〉 주거 위치	237
〈표 8-1-4〉 주거 점유형태	238
〈표 8-1-5〉 방의 수	238
〈표 8-1-6〉 주택의 연건평	239
〈표 8-1-7〉 상·하수도 사용형태	239
〈표 8-1-8〉 부엌의 사용형태	240
〈표 8-1-9〉 화장실의 사용형태	240
〈표 8-1-1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	241
〈표 8-1-11〉 난방시설의 사용형태	241
〈표 8-1-12〉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 시가총액	242
〈표 8-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분포	242
〈표 8-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243
〈표 8-1-15〉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분포	243
〈표 8-1-16〉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244
〈표 8-1-17〉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분포	244
〈표 8-1-18〉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액	245
〈표 8-1-1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245
〈표 8-2-1〉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246
〈표 8-2-2〉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246
〈표 8-2-3〉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247
〈표 8-2-4〉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247
〈표 8-3-1〉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48
〈표 8-3-2〉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248

〈표 8-3-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2순위	249
〈표 8-3-4〉 총 원금 상환액의 기술통계량	249
〈표 8-3-5〉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기술통계량	250
〈표 8-3-6〉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 기술통계량	250
〈표 8-3-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	250
〈표 8-3-8〉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	251
〈표 8-3-9〉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51
〈표 8-3-10〉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	252
〈표 8-3-11〉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52
〈표 8-3-12〉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	253
〈표 8-3-13〉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53
〈표 8-3-1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254
〈표 8-3-15〉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54
〈표 8-3-16〉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	254
〈표 8-3-17〉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55
〈표 8-3-18〉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255
〈표 8-3-18〉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56
〈표 8-3-19〉 (돈이 없어서)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256
〈표 8-3-20〉 (돈이 없어서)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257
〈표 9-1-1〉 가구주의 건강상태	258
〈표 9-1-2〉 가구원의 건강상태	259
〈표 9-1-3〉 주요병명	260
〈표 9-1-4〉 가구주의 만성질환	261
〈표 9-1-5〉 가구원의 만성질환	261
〈표 9-2-1〉 건강검진횟수	262
〈표 9-2-2〉 외래진료횟수	262
〈표 9-2-3〉 입원횟수	263

〈표 9-2-4〉	입원일수	263
〈표 9-2-5〉	병원에 입원한 이유	264
〈표 9-2-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264
〈표 9-2-7〉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265
〈표 9-2-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구 기준)	265
〈표 9-2-9〉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266
〈표 10-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267
〈표 10-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268
〈표 10-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268
〈표 10-1-4〉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269
〈표 10-1-5〉	성역할에 대한 인식(저소득가구)	270
〈표 10-1-6〉	성역할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271
〈표 10-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272
〈표 10-2-2〉	가족갈등 대처방법	273
〈표 10-2-3〉	가족갈등 대처방법(전체)	273
〈표 10-2-4〉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274
〈표 10-2-5〉	흡연경험 시기	275
〈표 10-2-6〉	총 흡연기간	275
〈표 10-2-7〉	흡연경험자 중 현재 흡연 여부	276
〈표 10-2-8〉	하루평균 흡연량	276
〈표 10-2-9〉	하루이상 금연 시도 여부	277
〈표 10-2-10〉	향후 금연 계획	278
〈표 10-2-11〉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	278
〈표 10-2-12〉	담배연기 노출 시간	279
〈표 10-2-13〉	평균음주 회수	280
〈표 10-2-14〉	평균 음주량	280
〈표 10-2-15〉	평소의 일을 음주로 인해 하지 못한 횟수	281

〈표 10-2-16〉 음주에 대한 인식	282
〈표 10-2-17〉 출산 경험	283
〈표 10-2-18〉 우울에 대한 인식	283
〈표 10-2-19〉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284
〈표 10-2-20〉 가족생활만족도	285
〈표 10-2-21〉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286
〈표 10-2-22〉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287
〈표 10-2-23〉 자녀의 형제자매 관계만족도	288
〈표 11-1-1〉 인터넷 사용여부	289
〈표 11-1-2〉 노동환경 유해여부	289
〈표 11-1-3〉 건강에 대한 만족도	290
〈표 11-1-4〉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290
〈표 11-1-5〉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291
〈표 11-1-6〉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291
〈표 11-1-7〉 직업에 대한 만족도	292
〈표 11-1-8〉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292
〈표 11-1-9〉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293
〈표 11-1-10〉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93
〈표 11-2-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294
〈표 11-2-2〉 연간 기부액수	294
〈표 11-2-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295
〈표 11-3-1〉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295
〈표 11-3-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296
〈표 11-3-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296
〈표 11-3-4〉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297
〈표 11-3-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297
〈표 11-3-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297

〈표 11-3-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298
〈표 11-3-8〉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298
〈표 11-3-9〉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299
〈표 11-3-1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299
〈표 11-3-1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300
〈표 11-3-1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300
〈표 11-3-1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301
〈표 11-3-1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301
〈표 11-3-15〉	주관적 최저생계비	302
〈표 12-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305
〈표 12-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306
〈표 12-1-3〉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307
〈표 12-1-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307
〈표 12-1-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308
〈표 12-1-6〉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308
〈표 12-1-7〉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309
〈표 12-1-8〉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	309
〈표 12-1-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310
〈표 12-1-10〉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310
〈표 12-1-11〉	공적연금 수급 실태	311
〈표 12-1-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312
〈표 12-1-1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312
〈표 12-1-14〉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313
〈표 12-1-15〉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313
〈표 12-1-16〉	보훈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314
〈표 12-1-17〉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314
〈표 12-1-18〉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315

〈표 12-1-19〉 특수직역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315
〈표 12-1-20〉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316
〈표 12-2-1〉 건강보험 가입 실태	316
〈표 12-2-2〉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317
〈표 12-2-3〉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317
〈표 12-2-4〉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318
〈표 12-2-5〉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318
〈표 12-2-6〉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319
〈표 12-3-1〉 고용보험 가입 실태	320
〈표 12-3-2〉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	320
〈표 12-3-3〉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321
〈표 12-3-4〉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321
〈표 12-3-5〉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322
〈표 12-4-1〉 산재보험 가입 실태	322
〈표 12-4-2〉 산재보험 급여 수급경험	323
〈표 12-4-3〉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324
〈표 12-4-4〉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수	324
〈표 12-4-5〉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325
〈표 12-5-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325
〈표 12-5-2〉 퇴직연금 가입 실태	326
〈표 12-5-3〉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326
〈표 12-5-4〉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	327
〈표 12-5-5〉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327
〈표 12-5-6〉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328
〈표 12-5-7〉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328
〈표 12-5-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 수	328
〈표 12-5-9〉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액	329

〈표 13-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330
〈표 13-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유	331
〈표 13-1-3〉 수급자 선정 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331
〈표 13-1-4〉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1순위	332
〈표 13-1-5〉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2순위	333
〈표 13-2-1〉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333
〈표 13-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유	334
〈표 1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	334
〈표 13-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	335
〈표 13-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 항목	335
〈표 13-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의 주된 사유	336
〈표 13-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336
〈표 13-3-1〉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수급여부 (2007년 12월 31일 기준) ·	337
〈표 14-1-1〉 생계비 지원 이용 경험	338
〈표 14-1-2〉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	339
〈표 14-1-3〉 생계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39
〈표 14-1-4〉 의료비 지원 이용 경험	340
〈표 14-1-5〉 의료비 지원 이용만족도	340
〈표 14-1-6〉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41
〈표 14-1-7〉 물품 지원 이용 경험	342
〈표 14-1-8〉 물품 지원 이용만족도	342
〈표 14-1-9〉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43
〈표 14-1-10〉 가정봉사서비스 이용 경험	343
〈표 14-1-11〉 가정봉사서비스 이용만족도	344
〈표 14-1-12〉 가정봉사서비스 제공기관	344
〈표 14-1-13〉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345
〈표 14-1-14〉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345

〈표 14-1-15〉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346
〈표 14-1-16〉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346
〈표 14-1-17〉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347
〈표 14-1-18〉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347
〈표 14-1-19〉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48
〈표 14-1-20〉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48
〈표 14-1-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49
〈표 14-1-22〉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349
〈표 14-1-23〉	상담 서비스 이용만족도	350
〈표 14-1-24〉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350
〈표 14-1-25〉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351
〈표 14-1-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351
〈표 14-1-2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352
〈표 14-1-28〉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만족도	353
〈표 14-1-29〉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353
〈표 14-2-1〉	경로연금 이용 경험	354
〈표 14-2-2〉	경로연금 급여 이용만족도	355
〈표 14-2-3〉	경로연금 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355
〈표 14-2-4〉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56
〈표 14-2-5〉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56
〈표 14-2-6〉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57
〈표 14-2-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357
〈표 14-2-8〉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358
〈표 14-2-9〉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358
〈표 14-2-10〉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59
〈표 14-2-11〉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59
〈표 14-2-12〉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60

〈표 14-2-13〉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360
〈표 14-2-14〉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361
〈표 14-2-15〉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361
〈표 14-2-16〉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362
〈표 14-2-17〉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만족도	362
〈표 14-2-18〉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제공기관	363
〈표 14-2-19〉 노인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363
〈표 14-2-20〉 노인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	364
〈표 14-2-21〉 노인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364
〈표 14-2-22〉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 경험	365
〈표 14-2-23〉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만족도	365
〈표 14-2-24〉 노인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66
〈표 14-2-25〉 노인 일자리 사업 이용 경험	366
〈표 14-2-26〉 노인 일자리사업 이용 만족도	367
〈표 14-2-27〉 노인 일자리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367
〈표 14-3-1〉 장애수당 이용 경험	368
〈표 14-3-2〉 장애수당 이용만족도	369
〈표 14-3-3〉 장애수당 서비스 제공기관	369
〈표 14-3-4〉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 경험	370
〈표 14-3-5〉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만족도	370
〈표 14-3-6〉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제공기관	371
〈표 14-3-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용 경험	371
〈표 14-3-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 경험	372
〈표 14-3-9〉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만족도	373
〈표 14-3-1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73
〈표 14-3-11〉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374
〈표 14-3-12〉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만족도	374

〈표 14-3-13〉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375
〈표 14-3-14〉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75
〈표 14-3-15〉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76
〈표 14-3-16〉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76
〈표 14-3-17〉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377
〈표 14-3-18〉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377
〈표 14-3-19〉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기관	378
〈표 14-3-20〉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 경험	378
〈표 14-3-21〉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379
〈표 14-3-22〉 직업재활 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 이용경험	380
〈표 14-3-23〉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80
〈표 14-3-24〉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81
〈표 14-3-25〉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81
〈표 14-3-26〉 장애인 사회복귀훈련·사회적응훈련·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이용 경험	382
〈표 14-3-27〉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이용 경험	382
〈표 14-3-28〉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83
〈표 14-3-29〉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83
〈표 14-3-30〉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84
〈표 14-3-31〉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 경험	384
〈표 14-3-32〉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만족도	385
〈표 14-3-33〉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85
〈표 14-4-1〉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경험	386
〈표 14-4-2〉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서비스 제공기관	387
〈표 14-4-3〉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387
〈표 14-4-4〉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경험	388
〈표 14-4-5〉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388
〈표 14-4-6〉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만족도	389

〈표 14-4-7〉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	389
〈표 14-4-8〉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	390
〈표 14-4-9〉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390
〈표 14-4-10〉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이용 경험	391
〈표 14-4-11〉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	391
〈표 14-4-12〉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이용만족도	392
〈표 14-4-13〉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경험	392
〈표 14-4-14〉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393
〈표 14-4-15〉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393
〈표 14-4-16〉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394
〈표 14-4-17〉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394
〈표 14-4-18〉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395
〈표 14-4-19〉 학비지원 이용 경험	395
〈표 14-4-20〉 학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96
〈표 14-4-21〉 학비지원 이용만족도	396
〈표 14-4-22〉 예체능 교실 이용 경험	397
〈표 14-4-23〉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기관	398
〈표 14-4-24〉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	398
〈표 14-4-25〉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 경험	399
〈표 14-4-26〉 문화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399
〈표 14-4-27〉 문화 활동 서비스 이용만족도	400
〈표 14-4-2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400
〈표 14-4-29〉 출생당시 체중정도	401
〈표 14-4-30〉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401
〈표 14-4-31〉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402
〈표 14-4-32〉 사교육·보육기관 평균 이용 기관 수	402
〈표 14-4-33〉 사교육·보육 이용기관	404

〈표 14-4-34〉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405
〈표 14-4-35〉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406
〈표 15-1-1〉	응답자 특성	410
〈표 15-2-1〉	장애 발생 원인	411
〈표 15-2-2〉	장애 발생 시기	412
〈표 15-2-3〉	장애 발생 당시 가구 소득 수준	412
〈표 15-2-4〉	장애의 현재 상태	413
〈표 15-2-5〉	현재 이용 중인 의료 서비스	413
〈표 15-2-6〉	장애 치료의 충분 여부	414
〈표 15-2-7〉	장애 치료의 불충분 이유	414
〈표 15-2-8〉	유치원(보육시설)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415
〈표 15-2-9〉	초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415
〈표 15-2-10〉	중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416
〈표 15-2-11〉	중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16
〈표 15-2-12〉	고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417
〈표 15-2-13〉	고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17
〈표 15-2-14〉	대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418
〈표 15-2-15〉	교사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418
〈표 15-2-16〉	교사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19
〈표 15-2-17〉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419
〈표 15-2-18〉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0
〈표 15-2-19〉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420
〈표 15-2-20〉	학부모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1
〈표 15-2-21〉	결혼 전 차별 경험여부	421
〈표 15-2-22〉	결혼 전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2
〈표 15-2-23〉	결혼 생활 중 차별 경험여부	422
〈표 15-2-24〉	결혼 생활 중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3

〈표 15-2-25〉	취업시 차별 경험여부	423
〈표 15-2-26〉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4
〈표 15-2-27〉	직장생활 중 소득(임금)차별 경험여부	425
〈표 15-2-28〉	직장생활 소득(임금)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5
〈표 15-2-29〉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여부	426
〈표 15-2-30〉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6
〈표 15-2-31〉	승진에서 차별 경험여부	427
〈표 15-2-32〉	승진에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7
〈표 15-2-33〉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428
〈표 15-2-34〉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8
〈표 15-2-35〉	보험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429
〈표 15-2-36〉	보험 제도상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29
〈표 15-2-37〉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430
〈표 15-2-38〉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30
〈표 15-2-39〉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431
〈표 15-2-40〉	정보통신 이용 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31
〈표 15-2-41〉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여부	432
〈표 15-2-42〉	지역사회생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433
〈표 15-2-43〉	외출정도	433
〈표 15-2-44〉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434
〈표 15-3-1〉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435
〈표 15-3-2〉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1순위	436
〈표 15-3-3〉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2순위	437
〈표 15-3-4〉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	438
〈표 15-3-5〉	도움의 충분성	439
〈표 15-3-6〉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439
〈표 15-3-7〉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여부	440

〈표 15-3-8〉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441
〈표 15-3-9〉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441
〈표 15-3-10〉	수단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442
〈표 15-3-11〉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의 도움	443
〈표 15-3-12〉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3
〈표 15-3-13〉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의 도움	444
〈표 15-3-14〉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4
〈표 15-3-15〉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도움	445
〈표 15-3-16〉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5
〈표 15-3-17〉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445
〈표 15-3-18〉	이웃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6
〈표 15-3-19〉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446
〈표 15-3-20〉	종교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7
〈표 15-3-21〉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의 도움	447
〈표 15-3-22〉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8
〈표 15-3-23〉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도움	448
〈표 15-3-24〉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49
〈표 15-3-25〉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도움	449
〈표 15-3-26〉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50
〈표 15-3-27〉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의 도움	450
〈표 15-3-28〉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51
〈표 15-3-29〉	기타의 도움	451
〈표 15-3-30〉	기타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452
〈표 15-4-1〉	K-CBCL 우울/불안 척도	452
〈표 15-4-2〉	서비스 필요여부	453
〈표 15-4-3〉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454
〈표 15-4-4〉	CESD-11 우울척도	455

〈표 15-4-5〉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이용여부	455
〈표 15-4-6〉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456
〈표 15-4-7〉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여부	456
〈표 15-4-8〉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457
〈표 15-4-9〉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457
〈표 15-4-10〉 학교출석 여부	458
〈표 15-4-11〉 학교적응 정도	458
〈표 15-4-12〉 학교생활 문제	459
〈표 15-4-13〉 방과 후 생활	460
〈표 15-5-1〉 서비스 필요여부	461
〈표 15-5-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462
〈표 15-5-3〉 CESD-11 우울척도	463
〈표 15-5-4〉 취업여부	463
〈표 15-5-5〉 취업일자리	464
〈표 15-5-6〉 취업 희망 일자리	464
〈표 15-5-7〉 취업불원 이유	465
〈표 15-5-8〉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466
〈표 15-5-9〉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466
〈표 15-5-10〉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467
〈표 15-6-1〉 서비스 필요여부	468
〈표 15-6-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469
〈표 15-6-3〉 CESD-11 우울척도	469
〈표 15-6-4〉 취업여부	470
〈표 15-6-5〉 취업일자리	471
〈표 15-6-6〉 구직활동 여부	471
〈표 15-6-7〉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472
〈표 15-6-8〉 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지원	472

〈표 15-6-9〉 용돈	473
〈표 15-6-10〉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여부	474
〈표 15-6-11〉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474
〈표 15-6-12〉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475

그림 목 차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 관리체계	94
[그림 2-2-1]	1차년도 대비 지역별 2차년 와 3차년도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비교 ..	106
[그림 2-2-2]	KOWEPS의 가중치 부여체계	111
[그림 2-2-3]	지역별 3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115
[그림 2-2-4]	지역별 3차 가구 가중치 분포	116
[그림 3-1-1]	조사의 단계	127
[그림 3-1-2]	조사표의 구성	128
[그림 3-2-1]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조사영역의 흐름도	133
[그림 3-2-2]	가구용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영역 논리도	139
[그림 3-2-3]	가구용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	140
[그림 3-2-4]	가구용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142
[그림 3-2-5]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흐름	143
[그림 3-2-6]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146
[그림 3-2-7]	가구원용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147

Abstract

Third 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 Descriptive Report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changes of people's economic situation, consumption, a sense of values, poverty and actual conditions of distribution, etc.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ross-sectional survey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ynamics due to age effect and cohort effect.

Allowing for this limi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begun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and established 7,072 households originally sampled at the first wave year. Questionnaires of this survey comprise three parts which are for households, members aged 15 and over belonging to households, and special topics(supplements). Household samples also consist of two groups, which are 3,500 households under 60% of median income and 3,500 households over 60% of that. The attrition rate of the third wave survey carried out in 2008 compared to first wave in 2006 is 13%, which is the lowest rate out of many panel surveys home and abroad.

We have plan to publish the result of this survey through three kinds of report. One is descriptive report about actual condition of samples, another is in-depth analysis report, and the other is learned report centering around papers for conference. This report corresponds to the first.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s about the generals, economic conditions, circumstances, employment,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understanding of welfare which is the special topic on the third wave. Our results are very analogous to other cross-sectional surveys, such a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and this means Korea Welfare Panel survey is very reliable.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함
-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을 통합하여 예산 비효율성, 목적 비효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성·유효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소득계층별·경제활동상태별·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함.

제2절 조사개요

- 1차연도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3차연도 조사완료된 가구는 6,314가구임(신규 생성가구 포함).
- 실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타계식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7년 1월~12월간의 1년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함.
- 현지조사는 2008년 4월 13일~2008년 6월 10일까지 실시함.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 장점

- 국내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큰 표본 규모임.
 -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3차연도 조사완료된 가구는 6,314가구임(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임.
 -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를 포함하고 있음.
- 신뢰성이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임.
 -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 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 따라서 정확한 개별가구의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표본이 전국의 모수치와 매우 유사분포를 보이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표본 추출시 전국 30,000가구에 대한 1차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함으로써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2차·3차연도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매우 높은 패널임.
 - 2차연도 원가구 유지율 92.1%(7,072 원가구 중 6,511가구 완료)는 세계 우수한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은 수치임.
 - 3차연도 원가구 유지율 86.7%(7,072 원가구 중 6,128가구 완료)는 세계 주요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은 수치임.
-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임.
 - 표본 추출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음.

□ 한계

- 회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를 조사하므로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체킹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패널 자료는 데이터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 에러체킹이 이루어짐. 즉,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킹, 기초 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킹,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킹,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킹이 이루어짐.
 - 본 기초보고서 이후에도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킹,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킹이 이루어질 예정임.

제2장 표본추출 및 가중치 조정

□ 조사개요

-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상태 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소득계층 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 기위한 조사임.

□ 패널 표본의 특성

- 패널표본 구축을 위해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 접촉가구 7,072가구를 패널로 구 축함.

□ 표본추출 과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2006.6.30~10.1)』로부터 얻은 24,711 가구를 이용하여 부차표본 7,000가구(일반: 3,500 가구, 저소득가구: 3,50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음.
- 1차 년도에 완료 가구수는 7,072가구이며, 이중 일반가구는 3,789가구, 저소득 가구는 3,283가구로 나타남.

□ 3차년도 가중치 조정

- 2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3차년도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 치를 조정하였음.
- 3차년도 개인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2007년 추계인구수를 이용 하여 사후 조정하여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를 조정함.
- 3차년도 가구가중치는 3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내 평균값을 구한 후 2007년 추계가구수를 이용하여 사후 조정한 후 최종 가중치로 사용함.

- 3차년도 부가조사인 장애인에 대한 가중치 조정은 3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2007년 7월 현재 등록 장애인 DB의 지역별, 장애유형별 분포에 따라 사후 조정하였고, 비등록 장애인의 경우 개인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 3차년도 표본특성

- 3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패널가구 중 약 86.65%인 6,128가구를 유지하였고, 3차년도 신규 진입가구를 포함하면, 89.58%인 6,314가구이며, 가구원 조사표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1차년도 14,463명 중 84.29%인 12,191명이 응답하였고, 3차년도 진입가구원을 포함하면 12,930명으로 90.02%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 탈락률을 살펴보면 가구기준으로는 서울·인천·울산·경기지역의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원 조사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인천·울산·경기지역의 탈락률이 높게 나타남. 한편 충남지역은 가구기준으로 탈락한 가구보다 새롭게 진입한 가구가 1가구 더 많아 탈락률이 음수(-)로 나타남. 가구원 조사표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탈락률이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기준으로 3차 년도에 응답한 가구 중 일반가구는 3,695가구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2,619가구였으며, 가구원 기준으로 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수는 8,544명이고,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4,386명으로 나타남.
- 3차년도 조사의 부가조사인 “장애인 조사”는 2차년도 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 장애유형별로 계통 추출에 의해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함.
- 조사 완료된 장애인수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는 360명, 저소득가구는 518명으로 총 878명을 조사완료하였음.

제3장 조사 내용

제1절 조사표의 구성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총 6,314가구를 패널조사 표본으로 함.
- 3차년도 조사는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가구용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 3종의 조사표로 구성됨. 단, 3차년도에서는 3차 신규가구용, 3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가 포함되었고, 부가조사표의 경우 장애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제2절 조사문항

-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됨.
-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의 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회보험,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사(3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 7개 영역으로 구성됨.
- 부가 조사표(장애인)는 공통으로 응답하는 영역 2개와 해당 대상별로 응답하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됨.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제1절 현지조사방법

□ 조사준비

- 제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위하여 2차년도(2007년)에 구축한 6,580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함.
 - 사전 안내문은 조사대상가구들의 원활한 조사협조를 구하고, 이사가구를 파악하기 위함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유한 조사원(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 평가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20명, 조사원 60명임.
- 조사원 교육은 3일에 걸쳐 실시됨. 첫 2일간은 조사표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1일은 요도 확인방법,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등으로 진행함.

□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 현지조사는 2008년 4월 13일~2008년 6월 10일까지 실시함.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음.

제2절 조사자료처리

-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먼저 현지에서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 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함.
-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 모든 자료에 대한 코딩(coding) 및 펀칭(punching) 작업을 실시하였고, 펀칭 작업시 입력 에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더블 펀칭(double punching)을 실시하였음.
-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원에 의해 약 1개월간 에러체크 작업을 실시하였음.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에 따라 SPSS, SAS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

제5장 가구 및 가구원 특성¹⁾

제1절 조사대상 가구 특성

□ 가구 특성 및 규모

- 2008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완료 가구수는 6,314가구(원가구 6,128가구, 2차 신규가구 60가구, 3차 신규가구 126가구) 중 단독가구는 16.53%, 모자가구는 1.23%, 부자가구는 0.51%, 소년소녀가장가구는 0.58%임.
- 전체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7.33%이며, 이 중 일반수급가구 5.39%, 조건부수급가구 0.54%,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1.34%, 특례가구가 0.06%를 차지함.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92명이며, 일반가구

1) 이하 분석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의 값이다.

3.20명, 저소득가구 2.16명으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 1명 정도 가구원수가 많음.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규모는 4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90%를 차지함. 그 다음은 2명(24.06%), 3명(21.30%), 1명(16.53%) 순임.

제2절 조사대상 가구원 특성

□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로 볼 때, 남성 가구주(81.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저소득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40.81%, 일반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10.84%로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가구주가 23.94%, 40대 가구주가 23.90%,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21.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30대(29.52%)와 40대(26.91%) 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65세 이상(51.36%)의 비율이 절반 이상임.
-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는 9.43%였으며, 이중 1, 2급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1.68%, 3급 이상 경증장애를 가진 경우가 6.47%임.
 - 또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4.97%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은 31.46%, 여성은 68.54%임.
- 연령은 20세 미만인 42.32%, 30대 15.26%, 20대 14.31% 순임.
 -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2.28%로 일반가구의 5.67%에 비해 약 네 배 정도 높았음
- 가구원 중 장애인의 비중은 4.34%였으며, 이 중 1, 2급의 중증 장애인이

1.40%, 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이 2.48%를 차지하였음.

- 가구원 중에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25.97%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두 배 정도 높았음.

제3절 조사대상 가구원의 교육수준

□ 가구주의 교육수준

-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이하가 33.57%, 중학교 졸업 이하가 33.1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학교 졸업 이하가 21.52%이었음.
 -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구주 중 중학교 졸업 이하인 가구주가 2/3을 넘는 67.58%를 차지한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주의 37.56%가 고졸 이하, 26.93%가 대졸 이하였음.
- 전체 고등학교 이상인 가구주 중 87.16%가 일반가구의 가구주였고, 나머지 12.84%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였음.
 - 고등학교 계열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계 56.84%,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 18.06%, 공업고등학교 13.00%의 순이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일반계 63.81%,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 15.88%, 상업고등학교 9.81%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자 중 92.12%가 일반가구 가구주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7.88%에 불과하였음.
 - 대학 전공계열 중 공학계열의 비율이 27.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계열 16.62%, 경상계열 13.70%, 자연계열 10.50%의 순으로 나타남.
 - 공학계열, 의학계열을 전공한 가구주는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출신은 저소득가구 가구주에서 더 높았음.

□ 가구원의 교육수준

- 전체적으로 볼 때, 고졸 이하 가구원이 31.57%, 중졸 이하 28.15%, 대학교 졸업 이하 24.50%, 전문대졸 이하 13.61%의 순이었음.
-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과반수 이상인 58.47%를 차지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하는 9.01%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 고졸 이하가 32.95%, 중졸 이하가 27.44%, 중졸 이하가 22.41%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전체 고등학교 이상 가구원 중 90.79%가 일반가구의 가구원이었으며, 나머지 9.21%만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임.
 - 일반계의 일반고등학교를 다닌 가구원이 2/3 이상인 65.8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가 23.06%, 공업고등학교가 5.27%를 차지하였음.
 -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비율이 56.56%로 일반가구 가구원의 66.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의 비율이 10.73%로 일반가구의 4.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원 중 93.16%가 일반가구에 속해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인 경우는 6.84%에 불과함.
 - 가구주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데 비해, 가구원의 경우 공학계열(19.89%)와 인문계열(19.78%) 전공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의 비율(28.36%)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 저소득가구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20.09%), 사회계열 중 경상계열(12.67%), 예체능 계열(11.16%)의 비율이 높았음.

제6장 경제활동

□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가구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가구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2.21%로 나타남.
-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취업자가 73.98%, 미취업자가 26.01%로 나타남.

－ 가구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7.14%로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2.70%로 나타남.
-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40.81%, 미취업자가 59.16%로 나타나며 미취업자 중 대부분(93.81%)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함.

□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 가구의 취업실태

- 임금 근로자 가구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고용관계로는 직접고용의 비율이 9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고용(95.88%)이, 근로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79.43%)이, 근로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능(78.71%)이 높게 나타남.
- 가구의 업종 및 직종을 살펴보면, 업종은 제조업(19.92%), 건설업(12.36%), 도매 및 소매업(10.6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16.21%) 및 사무종사자(15.35%)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취업 가구의 1년간 근로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1.62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22.11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68시간으로 나타남.

－ 가구원의 취업실태

-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고용관계로는 직접고용의 비율이 9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고용(88.33%)이, 근로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76.71%)이, 근로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능(70.62%)이 높게 나타남.
-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을 살펴보면 업종은 제조업 16.46%, 도매 및 소매업 14.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은 사무종사자(17.17%), 서비스종사자(16.90%)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취업 가구원의 1년간 근로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0.93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21.92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2시간으로 나타남.

□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 가구주의 미취업실태

-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근로의사 없음(60.0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직활동포기(14.75%)가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구직 활동 중 어려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특성으로는 나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3.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1점 대로 낮았으며,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45점)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원의 미취업실태

-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학업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3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가 31.20%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가구원의 구직 활동 중 어려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특성으로는 경력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2.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1점 대로 낮았으며, 노동시장 특성으로

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51점)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구성원의 직업기술과 직종

- 2007년 동안 새로이 직업기술을 취득한 가구주의 비율은 1.83%,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의 비율이 0.80%로 가장 높았고, 새로이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18.18%), 기계·금속(12.22%) 그리고 안전관리(12.02%)의 비율로 나타남.
- 2007년 동안 새로이 직업기술을 취득한 가구원의 비율은 3.06%,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의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새로이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15.17%), 그리고 교육·공무원 자격 관련(12.7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제7장 가구경제

제1절 소득

□ 경상소득

- 전체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38,276천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31,120천원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 살펴 볼 때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9,761천원,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은 48,658천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50,000천원 이상의 가구는 25.82%로 5가구 중의 1가구는 연간 50,000천원 이상의 경상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구간은 10%대로 고른 분포를 보임. 일반가구에서는 50,000천원 이상 구간에 전체 일반가구중 35.22%가 포함되어 있고, 40,000천원 이상 50,000천원미만 사이에도 14.87%가 분포되어 나타

났음. 저소득층은 20,000천원 미만이 94.10%로 대부분을 차지함.

□ 근로소득

- 임금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이 70.32%로 가구의 주소득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외 사업소득은 20.88%로 5가구 중에 1가구는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림축어업소득은 6.97%, 부업소득은 7.47%로 10% 미만으로 나타났음. 일반가구에서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81.60%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39.34%로 2배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사업소득도 일반가구(23.94%)가 저소득가구(12.48%) 보다 보유비율이 높으며, 반면 농림축어업소득과 부업소득은 근소한 차이지만 일반가구(각각 5.13%, 6.51%)보다 저소득가구(각각 12.03%, 10.12%)가 더 높은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음.
- 임금소득에 대한 평균은 24,914천원, 사업소득에 대한 평균은 6,464천원, 농림축어업소득에 대한 평균은 638천원, 부업소득에 대한 평균은 325천원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평균 임금소득은 각각 3,218천원, 32,810천원, 사업소득은 각각 380천원, 8,679천원, 농림축어업소득은 각각 395천원, 726천원, 부업소득은 162천원, 384천원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가 모든 근로소득항목들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근로소득 외 소득

- 근로소득 외 소득유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소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구원의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98.65%), 재산소득(28.93%), 사회보험(20.80%), 민간보험(0.3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7.43%), 기타정부보조금(47.64%), 기타소득(96.99%)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전체가구의 경우 28.9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17.77%, 32.99%로 일반가구가 더 높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우 전체 가구에 대해서 각각 20.80%, 0.33%로 사회보험의 보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소득계층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해서 저소득 가구가 각각 21.82%, 0.06%, 일반가구가 각각 20.44%, 0.43%로 사회보험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민간보험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그 외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의 경우 전체가구에 대해서 98.65%,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99.05%, 98.51%로 저소득가구가 더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경우 7.4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24.96%, 1.06%로 저소득가구의 4가구 중 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정부보조금의 경우 전체가구에 대해서 47.6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81.32%, 35.40%로 저소득가구의 5가구 중 4가구 이상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 외 소득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보유비율을 보이는 항목으로는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61.76%),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재산소득(21.43%), 민간보조금(2차 조사: 25.60%, 3차 조사: 96.08%)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71.14%), 노인교통비 보조금(61.5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24.96%), 공적연금(20.16%), 민간보조금(2차 조사: 30.20%, 3차 조사: 96.11%) 항목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일반가구는 저소득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이 58.35%로 가장 높고, 그 외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재산소득(25.25%), 노인교통비 보조금(18.83%), 공적연금(16.82%), 민간보조금(2차 조사: 24.00%, 3차 조사: 96.08%)이 뒤를 잇고 있음.

제2절 지출

□ 총가계지출

-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은 월평균 2,857천원이고 저소득가구는 1,132천원, 일반가구는 3,485천원으로 조사되었음.
-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38.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22.93%로 3,000천원 이상 지출구간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4.61%에 불과함.

□ 항목별 생활비

- 지출항목별 생활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비는 평균이 592천원으로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큰 지출규모를 보이고, 기타소비지출은 평균이 502천원, 교통통신비는 평균이 391천원, 교육비는 평균이 239천원, 세금은 평균이 152천원, 사회보장부담금은 평균이 150천원, 송금보조(사적이전)은 평균이 138천원, 보건의료비는 평균이 124천원, 광열수도비는 평균이 119천원으로 이러한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월 100천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자는 거의 100천원에 육박하는 9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주거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농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과 같은 항목들은 월평균 100천원 미만의 지출규모를 갖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평균 2,857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592천원의 지출규모를 갖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7.5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소비지출로 502천원의 지출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통통신비는 13.70%, 교육비는 8.38%, 세금은 5.33%, 사회보장부담금은 5.26%, 송금보조는 4.82%, 보건의

료비는 4.35%, 광열수도비는 4.16%, 이자지출은 3.47%, 주거비는 3.40%, 교양 오락비는 3.18%, 피복신발비는 2.82%, 가구가사용품비는 2.64%, 자가소비액(농축산)은 0.21%의 지출비중을 보이며, 어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3절 재산 및 부채

□ 가구의 재산

- 총재산액은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부동산)에 주택가격(자가인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을 합산한 값으로 구성됨. 한편, 순재산액은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됨.
- 총재산액은 전체가구 평균이 226,553천원으로 나타났고, 순재산액은 전체가구 평균이 196,661천원으로 나타남.
- 소유부동산 시가총액은 평균 66,317천원으로 나타남. 소유부동산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이 25,970천원, 주택외 건물의 전체가구 평균은 13,505천원, 토지·양식장·기타부동산의 전체가구 평균은 26,842천원으로 나타남.
- 점유부동산 시가총액은 평균 7,611천원으로 나타남. 점유부동산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준 것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이 2,849천원, 기타는 전체가구 평균이 4,762천원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 시가총액은 평균 31,624천원으로 나타남.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을 살펴보면, 예금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13,802천원이고,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이 10,237천원, 주식·채권의 경우 5,237천원으로 나타남. 또한 타기 전 부은 계돈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이 133천원,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2,216천원으로 나타남.

- 농기계에는 동력 탈곡기·경운기·콤바인 등이 포함됨. 총 농기계 가격의 전체가구 평균은 264천원, 저소득 157천원, 일반 303천원으로 나타남. 보유형태별 농기계 가격을 살펴보면, 먼저 동력탈곡기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10천원이고, 경운기의 경우 28천원, 콤바인의 경우 40천원으로 나타남. 또한 트랙터의 경우 115천원, 기타 농기계의 경우 71천원으로 나타남.
- 농축산물에는 소·돼지·닭·재고농산물 등이 포함됨. 총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전체가구 평균은 773천원으로 나타남. 사육형태별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소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386천원이고, 돼지의 경우 0.1천원, 닭의 경우 0.3천원으로 나타남. 또한 재고농산물의 경우 18천원, 기타 농축산물의 경우 368천원으로 나타남.
- 기타 동산·부동산에는 자동차, 회원권이나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이 포함됨. 1차 조사와는 달리 2, 3차 조사에서는 기타 동산·부동산 중 자동차를 따로 파악하였음. 자동차 가격은 전체가구 평균이 4,192천원으로 나타남.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은 전체가구 평균이 2,688천원으로 나타남.

□ 가구의 부채

-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일반사채, 카드빚 등이 포함됨. 전체가구의 평균 총부채액은 30,361천원으로 나타남. 부채액을 부채형태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대출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17,784천원이고, 일반사채의 경우 991천원, 카드빚의 경우 755천원으로 나타남. 한편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의 경우 9,434천원, 외상·미리탄 계돈의 경우 26천원, 기타부채의 경우 1,371천원으로 나타남.
- 총 이자액은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 포함됨. 총 이자액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1,188천원으로 나타났고,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액의 전체가구 평균은 513천원으로 나타남.

제8장 주거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 주택시설

- 복지패널 3차 원가구용 조사표에 포함된 이사경험 여부문항에서는 이사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가구(13.85%), 일반가구(15.07%), 저소득가구(10.52%)로 나타남.
- 주택유형의 경우, 전체가구(41.08%)와 일반가구(48.56%)는 일반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32.75%)는 일반단독주택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주거위치는 전체적으로 지상이 높게 나타남. 주거 점유형태는 전체적으로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54.3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방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가구(53.56%)와 일반가구(59.57)의 경우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가구(46.59%)의 경우 2개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남. 주택의 연건평을 살펴보면, 전체가구(36.79%)와 일반가구(37.79)의 경우 66㎡ 이상 99㎡ 미만에 살고 있는 가구가 가장 많고, 저소득가구(42.02%)의 경우 33㎡ 이상 66㎡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상·하수도 사용형태는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부엌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입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화장실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수세식이 높은 비중을 보임. 목욕시설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난방시설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스보일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가격

- 주택가격에 관련하여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주택의 임대보증금, 주택의 월세금으로 나누어 조사함.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의 점유형태가 전세, 보증부 월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주택의 월세금은 주택의 점유형태가 보

증부월세, 사글세인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함.

- 자가 주택에 대한 시가총액은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4.35%)에서 평균 188,475천원이며, 전체가구(27.11%)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저소득가구(34.02%)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일반가구(29.37%)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8.85%)에서 평균 56,327천원이며,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전세금을 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66%)에서 평균 13,058천원이며, 전체적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월세금은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7.95%)에서 평균 188천원이며, 전체적으로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

-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응답(예)이 높게 나타남.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련 설비가 있다는 응답(예)이 높게 나타남. 또한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의 경우, 전체적으로 불만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정성 여부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 주거비 부담

- 주택의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에 관해 1순위로 자기돈(89.9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70.42%)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비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총 원금상환액은 전체 평균금액이 2,197천원으로 나타났고,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전체 평균금액은 29,768천원으로 나타남.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의 전체 평균금액은 1,843천원으로 나타남. 또한 대출상환액의 연체횟수는 '전체적으로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97.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주거복지 관련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이용경험 여부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에 관하여 조사함.
- 주거복지 관련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경험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각각의 주거복지 관련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의 경우 저소득층 월세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주거관련 생활여건

- 주거관련 생활여건에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의 경우 '비해당'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돈이 없어서)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이 97.57%로 나타남.

제9장 건강 및 의료

제1절 건강상태

□ 건강상태

- 복지패널 3차 조사에서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의 비율이 33.93%로, 일반가구 가구원의 8.82%에 비해 약 3.85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주요병명

- 전체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8.40%임.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9.94%로, 일반가구(33.18%)에 비해 약 1.81배 이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타질병을 제외하면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주요병명은 고혈압(14.41%),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11.35%), 기타질병(8.03%) 순이고, 일반가구의 경우 기타질병(8.10%), 고혈압(5.59%), 치아우식증(충치)(4.39%) 순임.
- 특히 폐결핵, 결핵의 경우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앓고 있는 비율(0.31%)이 일반가구(0.02%)에 비해 15.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백내장, 녹내장의 경우 5.75배, 우울증의 경우 4.65배, 암의 경우 2.00배 높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3.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성질환

- 가구주의 만성질환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44.96%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는 70.90%로 일반가구(35.59%)에 비해 약 1.99배 많았음.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66.23%를 차지함.
- 가구원의 만성질환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않고 있는 경우는 32.47%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약 2.06배 높음(저소득가구 55.43%, 일반가구 26.89%).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비율 역시 저소득가구(51.33%)가 일반가구(21.59%)보다 약 2.38배 높게 나타남.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 의료기관 이용

-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2007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건강검진이 0.30회, 외래진료는 18.37회, 입원횟수는 0.19회, 입원일수는 3.87일로 나타남. 일반가구 가구원의 평균 건강검진 0.36회, 외래진료 9.56회, 입원횟수 0.12회, 입원일수 1.62일와 비교할 때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횟수를 제외한 모두에서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
-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병·질병(6.48%)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2.30%), 출산(1.22%)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전체적으로 볼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70.46%), 종합, 대학병원(8.55%), 한방 병·의원(1.5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지역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69.80%), 종합, 대학병원(11.79%), 보건소(2.63%), 한방 병·의원(1.87%) 순으로 나타남. 일반가구의 경우 지역내 병·의원(70.62%), 종합, 대학병원(7.76%), 한방 병·의원(1.42%) 순으로 나타남.

□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 2007년 1년간 가구당 평균 가입률은 65.11%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우 평균 가입률은 31.48%, 일반가구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평균가입률은 77.34%로 나타남. 일반가구의 평균가입률이 저소득가구보다 약 2.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007년 1년간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2.51건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0.75건,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3.15건으로 나타남. 일반가구의 민간의료보험 평균가입건수가 저소득가구보다 약 4.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

- 2007년 1년간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20.97천원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9.96천원,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54.10천원으로 나타남. 일반가구의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 저소득가구보다 약 5.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10장 가족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정도 3가지 항목을 조사함.
- 분석결과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전체 가구

46.51%, 저소득가구 23.89%, 일반가구 52.46%임.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부모와의 왕래정도는 1년에 평균적으로 전체가구 33.76회, 저소득가구 35.29회, 일반가구 33.58회임. 또한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는 1년 평균으로 전체가구 87.70회, 저소득가구 69.92회, 일반가구 89.82회임.

□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8가지 항목²⁾으로 조사함.
- 분석결과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71.72%, 81.45%, 78.53%, 59.38%)이 높았음. 반면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7.76%, 65.57%, 52.35%, 81.77%)이 높았음.

제2절 가족문제

□ 가족문제

- 가구구성원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40.85%)는 비율이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26.25%)이나, 가구원의 건강(20.85%)에 대한 갈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 가족갈등 대처방법

- 가족갈등 대처방법에서는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원들끼리 폭력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살펴볼 때,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 가족의 생활습관 중 흡연관련 습관을 살펴봄.
 - 생애동안의 흡연 총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원의 59.93%는 전혀 흡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5갑(100개피)미만이 1.02%인데 반해 5갑(100개피)이상이라는 응답이 39.00%를 차지하였음
 - 흡연 경험시기는 흡연경험자의 43.25%가 10대 미만이었고, 20~30대라고 응답한 비율도 54.43%를 나타냈음.
 - 총 흡연기간은 75.31%의 응답자가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 흡연경험자 중에서 현재의 흡연 여부는 60.75%임.
 - 하루 평균 흡연량은 85.92%가 반 갑 이내 혹은 한 갑 이내라고 응답함.
 - 금연시도와 관련해서는 하루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1.19%이고 46.98%의 흡연자가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관해 질문한 결과 55.43%의 응답자가 하루 동안 가정 또는 직장의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이 없다 라고 응답하였고, 28.13%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함.
 - 1시간이상 실내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사람(12.58%)을 대상으로 담배노출시간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사람이 3시간이내라고 응답함.
 -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흡연관련 습관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가구원의 평균음주 회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33.7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 1회 이하(41.12%), 주 2~3회(17.44%)의 순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와 주 4회 이상은 저소득 가구 가구원이 높았고 주 2~3회는 일반 가구가 더 높아, 전체적으로 일반가구의 가구원이 술을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음주량은 1~2잔 정도가 가장 높았고(29.61%), 3~4잔 정도가 23.41%, 7~9잔 정도가 20.01%로 나타났음. 소득수준별로 비슷함.
- 평소 같았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88.07%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 년 1~2회가 8.06%, 월 1~2회가 3.29%였음.
- 음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는 22.98%(없다 72.39%),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11.42%(없다 83.95%)이었음.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도 전체와 비슷한 순위를 보임.
- 2007년 한 해 동안 출산경험을 조사한 결과 1.75%가 출산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원의 0.6%가 일반가구원의 2.05%가 출산을 경험하였음.
- 가구원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우울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1.41점이었고, 저소득가구는 1.66점, 일반가구는 1.35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이 조금 더 우울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자아존중감은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09점, 저소득가구는 2.85점, 일반가구는 3.15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가족생활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가족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의 합이 71.89%이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의 합은 6.36%였으며, 전반적으로 일반가구의 가구원의 만족도가 저소득가구원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의 합이 50.08%, 불만족하

는 비율의 합이 5.75%였으며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은 만족하는 비율이 낮고,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높게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64.23%,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3.64%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를 보아도,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3.65%인 반면,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3.08%에 불과하였음. 소득수준별로 보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비슷하나,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저소득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음.

제11장 생활실태 · 만족 및 자원활동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 생활실태

- 생활실태는 가구구성원의 인터넷 사용여부, 노동환경 유해여부 2가지 항목을 조사함.
- 분석결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가구 62.27%, 저소득가구 71.67%, 일반가구 26.54%임. 노동환경이 유해여부는 노동환경이 유해하지 않다는 응답이 57.22%로 그렇다(8.66%)보다 높음.

□ 생활만족

- 생활만족은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인 생활상태 8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건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으나 가족의 수입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건강, 가족의 수입, 직업, 여가생활)에서 불만족 비율이 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저소득가구는 전체 항목 중 가족의 수입에 대한 불만족이 65.84%로 가장 높음.

제2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음. 그리고 연간기부액수는 전체가구 258.55천원, 저소득가구 99.64천원, 일반가구 273.64천원이고, 연간자원봉사활동횟수는 각각 14.47회, 19.29회, 14.01회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평균적으로 연간기부액수는 적지만 연간자원봉사활동횟수는 많음.

제3절 가구의 생활여건, 식생활, 주관적 최저생계비

□ 가구의 생활여건

- 가구의 생활여건은 8가지 항목³⁾으로 조사함.
-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 경험비율은 “㉔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2.10%)”, “㉓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3) “㉔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㉓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㉒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㉑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준 경험”, “㉐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㉏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㉍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㉌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6.90%)”, “㉔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0.74%)”, “㉕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0.40%)”, “㉖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2.43%)”, “㉗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2.65%)”, “㉘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6.14%)”, “㉙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2.03%)”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험비율은 일반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㉖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비율은 저소득가구(7.54%)가 일반가구(0.57%)의 약 13.23배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의 식생활

- 가구의 식생활은 6가지 항목⁴⁾으로 조사함.
-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 경험비율은 “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4.31%)”, “㉒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12.07%)”, “㉓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1.67%)”, “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실사를 거른 경험(㉔)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거의 매월”은 28.37%, “몇 개월 동안”은 42.91%, “1~2개월 동안”은 28.72%)”, “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1.63%)”, “㉖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0.94%)”로 나타남.

4) “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㉒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㉓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실사를 거른 경험”, “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㉖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 저소득가구의 경험비율은 일반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비율은 저소득가구(5.15%)가 일반가구(0.40%)의 약 12.88배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최저생계비

- 2007년 1년 동안 1인가구 기준 주관적 최저생계비(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평균 991.47천원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1,160.79천원)가 저소득가구(636.60천원)에 비해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약 1.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 공적연금 가입실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의 가입 가입여부를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해당이 71.28%, 가입이 12.57%, 수급이 8.97%인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비해당이 49.71%, 가입이 37.21%, 수급이 5.14%로 나타났음.
-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보면, 국민연금은 저소득가구(99.84%)가 일반가구(90.06%)보다 높은 반면, 공무원연금은 저소득가구에서 0.16%인데 반해, 일반가구에서는 8.30%로 나타났으며, 사학연금은 저소득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가구에서는 1.00%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의 종별 가입실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78.04%)가 사업장

가입자(20.60%)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사업장가입자(59.90%)가 지역가입자(39.6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미납률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58.88%인 반면, 일반가구는 25.48%로 나타났다.
- 보험료 미납을 납부예외와 실제 보험료 미납으로 구분해서 보면, 저소득가구는 납부예외가 86.13%, 실제 보험료 미납이 13.87%, 일반가구는 납부예외가 86.52%, 실제 보험료 미납이 13.48%로 나타났다.
- 납부예외 사유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실직, 휴직, 사업중단(51.91%)이 일반가구(55.64%)에 비해 낮은 반면, 생활곤란에 따른 납부예외 비율은 저소득가구(46.90%)가 일반가구(42.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납부예외 기간은 전체적으로 85.60%가 10~12개월로 나타나 대체로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는 저소득가구는 거의 대부분(96.14%)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76.03%)은 저소득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21.2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는 저소득가구에서는 경제적 부담(85.10%), 가입 불필요(10.29%), 불신(2.57%)의 순이었고, 일반가구는 경제적 부담(47.12%), 가입 불필요(38.88%), 불신(9.51%)의 순이었음.

□ 공적연금 수급실태

- 저소득가구의 수급률은 12.14%인 반면 일반가구는 7.51%로 나타났다.
-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저소득가구는 국민연금 88.25%, 공무원연금 2.10%, 군인연금 0.43%, 보훈연금 7.72%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국민연금 63.41%, 공무원연금 21.86%, 사학연금 2.71%, 군인연금 3.01%, 보훈연금 6.64%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현황을 보면, 저소득가구는 노령연금 84.51%, 유족연금 11.65%, 장애연금 2.45%, 반환일시금 0.15%로 각각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노령연금 90.32%, 유족연금 8.17%, 장애연금 1.26%, 분할연금 0.3%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일시금 평균 수급액은 저소득가구는 일시금이 1,603천원, 연금이 1,78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이 2,597천원, 연금은 2,516천원으로 나타났음.
- 특수지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현황은 1순위의 경우 저소득가구에서는 퇴직급여 75.14%, 유족급여 24.86%의 분포를, 일반가구에서는 퇴직급여 91.21%, 유족급여 7.56%의 분포를 보였음.
- 특수지역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저소득가구에서는 일시금 95천원, 연금은 8,971천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일시금으로 845천원을, 연금으로 21,434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2절 건강보험 가입실태

□ 건강보험 가입실태

-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비율은 76.53%이며, 미가입 가구의 96.05%(의료급여 1종 65.33%, 의료급여 2종 30.72%)가 의료급여 수급대상이었으며, 일반가구 건강보험 가입률은 99.16%이며, 미가입 가구는 의료급여(47.21%), 보훈병원 무료진료(52.80%)로 분포하였음.
- 건강보험료 납부실태는 일반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있는 가구는 3.30%인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6.50%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료 미납사유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은 일반가구(72.21%)에 비해 역시 저소득가구(93.71%)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는 저소득가구는 ‘특별한 문제없음’이 74.33%, ‘월보험료 부담’이 17.72%로 각각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특별한 문제없음’이 66.33%, ‘월보험료 부담’이 21.86%로 나타났음.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고용보험 가입실태

- 고용보험 가입실태는 저소득가구의 가입률(25.48%)이 일반가구의 가입률(64.73%)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수급실태

-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은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80%, 일반가구는 1.56%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경험은 저소득가구는 94.71%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실업급여를 83.07%, 모성보호급여를 15.82%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급여 수급액은 저소득가구는 3,466천원, 일반가구는 3,199천원으로 나타났음.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산재보험 가입실태

- 산재보험 가입실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미가입(72.87%)이 가입(26.33%)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가구는 가입(64.49%)이 미가입(35.4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재보험 수급실태

- 산재보험 수급경험은 저소득가구 0.45%, 일반가구 0.33%만이 수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1순위)은 저소득가구는 휴업급여 29.40%, 장해일시금 28.54%, 장해연금 28.09% 순이었으나, 일반가구는 휴업급여 48.04%, 장해연금 37.84%, 장해일시금 8.00% 순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급여의 연간 수급액은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18,973천원, 연금 7,602천원, 일반가구는 일시금 8,240천원, 연금 13,233천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 적용 및 가입실태

- 퇴직금제는 저소득가구에서는 불과 17.90%만이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일반가구는 56.83%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제의 경우 일반가구의 적용비율(4.08%)이 저소득가구의 적용비율(4.08%)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개인연금(중신보험 포함)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95.44%인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77.88%인 것으로 나타남.

□ 수급실태

-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은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12%, 일반가구의 0.23%만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연간 수급액은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1,482천원, 일반가구는 일시금 1,113천원, 연금 5,465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퇴직금(퇴직보험금)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1.29%가 수령을 하였고, 일반가구에서는 4.70%가 수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령액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시금 2,439천원, 일반가구의 경우 일시금 6,908천원, 연금 1,913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제13장 공공부조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1.39%가 신청한 경험이 있음. 신청경험자(n=88)의 급여 신청이유는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81.40%),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9.46%),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5.66%)것으로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정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과 건강문제는 중요한 욕구로 작용하고 있음.

□ 신청탈락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경험자는 급여 신청 후 탈락된 비율(53.60%)이 선정된 비율(46.40%)보다 높음. 수급자 신청탈락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78%로 가장 높음.
- 신청탈락 이후 가구 생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38.30%로 가장 높고,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9%임. 2순위로는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한다는 응답이 1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빚을 내어서 생활하거나(9.84%),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8.48%)을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음.

제2절 수급 및 탈피

□ 수급기간 및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경험가구중 89.30%는 12개월 동안 수급을 받았다고 응답함.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 이유로는, '소득이 발생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서'(38.97%),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 서'(15.6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급여 수준에 대한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51.25%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족'(23.02%), '보통'(16.62%) 순으로 응답함.

□ 탈피 예상기간 및 탈피 후 지원필요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탈피 예상기간은 '탈피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응답이 75.50%로 가장 높았고,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탈피할 것으로 예상' 하는 응답은 3.46%에 불과함.
- 탈피 후 필요한 지원항목(생계비 제외)으로는 응답대상의 55.60%가 의료비 지원을, 23.55%가 주거비 지원, 15.01%가 '교육비를 꼽음.
- 2007년 말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가구의 탈피 사유로는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37.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졌기 때문'(26.59%), 기타(8.38%) 순으로 나타남.

제3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형태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를 받고 있는 가구중 60.81%가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2종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31.21%임. 또한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7.93%를 차지함.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2007년 1년간 가구의 생계비 지원, 의료비,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 약물 상담서비스, 학대·가정폭력 상담서비스, 부모상담·부모교육 서비스 경험여부, 서비스를 받은 가구의 이용만족도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파악함.
-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에서 이용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일반 가구의 이용 경험 보다 높게 나타남.
- 가구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음.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종교단체·시민단체를 통한 서비스도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공공기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제2절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 가구 중 30.66%인 1,936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경로연금과 의료비 지원과 같

은 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 일자리사업 등은 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가구가 대부분이었음.

제3절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 가구 중 16.13%인 1,019가구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수당과 자동차 관련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 경험 및 만족도가 높았으나, 다른 서비스들인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공공시설 내 사업권, 재활보조기구, 의료 재활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거시설 개선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훈련,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 등은 서비스 경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음.

제4절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전체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 2,666가구(전체 가구 중 42.22%)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아동상담·집단 프로그램, 장애아동 특별프로그램, 방과 후 지도, 무료급식, 학비지원,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이용경험은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가 16.50%, 무료급식이 17.33%로 다른 아동서비스에 비해서 높고,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예체능 교실과 문화활동은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별로 보면, 모든 아동서비스에 있어서 저소득가구의 이용경험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았음.
-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

조,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무료 급식, 학비 지원, 예체능 교실은 공공기관에서,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은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문화활동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1년간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가구 가운데 9.55%의 가구에서 2007년에 새로 아동이 추가되었다고 응답함. 추가된 아동 가운데 6.48%는 출생 시 2.5kg 미만의 저체중이었음. 0.93%는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5kg 미만 출생과 선천성 질환과 질병은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서 많이 나타남.
- 2007년 1년간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2,670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아동가구의 85.89%가 학교 외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저소득가구는 69.06%, 일반가구는 88.82%로 나타나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의 아동 가운데 학교 외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2,290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각 아동별로 최대 5개까지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 외 사교육 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이용 기관수는 2.35개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평균 2.02개, 일반가구는 평균 2.40개로 일반가구의 사교육이나 보육기관 이용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한 사교육과 보육기관 유형은 민간학원 및 사교육이 66.32%로 가장 높고, 보육시설이 19.02%,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12.28%의 순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가구당 39만 5천원으로 저소득가구는 19만 4천원인 반면, 일반아동가구는 42만 2천원으로 일반가구가 높았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8만 4천원으로 저소득 가구는 10만 7천원, 일반가구 아동은 22만 3천원으로 2배 이상 높았음.
- 월평균 보육비는 9만 7천원으로 저소득 가구는 4만원, 일반가구 10만 5천원으로

로 나타남. 보육비를 지출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은 4만 3천 원이고 저소득가구 아동은 1만 9천 원, 일반가구 아동은 5만 2천 원으로 일반 가구가 더 높았음.

제15장 장애인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 장애인 부가조사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총 878명이 조사됨. 전체 조사대상 878명 중 99.1%(870명)가 조사완료됨.
- 응답자 중 남성은 58.05%, 여성은 41.95%임. 만 18세~65세 미만의 성인이 가장 많아 총 응답자 중 57.82%를 차지함. 65세 이상의 노인도 40.92%에 이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26%로 나타남. 미취학 아동은 한 명도 없음. 장애종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38.06%, 뇌병변장애가 11.38%, 시각장애가 12.99%임. 장애등급은 3급이 가장 많아 19.43%, 그 다음이 6급으로 18.39%임. 교육상태를 고려한 최종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이 42.85%로 높게 나타남. 가구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59.20%, 일반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40.80%로 나타나 저소득층 가구가 많았음.

제2절 (공통1) 장애 원인 및 상황

□ 장애발생 원인, 시기, 당시 소득 수준

- 장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아 51.15%로 나타남.
- 장애가 처음 발생한 나이는 전체적으로 평균 38.69세임. 저소득 가구의 연령이 일반가구 보다 높아 41.23세인 반면에 일반가구는 35.01세 였음.
- 장애 발생 당시의 가구 소득수준에 대해 전체 가구의 42.53%가 가난하거나 매우 가난하였다고 응답함. 저소득가구의 경우 장애 발생시기부터 가난하거나 매우 가난한 경우가 49.91%였던 반면에 일반가구는 31.83%에 불과함.

□ 장애의 현재 상태, 현재 이용 중인 의료 서비스

- 고착되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71.27%로 나타남.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26.80%로 일반 가구 장애인 18.31%에 비해 약 8.49%포인트 더 높음.
-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 66.55%로 가장 높은 이용 비중을 보임.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45.04%가 의료 급여 1종 또는 2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4.51%에 불과함.

□ 장애 치료의 충분 여부 및 치료의 불충분 이유

- 전체 장애인중 중 38.05%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61.9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저소득가구의 경우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62.72%가 응답하여 일반 가구의 60.85%보다 높음.
- 치료를 불충분하게 받는 이유로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36.9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 (24.46%)이 일반 가구 장애인(12.50%)보다 1.95배 높음.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및 대처 방법

- 본 조사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중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1명 있었으며, 일반 가구 장애인 이 한 명의 장애인은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함.
- 고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1명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 장애인 이 한 명의 장애인은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대학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은 4 명으로 조사됨. 이들은 모두 대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2명(0.23%)이며 각각 무시한다(50.00%), 항의한다(50.00%)의 대처 방법을 응답함.
-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을 받았다고 3명(0.34%)이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대처 방법으로 각각 무시한다, 참는다, 항의한다를 응답함.
- 지난 1년간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15명의 해당 장애인 중 1명만이 받았다고 응답함.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으로 참는 방식으로 대처함.
- 지난 1년간 결혼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1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5%이었음. 결혼 전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무시한다가 20.00%, 참는다가 80.00%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결혼 생활 중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3.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1.61%는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4.27%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결혼생활 중 차별 경험 1.97%보다 2.17배 높았음. 결혼 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는 28명의 응답자 중 참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장애인이 60.70%로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간 취업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4.94%로 나타남. 취업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5.63%로 일반 가

구 장애인의 차별 경험 응답(3.94%)보다 높았음.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전체 응답 중 무시한다가 24.40%, 참는다가 68.90%, 항의한다가 6.70%로 나타남.

-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소득(임금)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3.45%였음. 소득(임금)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무시한다가 16.50%, 참는다가 77.42%, 항의한다가 3.04%로, 기타 응답도 3.04%로 분석됨.
-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2.18%로 나타남.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3.10%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 1.55%보다 2배 높았음.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무시한다가 15.50%, 참는다가 85.50%으로 나타남.
-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1.26%로 분석됨. 무시한다 18.18%, 참는다 81.82%의 대처방식이 나타남.
-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870명의 장애인 중 0.34%였으며, 모두 저소득 가구 장애인 이었음.
- 보험 제도상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6.78%임. 보험 제도상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중 무시한다가 37.24%, 참는다가 55.96%, 항의한다가 5.10%, 기타가 1.70%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4.48%임.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6.21%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응답(1.97%)보다 3.15배 높았음. 차별에 대한 대처는 무시한다가 23.08%, 참는다가 61.54%, 항의한다가 15.38%로 나타남.
-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 모두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전체 장애인 중 0.57%이었음. 일반 가구 장애인

의 경우 정보 통신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아무도 없었음.

-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3.22%로 분석됨. 지역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89.01%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80.77%)보다 높음. 일반 가구 장애인은 지역사회생활 차별에 대해 무시한다는 대처 방식이 참는다는 대처 방식보다 높은 반면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참는다는 대처 방식이 보다 높았음.

□ 외출 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

-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73.80%이었으나,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66.02%로 보다 적음. 월 3회 이내로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13.20%)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10.99%)보다 높음.
-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60.75%로 가장 높음.

제3절 (공통2) 일상생활

□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도움 주는 사람, 도움의 충분성

- 모든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63.33%로 가장 많음.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6.44%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도와주는 사람 1순위로 배우자(52.63%)를 제시함. 도와주는 사람 2,3순위로는 자녀가 가장 높았음.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도움이 충분한지에 대해 이들은 부족한 편 이라고 28.70%가 응답함. 저소득층의 장애인은 일반가구에 비해 일상생활에 서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41.13%로 일반가구의 21.47%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음.

□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장애이용 희망, 이용시 부담 정도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 한 장애인 중 6.09%에 불과함.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12명이 저소득 가구 장애인인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2명에 불과함.
- 향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가 응답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 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40.43%으로 분석됨.
-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경우 자기 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49%로 일반가구 장애인의 40.00%보다 높음. 반면에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 건 이용하겠다는 일반 가구 장애인은 6.67%인 반면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1.59%에 불과함.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전체 장애인 중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83.68%로 나타남. 경증은 8.50%, 중증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7.82%이었음. 기본적인 일상 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과 일반가구 장애인간에 큰 차이 가 없었음.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전체 장애인 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64.67%로 경증은 10.50%, 중증은 13.45%이었음. 저소득 장애인 중 수단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중증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24.86%, 일반 가구 장애인은 24.79%로 비슷함.

□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 및 도움의 횟수

- 저소득가구 장애인(45.05%)은 일반 가구 장애인(36.90%)에 비해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더 많이 도움을 받음.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일반 가구 장애인에 비해 물질적 도움의 횟수는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더 많이 받는 반면에 보살핌은 일반 가구 장애인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개월간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33명으로 3.79%에 불과함.
- 친구 및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4.94%로 나타남. 친구 및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5.05%, 일반 가구 장애인은 4.79%임.
-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은 일반 가구 장애인(3.38%)보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8.16%)이 더 많이 받음. 이웃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나 일반 가구 장애인이나 비슷하였으나 보살핌은 오히려 일반 가구 장애인(9.17회)이 저소득 가구 장애인(7.29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역시 일반 가구 장애인(3.38%) 보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7.77%)이 더 많이 받음. 저소득 가구장애인은 물질적 도움에 있어서는 일반 가구 장애인 보다 더 많이 받는 반면에 보살핌은 일반 가구 장애인 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

애인 중 2.76%임.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3.69%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물질적 도움은 0.68회 보살핌은 평균 4.00회의 도움을 받으므로써 보살핌을 보다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도움도 저소득 가구 장애인(11.95%)이 일반 가구 장애인(2.54%)보다 많이 받음.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으로부터 물질적 도움(1.78회)을 일반 가구 장애인(0.56회)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도움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33.40% 받는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3.66%에 불과함.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평균 1.07회 물질적 도움을 받은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1.69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도움을 받는 비중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지난 1개월간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0.46%에 불과함.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으로부터 도움은 주로 보살핌에 치중되어 있음.
- 기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비중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6.41%로 일반 가구 장애인 1.13%보다 5.7배 정도 높음.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기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의 횟수도 일반 가구 장애인보다 많음.

제4절 (개별1)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 K-CBCL 우울/불안 척도

- 학생 장애인 중 응답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평균은 28점 만점에 3.01점으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음. 그러나 저소득가구는 5.76점으로 일반가구 1.92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 전체가구에서 특수학급(일반학교)은 54.10%, 특수학교는 50.54%, 진로상담은 50.19%, 학교 방과 후 활동은 49.13%, 부모교육은 45.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저소득가구에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필요성은 6.98%로 매우 낮은 반면 심리치료의 필요성은 43.59%로 높았고, 이와 반대로 일반가구에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필요성은 81.61%로 매우 높았음.
- 전체가구에서 특수학교는 40.19%, 특수학급(일반학교)은 31.13%, 진로상담은 29.57%, 복지관 방과 후 활동은 24.90%가 이용하였음.
- 저소득가구에서는 학교 방과 후 활동이 19.71%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일반가구에서는 특수학교 이용률이 59.58%로 가장 높았음.

□ CESD-11 우울척도

- 전체학생 장애인 평균은 4.0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저소득가구 평균이 6.21점으로 일반가구 평균인 3.21점보다 다소 높으나, 그 절대적 수준은 역시 낮았음.

□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는 저소득가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반면, 일반가구의 41.19%가 이용하였음.
- 반면, 전체가구의 46.19%, 저소득가구의 43.59%, 일반가구의 47.71%가 향후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함.

□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이용 시 부담정도

- 지역혁신사업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음.
- 반면, 전체가구의 40.75%가 향후 지역혁신사업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저소득가구는 23.88%만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의 50.60%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이용 의사를 나타냄.

- 이용 시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로 나타남.

□ 학교출석, 적응 정도, 문제, 방과 후 생활

- 학교출석을 질문한 결과, 학생 장애인 응답자 전원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음.
- 전체가구의 82.05%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함. 반면 저소득가구는 51.31%로 일반가구 100%에 비해 학교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남.
- 전체가구의 대부분인 68.11%가 학교생활의 문제가 없다고 응답함. 저소득가구에서는 등하교 불편과 친구들의 이해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일반가구에서는 전문교사 부족을 문제점으로 나타냄.
- 전체가구의 36.72%가 방과 후 집에서 혼자 지내며, 34.68%는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고 응답함. 저소득가구는 41.51%가 집에서 혼자 지내며, 19.71%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는 응답이 54.93%로 가장 많아 저소득가구와 차이를 보임.

제5절 (개별2)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 전체가구에서 취업알선의 필요가 1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직업상담이 16.65%를 나타냄. 저소득과가구와 일반가구 역시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음.
- 모든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으므로 향후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률 증대가 요구됨.

□ CESD-11 우울척도

- 전체 성인장애인 평균은 12.50점이었으며, 저소득가구 평균이 16.92점으로 일반가구 평균인 8.92점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취업여부, 현재 일자리, 희망 일자리, 취업불원 이유

- 전체 성인장애인의 39.76%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19.33%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39.96%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가구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현재 취업 중인 일자리를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의 55.87%가 일반사업체에서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29%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함.
- 향후 희망 일자리를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의 37.02%가 일반사업체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19.68%는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함.
-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가구의 63.24%가 장애가 심해서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응답함.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응답도 11.45%로 나타남.

□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이용 시 부담정도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전체가구의 0.44%만이 응답하여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냄.
-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의 8.29%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이용희망정도도 낮게 나타남.
- 이용 시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44.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1.44%로 나타남.

제6절 (개별3)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이 전체가구의 25.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간병) 서비스가 24.46%를 나타냄. 저소득가구에서는 21.13%로 급식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보임.
- 모든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으므로 향후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률 증대가 요구됨.

□ CESD-11 우울척도

- 전체 어르신 평균은 15.88점으로 상당한 수준임. 저소득가구 평균이 16.84점으로 일반가구 평균인 14.14점보다 다소 높으며, 그 절대적 수준은 둘 다 높음.

□ 취업여부, 현재 일자리, 구직활동 여부,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바라는 정부지원

- 전체 어르신의 19.58%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5.31%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72.26%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노인 장애인은 취업을 희망하지 않음.
- 현재 취업 중인 일자리를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6.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28.43%를 기록함.
-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51.91%로 과반수를 차지함.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의견이 20.86%로 일반가구의 5.48%보다 월등히 높았음.
-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에서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원하

는 경우가 43.66%로 가장 높았음.

-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것을 질문한 결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길 원하는 의견이 48.42%로 가장 많았음.

□ 용돈

- 식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 전기, 교통비 등 한 달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생활비 이외에 용돈으로 얼마 정도 쓰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어르신 평균은 52,880원을 기록함. 저소득가구는 42,580원, 일반가구는 70,160원을 나타냄.

□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이용 시 부담정도

- 노인돌보미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전체가구는 2.11%로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냄.
-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의 23.80%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이용희망 정도는 높게 나타남.
- 이용 시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48.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2.30%로 나타남.

제 I 부

조사 개요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 조사배경

국가적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여 왔다. 20세기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Booth와 Rowntree 등의 노동자의 삶과 빈곤조사를 통한 '빈곤의 재발견'에 크게 힘입었다. 이후에도 조사연구는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횡단면 자료는 age effect와 cohort effect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닌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캐나다의 SLID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 및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정책관련 패널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심의 자활패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패널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문제, 빈곤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이

2005년부터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첫째, 유사한 조사대상에 분석목적만을 달리한 유사 패널의 난립으로 '예산 비효율성'사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패널들은 예산제약으로 유효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목적 비효과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표성, 유효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복지 정책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복지패널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간에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진행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유사한 주제의 패널을 여러 개 운용함으로써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예산절감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둘째,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원의 조사 및 연구 인프라와 서울대학교의 학술적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좀 더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세 개의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유효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된 조사결과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예산 요구 시 자활패널과 복지패널 구축을 위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지 않고, 동 예산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대사업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기존의 복지패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통합된 한국복지패널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2. 조사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출발한 한국복지패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의 생명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통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통계가 빈약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적정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복지관련 패널이 몇 개 있었지만, 표본수 부족, 원가구 표본 유지율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로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국내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표본 규모가 가장 큰 표본(7,072가구 및 동 가구에 포함된 15세 이상가구원)을 1차 연도에 구축하였고⁵⁾, 2차 3차 연도에는 원가구 표본 유지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⁶⁾. 이 결과 2차 연도 원가구 표본 유지율 92.1%, 3차 연도 원 가구 표본 유지율 86.7%를 달성함으로써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적정표본을 확보하고 표본 유지율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패널의 충분조건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의 질이 담보되어야 충분조건이 달성된다. 한국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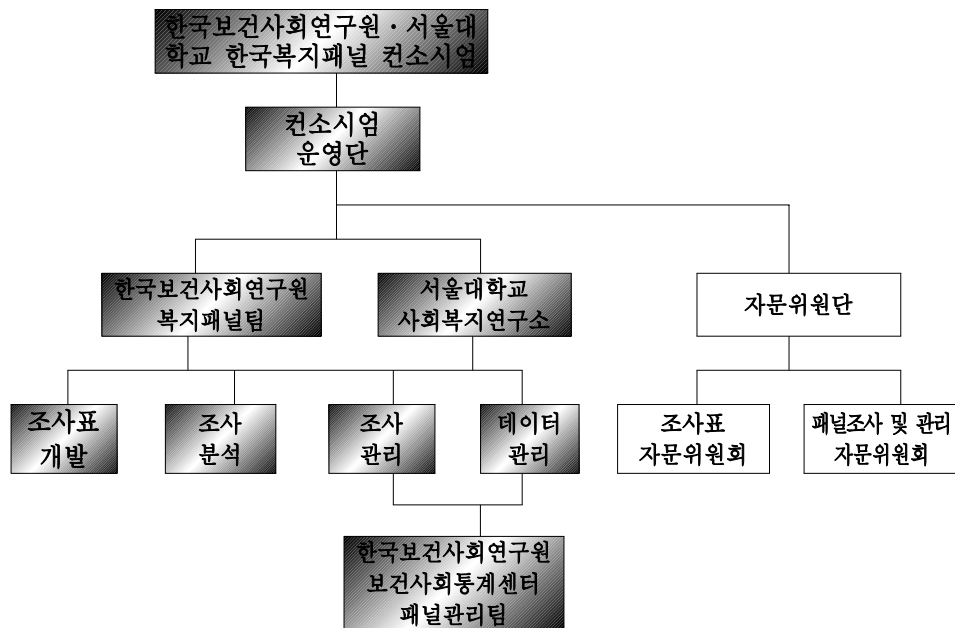
5) 표본 추출시 전국 30,000가구에 대한 1차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중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함으로써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2장 표본추출 개요를 참조하세요.

6)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표본관리를 위하여 복지정책 전반을 망라한 『2007년 복지정책 길라잡이』를 작성하여 표본가구에 배부하고, 매년 연하장, 설선물, 추석선물, 이사 선물 등을 보냈다.

패널조사에서는 조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조사표를 개발한 연구진에게 바로 문의하여 처리하였다. 조사원 운영은 4인 1조(지도원 1인, 조사원 3인)체계로서 조사원이 조사한 결과를 조사지도원이 현장에서 에디팅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주요 지표인 소득 및 지출수준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자료의 공신력·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패널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기존 우리나라의 패널이 한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조사 능력과 서울대의 연구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 관리체계



둘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학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복지는 순수 복지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확대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개별가구의 능력, 다양한 복지 지표, 개별가구의 능력과 복지시스템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한 후 조사표 개발을 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개발시 패널조사 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문항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조사결과는 금년 9월에 개최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셋째, 국제비교 가능한 패널을 구축한다. 최근의 흐름은 국가간 제도의 수렴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간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국제비교 가능한 패널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연구진은 외국의 복지관련 패널 조사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 문항들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 유수의 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의 결과를 이용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절 조사개요

1. 표본추출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다. 횡단면 조사인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종단면 조사인 노동 패널의 경우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표본 추출은 제3장에서 소개되므로 여기서는 개요만 기술하고자 한다.

표본규모는 7,072가구⁷⁾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7) 목표 표본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조사결과 7,072가구가 조사완료 되었다.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패널 원 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세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⁸⁾.

2. 조사표의 구성

한국복지패널의 조사표의 구성은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조사표의 경우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개인조사표의 경우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가조사의 경우 2006년에는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⁹⁾, 2007년에는 복지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가 조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단위로 반복될 예정이므로 2009년에는 아동에 대한 심층조사를 할 예정이다.

〈표 1-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대상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기준 응답시점: 전년도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기준 응답시점: 전년도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장애인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기준 응답시점: 전년도 12.31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아동부가조사 • 2007년: 복지의식조사 • 2008년: 장애인조사

8)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사항목은 가구조사에 있다.

3. 조사원 및 조사방법

한국복지패널의 실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 68명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동 조사원들은 지도원 1인, 조사원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운영하였다. 지도원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 협조 부탁과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보장 수급액 등의 행정자료를 취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은 직접 조사대상인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지도원이 에디팅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조사를 지시하고, 완성된 조사표는 연구원으로 보내져 2차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4.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제3차 한국복지패널은 2008년에 실시하였으므로 조사의 기준시점은 2007년이다.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7년 1월~12월간의 1년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본조사의 경우 2008년 4월 13일~2008년 6월 10일까지 실시되었고, 이사 가구 등의 추적조사는 2008년 7월 3일~2008년 7월 19일까지 실시되었다.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장점과 함께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¹⁰⁾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규모는 5,000가구 내외이거나 미만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차연도 조사완료된 가구는 6,580가구이고, 3차조사 완료 가구수는 6,314가구이다(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읍면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표 1-1-2〉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이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고, 중산층은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은 통계청보다 약간 높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사가 어려운 점을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조사로서 2008년 현재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안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넷째, 전국의 모수치와 가장 유사한 표본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표본 추출시 전국 30,000가구에 대한 1차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함으로써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다섯째, 2차·3차연도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다른 유수의 패널보다 높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차연도 원가구유지율 92.1%(7,072 원가구 중 6,511가구 완료)이고, 3차연도 원가구 표본유지율 또한 86.7%(7,072 원가구 중 6,128가구 완료)로 나타나 국내의 주요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다.

〈표 1-1-3〉 3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비교

	한국복지패널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년도 표본가구 유지율	92.1%	87.6%	79.0%	89.0%	87.7%	89.9%
3차년도 표본가구 유지율	86.7%	80.9%	66.0%	86.3%	81.5%	86.0%

여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일곱째,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다양한 영역의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내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초에 조사를 실시하면, 회상의 문제는 줄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과약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의 부족이다. 매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연도에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진은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 체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항들이 있음을 밝힌다. 양질의 조사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에러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사실 패널조사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크,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 체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제2장 표본추출 및 가중치 조정

제1절 표본의 규모

1. 조사개요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이다. 따라서 도시의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는 지향하는 정책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가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이들에 관한 다양한 복지실태와 욕구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2-1-1〉 복지패널 조사의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수	14백만여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최종 조사 완료된 24,711가구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

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추출과정은 2중추출(double sampling 또는 two-phase sampling)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모집단에 관한 보조정보를 얻기 위해 약 24,711 가구의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약 7,072가구를 2단계에 걸쳐 추출한 형태이다.

2. 표본규모

가. 1단계 표본추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예비조사구를 포함하여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 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주택유형(3)에 대해 층별로 확률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표본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조사가능성 및 접근성과 조사비용 및 제한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서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제주도는 조사지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나. 2단계 표본추출

1단계 표본자료인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2-1-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 40%	2,481	10.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계통추출에 의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패널가구 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표 2-1-3〉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분포현황

지 역	조사구수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합 계	
	표본 조사구수	완료 조사구	일반 표본가구	완료 가구수	저소득 표본가구	완료 가구수	표본 가구수	완료 가구수
서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주	5	5	38	45	43	36	81	81
합 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패널가구의 탈락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패널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해하는 것이다. 여타의 국내 패널조사의 가장 당면한 문제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대상 가구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차 패널가구의 생성을 위해 가능한 조사당시 거부율과 비협조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구별 표본가구들을 계통 추출을 적용하여 조사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조사대상 표본가구가 조사를 거절할 경우 순서상 다음 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일반소득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특정 조사가구의 경우 일반가구가 배분되어 조사당시 거절에 따른 대체가구가 없을 경우 인근 조사구의 해당 소득 계층 가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설계당시 7,000가구를 약간 상회하는 조사완료가구 수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표본배분 가구수와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였다.

제2절 3차년도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1. 표본 특성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2차 년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2차 년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원가구와 3차 년도에 조사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2-2-1>과 같다.

〈표 2-2-1〉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조사년도	가 구		가 구 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7,072	-	14,463	-
2차	6,511	92.06%	13,083	90.46%
3차	6,128	86.65%	12,191	84.29%

3차 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 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126가구이며, 가구원은 537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27가구를 추적 조사하여 추가로 원 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한 패널관리를 함으로서 유지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원 표본 가구와 원표본가구를 합한 2차년도 표본가구 및 가구원수는 다음의 <표 2-2-2>와 같다. 즉, 1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9.28%의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90.02%로서 1차년도 대비 90%이상의 완료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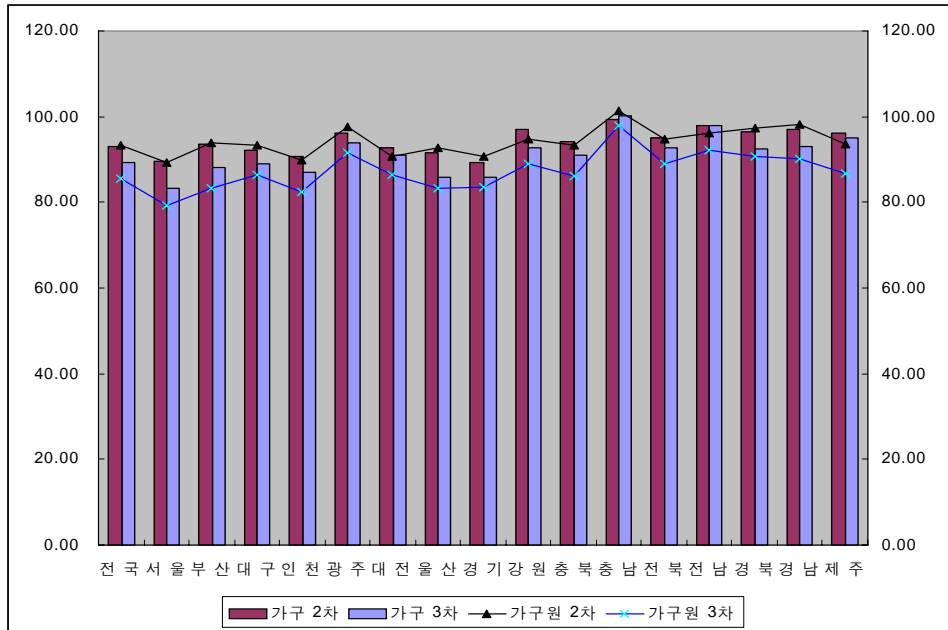
〈표 2-2-2〉 3차년도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구 분	가 구		가 구 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6,188	87.50%	12,393	85.69%
신 규	126	1.78%	537	4.33%
계	6,314	89.28%	12,930	90.02%

한편 3차년도 조사에서 16개 지역별 조사완료 가구 수와 가구원수의 분포를 파악해보면 서울지역은 1,110가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971가구를 완료하였다. 1차년도 대비 가구 및 가구원의 패널 유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2-1] 과 같다. 가구에 비해 가구원의 패널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1] 1차년도 대비 지역별 2차년 와 3차년도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비교



1차년도 대비 3차년도의 패널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표 2-2-3>으로부터 서울지역이 가장 높아 16.85%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울산지역이 14.29%로 나타났다. 특별히 충남지역의 탈락률은 -0.31%로 나타나 실제 원표본 가구들 중 분가등의 이유로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여 탈락률이 음(-)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단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패널 가구의 탈락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속하는 광역시 지역의 탈락률이 도지역의 탈락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3〉 3차년도 지역별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 표본의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지역	가 구			가 구 원		
	1차년도	3차년도	탈락률	1차년도	3차년도	탈락률
전 국	7,072	6,314	10.72	14,463	12,393	14.31
서 울	1,335	1,110	16.85	2,847	2,258	20.69
부 산	528	465	11.93	1,090	907	16.79
대 구	422	376	10.90	873	755	13.52
인 천	437	380	13.04	914	754	17.51
광 주	244	229	6.15	519	475	8.48
대 전	208	189	9.13	435	376	13.56
울 산	203	174	14.29	424	353	16.75
경 기	1,130	971	14.07	2,324	1,940	16.52
강 원	236	219	7.20	465	414	10.97
충 북	221	201	9.05	457	394	13.79
충 남	321	322	-0.31	662	648	2.11
전 북	347	322	7.20	655	583	10.99
전 남	377	369	2.12	709	654	7.76
경 북	494	456	7.69	942	854	9.34
경 남	488	454	6.97	975	879	9.85
제 주	81	77	4.94	172	149	13.37

<표 2-2-4>는 지역별로 표본가구와 표본가구원에 대해 1차년도와 같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의 경우 일반과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54 : 46으로 나타나 반면, 3차년도 조사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59 : 41의 비율로 나타나, 2차년도에 비해 일반가구의 비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의 경우에는 1차년도의 경우 60 : 40에서 2차 년도에는 64 : 36, 3차 년도에는 66 : 34의 비율로 나타나, 가구의 경우와 같이 일반가구원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2-4〉 3차년도 지역별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자의 소득구분에 따른 분포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기준				가구원기준			
	1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3차년도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전국 (%)	3,789 (53.58)	3,283 (46.42)	3,695 (58.52)	2,619 (41.48)	8,640 (59.73)	5,823 (40.26)	8,544 (66.08)	4,386 (33.92)
서울	886	449	769	341	2024	823	1792	569
부산	277	251	258	207	651	439	589	350
대구	204	218	205	171	478	395	497	294
인천	247	190	240	140	558	356	542	239
광주	123	121	137	92	305	214	338	157
대전	132	76	135	54	298	137	310	90
울산	124	79	136	38	290	134	315	56
경기	706	426	663	308	1556	768	1532	535
강원	118	118	116	103	262	203	260	166
충북	113	107	119	82	259	198	260	139
충남	161	160	172	150	375	287	425	255
전북	140	207	122	200	309	346	274	333
전남	109	268	145	224	255	454	327	360
경북	164	329	193	263	363	579	430	447
경남	240	248	234	220	557	418	542	352
제주	45	36	51	26	100	72	111	44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의 부가조사는 “장애인조사”로서 2차년도 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 장애유형별로 층화 계통 추출에 의해 총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장애인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장애 유형별로 전체 장애인 수와 표본 배분된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5>와 같다.

〈표 2-2-5〉 3차년도 장애인 부가조사를 위한 표본배분결과

	지체장애	기타장애	비등록장애	합계
전체 장애인 수	634	523	167	1,324
표본배분결과	377	523	100	1,000

한편 2차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장애인 수 및 표본설계상의 지역별 장애인수 그리고 2차년도 부가조사 결과로부터 최종 조사 완료된 지역별 장애인수를 일반과 저소득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가 다음의 <표 2-2-6>과 같다. 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 장애인 부가조사 대상자는 등록장애인과 비등록장애인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2-6> 지역별 가구원 및 가구원 구분에 따른 장애인 분포

(단위: 명)

지역	전체 장애인수		표본 장애인수		완료장애인수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서울	108	94	80	75	76	60
부산	26	73	19	56	20	36
대구	35	62	23	50	31	42
인천	24	35	19	24	17	20
광주	18	41	14	30	14	25
대전	14	21	11	17	11	14
울산	18	15	13	12	13	9
경기	92	94	70	72	60	63
강원	14	32	7	28	6	23
충북	19	25	12	22	14	15
충남	31	46	22	36	18	36
전북	26	61	18	48	17	40
전남	20	77	15	57	17	49
경북	30	68	23	50	19	44
경남	37	49	27	36	23	33
제주	9	13	6	8	4	9
계	521	803	379	621	360	518

〈표 2-2-7〉 지역별 장애 유형별 분포

(단위: 명)

지역	장애유형															총합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심신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비등록
서울	52	13	19	12	0	2	2	8	13	1	2	0	1	1	2	8	136
부산	18	8	7	4	1	4	0	5	2	2	0	0	0	0	0	5	56
대구	32	10	9	5	1	1	0	6	2	1	0	0	0	1	1	4	73
인천	13	4	5	4	0	2	0	1	1	1	1	0	0	1	0	4	37
광주	12	5	5	0	1	4	1	2	1	0	1	0	0	0	0	7	39
대전	7	2	5	4	1	2	1	1	0	0	0	0	0	1	0	1	25
울산	9	5	2	3	0	0	0	0	1	0	0	0	0	0	0	2	22
경기	48	15	16	11	0	12	0	6	6	3	1	0	1	0	0	4	123
강원	10	4	3	7	0	0	0	0	0	0	0	0	0	0	0	5	29
충북	12	6	3	1	0	5	0	1	0	0	0	0	0	0	0	1	29
충남	19	4	7	4	2	5	0	2	1	1	1	0	0	1	0	7	54
전북	20	6	6	6	1	4	0	5	0	0	3	0	0	0	0	6	57
전남	28	9	9	6	2	4	0	1	1	0	1	0	0	1	0	4	66
경북	25	4	6	9	1	2	1	2	3	0	0	0	0	0	1	9	63
경남	24	5	10	5	1	1	0	1	0	1	0	1	0	0	0	7	56
제주	5	1	1	0	0	1	0	0	1	0	0	0	0	0	0	4	13
총합	334	101	113	81	11	49	5	41	32	10	10	1	2	6	4	78	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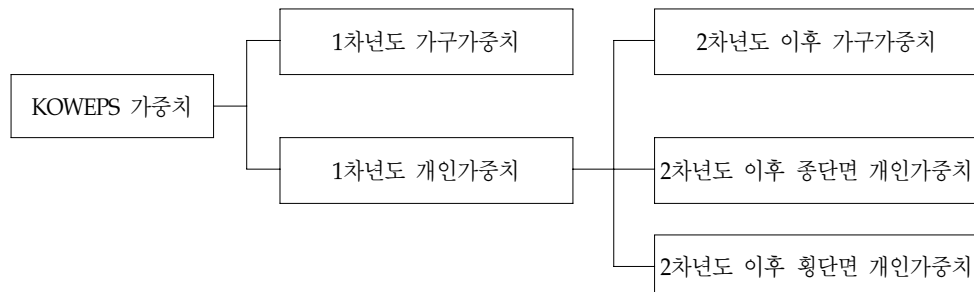
〈표 2-2-7〉로부터 조사 완료된 장애인 표본의 지역별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내장장애나 정신 장애는 지역별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비등록 장애인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고 있어 3차조사의 패널 가구들 중 등록 장애인 가구와 비등록 장애인 가구간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878명의 장애인중 지체 장애가 334(38.0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113명(12.87%), 뇌병변장애가 101명(11.5%)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6명, 경기도가 126명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 및 수도권의 장애인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2. 가중치 조정 과정

한국 복지패널(KOWEPS)의 3차년도 가중치 산정은 우선 2차 년도에 부여된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부여 체계는 다음의 [그림 2-3-2] 와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구가중치의 경우 조사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구의 개념이 1차년도에 수립한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년도 조사이후의 가중치는 모두 개인가중치를 중심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즉,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구 가중치의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가중치는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중치를 부여하며, 개인가중치만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2-2-2] KOWEPS의 가중치 부여체계



이러한 가중치 부여체계를 따르게 되면, 먼저 가구의 변동사항은 무의미하게 되며, 단지 원가구원이 분가하여 신규가구를 생성하거나, 1차년도에 원표본가구가 아니었으나, 2차년도 이후 합가하여 원 표본가구에 진입한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1차 년도에 원 표본 가구였으나, 이민 등의 사유로 2차년도 이후 패널에서 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가구 가중치의 조정은

표본가구의 가구원 변동에 따라 적절한 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 개인가중치 산출 과정

2차년도 이후의 패널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개인가중치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특히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패널가구의 가구원 변동사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변동 상황에 따라 2차 개인 가중치 산정 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가중치를 조정하였다(참조: 한국복지패널 2차 기초보고서).

2차 가중치 조정 절차와 다른 점은 3차년도 조사의 경우 2차년도 조사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3차 년도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7가구를 패널에 재 진입시켰기 때문에 이들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가중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점이다.

먼저 개인가중치 산정 과정은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여 1차년도 원 패널 표본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2차 년도에 원 패널가구에 진입한 신규 가구원은 3차 년도에도 동일하게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즉, 1차년도 패널가구원으로서 군 입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 패널가구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또한 3차 년도에 원패널 가구로부터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 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가구의 신규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앞에서 언급한 2차년도 탈락가구원이 3차 년도에 재 진입인 경우에는 3차년도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1단계로 응답확률을 로지스틱회귀를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2차년도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07년 인구 추계 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1단계에서 3차년

도 응답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가중치를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07년 추계인구수에 따라 사후조정 하였다.

이와 같이 조정된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2-2-8>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지역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서울	3,015	3325.26	25.32	3178.81	2317.77	4210.19
부산	1,195	2949.97	48.01	2622.35	1761.94	3714.84
대구	994	2485.16	40.23	2379.88	1620.83	3249.32
인천	1,057	2471.96	44.60	2323.98	1491.82	3405.82
광주	655	2206.21	43.44	1959.45	1300.87	2947.16
대전	525	2831.70	50.27	2785.12	1977.73	3677.29
울산	486	2221.86	58.27	1884.79	1190.61	3128.74
경기	2,717	4063.04	34.91	3902.52	2784.95	5075.81
강원	560	2625.80	84.08	1712.05	1039.57	4846.02
충북	532	2788.35	72.87	2655.67	1256.93	4014.27
충남	852	2272.61	69.14	1376.53	778.91	3407.67
전북	750	2360.93	64.47	1973.86	836.77	3363.12
전남	873	2069.47	40.74	1716.00	1313.70	2514.95
경북	1,078	2443.99	78.45	973.90	564.52	3596.76
경남	1,134	2755.66	75.46	1178.30	434.65	4952.36
제주	191	2850.97	76.71	2743.55	2048.51	3381.91

<표 2-2-8>로부터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적고, 강원지역의 표준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개인의 대표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지역별로 가중치의 가장 분위간의 차이가 없는 지역(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은 전남지역이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대표성을 평가해보면, 서울지역은 1인당 3325.26명을 대표하며, 경기지역은 1인당 4063.04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지역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서울	3015	3325.26	24.82	3167.81	2310.99	4194.24
부산	1195	2949.98	47.46	2613.52	1758.70	3702.34
대구	994	2485.16	39.86	2378.00	1618.09	3240.89
인천	1057	2471.96	44.60	2323.98	1491.82	3405.82
광주	655	2206.21	42.41	1950.42	1299.67	2928.04
대전	525	2831.70	49.00	2772.71	1968.92	3660.90
울산	486	2221.86	58.07	1882.69	1195.04	3125.25
경기	2717	4063.04	34.33	3889.54	2774.88	5057.48
강원	560	2625.80	83.85	1710.20	1038.44	4840.78
충북	532	2788.35	72.33	2648.53	1256.74	4003.46
충남	852	2272.61	68.31	1397.23	780.39	3385.14
전북	750	2360.93	64.29	1973.38	836.58	3357.26
전남	873	2069.47	40.22	1709.44	1312.48	2505.34
경북	1078	2444.00	78.03	1003.54	562.83	3583.76
경남	1134	2755.66	75.26	1185.88	435.25	4944.68
제주	191	2850.97	74.97	2735.01	2042.13	3371.38

〈표 2-2-9〉로부터 지역별 개인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2-7〉과 비교하여 횡단면 가중치의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표준오차값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작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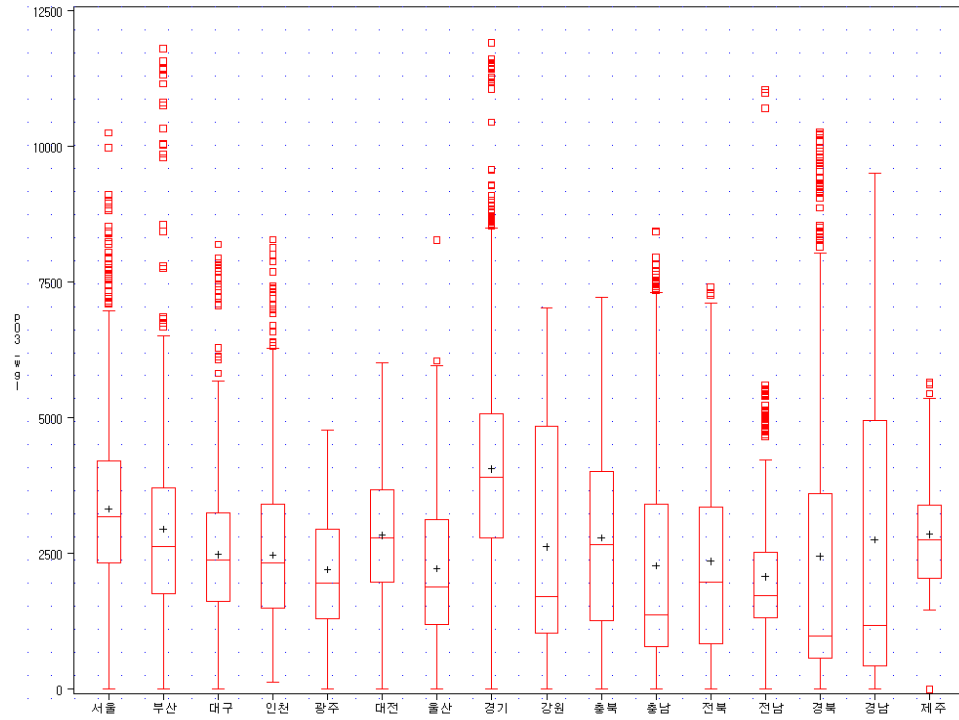
〈표 2-2-10〉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개인종단면 가중치	16,614	48,456,367.12	2,916.6	14.28	2,678.87	1,488.97	4,015.36
개인횡단면 가중치	16,614	48,456,369.00	2,916.6	14.15	2,671.26	1,500.06	4,003.60

〈표 2-2-10〉으로부터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2,196.6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종단면 가중치의 표준오차가 횡단면 가중치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3] 지역별 3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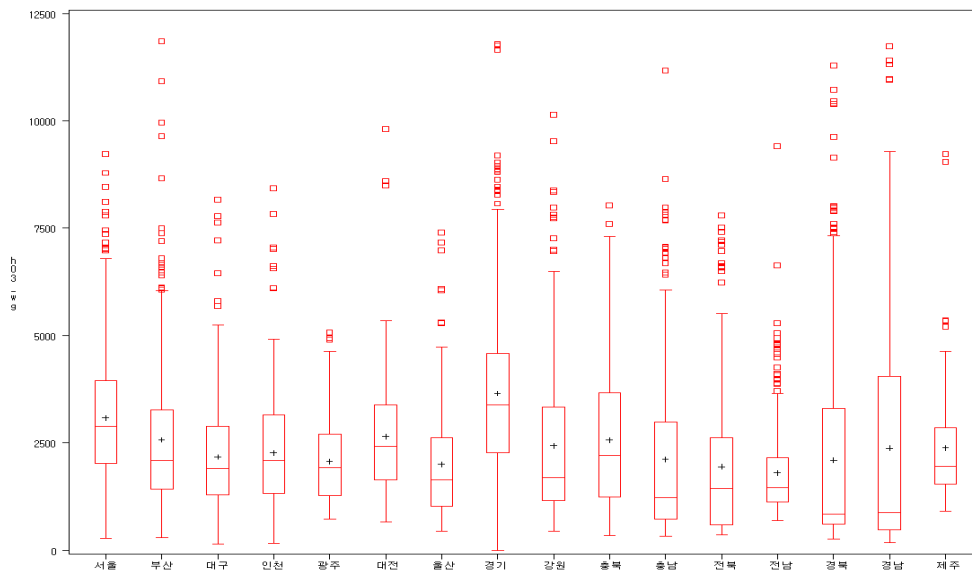
나. 가구가중치 산출과정

3차년도 가구가중치의 산출과정은 먼저 가구의 패널진입차수에 따라 원표본가구의 경우 3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3차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가구의 경우 신규가구내에 원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 가구원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가중치를 2007년 가구수 추계값에 따라 지역별로 사후 조정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지역별 가구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11〉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지역	관측치 수	합계	평균값	표준오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서울	1,110	3426964.65	3087.36	42.09	2024.59	2883.36	3955.81
부산	465	1197392.64	2575.04	77.11	1415.73	2094.09	3267.47
대구	376	818012.01	2175.56	64.65	1296.94	1902.83	2883.06
인천	380	862815.98	2270.57	71.79	1320.21	2095.56	3148.54
광주	229	473034.01	2065.65	64.66	1266.51	1924.79	2698.10
대전	189	500169.96	2646.40	102.70	1644.90	2428.74	3385.13
울산	174	349481.96	2008.52	101.80	1020.33	1643.00	2617.95
경기	971	3550048.58	3656.07	57.65	2264.64	3384.04	4581.97
강원	219	532485.01	2431.44	127.36	1160.81	1698.01	3331.86
충북	201	515761.96	2565.98	119.55	1239.42	2197.45	3670.69
충남	322	681896.98	2117.69	109.60	727.57	1226.11	2991.29
전북	322	626113.00	1944.45	94.10	588.08	1438.52	2622.43
전남	369	664151.96	1799.87	52.70	1132.31	1463.83	2160.63
경북	456	956021.05	2096.54	102.94	617.41	835.94	3301.23
경남	454	1079416.01	2377.57	118.44	484.51	874.84	4047.66
제주	77	183655.97	2385.14	171.93	1544.73	1961.24	2850.45

[그림 2-2-4] 지역별 3차 가구 가중치 분포



다. 장애인 가중치 산출과정

1차년도 “아동”, 2차년도 “복지인식”조사에 이어 3차 부가조사로는 “장애인”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다. 장애인 표본은 2차년도 자료로부터 1,324명의 장애인들을 추출틀로 하여 1,000명의 장애인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최종 완료 표본수는 878명으로 등록 및 비등록 장애인을 포괄한다. 2차년도 개인들의 가중치는 장애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응답확률과 사후조정에 의해 가중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표본에 대해서는 2차년도 가중치를 기본으로 장애인 추출확률을 고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1,324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가중치 조정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장애인들의 3차 개인가중치를 토대로 등록 장애인 DB(2007년 7월 현재)상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사후조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가중치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3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한 후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고려하여 최종 적인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비등록 장애인의 가중치는 장애유형과 등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과는 별도로 3차 개인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지역별 장애인 추계 분포는 다음의 <표 2-2-12>와 같다.

<표 2-2-12>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지역	추계장애인수	지역	추계인구수
전국	2,106,613.00		
서울	345,836.40	강원	92,043.38
부산	139,820.00	충북	79,885.84
대구	100,504.70	충남	107,693.00
인천	112,253.60	전북	115,491.50
광주	54,943.60	전남	128,426.00
대전	63,415.88	경북	140,559.70
울산	43,725.32	경남	165,063.20
경기	389,456.00	제주	27,494.49

제3절 소득변수 결측치에 대한 대체방법

1. 결측치 대체의 필요성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값을 결측치(missing value)로 통칭된다. 무응답은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로 구분되며, 전자는 응답대상자의 부재, 사망 또는 응답거절 등의 사유로 조사표 전체가 결측인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조사항목의 일부가 결측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무응답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표본수의 감소에 따른 추정치의 과소 추정문제와 함께 표본의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후 추정과정에서 무응답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패널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무응답이 동시에 발생하며, 웨이브가 지속될수록 패널 가구의 탈락 등으로 단위무응답의 발생율이 증가하게 되며, 주로 가중치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무응답효과를 제거한다. 한편 항목무응답은 조사표상의 일부 조사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회피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단위무응답의 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결측치를 대체하게 된다. 항목 무응답 대체 방법으로는 많은 통계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으며, 현재 많이 이용되는 대체방법으로는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나 핫덱대체(hat-deck imputation) 그리고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등을 들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결측치 대체 대상 변수로서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변수로서 가구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수이다. 이들 변수는 조사표상의 각종 소득 항목을 계산하여 별도로 가공한 후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가구의 소득변수가 결측인 경우 가구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 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측치를 대체한 단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변수의 자료가 원자료 인지 아니면 결측자료 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별도의 표식변수(flag)를 두어 이용자가 반드시 자료를 분석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17가구가 소득항목의 결측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다중대체를 실시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구분에 이용하였다.

2. 결측지 대체방법

소득에 대한 결측치 대체를 위해 먼저 소득에 따라 가구의 구분이 이루어짐으로 가구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구구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로서 “1차년도 경상소득”, “1차년도 가구구분”, “가구 유형”, “기초보장 수급형태”,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사업장규모”, “주택유형”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여러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대체를 실시하였다.

다중대체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적절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모형에 투입한다.
이때 변수의 선택은 결측변수와 연관성이 있는 변수를 선택하도록 한다.
- 2단계 : 필요하다면, 정규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변수변환을 실시한다.
- 3단계 : 선택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대체를 실시하여 자료를 산출한다.
- 4단계 : 변수변환 된 경우 역변환을 통해 원래 변수값으로 변환하고, 만일 대체된 값이 이산치인 경우 round 한다.
- 5단계 :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체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추정한다.
- 6단계 : 대체 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정치와 표준오차, 검정통계값(test statistics)을 산출하는 통계분석 실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단계를 모두 소개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대체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의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또한 다중대체의 경우 디폴트 값으로 대체자료세트가 5개 생성되는데, 복지패널의 경우 이용자

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후 분석을 통해 선택된 설명변수가 소득변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3. 대체 후 효과 분석

<표 2-2-13>으로부터 대체 후 분산의 효과에 대한 각 변수별 정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설명변수들의 집단간 분산이 집단내 분산에 비해 매우 작게 추정하고 있으며, 변수별 자유도가 100이상으로 매우 적절한 모형으로 고려된다. 또한 상대효율이 모두 1에 매우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최우추정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중대체에 의한 분산 효과는 주로 각 데이터세트내의 변동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데이터세트 중 어떠한 데이터세트를 사용해도 추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표 2-2-13> 대체 후 분산에 관한 정보

모수	집단간 분산	집단내 분산	총분산	자유도	상대적 분산증가분	결측정보	상대효율
1차년도 경상소득	0.00000218	0.000387	0.00039	88898	0.006753	0.00673	0.998656
1차년도 가구구분	37.770594	7299.927675	7345.252387	105052	0.006209	0.00619	0.998764
가구형태	0.290037	375.059733	375.407778	4.65E+06	0.000928	0.000928	0.999815
기초보장수급 형태	53.29395	3481.938303	3545.891043	12297	0.018367	0.018195	0.996374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0.19881	117.133455	117.372027	968166	0.002037	0.002035	0.999593
주택유형	0.519748	264.775914	265.399612	724290	0.002356	0.002353	0.99953

한편 다음의 <표 2-2-14>에서는 다중대체에 의한 모수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변수의 추정값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3차년도 경상소득의 결측치를 대체하고 대체된 경상소득을 적절히 설명하는 변수들로서 1차년도 경상소득, 1차년도 가구구분, 3차년도의 가구형태, 기초보장 수급형태,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 등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년도 가구 경상소득이 높은 가구가 3차년도 경상소득이 높은 가구로 나타났고, 기초보장 수급형태에서는 비해당 즉 일반가구일 수록 경상소득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상용직 일수록 높은 소득가구이며, 주택유형에서는 단독에서 아파트쪽으로 갈수록 높은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모형이며 따라서 경상소득의 결측치 대체에 적용한 모형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표 2-2-14〉 다중대체에 의한 모수 추정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95%신뢰구간		자유도	최소	최대	t-값	Pr> t
1차년도 경상소득	0.894905	0.019746	0.856	0.9336	88898	0.89349	0.897169	45.32	<.0001
1차년도 가구구분	213.51978	85.704448	45.54	381.4993	105052	205.663981	219.891419	2.49	0.0127
가구형태	199.561904	19.375443	161.587	237.5371	4.65E+06	198.97506	200.355245	10.3	<.0001
기초보장수급 형태	-166.626474	59.547385	-283.349	-49.9043	12297	-177.842504	-159.922928	-2.8	0.0051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95.818547	10.833837	-117.053	-74.5846	968166	-96.519713	-95.309563	-8.84	<.0001
주택유형	86.303961	16.29109	54.374	118.234	724290	85.762559	87.513255	5.3	<.0001

제4절 오차의 관리

1.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관리

횡단면 조사와 마찬가지로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에서도 표본조사임으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구별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이러한 오차의 측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표본오차의 관리

표본오차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이러한 표본오차의 측정은 대체로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하거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본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표본오차의 산정공식은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며, 통상적으로 표본변동계수(CV)로 측정된다.

나. 비표본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지역별로 조사구내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이므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함께 발생한다. 조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오차들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들 모든 오차를 동시에 관리하기는 어렵다. 표본설계 시에는 추출방법에 따라 표본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표본오차는 측정 가능하여 관리가 수월하지만 비표본오차는 그렇지 아니하다. 표본오차와는 달리 비표본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어려워 사전에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조사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비표본 오차로서는 패널가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에서 탈락하는 탈락오차 또는 마모오차(attrition error)이다.

1) 무응답오차

최근 들어서 조사 환경의 변화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가 생긴다.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하고, 조사에 응한 가구에서 일부 조사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라 한다. 가구 단위의 무응답은 무응답 가구를 다른 가구로 교체(substitution)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만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 준다. 표본에 결측이 생기더라도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주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된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이러한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의 형태가 각각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종단면적인 관점에서 조사차수가 증감함에 따라 패널가구로서 조사에 참여와 탈락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은 항목무응답의 형태로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우선 횡단면적 관점에서는 해당 연도의 조사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단위무응답형태로서 무응답가구에 대한 조정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구와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이사나 분가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을 조정하거나 또는 대체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패널가구의 대표성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패널가구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패널에서 탈락하게 되는 마모오차(attrition bias)는 특정 차수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패널마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널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다양한 형태의 패널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패널가구에 대한 조사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응답오차

과거 조사에 의하면 일부 표본가구의 응답자들이 조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본가구에서 제공된 자료가 조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 다른 경우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응답의 오류는 가구의 실제 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데,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설문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응답 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거나 조사원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응답자가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응답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응답을 요구해서 응답자들이 진실되게 응답하지 않고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오히려 추정치의 편향과 분산이 더 커질 수 있다.

2. 패널조사에서의 무응답 유형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패널조사의 경우 일반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즉, 패널조사의 특성상, 동일가구의 동일 가구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표본가구의 이사, 표본가구의 가구원의 사망, 또는 분가로 인한 가구원들의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차년도에 응답한 가구가 3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거절로 인해 3차년도에 무응답 가구로 나타나게 되는 웨이브 무응답(wave nonresponse)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응답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무응답 처리기법이 요구된다. 특별히 패널조사에서의 무응답은 일반 횡단면 조사에서의 무응답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응답률이 패널조사가 지속됨으로써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 패널조사에서의 비표본오차

일반적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패널조사에서 비표본오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하나는 비관측오차(nonobservation error)이고 다른 하나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이다. 비관측오차는 다시 무응답 오차(nonresponse error)와 비포함오차(noncoverage error)로 구분할 수 있다. 무응답오차는 표본단위로부터 얻고자하는 정보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며, 비포함오차는 목표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다. 이와 더불어 측정오차는 응답오차와 처리오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답오차는 표본단위로부터 얻은 자료가 부정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며, 처리오차는 데이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특히 응답오차의 경우에는 설문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자로 부터 응답을 얻을 경우나, 기억오류(memory error), 학습효과로 인한 응답, 조사원 효과, 응답자의 응답을 잘못 기록할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또한 처리오차는 잘못된 에디팅, 코딩, 데이터편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나. 패널의 노후화에 따른 무응답

패널조사와 관련된 주된 관심사중 하나는 패널이 노후화됨으로서 발생하는 패널 표본의 탈락률의 증가이다. 횡단면 조사와 같이 패널조사는 응답거절, 부재, 패널참여 부적절, 추적불가 표본 등의 이유로 무응답(또는 결측)이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무응답 형태는 초기웨이브 뿐만 아니라 여러 웨이브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무응답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웨이브에서 응답에 실패한 원 표본가구의 단순비율이 아닌, 조사모집단으로부터 탈락(사망, 이민 등)한 표본단위들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조사모집단으로부터 이탈한 표본단위들을 무응답자로 처리하는 것은 무응답률을 과대 계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패널 조사에서 전체적인 무응답률은 웨이브가 계속될수록 증가하며, 추정치의 편향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많은 패널조사로부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패널무응답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크게 응답 거절과 이동하는 표본의 추적조사 실패이다. 조사에 대한 거절률은 응답자 부담에 의해 증가되며, 응답거절은 웨이브의 간격이 짧을수록 증가하며, 응답자에 대한 응답수요는 매우 크게 된다. 응답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편지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본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본단위에 대한 추적의 문제는 패널 웨이브 간 시간간격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는 이사가구의 비율증가에 따라 추적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적조사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화번호부, 이메일, 가능하다면 자동차 등록번호, 회사정보, 부모, 이웃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무응답 문제는 이전 웨이브에서 무응답한 가구나 가구원에 대해 응답을 얻어내야 하는데서 비롯된다. 어떤 패널조사에서는 한번 웨이브무응답이면, 다음 웨이브에서는 해당가구나 가구원을 표본단위로부터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장 조사 내용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표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제1절에서는 조사표의 구성, 제2절에서는 조사 문항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 조사표의 구성

1. 조사단계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 중 총 6,314가구를 패널조사 표본으로 하였다. 이중 패널표본은 저소득층 3,695가구, 일반층 2,619가구¹¹⁾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2008년 4월 13일~2008년 6월 10일 까지, 약 59일간 진행되었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3차년도 조사는 1,2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역동성 파악과 사회복지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건강 및 의료,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1] 조사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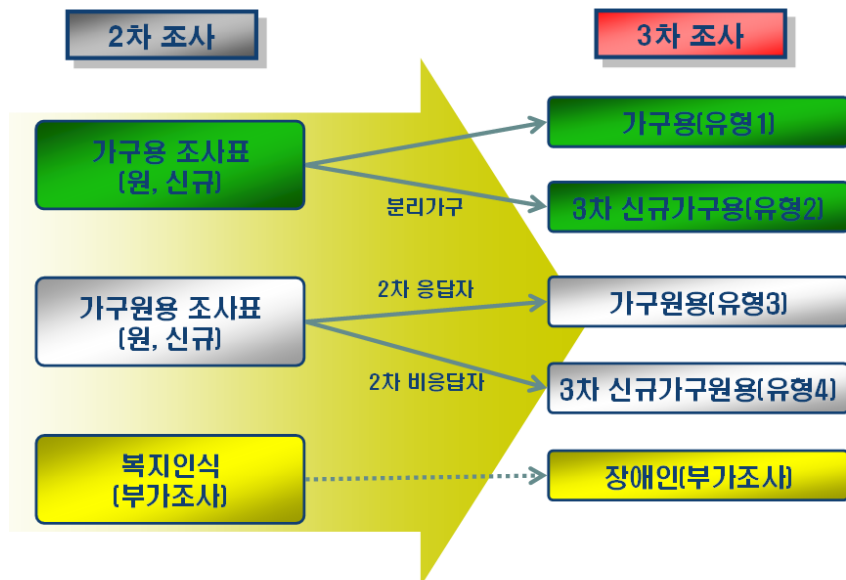
조사구분	목적	대상 및 내용
3차년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역동성 파악정책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 대상 중 6,314가구 (저소득층 3,695가구, 일반가구 2,619)건강 및 의료,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11)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였다.

2.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3차년도 조사는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가구용과 가구원용, 부가조사표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용의 경우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로부터 분리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3차 신규가구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가구원용의 경우 2차년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을 조사하기 위한 3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부가조사표는 각 년도마다 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혹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번씩 반복-으로 조사된다. 3차년도에는 부가조사로 장애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대상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1-2] 조사표의 구성



3차년도 패널조사표 각각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구용 조사표는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 기준 기간은 2007년 1년, 기준 시점은 2007년 12월 31일로 하였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신규진입자와 200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조사표의 조사방법 및 조사 기준 기간과 시점은 가구용 조사표와 동일하다. 3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장애인 설문조사의 대상¹²⁾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으로 하였다. 장애인 설문조사표의 기준 응답시점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달 이내 혹은 1주일 이내이다.

〈표 3-1-1〉 3차년도 패널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가구용 설문지(유형1·2)	가구원용 설문지(유형3·4)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대상 기간: 2007.1.1~12.31 • 기준 응답시점: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 (중고생 제외, 신규진입자 포함) 2) 200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대상 기간: 2007.1.1~12.31 • 기준 응답시점: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 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 • 기준 응답시점: 응답시점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달 이내 혹은 1주일 이내

12) 장애인 부가조사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유형 별 분포 상에서 지체장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체 장애와 비등록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 유형을 모두 표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지체장애와 비등록 장애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졌다.

제2절 조사문항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장애인) 각 조사표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는 조사표로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주로 의식 관련 영역-으로 7개 영역(단, '개인사'의 경우 3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 조사표(장애인)는 공통으로 응답하는 영역 2개와 해당 대상별로 응답하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 3차년도 패널조사 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공통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 유형2)	I. 가구일반사항	X. 재산
		II. 건강 및 의료 A	XI. 생활여건
추가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 유형2)	III. 경제활동상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V. 의료 B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VI. 주거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VII. 생활비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VIII. 소득	XVII. 가족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I. 가구일반사항	VIII. 소득
		- 의료급여 수급형태	- 9개월 미만 동거가구원의 소득(전입, 전출 가구원으로 구분)
		II. 건강 및 의료 A	XI. 생활여건
-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자격 정지여부		
V. 의료 B	- 식생활(영양복지) 문항		
- 직장/지역가입구분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	- 급여수준 평가		
VI. 주거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주거복지관련사업에 기타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여부 및 만족도		
VII. 생활비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식료품비 분리(가정식비/외식비)	- 국공립(사회복지)보육시설(어린이집) 한정함		
- 주거비 분리(월세/주거관리비)	-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기관의 보기문항에 이웃,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민간 아이돌보미로 세분화하여 포함함.		
- 교육비 분리(공교육비/사교육비)			
- 사적이전(송금보조) 세분화			

〈표 3-2-1〉 계속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공통 조사 영역	가구원용 (유형3· 유형4)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F. 교육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추가 조사 영역	가구원용 (유형3· 유형4)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 성역할에 관한 문항	F. 교육 - 최종학력/출신 고등학교 유형과 소재지/ 출신 대학 전공계열과 소재지다문화 가정 여부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생애동안의 흡연총량, 흡연기간, 담배를 처음피운시기, 하루평균 흡연량, 금연 시도여부, 간접흡연 여부와 노출시간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다문화 가정 여부
부가조사용 (장애인 설문)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개별II)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설문 (개별III) 성인(만 18~65세 미만)설문 (개별IV) 어르신(만 65세 이상)설문	

이상 3개 조사표의 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에 나누어져 있다.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실태는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가계수지 및 재산 관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근로 관련한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배치되었으며, 객관적인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상태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기타 개인의 의식과 관련한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장애인)에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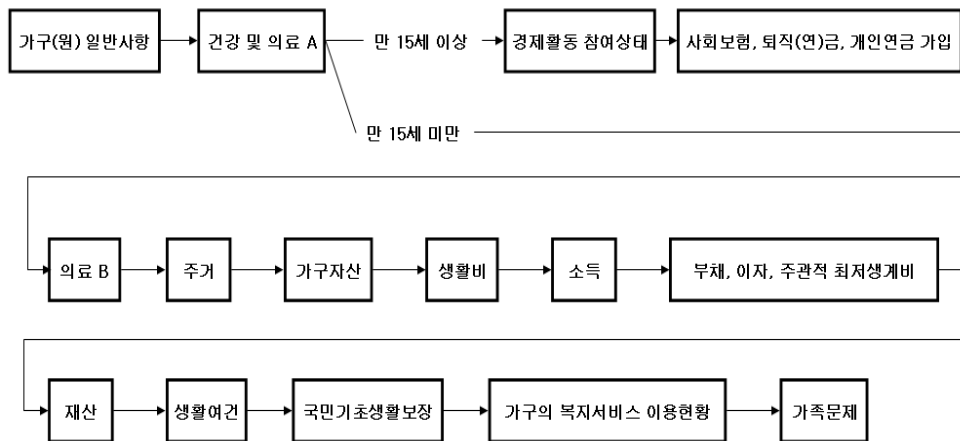
〈표 3-2-2〉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조사표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조사표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조사표 XV. 아동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조사표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조사표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조사표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	1) 사회보험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조사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조사표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조사표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및 부채	가구용 조사표 IX. 부채 및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조사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2) 장애인	장애인 부가 조사표

이상 주제별 각 조사표의 조사영역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각 조사표의 각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구조 및 문항의 논리 구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의 조사영역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파악 후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파악한다. 다음으로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관련 영역을 조사하고, 가구 전체의 의료서비스(건강보험, 의료급여), 주거, 가계수지 및 재산, 생활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 및 수급,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가족 문제 관련 영역을 순서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1]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조사영역의 흐름도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은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일반사항 영역은 가구원수,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으로 세부 영역이 나누어진다. 가구원수는 2007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로 주거를 달리하였더라도 생계를 함께 했다면 가구원에 포함된다¹³⁾. 가구 및 가구원은 원·신규로 구분하여 유형1·유형2로 조사된다. 3차년도와 2차년도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표 세부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에 대해 <표3-2-3>에 정리하도록 한다.

13) 예컨대, 기러기 아빠, 학업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는 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로 조사하지 않고, 본가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표 3-2-3〉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구분	내용	
가구	원가구 (유형1)	- 2차년도 조사당시 조사 완료된 패널 가구 (2차 조사시 원가구 및 신규가구) - 1차년도 완료가구이면서 2차년도 미완가구 중 일부
	3차 신규가구 (유형2)	(분리가구)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가구(유형1: 1,2차년도 조사완료가구 및 2차년도 일부 미완가구)로부터 분리된 가구 ※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원은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이므로, 3차 신규가구(유형2)로 조사하지 않고, 원가구(유형1)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가구원	원가구원 (유형3)	2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원조사표 응답 가구원 만15세 이상(1992년 출생자 및 그 전 출생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3차 신규가구용(유형2) 조사표로 조사하더라도, 2007년(작년조사)에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이면 가구원용(유형3) 조사표로 조사된다.
	3차 신규가구원 (유형4)	2차년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1) 2007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2) 200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3차년도(올해조사)에 출생,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가구에 새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진입한 가구원은 2007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3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구원 일반사항은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유무, 동거여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일반사항은 가구형태와 기초보장수급형태, 의료급여 수급형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일반사항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수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
	2)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일반사항 - 가구형태: 단독가구,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기타 - 기초보장수급형태: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중 일부수급, 특례가구, 비해당 - 의료급여수급형태: 의료급여1종(가구단위), 의료급여2종(가구단위), 가구원중 일부수급(개인단위)	2007. 12. 31 기준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상태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만성질환, 주요병명,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전체 가구원 대상, 2007년 1년간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능력정도 -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2007.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 경제활동참여상태 - 2007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의 유무, 근로지속 가능성,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비취업자 - 비경제활동 사유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가입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형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가입종별, 국민연금 납부여부, 미납유형, 납부예외 사유, 기간, 미납이유, 미납기간, 미가입 이유	2007.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 적용여부, 퇴직금 적용여부	
	4) 개인연금 가입 - 개인연금 가입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직장/지역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건강보험 이용 시 문제점, 건강보험 만족도	-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 의료급여 이용시 문제점	-
	3)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만족도	-

〈표 3-2-4〉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VI. 주거	1) 이사경험 - 이사경험 여부	2007.12.31 기준
	2)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 주택유형, 주거 위치	
	3) 주택 구입비(보증금) - 주택 구입비(보증금) 마련 방법, 2007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 주거관련 남은 부채액, 연체 횟수	-
	4)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거주지역 생활환경 - 주택제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여부 등 -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2007.12.31 기준
	5)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
VII.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 월평균 식료품비, 월평균 주거비, 월평균 광열수도비, 월평균 가구가사용품비, 월평균 피복신발비, 월평균 보건 의료비, 월평균 교육비, 월평균 교양오락비, 월평균 교통통신비, 월평균 기타소비지출	2007년 1년간 월평균액
	2)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연간 총금액	
	3)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 월평균 세금,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	
	4) 총생활비 - 월평균 생활비	2007년 1년간 총액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07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일당·연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부업소득	2007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보조금 총액, 9개월 미만 동거가구원의 소득, 민간보조금 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표 3-2-4〉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1) 부채 -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탄 계돈, 기타)	2007.12.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기타이자(주거이자 제외))	2007년 1년간 총액
	3) 주관적 최저생계비 - 한 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2007년 1년간 월평균액
X. 재산	1) 부동산 - 소유부동산 형태(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총액, 점유부동산 형태(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총액	2007.12.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자산 -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 부은 계돈, 기타), 금융자산 총액	
	4) 기타 재산 -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기타 재산(회원권, 선박 등) 총액	
XI. 생활여건	1) 박탈지표 - 결식·집세 미납·공과금 미납·공교육비 미납·난방 못함·의료서비스 이용 못함·신용불량 경험 여부·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급여자격 정지 여부	2007년 1년간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1) 급여 신청 및 탈락 -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탈락사유, 신청탈락 후 생계해결방법	2007년 1년간
	2) 2007년 1년간 수급이력 - 2007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급여수준 평가,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2007년 1년간
	3) 제도 탈피 -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2007년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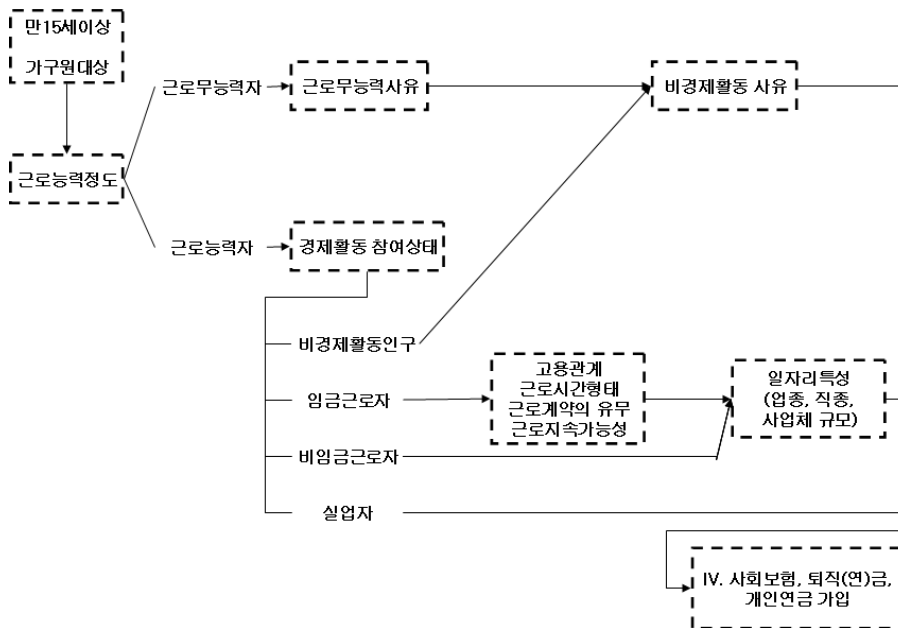
〈표 3-2-4〉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2007년 1년간
	-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2007년 1년간
	-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2007년 1년간
	-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 아동이 건강	
	- 추가아동여부, 출생 시 체중,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3)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기관, 월평균 사교육비, 월평균 보육비,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정도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2007년 1년간
	-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XVII. 가족	1) 가족의 갈등	2007년 1년간
	-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가족갈등 대처 방법	

한편, 건강 및 의료 영역은 가구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실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 의료기관 외래 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 검진횟수, 주요병명,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를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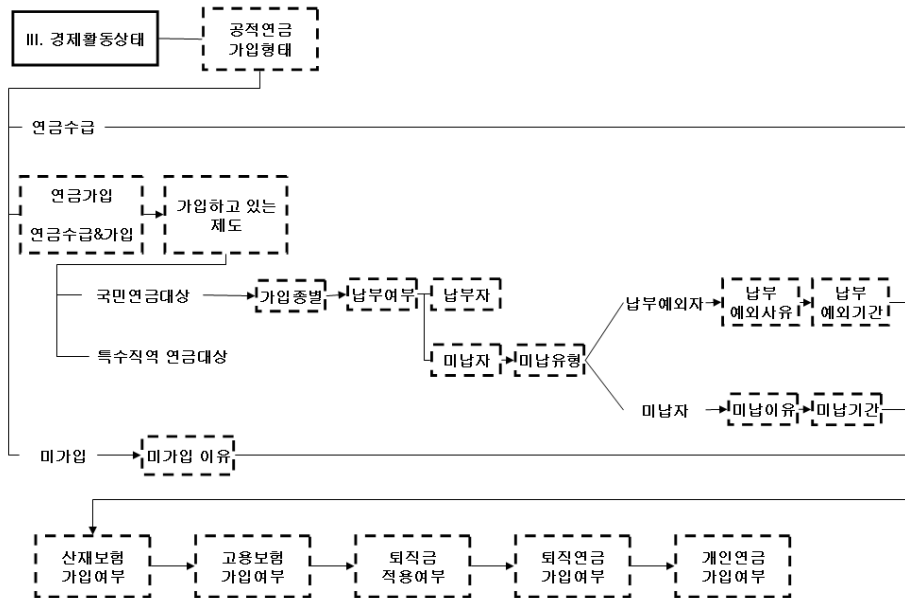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 영역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근로능력정도, 경제활동 참여상태, 취업자 일자리 특성, 비취업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상태 영역의 문항 논리도는 다음 [그림 3-2-2] 와 같다.

[그림 3-2-2] 가구용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 개인연금 가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 가입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가입대상 분류 관련 문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미납기간·미납사유·미가입사유 문항으로 구성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 개인연금은 각 제도의 가입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의 문항 논리도는 다음 [그림 3-2-3] 과 같다.

[그림 3-2-3] 가구용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의료B 영역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세분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문은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직장·지역 가입여부, 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문제점,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급여 부문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1종, 2종 여부), 이용 시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 부문은 이용 만족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주거 영역은 이사경험 여부,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택 구입비,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로 세분될 수 있다.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부문은 주택 유형, 주거 위치 문항으로, 주택 구입비 부문은 주택 구입비(보증금) 마련 방법, 2007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 주거관련 남은 부채,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부문은 주택 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주택 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

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부문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생활비 영역은 식료품비 등 비목별 생활비,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총생활비 영역으로 세분된다. 문항은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송금보조금, 월평균 세금,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 월평균 생활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소득 영역은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원천별 소득 영역으로 세분된다.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부문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으로 2007년 1년간 경제활동상태 및 변화상황 파악 문항, 이를 통해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일당·연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부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천별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파악하는 부문으로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보조금 총액, 민간보조금 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영역은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계돈, 기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기타이자(주거이자 제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묻는 주관적 최저생계비 관련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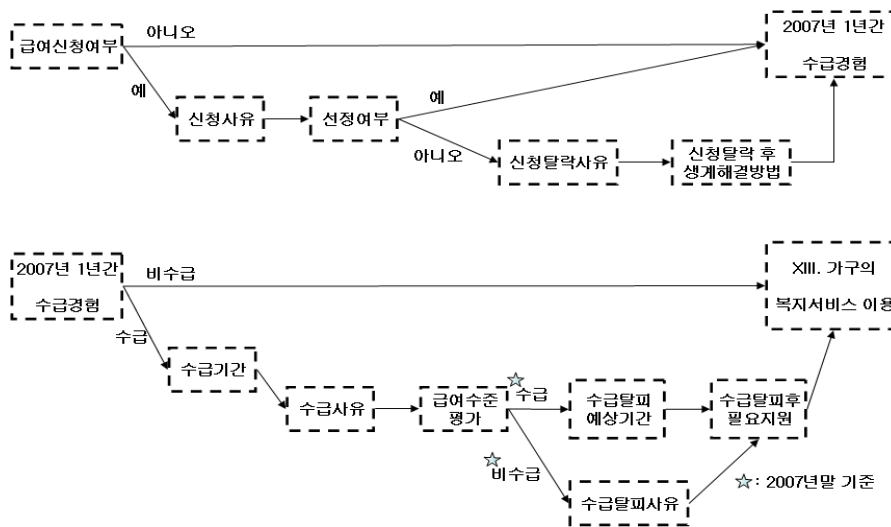
재산 영역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영역으로 세분된다. 부동산 부문은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 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산 부문은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

자산 부문은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 부은 계돈, 기타)와 총액, 기타 재산은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회원권, 선박 등 기타 동산·부동산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여건 영역은 박탈지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결식 경험여부, 집세 미납 여부, 공과금 미납 여부, 공교육비 미납 여부, 난방 못한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 급여자격 정지 여부를 묻는 문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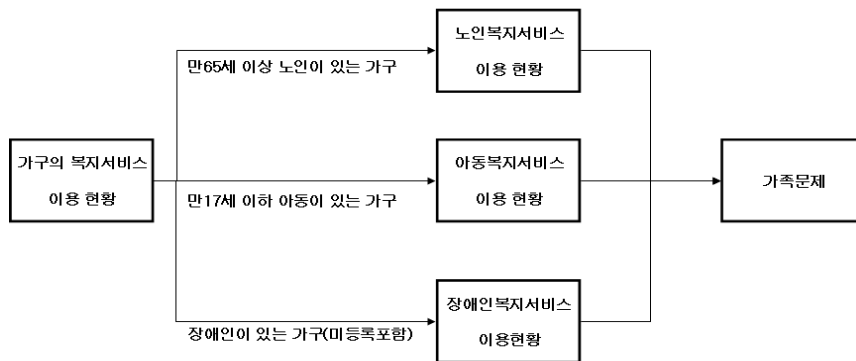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역은 급여 신청 및 탈락, 수급 및 탈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 및 탈락부문은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탈락사유, 신청탈락 후 생계해결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급 및 탈피 부문은 2007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급여 수준 평가,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탈피 부문은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그림 3-2-4] 와 같다.

[그림 3-2-4] 가구용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은 가구전체의 복지서비스(11개 항목), 노인복지서비스(11개 항목), 아동복지서비스(9개 항목), 장애인복지서비스(16개 항목)로 구분하여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서비스의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 부분에서는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현황과 지출규모 및 지출부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영역에서는 가족의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2개까지 파악하였고,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2-5]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흐름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파악은 조사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한 후, 만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응답하고,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응답하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에 응답한다. 그리고 가구 전체의 가족문제와 갈등해결에 대해 응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수급,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과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개인사(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5〉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 주요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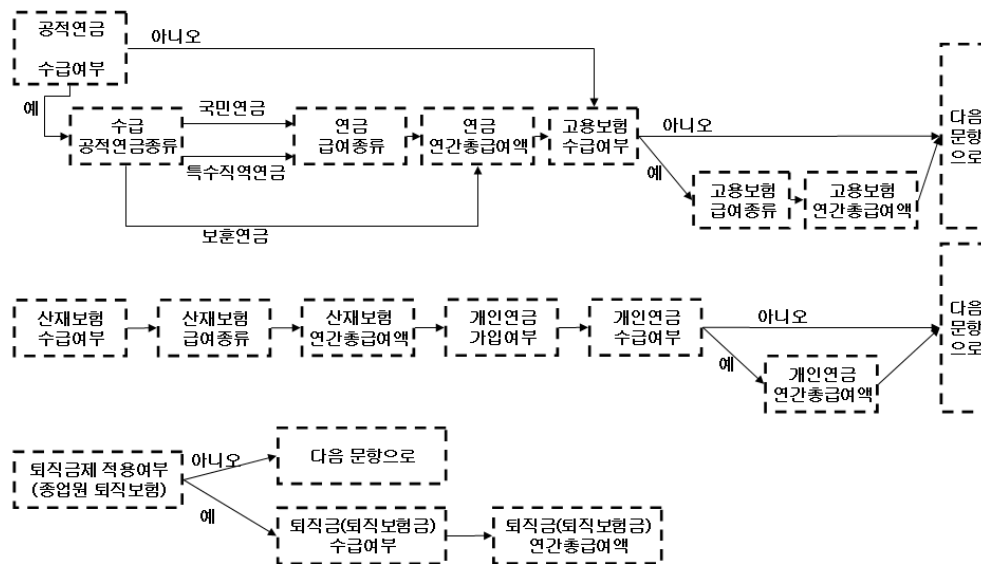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공적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2007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산재보험 일시금 총액, 산재보험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가입여부, 개인연금 수급여부, 개인연금 일시금 총액, 개인연금 수급 개월수 및 총 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재직중인 직장의 퇴직금제 또는 종업원퇴직보험 실시(가입) 여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 수급여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유형 - 근로유형	2007.12.31 기준
	2) 취업자 - 실직경험여부, 실직사유, 현직장 근속년수, 근로개월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2007년 1년간
	3) 미취업자 - 구직활동 여부, 총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취업의사, 희망임금,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4) 직업기술 - 새로이 습득한 직업기술 종류 및 해당 직종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박탈 경험여부	
	2) 생활만족 - 건강상태 만족도, 가구 소득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표 3-2-5〉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07년 1년간
	2) 부모님과와의 접촉정도 -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의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횟수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전일제와 가족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활동 역할 간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1)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2007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존중감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또는 조사시점 기준
	3) 부부관계 - 부부폭력 경험, 부부폭력 가해 경험	2007년 1년간
F. 교육	1) 최종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중퇴·졸업, 전문대학 재학·중퇴·졸업, 대학교(4년제) 재학·중퇴·졸업, 대학원 이상	
	2)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 일반계(일반) 등 12가지 유형, 고등학교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3) 대학전공계열 및 소재지 - 인문계열 등 12가지 유형, 대학교 소재지(특별·광역시, 도 단위까지 기재)	
	4) 다문화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G. 개인사	1) 아동기 - 아동기 성장 지역, 아동기 경제생활상태, 아동기 조실부모·부모님 이혼·학업중단·친척집에서 성장 경험여부	
	2) 부모님 -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이력 - 만15세 이후 첫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가장 최근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 기술 직종	
	5) 다문화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및 퇴직보험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공적연금 부문은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공적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지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지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지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부문은 각각 수급여부, 급여종류, 일시금 총액, 급여 수급 개월 수 및 연간 총현금급여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 3-2-6]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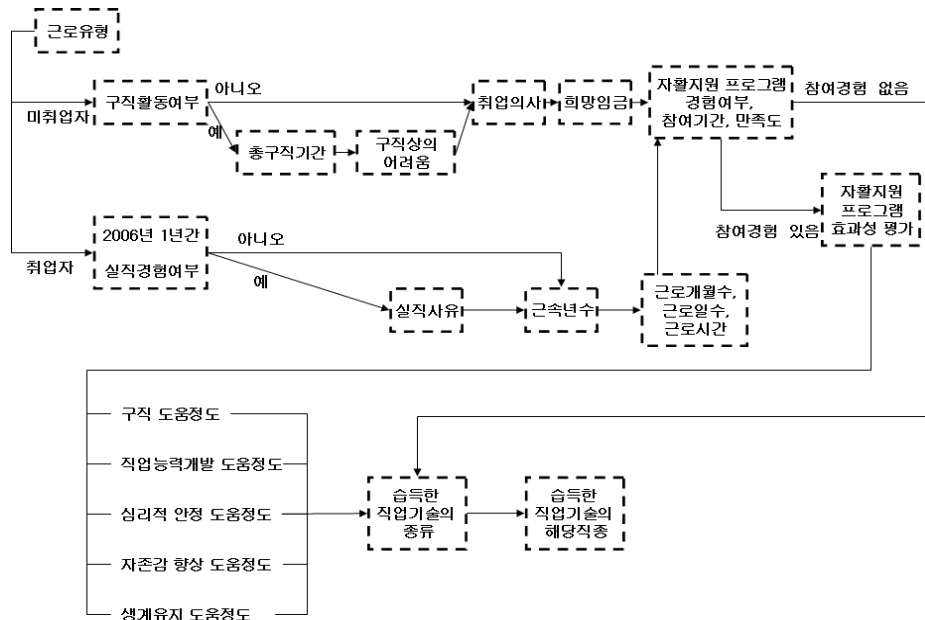
[그림 3-2-6]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근로 영역은 근로유형, 취업자, 미취업자 관련 영역으로 세분된다. 먼저,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유형을 묻는 문항을 통해 취업자 응답 부문과 미취업자 응답부문에 구분된다. 취업자 응답 부문은 2007년 1년간 실직경험 여부, 실직사유,

현 직장 근속년수, 연간 근로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업자 응답 부문은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구직활동 여부, 총 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취업의사, 희망임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미취업자 모두 2007년 1년간 자활지원 프로그램 각각의 참여 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구직 도움 정도, 직업능력개발 도움정도, 심리적 안정 도움 정도, 자존감 향상 도움 정도, 생계유지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7년 1년 동안에 습득한 새로운 직업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문항과 습득한 직업기술의 해당 직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 3-2-7] 과 같다.

[그림 3-2-7] 가구원용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영역은 생활실태, 생활만족 부문으로 구성된다. 생활실태부문은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박탈 경험여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만족 부문은 건강상태, 가구 소득,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7개 부문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영역은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부모님과 접촉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님과 접촉정도 부문은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 전화통화 횟수, 성역할에 대한 인식(8개 문항)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영역은 생활습관, 정신건강, 가족관계 부문으로 세분된다. 가구의 생활습관은 흡연여부 및 흡연량, 음주 횟수 및 음주량을 파악하였고, 또한 음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알코올 위험성은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와 규정성(specification)이 높아 알코올 음용에 대한 선별도구로 사용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진단척도인 CAGE를 이용하였다. 가구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울감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우울감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가족생활, 배우자, 자녀,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구원용(유형4) 조사표 마지막 영역은 개인사 부문이다. 개인사 영역은 Special Issue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조사 개인표본에게 일회성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아동기 환경 및 중요 사건, 부모님 관련, 직업이력, 직업기술 영역으로 세분된다. 아동기 부문은 아동기 성장 지역, 아동기 경제생활상태, 아동기 조실부모·부모님 이혼·학업중단·친척집에서 성장 경험여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 관련 부문은 부모님의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 도움 정도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이력 부문은 첫 직장부터 최근 직장까지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기술 부문은 보유 직업기술 종류와 직종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부가조사표(장애인)는 장애의 원인, 발생시점, 현재의 장애상태 등 장애 관련 사항에 설문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대상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부가조사표의 조사영역 및 세부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6〉 부가조사표(장애인)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원인, 장애시작시점, 현재의 장애상태 - 장애의 현재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와 관련된 치료현황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 외출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 	조사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공통II)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일상생활하는데 도움여부 및 도움 준 사람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일상생활 수행능력(기본적·수단적)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 	조사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아동의 심리 -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질문 	조사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I)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심리상태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심리상태 -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지역혁신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 	조사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II)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심리상태 - 소득활동여부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조사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V)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심리상태 - 소득활동여부 - 월평균 용돈(생활비 제외) -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조사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장애인 부가조사표는 크게 (공통), (개별)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영역은 장애 원인, 장애시작시점, 현재의 장애상태, 장애의 현재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장애와 관련된 치료현황,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외출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통II) 일상생활 영역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여부 및 도움준 사람,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기본적·수단적),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영역은 미취학 아동의 심리,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별II)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영역은 학생의 심리상태,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심리상태,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지역혁신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학교생활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별III)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영역은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심리상태, 소득활동여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별IV)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영역은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심리상태, 소득활동여부, 월평균 용돈(생활비 제외), 노인돌보미(마우처)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제1절 현지조사방법

1. 조사준비

가. 사전 안내문의 발송

제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위하여 2007년에 구축한 6,580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사전 안내문은 두 번 발송하였다. 연초에 연하장으로 1차 조사 협조에 대한 고마움과 2차 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설 날을 맞이하여 설 선물과 함께 조사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조사대상가구들의 원활한 조사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표본가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사를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이사 가구 파악을 위하여 이사하였음을 연구원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이사가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원에 잘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전 안내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조사원 모집 및 교육·훈련

2008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유한 조사원 POOL 중에서 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 평가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조

사지도원 17명, 조사원 51명으로 총 68명이 투입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2일간은 조사표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1일은 요도 확인방법,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등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들이 각각 자신의 조사표 개발 파트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 조사의 취지와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 ② 조사표 종류별 작성에 따른 지침서 설명, ③ 조사에 따른 기타 주의사항, 즉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연령조건표, 사회복지제도 참고자료, 시세 및 소득 참고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명부 활용방법과 조사안내문 및 팸플릿 배포, 가구방문시 인사말 등에 관한 것이었다.

2.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가. 조사기간 및 현지조사의 운영

현지조사는 2008년 4월 13일~2008년 6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특히 조사의 초기단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패널가구들에 대한 조사협조를 부탁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여야 할 공공부조 수급액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조사팀은 4인 1조로 운영하여 조사지도원 1인이 3인의 조사원을 통솔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조사지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지도원은 조사원의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에디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사를 지시하며,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상의 애로사항이나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원에게 바로 연락함으로써 통일적 추가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단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에디팅 단계에서 전화면접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응답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설문문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자료처리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먼저 현지에서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오류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작성상의 오류(미기입 또는 오기입)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지도원이 최종 점검작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 모든 자료에 대한 코딩(Coding) 및 펀칭(Punch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펀칭 작업시 입력 에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더블 펀칭(Double Punching)을 실시하였다. 코딩/펀칭 작업은 20여명의 코딩요원 및 자료입력요원에 의해 약 30일간 실시되었다.

코딩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에러체킹 작업을 실시하였다. 에러체킹 작업은 연구원에 의해 약 1개월간 진행되었다.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에 따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들어갔으며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SAS 등이었다.

제 Ⅱ 부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제5장 가구 및 가구원 특성¹⁴⁾

제1절 조사대상 가구 특성

2008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완료 가구수는 6,314가구(원가구 6,128가구, 2차 신규가구 60가구, 3차 신규가구 126가구)들을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타가구(81.1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독가구(16.53%)도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는 1.26%, 부자가구는 0.51%이며, 소년소녀가장가구는 0.58%로 나타났다.

<표 5-1-1> 가구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가구		16.53	35.73	9.54
모자가구		1.26	2.68	0.74
부자가구		0.51	0.76	0.42
소년소녀가장 가구		0.58	2.03	0.06
기타가구		81.12	58.81	89.25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균등화된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에서는 기타가구가 89.25%로 저소득가구(균등화된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58.8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단독가구와 모부자가구의 비중은 저소득가구(각각 35.73%, 3.44%)가 일반가구(각각 9.54%, 1.1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서는

14) 이하 분석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의 값이다.

0.06%였다.

다음으로 <표 5-1-2>는 3차 완료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7.33%이며, 이 중 일반수급가구 5.39%, 조건부수급가구 0.54%,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1.34%, 특례가구가 0.0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0.98%이며,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절반 2/3 이상인 0.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24.80%였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일반수급가구가 19.42%, 조건부수급가구가 1.94%,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3.20%, 특례가구가 0.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가구		92.67	75.20	99.03
수급가구		7.33	24.80	0.98
일반수급가구		5.39	19.42	0.28
조건부수급가구		0.54	1.94	0.03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1.34	3.20	0.67
특례가구		0.06	0.24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5-1-3>과 같다. 먼저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92명이며, 일반가구 3.20명, 저소득가구 2.16명으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 1명 정도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원수가 4명 이하 가구가 90.79%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규모는 4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9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2명(24.06%), 3명(21.30%), 1명(16.53%) 순이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비중이 35.9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 23.82%, 2인 가구 20.14%의 순인데 비해, 1인 단독가구(9.54%)의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35.73%, 2인 가구 34.83%로 1,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 14.38%, 4인 가구 9.49%의 순이었다. 또한, 일반가구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5명 이상 가구규모를 가진 가구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가구규모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가구규모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명	16.53	35.73	9.54
2명	24.06	34.83	20.14
3명	21.30	14.38	23.82
4명	28.90	9.49	35.97
5명	7.54	4.01	8.82
6명	1.39	1.41	1.38
7명 이상	0.28	0.15	0.33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조사대상 가구원 특성

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복지패널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2-1>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81.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남성이 가구주가 59.19%, 여성가구주가 40.81%, 일반가구의 경우 남성이 가구주가 89.16%, 여성가구주가 10.84%로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중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0대 가구주가 23.94%, 40대 가구

주가 23.90%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21.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30대 가구주가 29.52%, 40대 가구주가 26.91%로 근로활동이 활발한 30, 40대 가장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정이 51.36%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고졸 이하(33.5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초졸(21.92%), 대졸(21.46%), 중졸(1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37.53%), 대졸(26.86%), 초졸(10.72%), 중졸(10.17%)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가 52.9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2.55%), 중졸(14.62%), 대졸(6.54%)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일반가구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저학력임을 알 수 있다.

〈표 5-2-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81.20	59.19	89.16
	여성	18.80	40.81	10.84
연령	20세 미만	0.14	0.22	0.10
	20~30세 미만	5.76	1.33	7.36
	30~40세 미만	23.94	8.51	29.52
	40~50세 미만	23.90	15.55	26.91
	50~60세 미만	16.25	12.30	17.68
	60~65세 미만	8.44	10.72	7.61
	65세 이상	21.58	51.36	10.81
학력	초등졸 이하	21.92	52.91	10.72
	중학교졸 이하	11.35	14.62	10.17
	고등학교졸 이하	33.55	22.55	37.53
	전문대졸 이하	7.53	2.70	9.28
	대학교졸 이하	21.46	6.54	26.86
	대학원졸 이상	4.18	0.68	5.45

〈표 5-2-1〉 계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	비장애인	90.58	82.67	93.44
	장애인	9.43	17.33	6.57
	중증장애인(1,2급)	1.68	4.00	0.84
	경증장애인(3급이상)	6.47	11.02	4.83
	비등록장애인	1.28	2.31	0.90
만성질환	비해당	55.04	29.10	64.41
	있음	44.97	70.09	35.59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68	3.57	5.08
	3~6개월미만 투병·투약	1.25	1.10	1.30
	6개월 이상 투병·투약	39.01	66.14	29.21
	무응답	0.03	0.09	0.00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 15세 이하)	0.01	0.04	0.00
	유배우	72.27	47.20	81.33
	사별	12.68	32.73	5.44
	이혼	6.24	11.58	4.31
	별거	1.34	2.91	0.77
	미혼	7.07	5.10	7.78
	기타(사망, 무응답 등)	0.38	0.43	0.37
종교	있음	49.99	54.07	48.51
	없음	49.57	45.62	51.00
	무응답	0.44	0.31	0.49
동기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8.12	99.15	97.74
	비동거	1.88	0.85	2.25
	2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54	0.37	1.97
	3 해외 근무 중	0.11	0.00	0.16
	4 학업(해외유학 포함)	0.01	0.00	0.01
	5 입원, 요양	0.05	0.11	0.02
	6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5	0.11	0.02
	7 가출	0.02	0.08	0.00
	8 분가	0.00	0.00	0.00
	9 사망	0.03	0.13	0.00
	10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0.00	0.00	0.00
	11 기타(군복무, 무응답 등)	0.07	0.05	0.07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는 9.43%였으며, 이중 1, 2급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1.68%, 3급 이상 경증장애를 가진 경우가 6.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록장애인의 비율도 1.28%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장애 가구주 비율이 17.33%로 일반가구의 6.57%에 비해 2.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중증장애인 가구주 비율은 4.00%로 일반가구의 0.84%에 비해 4.8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등록 장애인 가구주의 비율도 2.31%로 일반가구의 0.90%에 비해 2.6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4.97%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2/3 이상인 70.09%로 일반가구(35.59%)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많아 큰 대조를 보였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9.01%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66.14%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72.27%가 2007년 현재 유배우 상태에 있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가구에서는 사별의 비율이 32.73%, 이혼의 비율이 11.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40대 연령층이 많은 일반가구에서는 10명 중 약 8명(81.33%)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이 49.99%, 종교가 없는 사람이 49.57로 반반 정도를 차지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주(51.00%)가 종교가 없는 가구주(48.51)보다 약간 더 많은데 비해, 저소득가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가구주의 비율(54.07%)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주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1.88%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1.54%는 타지방 근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가출, 사망 등으로 가구주와 같이 살지 않는 가구원도 약간씩 있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입원 혹은 요양, 가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비동거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타지방 근무로 인한 비동거로 나타났다.

2.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는 <표 5-2-2>와 같다.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가운데 가구주의 배우자가 37.30%, 가구주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4.90%,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56.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7.70%로 일반가구의 4.37%보다 약간 높았으며, 직계비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49.99%로 일반가구의 57.53%보다 낮았다.

<표 5-2-2> 가구주 제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37.30	40.64	36.67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90	7.70	4.37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56.33	49.99	57.53
	기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	1.38	1.45	1.36
	비혈연 동거인	0.09	0.22	0.06
성별	남성	31.46	29.91	31.76
	여성	68.54	70.09	68.24
연령	20세 미만	42.32	41.36	42.50
	20~30세 미만	14.31	5.88	15.90
	30~40세 미만	15.26	8.59	16.52
	40~50세 미만	9.75	8.52	9.98
	50~60세 미만	6.96	7.19	6.91
	60~65세 미만	3.09	6.17	2.51
	65세 이상	8.31	22.28	5.67
학력	미취학	12.44	7.26	13.41
	초졸이하	25.99	45.74	22.27
	중학교졸 이하	12.22	14.43	11.80
	고등학교졸 이하	25.11	22.08	25.68
	전문대졸 이하	8.16	4.82	8.79
	대학교졸 이하	14.76	5.48	16.52
	대학원졸 이상	1.31	0.19	1.52

〈표 5-2-2〉 계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	비장애인		95.66	89.71	96.78
	장애인		4.34	10.29	3.21
	중증장애인(1,2급)		1.40	3.75	0.95
	경증장애인(3급이상)		2.48	5.32	1.94
	비등록장애인		0.46	1.22	0.32
만성질환	없음		74.03	57.94	77.06
	있음		25.97	42.06	22.94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47	2.38	3.68
	3~6개월미만 투병·투약		1.14	1.22	1.13
	6개월 이상 투병·투약		21.31	38.19	18.12
	모름/무응답		0.05	0.27	0.01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 15세 이하)		35.51	33.30	35.93
	유배우		39.20	42.39	38.60
	사별		3.82	6.12	3.38
	이혼		0.61	0.96	0.54
	별거		0.20	0.39	0.17
	미혼(남 18세 이상, 여 16세 이상)		20.32	16.48	21.04
	기타(사망 등)		0.28	0.36	0.27
	무응답		0.06	0.00	0.07
종교	있음		52.23	53.42	52.00
	없음		47.27	46.18	47.48
	무응답		0.50	0.40	0.52
동거여부	동거		95.81	96.93	95.60
	비동거		4.20	3.06	4.41
	다른 지방에 근무		0.65	0.47	0.68
	해외 근무		0.01	0.00	0.01
	학업		2.34	1.14	2.57
	입원, 요양		0.16	0.26	0.14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2	0.04	0.02
	가출		0.01	0.05	0.00
	분가		0.39	0.32	0.40
	사망		0.18	0.53	0.12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0.12	0.00	0.14
	기타		0.24	0.25	0.24
	무응답		0.08	0.00	0.09
	계			100.00	100.00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은 31.46%, 여성은 68.54%로 전체 가구주의 80% 이상이 남성이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를 포함할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30:70으로 일반가구의 32:68 보다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미만인 경우가 42.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30대(15.26%), 20대(14.31%), 40대(9.75%)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경우도 저소득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8.45%로 일반가구의 8.18%에 비해 약 3.5 배 정도나 높았다. 이에 비해 40세 미만 가구원의 비율은 일반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에는 아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력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구원의 학력분포는 초졸 이하(재학 포함)가 25.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재학 포함)가 25.11%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졸이하 14.76%, 미취학 12.44%, 중졸이하 12.22%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이하의 비율이 4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가 22.0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이하의 비율이 25.68%로 가장 높았으며, 초졸이하 22.27%, 대졸이하 16.52% 순이었다.

가구원 중 장애인의 비중은 4.34%였으며, 이 중 1, 2급의 중증 장애인이 1.40%, 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이 2.48%를 차지했다.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원 비율은 10.29%로 일반가구의 3.21%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중증 장애인 비율 또한 3.75%로 일반가구의 0.95%에 비해 4배 정도 높았다.

가구원 중에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25.97%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저소득가구 42.06%, 일반가구 22.94%).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비율 역시 저소득가구는 38.19%, 일반가구는 18.12%로 소득집단간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유배우자 비율은 39.20%였으며, 혼인 비례당자(남자의 경우

17세 이하, 여자의 경우 15세 이하)가 35.51%, 미혼자가 20.32%로 파악되었다. 소득 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유배우 비율은 42.39%로 일반가구의 38.6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한 경우도 저소득가구(6.12%)가 일반가구(3.3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혼인 비배당자의 비율과 미혼가구의 비율이 저소득가구보다 약간 더 높았다.

종교가 있는 가구원(52.23%)은 종교가 없는 가구원(47.27%)보다 약간 더 높게 파악되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종교가 있는 가구원이 각각 53.42%와 52.00%로 종교가 없는 가구원보다 약간 더 많았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따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은 4.20%였으며, 이 중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 가구원이 2.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동거 가구원의 비율은 저소득가구(3.06%)에 비해 일반가구(4.41%)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제3절 조사대상 가구원의 교육수준

1. 가구주 교육수준

3차 조사에서 가구원 조사표¹⁵⁾에 가구원의 교육수준에 관한 세부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교육에 관한 주요 문항은 최종 학력, 고등학교의 유형과 소재지, 대학교의 전공계열과 소재지 등이다.

다음의 <표 5-3-1>은 가구주의 최종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이하가 33.57%, 중학교 졸업 이하가 33.1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학교 졸업 이하가 21.52%로 그 뒤를 이었다.

15) 가구원 조사표의 대상은 15세 이상이면서 중고생이 아닌 가구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 중 가구주 결과는 가구조사표의 학력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하지만, 가구원 결과는 15세 미만인 가구원과 15세 이상이면서 중고생인 가구원이 제외되었으므로 가구조사표의 학력 분석 결과와 상이하다.

〈표 5-3-1〉 가구주의 최종 학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졸 이하		33.16	67.58
고등학교졸 이하		33.57	22.50	37.56
전문대졸 이하		7.57	2.72	9.31
대학교졸 이하		21.52	6.51	26.93
대학원졸 이상		4.18	0.69	5.44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26.47	73.53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구주 중 중학교 졸업 이하인 가구주가 2/3을 넘는 67.58%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2.50%, 대학교 졸업 이하가 6.51%의 순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주의 37.56%가 고졸 이하, 26.93%가 대졸이하였으며, 대학원 이상도 5.44%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3-2>는 고등학교 이상(중퇴, 재학, 졸업 포함)인 가구주들만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고등학교 이상인 가구주 중 87.16%가 일반가구의 가구주였고, 나머지 12.84%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였다. 전체 고등학교 이상 가구주 중 62.91%가 일반계의 일반(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로 불리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가 15.51%, 상업고등학교가 10.87% 순이었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를 나온 가구주는 0.31%에 불과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계 일반고등학교를 나온 가구주가 56.84%를 차지하였으며,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 18.06%, 공업고등학교 13.00%의 순이었다.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와 외고 출신은 없었으며, 예술고와 체육고가 각각 0.03%와 0.05%였다. 일반가구 역시 일반계 일반고등학교를 나눈 가구주가 6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 15.88%, 상업고등학교 9.81%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출신이 0.09%, 외국어고가 0.06%, 예술고가 0.10%, 체육고가 0.21%를 차지하였다.

〈표 5-3-2〉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62.91	56.84	63.81
일반계(특목:과학고)		0.08	0.00	0.09
일반계(특목:외국어고)		0.05	0.00	0.06
일반계(특목:예술고)		0.09	0.03	0.10
일반계(특목:체육고)		0.19	0.05	0.21
실업계(농업)		6.89	7.97	6.73
실업계(공업)		15.51	13.00	15.88
실업계(상업)		10.87	18.06	9.81
실업계(수산 및 해양)		0.37	0.93	0.29
실업계(가사 및 실업)		0.09	0.14	0.08
실업계(종합)		1.55	1.19	1.60
기타(국제고 등)		1.11	1.65	1.03
무응답		0.30	0.12	0.33
합 계		100.00 100.00	100.00 12.84	100.00 87.16

〈표 5-3-2〉는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나온 가구주의 비율이 18.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8.69%, 부산광역시 8.48%, 경기도 8.29%, 경상남도 7.51%, 대구광역시 5.84%의 순으로, 수도권과 경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많았다. 또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05%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소재가 0.34%로 나타난 것도 이채로운 결과이다. 소득계층별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5-3-3〉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8.53	19.83	18.34
부산광역시		8.48	10.65	8.16
대구광역시		5.84	5.85	5.84
인천광역시		3.31	3.64	3.26
광주광역시		4.67	3.77	4.80
대전광역시		3.09	2.50	3.17
울산광역시		1.13	0.05	1.29
경기도		8.29	7.09	8.46
강원도		4.66	4.29	4.71
충청북도		4.21	3.51	4.31
충청남도		6.30	6.15	6.32
전라북도		7.08	7.68	6.99
전라남도		6.11	7.89	5.84
경상북도		8.69	9.70	8.55
경상남도		7.51	4.89	7.89
제주도		1.24	0.70	1.32
김정고시		0.13	0.07	0.14
북한		0.34	0.94	0.25
외국		0.17	0.69	0.10
무응답		0.25	0.12	0.26
합 계		100.00 100.00	100.00 12.84	100.00 87.16

〈표 5-3-4〉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6.62	20.66	16.28
사회계열(경상계열)		13.70	15.28	13.56
사회계열(법학계열)		3.57	5.23	3.43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3.31	5.17	3.15
교육계열		6.29	5.34	6.37
공학계열		37.47	23.54	38.66
자연계열		10.50	13.17	10.23
의약계열(의학)		1.13	0.32	1.20
의약계열(약학)		0.50	0.41	0.51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1.26	2.34	1.17
예체능계열		3.94	4.38	3.91
기타		1.30	2.55	1.19
무응답		0.40	1.06	0.34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7.88	92.12

<표 5-3-4>는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자 중 92.12%가 일반가구 가구주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7.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 중 26.47%가 저소득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에 고학력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대학 전공계열 중 공학계열의 비율이 37.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계열 16.62%, 경상계열 13.70%, 자연계열 10.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의약계열을 전공한 가구주는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출신은 저소득가구 가구주에서 더 높았다.

다음으로 <표 5-3-5>는 가구주의 출신 대학 소재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 중 27.30%는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구 8.90%, 경기도 8.62%, 부산 8.30%, 광주 6.29%, 경상북도 6.18% 순이었으며, 외국도 0.39%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도) 소재 대학을 다닌 가구주의 비율은 전체의 1/3 이상인 35.92%에 이르렀으며, 대도시(서울+6대 광역시) 소재 대학 출신 가구주의 비율은 59.96%였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 가구주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의 3대 도시 대학을 다닌 비율이 일반가구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5〉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27.30	33.15	26.80
부산광역시		8.30	10.51	8.11
대구광역시		8.90	10.79	8.73
인천광역시		3.28	2.14	3.38
광주광역시		6.29	5.14	6.39
대전광역시		4.97	3.22	5.12
울산광역시		0.92	0.00	1.00
경기도		8.62	3.14	9.07
강원도		4.60	7.57	4.35
충청북도		3.49	1.54	3.65
충청남도		2.31	1.23	2.41
전라북도		4.88	5.81	4.80
전라남도		2.22	4.12	2.05
경상북도		6.18	4.67	6.31
경상남도		5.64	1.17	6.02
제주도		1.30	0.91	1.33
북한		0.07	0.86	0.00
외국		0.39	2.69	0.20
무응답		0.33	1.06	0.27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7.88	92.12

2. 가구원 교육수준

다음으로 <표 5-3-6>에서 가구원의 최종 학력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1.5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졸 이하 28.15%, 대학교 졸업 이하 24.50%, 전문대졸 이하 13.61%의 순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과반수 이상인 58.47%를 차지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하는 9.01%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 고졸 이하가 32.95%, 대졸 이하가 27.44%, 중졸 이하가 22.41%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5-3-6> 가구원의 최종 학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졸 이하		28.15	58.47
고등학교졸 이하		31.57	24.31	32.95
전문대졸 이하		13.61	8.03	14.66
대학교졸 이하		24.50	9.01	27.44
대학원졸 이상		2.16	0.03	2.14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5.92	84.08

다음으로 <표 5-3-7>은 가구원이 다닌 고등학교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고등학교 이상 가구원 중 90.79%가 일반가구의 가구원이었으며, 나머지 9.21%만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5-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원 중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15.92%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학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반계의 일반고등학교를 다닌 가구원이 2/3 이상인 65.8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가 23.06%, 공업고등학교가 5.27%를 차지하였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닌 가구원의 비율은 1.41%로 가구주(0.31%)보다는 약간 더 높았다.

〈표 5-3-7〉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65.80	56.56	66.74
일반계(특목:과학고)		0.27	0.50	0.24
일반계(특목:외국어고)		0.37	0.00	0.41
일반계(특목:예술고)		0.63	1.45	0.55
일반계(특목:체육고)		0.14	0.28	0.13
실업계(농업)		0.96	3.24	0.73
실업계(공업)		5.27	10.73	4.27
실업계(상업)		23.06	23.99	22.97
실업계(수산 및 해양)		0.08	0.07	0.08
실업계(가사 및 실업)		0.22	0.32	0.21
실업계(종합)		1.77	0.08	1.70
기타(국체고 등)		1.25	1.53	1.22
무응답		0.17	0.51	0.14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9.21	90.79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비율이 56.56%로 일반가구 가구원의 66.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의 비율이 10.73%로 일반가구의 4.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특목고 비율이 일반가구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물론 이는 전체적으로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이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표 5-3-8>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다닌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닌 가구원의 비율이 2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12.24%, 부산 9.14%, 경상남도 7.26%, 경상북도 6.0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보다 수도권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가구주의 경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가구주의 서울소재 고등학교를 다닌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나—오히려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 가구원의 경우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다닌 가구원의 비율이 23.38%로 저소득가구의 16.94%에 비해 상당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3-8〉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22.79	16.94
부산광역시		9.14	11.86	8.87
대구광역시		5.74	7.43	5.57
인천광역시		4.25	3.41	4.33
광주광역시		3.89	4.30	3.85
대전광역시		2.83	2.02	2.91
울산광역시		1.65	0.38	1.78
경기도		12.24	13.78	12.08
강원도		3.81	3.48	3.85
충청북도		3.41	3.76	3.37
충청남도		4.83	4.27	4.89
전라북도		5.26	6.47	5.13
전라남도		4.79	7.91	4.47
경상북도		6.01	5.45	6.07
경상남도		7.26	5.87	7.40
제주도		1.03	1.33	1.00
김정고시		0.09	0.03	0.10
북한		0.02	0.18	0.00
외국		0.78	0.64	0.79
무응답		0.19	0.51	0.16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9.20	90.80

다음으로 <표 5-3-9>는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원 중 93.16%가 일반가구에 속해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인 경우는 6.84%에 불과하였다. 가구주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데 비해, 가구원의 경우 공학계열(19.89%)와 인문계열(19.78%) 전공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계열 중 경상계열(12.31%), 예체능계열(11.08%), 자연계열(11.05%)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의 경우 공학

계열 전공자의 비율(28.36%)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19.27%)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 저소득가구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20.09%), 사회계열 중 경상계열(12.67%), 예체능 계열(11.16%)의 비율이 높았다. 의약계열 중에서는 의학 전공자와 약학 전공자의 비율은 일반가구 가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간호, 치료보건 전공자는 저소득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3-9〉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9.78	15.47	20.09
사회계열(경상계열)		12.31	8.93	12.67
사회계열(법학계열)		1.39	2.49	1.31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5.81	4.72	5.89
교육계열		9.80	8.41	9.90
공학계열		19.89	28.36	19.27
자연계열		11.05	11.09	11.05
의약계열(의학)		1.29	0.76	1.33
의약계열(약학)		0.31	0.00	0.33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4.87	6.26	4.77
예체능계열		11.08	9.99	11.16
기타		1.85	2.34	1.81
무응답		0.47	1.17	0.42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6.84	93.16

〈표 5-3-10〉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22.14	16.11	22.59
부산광역시		9.59	12.13	9.40
대구광역시		6.85	6.61	6.87
인천광역시		2.92	1.49	3.03
광주광역시		4.85	9.78	4.49
대전광역시		4.67	4.03	4.72
울산광역시		1.27	0.00	1.36
경기도		14.98	15.80	14.92
강원도		3.94	5.13	3.85
충청북도		3.26	2.28	3.33
충청남도		5.14	6.80	5.01
전라북도		4.62	5.01	4.59
전라남도		2.74	4.47	2.61
경상북도		5.31	4.77	5.35
경상남도		5.03	2.06	5.24
제주도		0.87	0.35	0.91
북한		0.03	0.44	0.00
외국		1.15	0.92	1.16
무응답		0.64	1.81	0.56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6.84	93.16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대학 소재지를 나타낸 표가 <표 5-3-10>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 2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4.98%, 부산 9.59%, 대구 6.85%의 순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일반가구 가구원에 비해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다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부산, 광주, 강원 등 위치한 대학에 다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6장 경제활동

제1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1. 가구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표 6-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2.2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는 근로가능 비율이 57.23%이고, 단순 근로 미약자가 21.11%, 근로능력 없음이 5.82%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94.03%가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가구의 근로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근로무능력의 이유로는 질병 또는 부상(37.99%),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31.18%)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1> 가구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가능		84.26	57.23	94.03
단순근로가능		5.85	15.84	2.24
단순근로미약자		7.68	21.11	2.83
근로능력없음		2.21	5.82	0.9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중증장애		30.31	24.43	44.01
질병 또는 부상		37.99	37.08	40.11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31.18	37.74	15.88
기타		0.52	0.74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73.98%, 미취업자가 26.0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가구주의 취업비율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41.38%, 일반가구에서는 85.76%로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 가구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취업 형태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6-1-2>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39.24	5.29	51.50
임시직 임금근로자		5.29	4.35	5.63
일용직 임금근로자		7.90	11.11	6.74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46	1.43	0.11
고용주		4.31	0.43	5.72
자영업자		16.29	18.09	15.64
무급가족종사자		0.49	0.68	0.42
실업자		2.79	5.02	1.99
비경제활동인구		23.22	53.60	12.2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가구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6-1-3>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7.14%로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2.70%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가능 비율이 68.31%, 근로능력 없음이 6.22%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 가구는 근로가능 비율이 90.86%, 근로능력 없음이 2.01%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로는 '질병 또는 부상'(36.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중증장애(38.90%) 및 질병 또는 부상(31.35%)을, 일반 가구는 질병 또는 부상(40.21%), 노령(30.82%)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6-1-3〉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가능		87.14	68.31	90.86
단순근로가능		4.44	10.72	3.20
단순근로 미약자		5.66	14.37	3.93
근로능력 없음		2.70	6.22	2.01
모름/무응답		0.06	0.38	0.00
계		100.00	100.00	100.00
중증장애		31.92	38.90	27.64
질병 또는 부상		36.85	31.35	40.21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30.00	28.65	30.82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24	1.09	1.33
계		100.00	100.00	100.00

주: 만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응답하였다.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40.81%, 미취업자가 5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중 대부분(93.81%)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가구원의 취업비율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29.41%, 일반가구에서는 43.07%로 나타났으며, 취업 형태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6-1-4〉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18.62	3.48	21.62
임시직 임금근로자		6.44	3.89	6.95
일용직 임금근로자		5.34	7.20	4.97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18	0.76	0.06
고용주		0.98	0.10	1.16
자영업자		3.70	4.29	3.58
무급가족종사자		5.55	9.69	4.73
실업자		3.66	5.75	3.25
비경제활동인구		55.50	64.64	53.69
모름/무응답		0.03	0.19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만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응답하였다.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1. 가구주의 취업실태

취업 가구주 중 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1>과 같다. 고용관계로는 직접고용의 비율이 9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고용(95.88%)이, 근로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79.43%)이, 근로지속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계속근로가능(78.71%)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간접고용(14.53%), 시간제(14.56%),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비율(56.60%)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 가구주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1>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접고용	직접고용	90.01	81.73	91.04
	간접고용	5.78	14.53	4.68
	특수고용	3.75	3.53	3.78
	모름/무응답	0.46	0.21	0.49
계	100.00	100.00	100.00	
시간제	시간제	3.60	14.56	2.23
	전일제	95.88	85.29	97.20
	모름/무응답	0.53	0.15	0.57
	계	100.00	100.00	100.00
계약기간	계약기간 정해짐	20.23	45.35	17.08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79.43	54.18	82.59
	모름/무응답	0.34	0.47	0.33
	계	100.00	100.00	100.00
계속 근로	계속 근로 가능	78.71	42.93	83.19
	계속 근로 불가능	20.95	56.60	16.48
	모름/무응답	0.34	0.47	0.33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은 다음 <표 6-2-2>와 같다. 가구주의 업종은 제조업(19.92%), 건설업(12.36%), 도매 및 소매업(10.6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는 농업 및 임업(28.91%)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는 제조업(22.0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16.21%) 및 사무종사자(15.35%)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는 단순노무종사자(33.97%)와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25.20%)가, 일반 가구는 사무종사자(17.6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및 임업		8.86	28.91	5.36
	어업		0.25	0.49	0.21
	광업		0.04	0.00	0.05
	제조업		19.92	7.89	22.0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90	0.16	2.21
	건설업		12.36	13.58	12.15
	도매 및 소매업		10.64	11.08	10.56
	숙박 및 음식점업		4.28	7.80	3.66
	운수업		7.79	4.22	8.42
	통신업		1.34	0.27	1.53
	금융 및 보험업		3.19	0.48	3.67
	부동산 및 임대업		1.39	1.56	1.36
	사업서비스업		6.22	5.17	6.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50	0.14	6.43
	교육서비스업		4.37	1.37	4.8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6	1.05	1.6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16	0.89	2.38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89	9.42	6.45
	가사서비스업		0.49	1.63	0.29
	국제 및 외국기관		0.08	0.00	0.10
자활 및 공공근로		0.74	3.90	0.1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6-2-2〉 계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68	0.33	3.10
	전문가		6.05	1.25	6.87
	기술공 및 준전문가		8.32	2.55	9.36
	사무종사자		15.35	1.98	17.68
	서비스 종사자		8.41	10.54	8.03
	판매종사자		9.09	10.36	8.8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8.22	25.20	5.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70	7.57	12.4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43	6.24	14.69
	단순노무종사자		16.21	33.97	13.12
	군인		0.51	0.00	0.5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주: 업종 및 직종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4명 이하의 사업장이 39.43%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층 가구는 4명 이하가 69.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도 4명 이하가 34.18%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그 다음으로 1,000명 이상 비율이 20.68%로 높게 나타나,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9.43	69.51	34.18
	5~9명	10.47	11.75	10.25
	10~29명	10.43	9.76	10.54
	30~49명	4.71	2.01	5.18
	50~69명	2.77	1.18	3.04
	70~99명	2.19	0.54	2.48
	100~299명	6.57	2.22	7.32
	300~499명	2.12	0.40	2.42
	500~999명	2.53	0.00	2.97
	1000명 이상	17.77	1.10	20.68
	모름/무응답	1.02	1.53	0.94
	계	100.00	100.00	100.00

취업 가구주 중에서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 둔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8.51% 정도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가구주(8.03%)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11.31%)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6-2-4〉 취업 가구주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및 폐업 여부	있다	8.51	11.31	8.03
	없다	91.49	88.69	91.9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사업)을 그만 둔 가구주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이나 보수가 적음(16.79%), 자기(가족) 사업 시작(15.8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자기(가족) 사업 시작(19.41%),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소득이나 보수가 적어서(18.78%)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5〉 가구주의 사직 혹은 폐업의 구체적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체적 이유	파산, 폐업, 휴업 등	9.35	9.86	9.22
	정리해고	3.44	7.12	2.54
	권고사직/명예퇴직	2.53	2.76	2.48
	정년퇴직	1.04	0.00	1.30
	계약기간 만료	3.80	5.11	3.48
	소득/보수 적음	16.79	8.68	18.78
	일거리 부족	9.59	11.72	9.07
	일의 장래성 없음	4.61	4.64	4.60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2.12	3.02	1.89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6.77	2.81	7.74
	자기(가족) 사업 시작	15.89	19.41	15.02
	가사 문제	0.59	1.06	0.48
	건강/고령 등	3.66	9.15	2.31
	거리가 멀어서	2.88	3.53	2.72
	학업/군 입대 등	0.00	0.00	0.00
	좀 더 좋은 일자리	13.44	9.25	14.46
	출산/육아	0.55	0.00	0.68
	기타	2.53	1.88	2.69
	모름/무응답	0.42	0.00	0.52
	계		100.00	100.00

가구주의 1년간 근로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1.62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2.11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68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보다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근로 개월, 일한 달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62	10.98	11.72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2.11	19.46	22.57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68	38.67	50.42

2. 가구원의 취업실태

취업 가구원 중 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7>과 같다. 고용 관계로는 직접고용의 비율이 9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고용(88.33%)이, 근로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76.71%)이, 근로지속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계속근로가능(70.62%)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간접고용(6.04%), 시간제(23.05%),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비율(51.51%)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 가구주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7>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접고용		91.00	89.13	91.17
간접고용		3.55	6.04	3.33
특수고용		5.20	4.09	5.30
모름/무응답		0.25	0.73	0.20
계		100.00	100.00	100.00
시간제		11.38	23.05	10.33
전일제		88.33	76.34	89.42
모름/무응답		0.29	0.61	0.26
계		100.00	100.00	100.00
계약기간 정해짐		22.75	38.87	21.29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76.71	59.56	78.26
모름/무응답		0.54	1.57	0.45
계		100.00	100.00	100.00
계속 근로 가능		70.62	46.93	72.76
계속 근로 불가능		28.84	51.51	26.79
모름/무응답		0.54	1.57	0.45
계		100.00	100.00	100.00

주: 만15세 이상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 가구원만 응답하였다.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은 아래 <표 6-2-8>과 같다. 가구원의 업종은 제조업 16.46%, 도매 및 소매업 14.5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농업 및 임업(35.98%)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는 제조업(17.3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17.17%), 서비스종사자(16.90%)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가구는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31.00%)와 단순노무종사자(30.10%)가, 일반가구는 사무종사자(19.0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6-2-8>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및 임업	10.17	35.98	6.69
	어업	0.31	0.64	0.27
	광업	0.00	0.00	0.00
	제조업	16.46	9.75	17.3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3	0.31	0.67
	건설업	3.50	4.53	3.36
	도매 및 소매업	14.58	11.59	14.98
	숙박 및 음식점업	10.62	14.43	10.10
	운수업	1.65	0.86	1.77
	통신업	0.95	0.14	1.05
	금융 및 보험업	4.01	0.11	4.54
	부동산 및 임대업	0.75	1.18	0.70
	사업서비스업	4.52	2.99	4.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6	1.33	3.41
	교육서비스업	12.89	2.20	14.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75	1.77	5.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46	0.99	2.6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10	5.00	6.26
	가사서비스업	1.73	2.50	1.63
	국제 및 외국기관	0.07	0.38	0.03
	자활 및 공공근로	0.65	3.28	0.3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표 6-2-8〉 계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16	0.00	0.19
	전문가	10.32	1.20	11.54
	기술공 및 준전문가	8.96	3.19	9.76
	사무종사자	17.17	3.15	19.04
	서비스 종사자	16.90	16.44	16.95
	판매종사자	13.43	10.26	13.8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9.28	31.00	6.3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7	2.90	3.9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99	1.76	4.29
	단순노무종사자	15.99	30.10	14.09
	군인	0.02	0.00	0.0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주: 1) 주: 업종 및 직종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2)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9.82%가 4명 이하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층 가구는 4명 이하가 68.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는 4명 이하가 35.89%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그 다음으로 1,000명 이상 비율이 15.35%로 높게 나타나,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9.82	68.89	35.89
	5~9명	12.50	10.58	12.76
	10~29명	12.75	7.76	13.42
	30~49명	4.90	2.79	5.19
	50~69명	3.28	1.13	3.57
	70~99명	2.04	1.69	2.09
	100~299명	6.32	2.89	6.78
	300~499명	1.76	0.00	2.00
	500~999명	1.55	0.08	1.74
	1000명 이상	13.76	2.00	15.35
	모름/무응답	1.32	2.19	1.20
	계	100.00	100.00	100.00

주: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가구원 중에서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 둔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0.18%정도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가구원(10.14%)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직장을 그만 둔 경험(10.50%)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6-2-10〉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만둔 경험여부	있다	10.18	10.50	10.14
	없다	89.82	89.50	89.8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사업)을 그만 둔 가구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19.30%), 소득/보수 적음(14.52%)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일거리 부족(23.80%), 일반 가구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20.3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11〉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의 구체적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유	파산, 폐업, 휴업 등	5.95	2.40	6.44
	정리해고	1.05	0.00	1.20
	권고사직/명예퇴직	0.00	0.00	0.00
	정년퇴직	0.30	0.00	0.34
	계약기간 만료	5.01	1.00	5.57
	소득/보수 적음	14.52	11.60	14.93
	일거리 부족	8.60	23.80	6.49
	일의 장래성 없음	4.62	13.20	3.43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6.10	7.05	5.97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9.29	10.47	9.12
	자기 사업 시작	6.44	3.82	6.80
	가사 문제	2.77	4.00	2.60
	건강/고령 등	6.40	5.78	6.48
	거리가 멀어서	2.06	0.00	2.35
	학업/군입대 등	5.25	0.50	5.91
	좀 더 좋은 일자리	19.30	11.97	20.32
	출산/육아	0.00	0.00	0.00
	기타	2.34	4.42	2.0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가구원의 1년간 근로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0.93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1.92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2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보다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근로 개월, 일한 달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2〉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단위: 월, 일,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0.93	10.52	10.98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1.92	20.16	22.16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52	37.64	44.30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1. 가구주의 미취업실태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취업자가 73.98%, 미취업자가 26.01%이다. 미취업자 중에서 약 89.72%를 차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표 6-3-1>과 같다. 근로의사 없음(60.0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직활동포기(14.75%)가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59.92%)와 일반 가구의 가구주(60.26%) 모두에서 근로의사 없음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6-3-1>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10.22	11.51	8.18
군복무		0.00	0.00	0.00
학업		0.38	0.17	0.72
가사		8.81	9.25	8.12
양육		0.78	0.34	1.48
간병		1.03	0.82	1.35
구직활동포기		14.75	14.58	15.01
근로의사 없음		60.05	59.92	60.26
기타		2.46	2.02	3.17
모름/무응답		1.52	1.39	1.71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만 분석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주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11.74%로 나타났다¹⁶⁾.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9.36%,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15.21%로, 일반 가구에서 근

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6-3-2〉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1.74	9.36	15.21
	아니다	88.20	90.61	84.70
	모름/무응답	0.06	0.04	0.09
	계	100.00	100.00	100.00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이 68.4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2.06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의 구직 기간이 약 16.56개월,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약 8.01개월로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3〉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68.42	59.45	76.43
	1년 이상 3년 미만	21.39	24.50	18.61
	3년 이상 5년 미만	4.89	8.12	2.01
	5년 이상 10년 미만	3.54	6.44	0.95
	10년 이상 15년 이하	0.22	0.47	0.00
	모름/무응답	1.54	1.02	2.00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12.06	16.56	8.01

- 16) 가구주 전체 미취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8%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는 응답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여기서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가구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약 3.63%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을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3-4>와 같으며, 저소득과 일반 가구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 상 어려움 중, 개인 특성으로는 나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3.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2.40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1점대로 개인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45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96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4>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5점 척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3.54	3.58	3.50
	성차별 때문에		1.63	1.81	1.47
	외모 때문에		1.54	1.69	1.42
	학력이 낮기 때문에		2.07	2.20	1.96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40	2.46	2.34
	경력이 부족해서		2.31	2.41	2.21
	건강문제로		2.28	2.61	1.99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2.04	2.01	2.06
	신용불량자라서		1.43	1.52	1.35
가구 특성	가사일 때문에		1.13	1.22	1.05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13	1.20	1.06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09	1.17	1.02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13	1.13	1.13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29	3.45	3.16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2.98	2.96	3.00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2.51	2.56	2.46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2.44	2.38	2.50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2.44	2.38	2.49	

주: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평균점수를 내서 기입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주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일거리가 있었을 경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26.35%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23.99%)보다는 일반 가구(29.79%)의 가구주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5〉 가구주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26.35	23.99	29.79
	아니다	73.11	75.69	69.37
	모름/무응답	0.53	0.32	0.84
	계	100.00	100.00	100.00

일을 할 경우, 가구주의 희망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949.26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평균 740.26천원, 일반 가구가 1253.60천원으로 일반 가구 가구주의 희망소득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00	949.26	19.98
	저소득	500.00	740.26	19.48
	일반	1000.00	1253.60	42.15

2. 가구원의 미취업실태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취업자가 40.81%, 미취업자가 59.16%이다. 미취업자 중 93.81%를 차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표 6-3-7>과 같다. 학업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사가 31.20%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는 가사, 학업 순으로, 일반가구는 학업, 가사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3-7〉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5.01	9.76	3.88
군복무		1.09	1.18	1.07
학업		33.38	24.70	35.44
가사		31.20	29.93	31.50
양육		11.31	3.32	13.21
간병		0.67	1.87	0.39
구직활동포기		2.55	4.57	2.07
근로 의사 없음		12.45	21.26	10.35
기타		1.30	1.99	1.13
모름/무응답		1.05	1.41	0.97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만 분석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8.18%로 나타났다¹⁷⁾.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11.19%, 일반 가구의 가구원은 7.48%로,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6-3-8〉 가구원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8.18	11.19	7.48
아니다		91.78	88.81	92.48
모름/무응답		0.04	0.00	0.05
계		100.00	100.00	100.00

17) 가구원의 전체 미취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19%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는 응답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여기서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가구원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약 8.23%로 나타난다.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이 61.6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2.63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약 17.13개월, 일반 가구의 구직기간이 약 11.05개월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의 구직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9〉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61.65	51.55	65.19
1년 이상 3년 미만		27.19	32.40	25.36
3년 이상 5년 미만		8.26	11.51	7.11
5년 이상 10년 미만		1.92	3.01	1.53
10년 이상 15년 이하		0.40	1.53	0.00
모름/무응답		0.60	0.00	0.81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12.63	17.13	11.05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을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3-10>과 같으며, 저소득과 일반 가구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 상 어려움 중, 개인 특성으로는 경력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2.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나이 때문에(2.76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전모든 항목의 점수가 1점대로 개인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사나 양육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51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1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10〉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5점 척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2.76	2.81	2.74
	성차별 때문에	1.61	1.62	1.61
	외모 때문에	1.68	1.72	1.67
	학력이 낮기 때문에	2.10	2.14	2.09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73	2.82	2.71
	경력이 부족해서	2.84	2.76	2.87
	건강문제로	1.88	2.17	1.79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2.44	2.24	2.50
	신용불량자라서	1.30	1.49	1.23
가구 특성	가사일 때문에	1.81	1.80	1.81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79	1.77	1.79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27	1.34	1.24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35	1.21	1.40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51	3.62	3.47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31	3.53	3.23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2.83	2.93	2.79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3.07	3.20	3.02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2.79	3.13	2.68

주: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평균점수를 내서 기입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원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일거리가 있었을 경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23.60%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22.99%)보다는 저소득 가구(26.20%)의 가구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11〉 가구원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23.60	26.20	22.99
	아니다	76.22	73.80	76.79
	모름/무응답	0.18	0.00	0.22
	계	100.00	100.00	100.00

일을 할 경우, 가구원의 희망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1215.51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가구의 가구원의 희망소득 평균은 1299.06천원으로 나타났다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857.3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6-3-12〉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00	1215.51	13.86
	저소득	700.00	857.37	20.00
	일반	1000.00	1299.06	16.73

제4절 가구구성원의 직업기술과 직종

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및 직종

2007년 동안 새로이 직업기술을 취득한 가구주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83%에 불과했으며,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의 비율이 0.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 가구주의 새로운 직업기술 습득비율이 낮았으며 기술사, 기능장과 같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체계상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0.03	0.00	0.03
기능장		0.03	0.00	0.04
기사		0.31	0.00	0.41
산업기사		0.09	0.00	0.12
기능사		0.45	0.21	0.53
기타 공인 면허자격증		0.80	0.37	0.94
자격증 없는 기능자		0.12	0.08	0.14
없다		97.95	99.19	97.52
모름/무응답		0.24	0.15	0.27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을 의미한다.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6-4-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18.18%), 기계·금속(12.22%) 그리고 안전관리(12.0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음료품·식료품(25.2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에서는 사무관리(20.0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2〉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12.22	0.00	13.44
화공·세라믹		0.00	0.00	0.00
전기·전자		6.99	0.00	7.69
통신		1.37	0.00	1.51
조선		0.14	0.00	0.16
항공		0.00	0.00	0.00
섬유		0.76	8.34	0.00
토목·건축		3.64	0.00	4.00
광업자원		0.00	0.00	0.00
정보처리		4.88	0.00	5.37
국토개발		0.00	0.00	0.00
농림		2.54	0.00	2.80
해양		0.00	0.00	0.00
산업디자인		0.00	0.00	0.00
에너지		0.00	0.00	0.00
환경		2.59	0.00	2.84
안전관리		12.02	0.00	13.21
산업응용		0.00	0.00	0.00
교통		5.58	0.00	6.14
공예		0.52	5.78	0.00
사무관리		18.18	0.00	20.00
음료품·식료품		6.08	25.27	4.17
위생		1.33	14.72	0.00
보건·의료·사회		6.19	5.61	6.25
금융·무역·유통		3.31	0.00	3.64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1.04	11.52	0.00
외국어·관광		0.98	10.79	0.00
기타		9.62	17.98	8.7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한다.

2.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및 직종

2007년 동안 새로이 직업기술을 취득한 가구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3.06%에 불과했으며, 이중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의 비율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 가구주의 새로운 직업기술 습득비율이 낮았으며 습득한 직업기술의 종류도 기능사,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자격증 없는 기능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3〉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0.00	0.00	0.00
기능장		0.06	0.00	0.07
기사		0.16	0.00	0.19
산업기사		0.21	0.00	0.25
기능사		0.46	0.49	0.46
기타 공인 면허자격증		1.93	0.72	2.15
자격증 없는 기능자		0.24	0.18	0.25
없다		96.81	98.51	96.50
모름/무응답		0.11	0.09	0.11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을 의미한다.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6-4-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15.17%), 교육·공무원 자격 관련(12.7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정보처리(27.0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에서는 사무관리(15.7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4〉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3.69	6.09	3.50
화공·세라믹		2.16	0.00	2.33
전기·전자		0.41	0.00	0.44
통신		2.24	0.00	2.42
조선		0.51	0.00	0.55
항공		0.00	0.00	0.00
섬유		0.00	0.00	0.00
토목·건축		1.23	9.29	0.59
광업자원		0.00	0.00	0.00
정보처리		11.13	27.07	9.85
국토개발		0.76	0.00	0.83
농림		0.74	0.00	0.79
해양		0.55	7.42	0.00
산업디자인		0.00	0.00	0.00
에너지		0.00	0.00	0.00
환경		1.46	0.00	1.58
안전관리		0.28	0.00	0.30
산업응용		0.00	0.00	0.00
교통		0.24	0.00	0.25
공예		3.48	0.00	3.76
사무관리		15.17	8.43	15.71
음료품·식료품		9.42	0.00	10.17
위생		4.01	0.00	4.33
보건·의료·사회		10.98	24.47	9.91
금융·무역·유통		4.86	0.00	5.25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12.79	10.01	13.02
외국어·관광		3.87	0.00	4.18
기타		10.01	7.23	10.2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한다.

제7장 가구경제

제1절 소득

1. 경상소득

이번 제 3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에서는 전체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집단별 2개의 계층(중위 균등화소득¹⁸)의 60% 이상인 일반가구와 그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비교분석한다. 7장 가구경제에서는 먼저 1절에서 가구의 경상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3차조사에서 새로 추가해서 조사한 12개 비목을 포함해 총 16개 지출비목별로 가구지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3절에서는 가구부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7-1-1>에서 전체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38,276천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31,120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9,761천원,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은 48,658천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표 7-1-2>에서 경상소득분포를 살펴보면 50,000천원 이상의 가구는 25.82%로 4가구 중의 1가구는 연간 50,000천원 이상의 경상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구간은 10%대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소득계층별 가구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50,000천원 이상 구간에 전체 일반가구중 35.22%가 포함되어 있고, 40,000천원 이상 50,000 천원 미만 사이에도 14.87%가 분포되어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은 20,000천원 미만이 94.10%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18) (경상소득 - 공공부조소득) / √가구원수

〈표 7-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1,120	38,276	463.97
저소득	8,900	9,761	130.71
일반	40,020	48,658	622.98

〈표 7-1-2〉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0 미만	15.65	58.63	0.00
10,000 ~ 20,000 미만	15.54	35.47	8.28
20,000 ~ 30,000 미만	16.90	5.82	20.93
30,000 ~ 40,000 미만	15.19	0.08	20.70
40,000 ~ 50,000 미만	10.90	0.00	14.87
50,000 이상	25.82	0.00	35.22
계	100.00	100.00	100.00

주: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모름/무응답이 있으면 무응답 대체법(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2. 근로소득

<표 7-1-3>, <표 7-1-4> 그리고 <표 7-1-5>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분포와 기초통계를 구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으로는 상용근로소득과 임시·일용근로소득을 합하여 임금소득으로 파악하였고, 그 외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표 7-1-3>로부터 임금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이 70.32%로 가구의 주소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사업소득은 20.88%로 5가구 중에 1가구는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림축어업소득은 6.97%, 부업소득은 7.47%로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81.60%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39.34%로 2배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소득도 일반가구(23.94%)가 저소득가구(12.48%) 보다 보유비율이

높으며, 반면 농림축어업소득과 부업소득은 근소한 차이지만 일반가구(각각 5.13%, 6.51%) 보다 저소득가구(각각 12.03%, 10.12%)가 더 높은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7-1-3〉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유무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없다	29.68	60.66	18.40
	있다	70.32	39.34	81.60
사업소득	없다	79.12	87.52	76.06
	있다	20.88	12.48	23.94
농림축어업소득	없다	93.03	87.97	94.94
	있다	6.97	12.03	5.13
부업소득	없다	92.53	89.88	93.49
	있다	7.47	10.12	6.51
계		100.00	100.00	100.00

<표 7-1-4>로부터 임금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24,914천원, 17,760천원, 사업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6,464천원, 0원, 농림축어업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638천원, 0원, 부업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325천원, 0원이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평균 임금소득은 각각 3,218천원, 32,810천원, 사업소득은 각각 380천원, 8,679천원, 농림축어업소득은 각각 395천원, 726천원, 부업소득은 162천원, 384천원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가 모든 근로소득 항목들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4〉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임금소득	전체	17,760	24,914	819.02
	저소득	0	3,218	103.87
	일반	27,840	32,810	1,223.78
사업소득	전체	0	6,464	338.95
	저소득	0	380	98.77
	일반	0	8,679	510.21
농림축어업 소득	전체	0	638	67.37
	저소득	0	395	32.80
	일반	0	726	101.46
부업소득	전체	0	325	26.09
	저소득	0	162	16.90
	일반	0	384	38.85

주: 해당소득이 없는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가구의 임금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에 대한 분포형태는 <표 7-1-5>과 같다. 먼저 임금소득의 분포는 30,000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34.58%인 반면 5,000천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35.00%로 나타났다. 30,000천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모두 일반가구이고, 저소득가구의 74.21%가 5,000천원 미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간 임금소득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의 경우 주로 5,000천원 미만에 주로 분포하는데 각각 82.44%, 97.00%, 97.96%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분포차이가 확연하게 나지 않는다. 이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근로소득격차가 주로 임금소득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1-5〉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5,000 미만	35.00	74.21	20.72
	5,000 ~ 10,000 미만	5.58	12.71	2.99
	10,000 ~ 15,000 미만	5.94	7.52	5.37
	15,000 ~ 20,000 미만	6.41	4.54	7.09
	20,000 ~ 25,000 미만	6.70	0.93	8.80
	25,000 ~ 30,000 미만	5.79	0.09	7.86
	30,000 이상	34.58	0.00	47.17
	계	100.00	100.00	100.00
사업소득 (자영업 포함)	5,000 미만	82.44	94.43	78.07
	5,000 ~ 10,000 미만	2.77	2.65	2.82
	10,000 ~ 15,000 미만	2.35	1.79	2.56
	15,000 ~ 20,000 미만	1.93	0.92	2.30
	20,000 ~ 25,000 미만	2.03	0.22	2.70
	25,000 ~ 30,000 미만	1.31	0.00	1.78
	30,000 이상	7.17	0.09	9.77
	계	100.00	100.00	100.00
농림축어업소득	5,000 미만	97.00	97.09	96.96
	5,000 ~ 10,000 미만	1.35	2.49	0.94
	10,000 ~ 15,000 미만	0.62	0.38	0.71
	15,000 ~ 20,000 미만	0.23	0.04	0.30
	20,000 ~ 25,000 미만	0.29	0.00	0.39
	25,000 ~ 30,000 미만	0.16	0.00	0.22
	30,000 이상	0.35	0.00	0.48
	계	100.00	100.00	100.00
부업소득	5,000 미만	97.96	99.07	97.54
	5,000 ~ 10,000 미만	1.04	0.82	1.12
	10,000 ~ 15,000 미만	0.52	0.09	0.68
	15,000 ~ 20,000 미만	0.16	0.02	0.22
	20,000 ~ 25,000 미만	0.18	0.00	0.25
	25,000 ~ 30,000 미만	0.04	0.00	0.05
	30,000 이상	0.10	0.00	0.14
	계	100.00	100.00	100.00

3. 근로소득 외 소득

<표 7-1-6>을 통해 근로소득 외 소득유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소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산소득은 28.93%, 사회보험은 20.80%, 민간보험은 0.3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은 98.6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7.43%, 기타정부보조금은 47.64%, 기타소득은 96.99%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의 보유비율이 2차 조사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이유는 가구의 조사답례 폼지급¹⁹⁾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를 참고하고 보유비율 현황을 살펴본다면 근로소득 외 소득 중에는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기타정부보조금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전체가구의 경우 28.9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17.77%, 32.99%로 일반가구가 더 높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우 전체 가구에 대해서 각각 20.80%, 0.33%로 사회보험의 보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해서 저소득가구가 각각 21.82%, 0.06%, 일반가구가 각각 20.44%, 0.43%로 사회보험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민간보험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사회보험에 대한 보유비율이 미소한 차이지만 높게 나온 이유는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국민연금에 대한 보유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기 때문이다²⁰⁾.

그 외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의 경우 전체가구에 대해서 98.65%,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99.05%, 98.51%로 저소득가구가 더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경우 7.4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24.96%, 1.06%로 저소득가구의 4가구 중

19) 2차조사까지는 조사답례폼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차조사에는 포함해서 조사하였다.

20) <표 12-1-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과 <표 12-1-1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참조

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정부보조금의 경우 전체가구에 대해서 47.6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81.32%, 35.40%로 저소득가구의 5가구 중 4가구 이상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없다	71.07	82.23	67.01
	있다	28.93	17.77	32.99
사회보험	없다	79.20	78.18	79.56
	있다	20.80	21.82	20.44
민간보험	없다	99.67	99.94	99.57
	있다	0.33	0.06	0.4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없다	1.35	0.95	1.49
	있다	98.65	99.05	98.5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다	92.57	75.04	98.94
	있다	7.43	24.96	1.06
기타정부보조금	없다	52.36	18.68	64.60
	있다	47.64	81.32	35.40
기타소득	없다	3.01	2.64	3.14
	있다	96.99	97.36	96.86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차 조사의 경우 전체 25.00%, 저소득가구 16.50%, 일반가구 28.00%이다.

<표 7-1-7>에서는 전체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유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보유비율을 보이는 항목으로는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61.76%),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재산소득(21.43%), 민간보조금²¹⁾(2차 조사: 25.60%, 3차 조사: 96.08%)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71.14%), 노인교통비 보조금(61.5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24.96%), 공적연금(20.16%), 민간보조금(2차 조사:

21) 민간보조금의 경우 명절 세배돈과 같은 세부항목까지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차 조사의 경우 전체 25.00%, 저소득가구 16.50%, 일반가구 28.00%이다.

30.20%, 3차 조사: 96.11%) 항목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일반가구는 저소득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이 58.35%로 가장 높고, 그 외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재산소득(25.25%), 노인교통비 보조금(18.83%), 공적연금(16.82%), 민간보조금(2차 조사: 24.00%, 3차 조사: 96.08%)이 뒤를 이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이자 및 배당금의 보유비율이 21.43%로 가장 높으며, 사회보험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적연금의 보유비율이 17.71%로 가장 높다. 한편 기타정부보조금의 경우 노인교통비 보조금이 30.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1-7〉 세부 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없다	78.57	89.09	74.75
		있다	21.43	10.91	25.25
	임대료	없다	87.51	91.04	86.23
		있다	12.49	8.96	13.77
	기타	없다	99.74	99.90	99.68
		있다	0.26	0.10	0.32
사회보험	공적연금	없다	82.29	79.84	83.18
		있다	17.71	20.16	16.82
	고용보험	없다	96.94	98.54	96.36
		있다	3.06	1.46	3.64
	산재보험	없다	99.26	99.34	99.24
		있다	0.74	0.66	0.76
민간보험	개인연금	없다	99.67	99.94	99.57
		있다	0.33	0.06	0.4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없다	38.24	28.86	41.65
		있다	61.76	71.14	58.35
	민간보조금	없다	3.92	3.89	3.92
있다		96.08	96.11	96.0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다	92.57	75.04	98.94
		있다	7.43	24.96	1.06

〈표 7-1-7〉 계속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없다 있다	97.17 2.83	90.41 9.59	99.63 0.37
	경로연금	없다 있다	95.65 4.35	85.08 14.92	99.50 0.50
	노인교통비	없다 있다	69.79 30.21	38.46 61.54	81.17 18.83
	모부자가정수당	없다 있다	99.81 0.19	99.59 0.41	99.89 0.11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없다 있다	99.92 0.08	99.83 0.17	99.95 0.05
	영유아 보육비지원	없다 있다	93.08 6.92	95.69 4.31	92.13 7.87
	학비지원	없다 있다	96.89 3.11	94.27 5.73	97.84 2.16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없다 있다	98.59 1.41	96.53 3.47	99.34 0.66
	농어업 정부보조금	없다 있다	94.60 5.40	90.04 9.96	96.26 3.74
	기타	없다 있다	78.02 21.98	61.74 38.26	83.94 16.06
	기타소득 ²²⁾	증여·상속	없다 있다	98.91 1.09	99.20 0.80
경조금		없다 있다	94.42 5.58	96.50 3.50	93.67 6.33
보상금		없다 있다	98.26 1.74	98.67 1.33	98.11 1.89
사고보험금		없다 있다	93.83 6.17	96.95 3.05	92.70 7.30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계약금		없다 있다	88.54 11.46	95.36 4.64	86.06 13.94
기타 (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등)		없다 있다	4.15 95.85	3.22 96.78	4.49 95.51

22)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차 조사의 경우 전체 16.10%, 저소득가구 11.70%, 일반가구 17.60%이다.

<표 7-1-8>은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며, 재산소득, 사회보험 소득, 민간보험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항목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정부보조금 형태의 소득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외 소득 중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기타소득이 평균 3,176천원으로 가장 높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440천원, 재산소득이 평균 1,571천원, 사회보험이 평균 1,450천원으로 기타소득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정부보조금은 각각 평균 292천원, 507천원이며, 민간보험은 평균 16천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869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기타소득이 평균 1,34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평균 1,026천원으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는다. 기타 정부보조금은 평균 794천원, 사회보험은 평균 584천원, 재산소득은 평균 375천원이고, 민간보험은 평균 1천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기타소득이 평균 3,843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283천원, 재산소득이 평균 2,005천원, 사회보험이 평균 1,765천원으로 기타소득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는다. 그 외 기타정부보조금은 평균 40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평균 25천원이고, 민간보험은 평균 22천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8〉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전체	0	1,571	74.97
	저소득	0	375	26.04
	일반	0	2,005	112.83
사회보험	전체	0	1,450	64.14
	저소득	0	584	32.15
	일반	0	1,765	96.02
민간보험	전체	0	16	4.73
	저소득	0	1	0.56
	일반	0	22	7.21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전체	920	2,440	53.91
	저소득	1,820	2,869	59.19
	일반	620	2,283	76.4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전체	0	292	15.37
	저소득	0	1,026	41.84
	일반	0	25	5.22
기타 정부보조금	전체	0	507	13.75
	저소득	290	794	23.71
	일반	0	402	16.87
기타소득	전체	30	3,176	341.02
	저소득	30	1,342	181.38
	일반	30	3,843	511.93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기초보고서부터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1-9〉는 근로소득 외 소득들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기술통계로서 소득항목별 세부항목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가구에 대해서 재산소득은 임대료(평균 940천원), 이자 및 배당금(평균 619천원), 기타(평균 12천원)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보험은 공적연금(평균 1,257천원), 고용보험(평균 102천원), 산재보험(평균 90천원)의 순서로 큰 규모를 갖는다. 기타소득은 증여·상속(평균 943천원),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계약금(평균 777천원), 기타(평균 600천원), 경조금(평균 434천원), 보상금(평균 247천원), 사고보험금(평균 174천원)과 같은 순서로 큰 규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정부보조금과 가구원 외 부모

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을 살펴보면 기타정부보조금은 기타(평균 144천원), 영유아 보육료지원(평균 144천원), 노인교통비(평균 55천원), 학비지원(평균 51천원), 농어업 정부보조금(평균 43천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평균 31천원), 경로연금(평균 24천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평균 12천원) 등의 순서로 큰 규모를 갖으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평균 1,806천원)이 민간보조금(평균 633천원)보다 더 큰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세부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전체	0	619	34.50
		저소득	0	152	14.07
		일반	0	789	51.89
	임대료	전체	0	940	62.67
		저소득	0	219	20.67
		일반	0	1,202	94.73
	기타	전체	0	12	4.12
		저소득	0	4	2.60
		일반	0	14	6.15
사회보험	공적연금	전체	0	1,257	61.38
		저소득	0	479	26.98
		일반	0	1,540	92.25
	고용보험	전체	0	102	8.57
		저소득	0	50	9.00
		일반	0	121	12.24
	산재보험	전체	0	90	16.99
		저소득	0	55	15.30
		일반	0	103	24.75
민간보험	개인연금	전체	0	16	4.73
		저소득	0	1	0.56
		일반	0	22	7.21

〈표 7-1-9〉 계속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전체	400	1,806	47.74
		저소득	1,000	2,395	58.72
		일반	300	1,592	66.15
	민간보조금	전체	20	633	26.93
		저소득	2	474	22.71
		일반	2	691	39.42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전체	0	292	15.37
		저소득	0	1,026	41.84
		일반	0	25	5.22
기타정부 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이동부양수당	전체	0	31	2.86
		저소득	0	107	8.18
		일반	0	3	1.01
	경로연금	전체	0	24	1.51
		저소득	0	84	4.20
		일반	0	2	0.55
	노인교통비	전체	0	55	1.19
		저소득	130	115	2.16
		일반	0	34	1.28
	모부자가정수당	전체	0	1	0.35
		저소득	0	2	0.69
		일반	0	1	0.41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전체	0	1	0.54	
	저소득	0	3	1.59	
	일반	0	0	0.15	
영유아 보육료지원	전체	0	144	8.19	
	저소득	0	93	9.84	
	일반	0	163	11.44	
학비지원	전체	0	51	4.52	
	저소득	0	71	7.05	
	일반	0	43	5.89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전체	0	12	1.33	
	저소득	0	30	3.15	
	일반	0	6	1.25	
농어업 정부보조금	전체	0	43	3.57	
	저소득	0	59	4.52	
	일반	0	38	4.95	
기타	전체	0	144	6.29	
	저소득	0	231	7.61	
	일반	0	112	11.33	

〈표 7-1-9〉 계속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기타소득	증여·상속	전체	0	943	269.48
		저소득	0	118	37.09
		일반	0	1,244	410.82
	경조금	전체	0	434	33.09
		저소득	0	317	41.38
		일반	0	477	45.91
	보상금	전체	0	247	67.96
		저소득	0	302	127.38
		일반	0	228	81.13
	사고보험금	전체	0	174	22.62
		저소득	0	122	32.51
		일반	0	193	30.33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계약금	전체	0	777	78.83
		저소득	0	121	24.60
		일반	0	1,016	119.45
	기타	전체	3	600	173.32
		저소득	3	362	105.64
		일반	3	686	259.08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기초보고서부터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1-10>에서 근로소득 외 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재산소득은 1,500천원 이상이 16.41%, 그 미만이 83.59%로, 사회보험은 1,500천원 이상이 15.38%, 그 미만이 84.62%로, 민간보험은 500천원 이상이 0.32%, 그 미만이 99.68%이다. 또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은 2,000천원 이상이 24.68%, 그 미만이 75.32%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500천원 이상이 7.06%, 그 미만이 92.94%로, 기타 정부보조금은 500천원 이상이 23.41%, 그 미만이 76.59%이며, 기타소득은 2,000천원 이상이 14.56%, 그 미만이 85.44%이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1,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7.93%, 19.50%, 그 미만이 각각 92.07%, 80.50%로, 사회보험은 1,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12.57%, 16.39%, 그 미만이 각각 87.43%, 83.61%로, 민간보험은 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0.05%, 0.41%, 그 미만이

각각 99.95%, 99.59%이다. 그리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 보조금은 2,0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40.95%, 18.77%, 그 미만이 각각 59.05%, 81.23%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24.18%, 0.83%, 그 미만이 각각 75.82%, 99.17%로, 기타 정부보조금은 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40.22%, 17.29%, 그 미만이 각각 59.78%, 82.71%이며, 기타소득은 2,0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7.28%, 17.21%, 그 미만이 각각 92.72%, 82.79%이다.

〈표 7-1-10〉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500 미만	76.78	86.72	73.16
	500 ~ 1,000 미만	4.12	2.85	4.59
	1,000 ~ 1,500 미만	2.69	2.50	2.75
	1,500 ~ 2,000 미만	1.35	1.48	1.30
	2,000 ~ 2,500 미만	1.94	2.01	1.91
	2,500 ~ 3,000 미만	0.66	0.59	0.70
	3,000 이상	12.46	3.85	15.59
	계	100.00	100.00	100.00
사회보험	500 미만	79.63	78.51	80.04
	500 ~ 1,000 미만	0.67	0.99	0.56
	1,000 ~ 1,500 미만	4.32	7.93	3.01
	1,500 ~ 2,000 미만	2.54	3.75	2.09
	2,000 ~ 2,500 미만	2.15	2.31	2.09
	2,500 ~ 3,000 미만	0.86	0.86	0.86
	3,000 이상	9.83	5.65	11.35
	계	100.00	100.00	100.00
민간보험	500 미만	99.68	99.95	99.59
	500 ~ 1,000 미만	0.01	0.02	0.01
	1,000 ~ 1,500 미만	0.10	0.00	0.13
	1,500 ~ 2,000 미만	0.01	0.03	0.00
	2,000 ~ 2,500 미만	0.02	0.00	0.03
	2,500 ~ 3,000 미만	0.02	0.00	0.02
	3,000 이상	0.16	0.00	0.22
	계	100.00	100.00	100.00

〈표 7-1-10〉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원의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500 미만	51.94	38.61	56.79
	500 ~ 1,000 미만	11.22	8.78	12.11
	1,000 ~ 1,500 미만	8.85	7.56	9.32
	1,500 ~ 2,000 미만	3.31	4.10	3.01
	2,000 ~ 2,500 미만	4.37	5.82	3.85
	2,500 ~ 3,000 미만	1.64	2.80	1.22
	3,000 이상	18.67	32.33	13.70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500 미만	92.94	75.82	99.17
	500 ~ 1,000 미만	0.38	1.10	0.12
	1,000 ~ 1,500 미만	0.39	1.22	0.09
	1,500 ~ 2,000 미만	0.48	1.44	0.13
	2,000 ~ 2,500 미만	0.47	1.68	0.03
	2,500 ~ 3,000 미만	0.54	1.78	0.09
	3,000 이상	4.80	16.96	0.37
	계	100.00	100.00	100.00
기타 정부보조금	500 미만	76.59	59.78	82.71
	500 ~ 1,000 미만	7.20	15.16	4.31
	1,000 ~ 1,500 미만	4.61	8.58	3.16
	1,500 ~ 2,000 미만	3.83	4.86	3.45
	2,000 ~ 2,500 미만	1.98	3.09	1.57
	2,500 ~ 3,000 미만	1.34	2.35	0.97
	3,000 이상	4.45	6.18	3.83
	계	100.00	100.00	100.00
기타소득	500 미만	78.83	89.63	74.90
	500 ~ 1,000 미만	2.51	1.29	2.96
	1,000 ~ 1,500 미만	2.21	0.76	2.74
	1,500 ~ 2,000 미만	1.89	1.06	2.19
	2,000 ~ 2,500 미만	1.51	0.32	1.95
	2,500 ~ 3,000 미만	0.89	0.40	1.06
	3,000 이상	12.16	6.56	14.20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기초보고서부터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2절 지출

1. 총가계지출

지출부문은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활비항목들과 농림축산종사가정 혹은 어가인 경우 자가소비액, 가구부채에 대한 이자지출까지도 지출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든 항목들을 포괄해서 총가계지출이라 칭하기로 한다. 지출액은 농림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월평균 지출로 조사하였으며, 연간지출로 조사된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은 12로 나누어 월단위로 통일하였다.

월평균 총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 중위값은 2,450천원, 평균은 2,857천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중위값이 883천원이고, 평균이 1,132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중위값 3,033천원, 평균 3,485천원으로 평균으로만 비교하였을때 일반가구의 총가계지출이 저소득가구보다 3.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총가계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월간 총가계지출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450	2,857	26.10
저소득	883	1,132	16.09
일반	3,033	3,485	33.47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38.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22.93%로 3,000천원 이상 지출구간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4.61%에 불과하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지출규모별로 매우 상이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39.41%로 가장 높은 지출구간이며, 그 다음으로 1,000천원 이상 1,500천원 미만 지출가구와 500천원 미만 지출가구가 각각 20.62%와 16.98%이다.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3.5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51.30%로 가장 높은 지출구간이고, 다음으로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28.39%로 3,000천원 이상지출구간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중에서 5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전체의 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5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 지출가구도 1.65%에 지나지 않는다.

〈표 7-2-2〉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0 미만	4.61	16.98	0.11
500 ~ 1,000 미만	11.73	39.41	1.65
1,000 ~ 1,500 미만	10.74	20.62	7.14
1,500 ~ 2,000 미만	11.45	11.55	11.41
2,000 ~ 3,000 미만	22.93	7.93	28.39
3,000 이상	38.54	3.51	51.30
전체	100.00	100.00	100.00

2. 항목별 총생활비

지출항목별 생활비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전체가구의 비목별 생활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는 중위값이 570천원, 평균이 592천원으로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큰 지출규모를 보이고, 기타소비지출은 중위값이 380천원, 평균이 502천원, 교통통신비는 중위값이 310천원, 평균이 391천원, 교육비는 중위값이

0원, 평균이 239천원, 세금은 중위값이 30천원, 평균이 152천원, 사회보장부담금은 중위값이 110천원, 평균이 150천원, 송금보조(사적이전)은 중위값이 38천원, 평균이 138천원, 보건의료비는 중위값이 60천원, 평균이 124천원, 광열수도비는 중위값이 110천원, 평균이 119천원으로 이러한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월 100천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자는 거의 100천원에 육박하는 9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거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농축산어가의 자가 소비액과 같은 항목들은 월평균 100천원 미만의 지출규모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료품비는 외식비보다는 가정식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크고, 주거비는 월세보다는 주거관리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크며, 교육비의 경우는 공교육비보다는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송금보조의 경우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비동거가구원, 가구원이 아닌 자녀,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친지·자녀) 순으로 큰 지출규모를 갖는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지출항목별 지출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와 같은 항목들이 지출규모가 크며, 일반가구에서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송금보조와 같은 항목들의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비목들을 살펴보면, 세금의 경우 일반가구에서 평균 202천원을, 저소득가구에서 평균 1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13.47배의 차이를 보여 소득계층별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은 저소득가구에서 25천원, 일반가구에서 19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7.84배의 차이, 교양오락비는 저소득가구에서 19천원, 일반가구에서 117천원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6.16배의 차이, 송금보조는 저소득가구에서 30천원, 일반가구에서 177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5.90배(비동거가구원: 약 8.00배, 부모: 약 13.71배, 자녀: 약 1.64배, 기타: 약 3.33배)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 외 교육비(전체: 약 4.24배의 차이, 공교육비: 약 2.95배의 차이, 사교육비: 약 5.90배의 차이), 피복신발비(약 4.04배의 차이), 교통통신비(약 3.84배의 차이), 이자지출(약 3.39배의 차이), 가구가사용품비(약 3.32배의 차이), 기타소비

지출(약 3.24배의 차이), 식료품비(전체: 약 2.17배의 차이, 가정식비: 약 1.62배의 차이, 외식비: 약 4.10배의 차이)는 2~3배 사이의 차이를 보이고, 주거비(전체: 약 1.77배의 차이, 월세: 약 1.00배의 차이, 주거관리비: 약 2.78배의 차이), 보건의료비(약 1.56배의 차이), 광열수도비(약 1.43배의 차이)는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농축산업종사가 정의 자가소비액은 다른 항목들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즉, 일반가구에서 평균 5천 원을 자가소비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평균 8천 원을 소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서 자가소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가의 자가소비액은 금액도 미미할뿐더러 소득계층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지출항목별 월간 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합계	570	592	3.85
	식료품비			
	가정식비	340	359	2.14
	외식비	210	232	2.41
	합계	50	97	3.08
	주거비			
	월세	0	35	1.18
	주거관리비	30	62	2.90
	광열수도비	110	119	0.74
	가구가사용품비	20	75	1.81
	피복신발비	50	81	1.16
	보건의료비	60	124	2.64
	합계	0	239	4.93
	교육비			
	공교육비	0	97	2.91
	사교육비	0	143	3.65
	교양오락비	30	91	1.93
	교통통신비	310	391	5.85
	기타소비지출	380	502	6.61
	합계	38	138	3.92
비동거가구원	0	37	2.46	
송금보조				
(사적이전)	부모	0	72	2.46
자녀	0	21	1.61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	0	8	0.74	

〈표 7-2-3〉 계속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세금	30	152	6.08	
	사회보장부담금	110	150	2.01	
	자가소비액(농축산)	0	6	0.41	
	자가소비액(어업)	0	0	0.01	
	이자지출	0	99	3.49	
저소득	합계	280	318	3.39	
	식료품비	가정식비	230	247	2.26
		외식비	30	71	1.79
	합계	20	62	2.02	
	주거비	월세	0	35	1.55
		주거관리비	3	27	1.38
	광열수도비	80	90	0.81	
	가구가사용품비	10	28	1.24	
	피복신발비	20	25	0.61	
	보건의료비	40	88	2.94	
	합계	0	71	3.46	
	교육비	공교육비	0	40	2.54
		사교육비	0	31	1.95
	교양오락비	10	19	0.67	
	교통통신비	80	127	2.74	
	기타소비지출	120	190	5.61	
	합계	0	30	2.10	
	송금보조 (사적이전)	비동거가구원 부모	0	6	1.36
		자녀	0	7	1.01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	0	14	1.19
			0	3	0.44
	세금	1	15	1.39	
	사회보장부담금	0	25	0.92	
	자가소비액(농축산)	0	8	0.55	
	자가소비액(어업)	0	0	0.02	
	이자지출	0	36	2.57	

〈표 7-2-3〉 계속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일반	합계	660	691	4.64
	식료품비			
	가정식비	400	400	2.76
	외식비	270	291	3.04
	합계	60	110	4.58
	주거비			
	월세	0	35	1.63
	주거관리비	40	75	4.36
	광열수도비	120	129	0.99
	가구가사용품비	30	93	2.63
	피복신발비	80	101	1.63
	보건의료비	70	137	3.72
	합계	75	301	7.05
	교육비			
	공교육비	0	118	4.19
	사교육비	0	183	5.33
	교양오락비	60	117	2.81
	교통통신비	380	488	8.27
	기타소비지출	490	615	8.98
	합계	70	177	5.75
	송금보조			
	비동거가구원	0	48	3.67
	부모	30	96	3.64
	자녀	0	23	2.38
	기타(가정외인 부모·자녀·친)	0	10	1.10
	세금	70	202	9.11
	사회보장부담금	170	196	2.66
자가소비액(농축산)	0	5	0.57	
자가소비액(어업)	0	0	0.01	
이자지출	0	122	5.12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비중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평균 2,857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592천원의 지출규모를 갖는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7.5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소비지출로 502천원의 지출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13.70%, 교육비는 8.38%, 세금은 5.33%, 사회보장부담금은 5.26%, 송금보조는 4.82%, 보건의료비는 4.35%, 광열수도비는 4.16%,

이자지출은 3.47%, 주거비는 3.40%, 교양오락비는 3.18%, 피복신발비는 2.82%, 가구가사용품비는 2.64%, 자가소비액(농축산)은 0.21%의 지출비중을 보이며, 어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지출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는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은 지출비중을 보인다. 반면에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교통통신비, 송금보조, 교육비, 그리고 교양오락비는 저소득가구보다는 일반가구에서 더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소비지출, 피복신발비, 이자지출, 가구가사용품비, 그리고 자가소비액은 소득계층별 지출비중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 소득수준별 지출항목별 월간 지출구성

(단위: 천원, %)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592	20.72	318	28.07	691	19.84
주거비	97	3.40	62	5.50	110	3.15
광열수도비	119	4.16	90	7.94	129	3.71
가구가사용품비	75	2.64	28	2.50	93	2.66
피복신발비	81	2.82	25	2.22	101	2.90
보건의료비	124	4.35	88	7.78	137	3.94
교육비	239	8.38	71	6.24	301	8.63
교양오락비	91	3.18	19	1.69	117	3.36
교통통신비	391	13.70	127	11.19	488	14.00
기타소비지출	502	17.56	190	16.75	615	17.65
송금보조	138	4.82	30	2.68	177	5.08
세금	152	5.33	15	1.30	202	5.81
사회보장부담금	150	5.26	25	2.21	196	5.62
자가소비액(농축산)	6	0.21	8	0.75	5	0.15
자가소비액(어업)	0	0.00	0	0.00	0	0.00
이자지출	99	3.47	36	3.18	122	3.50
총가계지출	2,857	100.00	1,132	100.00	3,485	100.00

제3절 재산 및 부채

1. 가구의 재산

가구의 재산은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이며, 총재산액과 순재산액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총재산액은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한편, 순재산액은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명의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가. 총재산액과 순재산액

총재산액에는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을,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타의 경우 가격이 포함된다.

총재산액은 전체 가구 평균이 226,55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84,814천원, 일반가구가 278,535천원이다.

〈표 7-3-1〉 총재산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11,400	226,553	4,515.44
저소득	31,100	84,814	2,914.92
일반	153,500	278,535	6,540.13

다음으로 순재산액은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총재산액에서 금융기관대출 등의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이다. 총부채액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받은돈), 외상, 미리탄 계돈 등이 포함된다.

순재산액은 전체 가구 평균이 196,66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1,418천원, 일반가구가 242,361천원이다.

〈표 7-3-2〉 순재산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93,200	196,661	4,240.29
저소득	25,000	71,418	2,788.05
일반	129,600	242,361	6,151.68

나. 소유부동산

소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된다. 먼저 소유부동산 시가총액은 평균 66,317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24,673천원, 일반가구가 81,490천원이다.

〈표 7-3-3〉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66,317	2,807.90
저소득	0	24,673	1,699.81
일반	0	81,490	4,172.48

소유부동산을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3-4>와 같다. 먼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경우 평균은 25,97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5,460천원, 일반가구가 33,443천원이다. 주택외 건물의 경우 평균은 13,505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373천원, 일반가구가 18,290천원이다. 마지막으로 토지, 양식장, 기타부동산의 경우 평균은 26,842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8,840천 원, 일반가구가 29,757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7-3-4〉 소유형태별 소유부동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구분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체		0	25,970	1,340.55
	저소득		0	5,460	746.07
	일반		0	33,443	1,997.77
주택외 건물	전체		0	13,505	1,650.99
	저소득		0	373	125.74
	일반		0	18,290	2,516.04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전체		0	26,842	1,522.57
	저소득		0	18,840	1,524.46
	일반		0	29,757	2,190.42

주: 주택외 건물에는 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게), 창고, 상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다. 점유부동산

점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기타 권리금, 사업 설비, 공장기계 등이 포함된다. 먼저 점유부동산 시가총액은 평균 7,611천 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418천 원, 일반가구가 9,867천 원이다.

〈표 7-3-5〉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7,611	729.39
저소득	0	1,418	188.44
일반	0	9,867	1107.39

점유부동산을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3-6>과 같다. 먼저 전세보증금 준 것(가게, 사업장 등)의 경우 평균은 2,849천 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50천 원, 일반가구가 3,723천 원이다. 기타의 경우 평균은 4,762천 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968천 원, 일반가구가 6,144천 원이다.

〈표 7-3-6〉 점유형태별 점유부동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세보증금 준 것(가계, 사업장 등)	전체	0	2,849	579.05
	저소득	0	450	64.01
	일반	0	3,723	883.23
기타	전체	0	4,762	392.83
	저소득	0	968	158.80
	일반	0	6,144	592.81

주: 기타에는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이 포함된다.

라. 금융자산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이 포함된다. 먼저 금융자산 시가총액은 평균 31,624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124천원, 일반가구가 40,591천원이다.

〈표 7-3-7〉 총 금융자산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0	31,624	901.85
저소득	1,000	7,124	386.41
일반	15,700	40,591	1334.63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8>과 같다. 먼저 예금의 경우 평균은 13,802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5,231천원, 일반가구가 16,939천원이다. 나머지 금융자산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의 경우 10,237천원, 1,164천원, 13,557천원, 주식·채권의 경우 5,237천원, 187천원, 7,085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기 전 부은 계돈의 경우 133천원, 3천원, 180천원,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의 경우 2,216천원, 539천원, 2,830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8〉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예금	전체 2,800 저소득 800 일반 4,000	13,802 5,231 16,939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전체	200	10,237	372.91
	저소득	0	1,164	126.21
	일반	4,800	13,557	556.62
주식·채권	전체	0	5,237	367.89
	저소득	0	187	49.39
	일반	0	7,085	558.91
타기 전 부은 계돈	전체	0	133	18.45
	저소득	0	3	1.88
	일반	0	180	28.16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전체	0	2,216	218.89
	저소득	0	539	189.15
	일반	0	2,830	319.91

마. 농기계

농기계에는 동력 탈곡기, 경운기, 콤파인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농기계 가격에 대한 전체가구 평균은 264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57천원, 일반가구가 303천원이다.

〈표 7-3-9〉 총 농기계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64	42.18
저소득	0	157	24.41
일반	0	303	63.18

보유형태별 농기계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10>과 같다. 먼저 동력탈곡기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1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3천원, 일반가구가 약 13천원이다. 나머지 농기계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

치를 살펴보면, 경운기의 경우 28천원, 39천원, 24천원, 콤바인의 경우 40천원, 10천원, 51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랙터의 경우 115천원, 69천원, 132천원, 기타 농기계의 경우 71천원, 36천원, 8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0〉 보유형태별 농기계 가격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동력탈곡기	전체	0	10	5.17
	저소득	0	3	3.23
	일반	0	13	7.72
경운기	전체	0	28	2.53
	저소득	0	39	3.90
	일반	0	24	3.31
콤바인	전체	0	40	12.96
	저소득	0	10	4.98
	일반	0	51	19.63
트랙터	전체	0	115	21.33
	저소득	0	69	18.39
	일반	0	132	31.19
기타 농기계	전체	0	71	16.43
	저소득	0	36	9.05
	일반	0	84	24.65

바. 농축산물

농축산물에는 소, 돼지, 닭, 채고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전체가구 평균은 77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81천원, 일반가구가 879천원이다.

〈표 7-3-11〉 총 농축산물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773	146.76
저소득	0	481	82.49
일반	0	879	220.12

사육형태별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12>와 같다. 먼저 소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386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328천원, 일반가구가 407천원이다.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돼지의 경우 0.1천원, 0.1천원, 0.1천원, 닭의 경우 0.3천원, 0.4천원, 0.3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고농산물의 경우 18천원, 20천원, 17천원, 기타 농축산물의 경우 368천원, 133천원, 45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2> 사육형태별 농축산물 가격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소	전체	0	386	103.36
	저소득	0	328	70.38
	일반	0	407	153.73
돼지	전체	0	0.1	0.07
	저소득	0	0.1	0.04
	일반	0	0.1	0.10
닭	전체	0	0.3	0.10
	저소득	0	0.4	0.16
	일반	0	0.3	0.12
재고농산물	전체	0	18	4.08
	저소득	0	20	7.06
	일반	0	17	5.10
기타 농축산물	전체	0	368	102.64
	저소득	0	133	39.77
	일반	0	454	155.40

사.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기타 동산·부동산에는 위의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을 제외한 자동차, 회원권이나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자동차의 가격²³⁾은 평균 4,192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83천원, 일반가구가 5,434천원이다.

23) 1차 조사와는 달리 2,3차 조사에서는 기타 동산·부동산 중 자동차를 따로 파악하였다.

〈표 7-3-13〉 자동차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4,192	83.44
저소득	0	783	50.40
일반	3,000	5,434	118.38

다음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은 평균 2,688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505천원, 일반가구가 3,484천원이다.

〈표 7-3-14〉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688	153.20
저소득	0	505	82.97
일반	0	3,484	228.71

소유형태별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15>와 같다. 먼저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의 경우 평균은 24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1천원, 일반가구가 329천원이다. 나머지 기타 동산·부동산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의 경우 1,836천원, 411천원, 2,355천원,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의 경우 604천원, 89천원, 792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 경우 8천원, 5천원, 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5〉 소유형태별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전체	0
	저소득	0	1	0.89
	일반	0	329	106.28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전체	0	1,836	134.71
	저소득	0	411	81.77
	일반	0	2,355	200.78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전체	0	604	23.56
	저소득	0	89	13.03
	일반	0	792	34.85
기타	전체	0	8	3.02
	저소득	0	5	5.08
	일반	0	9	3.82

2. 가구의 부채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일반사채, 카드빚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부채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30,36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3,993천원, 일반가구가 36,290천원이다.

〈표 7-3-16〉 총 부채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000	30,361
저소득		0	13,993	806.64
일반		10,000	36,290	1198.48

부채액을 부채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3-17>과 같다. 먼저 금융기관대출의 경우 평균은 17,784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296천원, 일반가구가 21,583천원이다. 나머지 부채형태에 대해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일반사채의 경우 991천원, 1,278천원, 888천원, 카드빚의 경우 755천원, 860천원, 71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임대)보증금(받은돈)의 경우 9,434천

원, 3,331천원, 11,645천원, 외상·미리탄 계돈의 경우 26천원, 18천원, 28천원, 기타 부채의 경우 1,371천원, 1,209천원, 1,430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7〉 부채형태별 부채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금융기관대출 (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전체	0	17,784	631.38
	저소득	0	7,296	521.26
	일반	0	21,583	917.99
일반사채	전체	0	991	125.07
	저소득	0	1,278	237.50
	일반	0	888	148.05
카드빚	전체	0	755	75.98
	저소득	0	860	117.28
	일반	0	717	99.50
전세(임대)보증금(받은돈)	전체	0	9,434	425.19
	저소득	0	3,331	394.19
	일반	0	11,645	612.88
외상, 미리탄계돈	전체	0	26	5.63
	저소득	0	18	7.81
	일반	0	28	7.62
기타부채	전체	0	1,371	105.32
	저소득	0	1,209	145.12
	일반	0	1,430	142.82

주: 미리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하도록 하였다.

총 이자액은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 포함된다.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 2가지²⁴⁾를 살펴보면 다음 <표 7-3-18>과 같다. 먼저 총 이자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1,188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32천원, 일반가구가 1,463천원이다. 다음으로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51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225천원, 일반가구가 618천원이다.

24)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는 제8장 주거 부분에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7-3-18〉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총 이자액	전체	0	1,188	41.87
	저소득	0	432	30.79
	일반	0	1,463	61.35
기타이자액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제외)	전체	0	513	31.44
	저소득	0	225	20.54
	일반	0	618	46.74

제8장 주거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1. 주택시설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사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1-1>과 같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3.8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는 10.52%, 일반가구는 15.07%가 2007년 1년 사이에 이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1-1> 2007년 1년간 이사경험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3.85	10.52	15.07
없다	86.15	89.48	84.93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아파트가 41.08%,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2.11%, 일반단독주택이 17.26%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일반단독주택이 32.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7.51%, 일반아파트가 20.5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가 48.56%,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0.14%, 일반단독주택이 11.6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 일반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2〉 주택의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단독주택	17.26	32.75	11.62
	다가구용 단독주택	22.11	27.51	20.14
	다세대주택	8.80	7.70	9.20
	연립주택(빌라)	5.01	3.53	5.54
	일반아파트	41.08	20.53	48.56
	영구임대아파트	1.90	4.75	0.86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56	2.11	2.72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39	0.52	0.34
	오피스텔	0.56	0.21	0.69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0.04	0.03	0.04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0.11	0.29	0.05
	기타	0.20	0.08	0.2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거의 위치는 아래의 <표 8-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지상이 95.38%, 반지하층이 3.46%, 지하층이 0.86%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지상이 92.3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반지하층 5.47%, 지하층이 1.5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지상이 96.48%, 반지하층이 2.72%, 지하층이 0.60%로 나타났다.

〈표 8-1-3〉 주거 위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하층	0.86	1.58	0.60
	반지하층	3.46	5.47	2.72
	지상	95.38	92.38	96.48
	옥탑	0.25	0.54	0.14
	모름/무응답	0.05	0.03	0.06
	계	100.00	100.00	100.00

주거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54.35%로 가장 많고,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는 18.85%이다. 주거의 점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자가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44.85%, 57.81%로 가장 높다.

〈표 8-1-4〉 주거 점유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4.35	44.85	57.81
전세		18.85	15.96	19.90
보증부 월세		15.66	19.50	14.27
월세		2.29	4.27	1.56
기타		8.85	15.42	6.45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방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방의 개수가 3개인 가구가 53.56%로 가장 많고, 2개인 경우가 32.15%, 1개인 경우가 7.51% 순으로 나타났다. 방의 수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2개인 경우가 46.59%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3개인 경우가 59.57%로 가장 높다.

〈표 8-1-5〉 방의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		7.51	12.43	5.71
2개		32.15	46.59	26.89
3개		53.56	37.06	59.57
4개		5.88	3.05	6.91
5개 이상		0.73	0.73	0.75
모름/무응답		0.17	0.14	0.17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연건평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66㎡ 이상 99㎡ 미만에 살고 있는 가구가 36.79%로 가장 많고, 33㎡ 이상 66㎡ 미만인 경우가 29.38%, 99㎡ 이상 132㎡ 미만인 경우가 23.00%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연건평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33㎡ 이상 66㎡ 미만인 경우가 42.02%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66㎡ 이상 99㎡ 미만인 경우가 37.79%로 가장 높다.

〈표 8-1-6〉 주택의 연건평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3㎡ 미만	6.28	12.40	4.04
33~ 66㎡ 미만	29.38	42.02	24.77
66~ 99㎡ 미만	36.79	34.06	37.79
99~ 132㎡ 미만	23.00	9.75	27.83
132~ 165㎡ 미만	3.14	1.23	3.84
165㎡ 이상	1.36	0.47	1.68
모름/무응답	0.05	0.06	0.05
계	100.00	100.00	100.00

상·하수도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이 99.29%, 공동사용이 0.67%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이 98.9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공동사용이 0.92%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사용이 99.43%로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이 0.57%로 나타났다.

〈표 8-1-7〉 상·하수도 사용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	99.29	98.92	99.43
공동사용	0.67	0.92	0.57
없음	0.04	0.15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엌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입식이 98.59%, 단독사용-재래식이 0.81%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입식이 96.6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이 단독사용-재래식으로 2.49%였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사용-입식이 9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8> 부엌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입식	98.59	96.68	99.29
단독사용-재래식	0.81	2.49	0.19
공동사용-입식	0.35	0.31	0.36
공동사용-재래식	0.00	0.02	0.00
없음	0.23	0.43	0.16
모름/무응답	0.02	0.08	0.00
계	100.00	100.00	100.00

화장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9>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수세식이 94.79%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단독사용-재래식이 3.24%, 공동사용-수세식이 1.42%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수세식이 86.17%, 단독사용-재래식이 9.57%, 공동사용-수세식이 2.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사용-수세식이 97.92%, 공동사용-수세식이 0.94%, 단독사용-재래식이 0.93%였다.

<표 8-1-9> 화장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수세식	94.79	86.17	97.92
단독사용-재래식	3.24	9.57	0.93
공동사용-수세식	1.42	2.73	0.94
공동사용-재래식	0.47	1.33	0.16
없음	0.05	0.20	0.00
모름/무응답	0.04	0.00	0.05
계	100.00	100.00	100.0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95.06%로 가장 높은 가운데,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3.54%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86.21%,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이 2.47%였으며, 없음이 10.80%였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98.2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95.06	86.21	98.28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0.92	2.47	0.35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0.41	0.39	0.42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0.02	0.05	0.01
없음		3.54	10.80	0.89
모름/무응답		0.06	0.07	0.05
계		100.00	100.00	100.00

난방시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스보일러 63.06%, 기름보일러 18.79%, 중앙난방(지역난방) 11.92%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가스보일러 46.83%, 기름보일러 35.46%, 중앙난방(지역난방) 7.95% 순이었다. 일반가구는 가스보일러 68.97%, 중앙난방(지역난방) 13.37%, 기름보일러 12.73%로 나타났다.

<표 8-1-11> 난방시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탄 또는 재래식(빨감) 아궁이		0.51	1.41	0.18
연탄보일러		0.86	2.32	0.33
나무·석탄보일러		0.34	0.80	0.18
기름보일러		18.79	35.46	12.73
가스보일러		63.06	46.83	68.97
전기보일러		4.05	4.24	3.98
중앙난방(지역난방)		11.92	7.95	13.37
전기장판		0.32	0.86	0.12
기타		0.14	0.14	0.1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주택가격

자가 주택에 대한 시가총액은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4.35%)에서 평균은 188,475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97,488천원, 일반가구가 214,193천원이다.

〈표 8-1-12〉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 시가총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0,000	188,475	3,706.19
	저소득	55,000	97,488	3,902.48
	일반	130,000	214,193	4,891.23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4.35%)에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27.11%로 가장 많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가 24.80%, 3억원 이상인 경우가 18.30%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4.02%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가 29.37%로 가장 높다.

〈표 8-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2.16	8.16	0.46
	1천만~ 5천만원 미만	14.57	34.02	9.07
	5천만~ 1억원 미만	24.80	25.46	24.61
	1억~ 2억원 미만	27.11	19.14	29.37
	2억~ 3억원 미만	13.07	7.14	14.74
	3억원 이상	18.30	6.08	21.75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전세, 보증부월세, 그리고 기타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내는 가구 중에서 전세, 보증부월세 외의 주택점유형태를 가진 가구는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무상임대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전세, 보증부월세의 경우로만 나누어 살펴본다.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8.85%)에서 평균은 56,327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29,585천원, 일반가구가 64,109천원이다.

〈표 8-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0,000	56,327	1,555.44
	저소득	25,000	29,585	1,252.16
	일반	45,000	64,109	2,007.17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8.85%)에서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인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는 가구가 29.26%로 가장 많고,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7.89%, 5천만원 ~ 1억원 미만인 경우가 24.2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금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53.15%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는 3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8.50%로 가장 높다.

〈표 8-1-15〉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2.77	7.86	1.29
1천만~ 3천만원 미만		29.26	53.15	22.30
3천만~ 5천만원 미만		27.89	25.79	28.50
5천만~ 1억원 미만		24.23	10.93	28.10
1억원 이상		15.86	2.28	19.81
계		100.00	100.00	100.00

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66%)에서 평균은 13,058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542천원, 일반가구가 15,807천원이다.

〈표 8-1-16〉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0	13,058	458.58
	저소득	5,000	7,542	419.06
	일반	10,000	15,807	682.58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인 경우 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살펴보면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66%)에서 1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52.86%로 가장 많고,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31.52%이다.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72.45%, 4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17〉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52.86	72.45	43.10
	1천만~ 3천만원 미만	31.52	22.66	35.94
	3천만~ 5천만원 미만	12.13	4.89	15.73
	5천만~ 1억원 미만	3.49	0.00	5.24
	1억원 이상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 및 월세인 경우 월평균 주택의 월세액을 살펴보면 주택의 월세액은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7.95%)에서 평균은 188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41천원, 일반가구가 212천원이다.

〈표 8-1-18〉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액

(단위: 천원)

특성 \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70	188	4.09
저소득	120	141	4.33
일반	200	212	6.14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7.95%)에서 30만원 미만인 가구가 78.73%로 가장 많고, 30만원 ~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7.78%이다. 월평균 주택의 월세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87.64%, 7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1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만원 미만	78.73	87.64	73.87
30만~ 50만원 미만	17.78	11.54	21.20
50만~ 100만원 미만	3.12	0.83	4.37
100만원 이상	0.36	0.00	0.56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1. 주택 구조·성능

주택의 구조 및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응답(예)이 77.83%, 양호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이 22.15%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양호하다는 비율이 67.94%, 양호하지 않다는 비율이 32.06%로 나타났고, 일

반가구는 그 비율이 각각 81.43%와 18.54%였다.

〈표 8-2-1〉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7.83	67.94	81.43
	아니오	22.15	32.06	18.54
	모름/무응답	0.02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는 아래의 <표 8-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설비가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79.52%, 설비가 없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이 20.4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예 응답비율과 아니오 응답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각각 75.26%와 24.74%, 일반가구는 각각 81.07%와 18.90%였다.

〈표 8-2-2〉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9.52	75.26	81.07
	아니오	20.46	24.74	18.90
	모름/무응답	0.02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는 아래의 <표 8-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17.16%, 없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이 82.82%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17.95%와 82.05%, 일반 가구에서는 각각 16.87%와 83.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3〉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17.16	17.95	16.87
	아니오	82.82	82.05	83.10
	모름/무응답	0.02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96.06%,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은 3.92%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93.20%와 6.80%, 일반가구는 각각 97.09%와 2.88%로 나타났다.

〈표 8-2-4〉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6.06	93.20	97.09
	아니오	3.92	6.80	2.88
	모름/무응답	0.02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1. 주거비 부담

소득집단별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은 아래의 <표 8-3-1>과 같다. 1순위에서는 자기돈이 89.90%,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이 4.47%로 높았다. 2순위에서는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의 비율이 70.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돈 13.51%,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

부터 빌림 8.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1〉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특성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돈		89.90	13.51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82	6.86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81	8.85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4.47	70.42
사채		0.00	0.37
모름/무응답		0.00	0.00
계		100.00	100.00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1순위)은 아래의 <표 8-3-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기돈이 89.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은 4.47%,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82%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는 자기돈 87.05%,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6.18%,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은 3.80%로 나타났고, 일반 가구는 자기돈 90.81%,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4.68%,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07%였다.

〈표 8-3-2〉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89.90	87.05	90.81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82	6.18	3.07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81	2.97	1.44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4.47	3.80	4.68
사채		0.00	0.00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2순위)은 아래의 <표 8-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이 70.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돈

13.51%,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8.85%의 순으로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56.63%, 자기돈 17.46%,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4.38%이었고, 일반 가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73.14%, 자기돈 12.73%,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7.76%였다.

〈표 8-3-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13.51	17.46	12.73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6.86	11.41	5.96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8.85	14.38	7.76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70.42	56.63	73.14
	사채	0.37	0.12	0.4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에서 총 원금 상환액,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 대출상환액의 연체횟수의 경우 주택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n=1,805)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원금 상환액은 아래의 <표 8-3-4>와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2,197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638천원, 일반 가구는 2,506천원이었다.

〈표 8-3-4〉 총 원금 상환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197	268.92
	저소득	0	638	154.79
	일반	0	2,506	337.81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은 아래의 <표 8-3-5>와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29,768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16,038천원, 일반 가구는 32,493천원이었다.

〈표 8-3-5〉 갖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4,000	29,768	1137.40
저소득	5,000	16,038	1738.17
일반	15,000	32,493	1356.97

소득집단별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은 아래의 <표 8-3-6>과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1,843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886천원, 일반 가구는 2,033천원이었다.

〈표 8-3-6〉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50	1,843	77.15
저소득	0	886	82.68
일반	900	2,033	94.54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는 아래의 <표 8-3-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97.28%로 가장 높았으며, 2~3회가 1.65%, 4회 이상이 0.66% 등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27%, 2~3회가 2.31%, 4회 이상이 1.95%였고, 일반 가구는 연체한 적이 없다 97.67%, 2~3회가 1.52%, 4회 이상이 0.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체한 적이 없다	97.28	95.27	97.67
1회	0.41	0.48	0.40
2~3회	1.65	2.31	1.52
4회 이상	0.66	1.95	0.4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주거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4.41%, 일반가구는 0.8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8〉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1.80	4.41	0.85
	없다	98.20	95.59	99.15
계		100.00	100.00	100.00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9>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4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2.87%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4.51%로 가장 높았고, 일반가구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3.35%로 가장 높았다.

〈표 8-3-9〉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12.87	13.70	11.32
	대체로 만족	48.44	54.51	36.99
	그저 그렇다	31.71	25.53	43.35
	대체로 불만족	5.70	5.48	6.13
	매우 불만족	1.28	0.79	2.2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다.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8.18%, 일반가구의 경우 98.77%로 소득집단별로 이용경험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8-3-10〉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1.39	1.82	1.23
	없다	98.61	98.18	98.77
계		100.00	100.00	100.00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4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54.70%, 40.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1〉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9.38	15.09	6.31
	대체로 만족	45.69	54.70	40.84
	그저 그렇다	27.76	24.09	29.74
	대체로 불만족	16.90	6.12	22.71
	매우 불만족	0.26	0.00	0.4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4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9.36%, 일반가구의 경우 99.41%로 소득집단별로 이용경험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8-3-12〉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60	0.64	0.59
	없다	99.40	99.36	99.41
계		100.00	100.00	100.00

전세자금(용자)지원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 3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29.94%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4.70%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3〉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29.94	54.70	20.19
	대체로 만족	39.38	34.24	41.41
	그저 그렇다	7.34	0.00	10.23
	대체로 불만족	22.73	11.06	27.33
	매우 불만족	0.60	0.00	0.8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다.

저소득층 월세지원²⁵⁾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95%로 높게 나타났다.

25) 3차 조사에서는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표 8-3-1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05	0.14	0.01
	없다		99.95	99.86	99.99
계			100.00	100.00	100.00

저소득층 월세지원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표 8-3-15>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는 경우 4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1.12%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96%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5〉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21.12	25.97	0.00
	대체로 만족		10.89	0.00	58.23
	그저 그렇다		17.94	22.07	0.00
	대체로 불만족		42.24	51.96	0.00
	매우 불만족		7.81	0.00	41.7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76%로 높게 나타났다.

〈표 8-3-16〉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24	0.00	0.32
	없다		99.76	100.00	99.68
계			100.00	100.00	100.0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이용경험자의 경우 <표 8-3-17>과 같이 모두 일반가구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7>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	-	-
	대체로 만족	88.45	-	88.45
	그저 그렇다	10.02	-	10.02
	대체로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1.53	-	1.53
	모름/무응답	0.00	-	0.00
계		100.00	-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88%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다(0.12%)고 응답한 경우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긴급가계 생활자금이 포함되었다.

<표 8-3-18>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12	0.44	0.00
	없다	99.88	99.56	100.00
계		100.00	100.00	100.00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 7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12.11%로 나타났다.

〈표 8-3-18〉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0.00	0.00	-
	대체로 만족		78.84	81.25	-
	그저 그렇다		12.11	12.48	-
	대체로 불만족		6.09	6.27	-
	매우 불만족		2.96	0.00	100.00
	모름/무응답		0.00	0.00	-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다.

3. 주거관련 생활여건

주거관련 생활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3-19>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은 2.10%,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은 35.62%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각각 4.97%와 35.98%, 일반 가구는 각각 1.06%와 3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19〉 (돈이 없어서)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2.10	4.97	1.06
아니오			35.62	35.98	35.49
비해당			62.28	59.04	63.4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는 아래의 <표 8-3-20>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은 2.43%,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은 97.5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7.54%와 92.46%였고, 일

반 가구는 각각 0.57%와 9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0〉 (돈이 없어서)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2.43	7.54	0.57
	아니오	97.57	92.46	99.4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제9장 건강 및 의료

제1절 건강상태

건강 및 의료실태 중 건강상태를 물어본 결과는 <표 9-1-1>과 같다.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는 가구주는 59.92%,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는 가구주는 20.0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주 중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은 11.33%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중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은 44.31%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일반가구의 가구주보다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3.9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3.87	4.96	17.09
건강한 편이다		46.05	25.56	53.46
보통이다		19.95	25.07	18.1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7.02	36.01	10.16
건강이 아주 안 좋다		3.06	8.30	1.17
모름/무응답		0.04	0.09	0.02
계		100.00	100.00	100.00

<표 9-1-2>과 같이 전체 가구원 중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는 가구원은 70.43%였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는 가구원은 13.7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원은 8.82%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원은 33.93%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은 일반가구의 가구원보다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3.8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2〉 가구원의 건강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8.66	10.04	20.75
건강한 편이다		51.77	34.90	55.86
보통이다		15.77	20.91	14.5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1.53	27.42	7.67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20	6.51	1.15
모름/무응답		0.08	0.23	0.04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 주요병명은 <표 9-1-3>과 같다. 먼저 전체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38.40%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33.18%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59.94%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일반가구에 비해 약 1.81배 이상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의 주요병명으로는 기타질병²⁶⁾(8.08%), 고혈압(7.31%),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5.59%), 치아우식증(충치)(3.99%) 순이었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주요병명은 고혈압(14.41%),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11.35%), 기타질병(8.03%)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의 경우 기타질병(8.10%), 고혈압(5.59%), 치아우식증(충치)(4.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결핵, 결핵의 경우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앓고 있는 비율이 일반가

26) 기타질병의 경우 2차년도에는 전체가구원의 18.0%였으나, 3차년도에는 8.08%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차년도 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병명코드를 3차년도 조사표에 포함시켜 체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18. 빈혈”부터 “29. 만성치주질환” 코드까지 12개의 코드가 추가됨). 또한 3차년도부터는 고혈압, 저혈압 코드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기존코드 “6. 고혈압, 저혈압”→“6. 고혈압”, “32. 저혈압”으로 분리함).

구에 비해 15.50배 높았고, 백내장, 녹내장의 경우 5.75배, 우울증의 경우 4.65배, 암의 경우 2.00배 높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3.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3〉 주요병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61.60	40.06	66.82
암(위,간,폐,기관지 등)		0.82	1.38	0.69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5.59	11.35	4.19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		1.22	1.71	1.10
만성간염, 간경변		0.31	0.54	0.26
당뇨병		2.77	6.43	1.89
갑상선질환		0.66	0.57	0.68
고혈압		7.31	14.41	5.59
중풍,뇌혈관질환		0.91	2.34	0.57
심근경색증,협심증		0.85	1.89	0.60
폐결핵,결핵		0.07	0.31	0.02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기침)		0.22	0.40	0.17
천식		0.37	0.90	0.24
백내장,녹내장		0.15	0.46	0.08
만성중이염		0.15	0.15	0.15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0.40	0.72	0.33
골절,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0.58	0.80	0.53
골다공증		0.41	0.93	0.29
빈혈		0.17	0.31	0.13
고지혈증		0.27	0.39	0.24
치질(치핵)		0.15	0.14	0.16
만성부비동염(축농증)		0.14	0.21	0.13
기관지확장증		0.04	0.02	0.05
알레르기성 비염		0.90	0.68	0.96
턱관절질환		0.01	0.00	0.02
아토피성 피부염		0.64	0.58	0.66
요실금		0.01	0.07	0.00
우울증		0.35	0.93	0.20
치아우식증(충치)		3.99	2.34	4.39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0.57	0.32	0.63
기타질환		8.08	8.03	8.10
희귀난치성 질환		0.26	0.63	0.17
저혈압		0.01	0.02	0.01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가구주의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표 9-1-4>와 같다. 전체 가구 중 44.96%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70.90%로 일반가구(35.59%)에 비해 1.99배 많아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는 경우가 66.23%를 차지하였다.

〈표 9-1-4〉 가구주의 만성질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5.04	29.10	64.41
있음	계		44.96	70.90	35.59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68	3.57	5.08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25	1.10	1.30
	6개월 이상 투병·투약		39.03	66.23	29.21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표 9-1-5>와 같다. 가구원 중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32.47%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2.06배 이상 높았다(저소득가구 55.43%, 일반가구 26.89%).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비율 역시 저소득가구는 51.33%, 일반가구는 21.59%로 약 2.3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9-1-5〉 가구원의 만성질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7.54	44.57	73.11
있음	계		32.47	55.43	26.89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89	2.94	4.12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18	1.16	1.18
	6개월 이상 투병·투약		27.40	51.33	21.59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의료기관 이용현황 중 건강검진횟수는 <표 9-2-1>과 같다. 2007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35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30회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저소득가구와 마찬가지로 0.36회로 나타났다.

<표 9-2-1> 건강검진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35	0.01
	저소득	0.00	0.30	0.01
	일반	0.00	0.36	0.01

다음으로 외래진료횟수는 <표 9-2-2>와 같다. 2007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외래진료횟수는 평균 11.28회, 중위 5.00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진료횟수는 평균 18.37회, 중위 10.00회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진료횟수는 평균 9.56회, 중위 5.00회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외래진료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평균 약 2.00배 정도 외래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2> 외래진료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00	11.28	0.16
	저소득	10.00	18.37	0.41
	일반	5.00	9.56	0.17

다음으로 입원횟수는 <표 9-2-3>과 같다. 2007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3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9회, 일반가구의 경우 0.12회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입원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3〉 입원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13	0.01
	저소득	0.00	0.19	0.01
	일반	0.00	0.12	0.01

다음으로 입원일수는 <표 9-2-4>와 같다. 2007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6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3.87일,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62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입원일수가 약 2.3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4〉 입원일수

(단위: 일)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2.06	0.11
	저소득	0.00	3.87	0.29
	일반	0.00	1.62	0.12

다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표 9-2-5>와 같다. 전체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는 지병·질병(6.48%)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2.30%), 출산(1.2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도 지병·질병(10.58%)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2.75%), 출산(0.3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병·질병(5.48%), 사고(2.19%), 출산(1.43%) 순이었다.

〈표 9-2-5〉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89.81	86.20	90.68
지병·질병		6.48	10.58	5.48
사고		2.30	2.75	2.19
출산		1.22	0.34	1.43
건강검진		0.04	0.01	0.05
요양/휴식		0.05	0.04	0.05
성·정형/교정		0.08	0.05	0.08
기타		0.03	0.03	0.03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는 <표 9-2-6>과 같다. 전체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70.46%), 종합, 대학병원(8.55%), 한방 병·의원(1.5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69.80%), 종합, 대학병원(11.79%), 보건소(2.63%), 한방 병·의원(1.87%) 순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지역내 병·의원(70.62%), 종합, 대학병원(7.76%), 한방 병·의원(1.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18.57	13.75	19.73
종합, 대학병원		8.55	11.79	7.76
지역 내 병·의원		70.46	69.80	70.62
한방 병·의원		1.51	1.87	1.42
보건소		0.87	2.63	0.44
기타		0.05	0.15	0.03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²⁷⁾ 가입률은 <표 9-2-7>과 같다. 2007년 1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가입률은 65.1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평균 가입률은 31.48%, 일반가구의 경우 평균가입률은 77.34%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가입률이 약 2.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7> 민간의료보험 가입률²⁸⁾(가구 기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5.11	31.48	77.34
	미가입	34.89	68.52	22.66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표 9-2-8>과 같다. 2007년 1년간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2.51건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0.75건, 일반가구의 경우 3.15건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가입건수가 약 4.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²⁹⁾(가구 기준)

(단위: 건)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0	2.51	0.04
	저소득	0.00	0.75	0.03
	일반	3.00	3.15	0.05

27)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가입건수, 월평균 보험료는 표본가구 전체를 10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8) 가구원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처리하였다.

29) 3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민간의료보험 중 연금성격이 아닌 순수질병보장성격의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조사하였다. 한편 주계약자가 남편, 종계약자로 아내, 자녀들까지 보장받는 가족의료보험의 경우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입기한이 끝났으나 보장받는 보험의 경우 가입건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는 <표 9-2-9>와 같다. 2007년 12월 기준 가구당 평균 월평균보험료는 120.97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월평균보험료는 29.96천원, 일반가구의 경우 154.10천원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월평균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약 5.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9>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³⁰⁾(가구 기준)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0	120.97	2.05
	저소득	0.00	29.96	1.33
	일반	110.00	154.10	2.87

30) 2007년 12월 기준 한 가구가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월평균 보험료의 합을 조사하였다

제10장 가족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1.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0-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6.51%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23.89%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는 52.46%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6.51	23.89	52.46
	없다	53.44	76.11	47.48
	모름/무응답	0.05	0.00	0.07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33.76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평균 35.29회, 일반가구의 경우는 평균 33.58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00	33.76	0.99
	저소득	5.00	35.29	3.50
	일반	12.00	33.58	1.01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1-3>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87.70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평균 69.92회, 일반 가구의 경우는 평균 89.82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자주 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00	87.70	1.48
	저소득	36.00	69.92	3.26
	일반	48.00	89.82	1.64

2. 성역할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성역할에 관한 인식(8문항)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71.72%, 81.45%, 78.53%, 59.3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7.76%, 65.57%, 52.35%, 81.77%)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1-4〉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57	14.62	12.08	56.85	14.87	100.00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82	9.07	8.65	59.07	22.38	100.00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61	6.74	14.12	60.27	18.26	100.00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7.26	40.50	15.96	29.25	7.03	100.00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1.45	16.74	22.42	53.13	6.25	100.00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24.07	41.50	17.03	15.64	1.77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20.13	32.22	15.05	29.50	3.09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44.63	37.14	9.31	8.05	0.87	100.00

저소득가구의 성역할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1-5>와 같다.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77.02%, 84.91%, 79.52%, 49.09%, 60.8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

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57.41%, 44.16%, 76.60%)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1-5〉 성역할에 대한 인식(저소득가구)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26	11.40	10.31	62.53	14.49	100.00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73	6.17	8.20	63.46	21.45	100.00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31	5.98	14.20	62.53	16.99	100.00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3.75	30.23	16.92	38.44	10.65	100.00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0.80	14.70	23.65	54.04	6.81	100.00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21.10	36.31	17.05	22.43	3.12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19.74	24.42	14.88	35.06	5.90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45.71	30.89	11.14	10.84	1.42	100.00

일반가구의 성역할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1-6>과 같다.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70.32%, 80.55%, 78.27%, 58.9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51.39%, 67.72%, 54.51%, 83.13%)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1-6〉 성역할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단위: %)

특성	구분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65	15.47	12.55	55.35	14.97	100.00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84	9.84	8.78	57.92	22.63	100.00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69	6.94	14.10	59.67	18.60	100.00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8.18	43.21	15.71	26.83	6.07	100.00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1.62	17.28	22.10	52.89	6.10	100.00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24.85	42.87	17.03	13.84	1.41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20.23	34.28	15.10	28.04	2.35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44.34	38.79	8.82	7.32	0.73	100.00

제2절 가족문제

1. 가족 문제

가구구성원의 소득집단별로 가족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과 같다. 전체적(N=6,314)으로 가족 갈등 1순위 원인을 살펴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0.85%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26.25%), 가구원의 건강(20.85%)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N=1,685)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18.66%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41.43%)과 가구원의 건강(31.26%)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N=4,629)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가

48.92%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으로는 저소득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20.73%), 가구원의 건강(17.06%)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갈등 2순위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N=1,941)으로는 가구원의 건강(33.73%),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28.8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1순위			2순위		
		소득수준			소득수준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어려움 없다		40.85	18.66	48.92	6.91	2.19	10.51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26.25	41.43	20.73	28.88	34.27	24.78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3.45	3.42	3.46	8.55	7.04	9.70
자녀교육 혹은 행동		3.03	1.17	3.71	9.79	3.50	14.58
가구원의 건강		20.85	31.26	17.06	33.73	43.96	25.94
가구원의 알코올		0.44	0.34	0.47	1.35	1.13	1.51
가족 내 폭력		0.01	0.03	0.01	0.02	0.05	0.00
가구원간 관계		1.58	0.82	1.85	3.53	2.05	4.66
가구원의 가출		0.06	0.15	0.03	0.41	0.45	0.38
주거관련 문제		1.39	1.12	1.48	4.62	4.07	5.05
기타		2.09	1.61	2.27	2.20	1.28	2.90
모름/무응답		-	-	-	-	-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가족갈등 대처방법

가족갈등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2>와 같다. '우리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36.94%를, '가족 구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78.38%를 차지했다. 한편,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매우 그렇다(16.97%)는 비율이 전혀 그렇지 않다(1.41%)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와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

이 각각 69.45%, 8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 가족갈등 대처방법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우리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36.94	36.66	37.03	37.49	37.64	37.44	13.24	12.27	13.58	11.07	11.81	10.81	1.26	1.62	1.14
가족구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78.38	73.38	80.13	16.99	20.91	15.62	1.84	2.29	1.68	2.57	3.02	2.42	0.22	0.40	0.15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1.41	2.28	1.11	9.64	12.23	8.73	28.33	34.83	26.05	43.65	38.48	45.47	16.97	12.18	18.64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69.45	65.63	70.78	21.68	23.99	20.87	4.91	5.21	4.81	3.73	4.57	3.44	0.23	0.60	0.10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88.56	84.33	90.03	9.89	13.47	8.64	0.80	1.21	0.66	0.64	0.65	0.64	0.11	0.34	0.03

가족갈등 대처방법을 점수화시켜 살펴보면, 다음 <표 10-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N=6,224)는 5점 만점에 평균 4.35점, 저소득 가구는 4.27점, 일반 가구는 4.38점으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가족갈등 대처방법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3〉 가족갈등 대처방법(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4.35	4.27	4.38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계산한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 대처에 뛰어난 것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그렇다). ⊕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code를 reverse 시킨 후 연산하였음.

3. 가족의 생활 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1) 흡연량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애흡연정도와 흡연 경험 시기, 흡연기간, 현재 흡연여부, 흡연량, 금연계획, 금연시도, 간접흡연 여부, 간접흡연 노출시간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2-4> ~<표 10-2-12>와 같다.

1) 생애동안 피운 담배 총량

살아오는 동안의 피운 담배의 양에 관해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0-2-4>와 같다. 전체 가구원의 59.93%는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갑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2%였으며, 5갑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00%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 가구원의 흡연총량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10-2-4>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갑(100개비) 미만		1.02	0.68	1.11
5갑(100개피) 이상		39.00	39.20	38.94
피운적 없음		59.93	60.12	59.89
모름/무응답		0.05	-	0.06
계		100.00	100.00	100.00

2) 흡연 경험 시기

다음으로 흡연 경험 시기는 <표 10-2-5>와 같다.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를 만 연령으로 조사한 결과 43.25%가 10대 미만이었고, 54.43%가 20~30대라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원의 39.09%가 10대 미만이었다고 응답하였고 20~30대에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웠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55.81%였으며

일반가구에서는 10대 미만은 44.34%이고 20~30대라고 응답한 가구원은 54.08%로 나타났다.

〈표 10-2-5〉 흡연경험 시기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미만	43.25	39.09	44.34
	20~30대	54.43	55.81	54.08
	40~50대	1.96	4.44	1.31
	60대 이상	0.16	0.57	0.05
	모름/무응답	0.20	0.09	0.22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다.

3) 총 흡연기간

다음으로 총 흡연기간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2-6>과 같다. 흡연기간이 10년 이상이 15년 미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13.20%이며 1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11%를 차지하여 75.31%의 응답자가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80.60%)이 일반가구(73.93%)보다 6.67% 포인트 높았다.

〈표 10-2-6〉 총 흡연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1.81	1.23	1.96
	1년~5년 미만	6.07	4.64	6.44
	5년 이상~10년 미만	9.54	5.49	10.61
	10년 이상~15년 미만	13.20	7.38	14.72
	15년 이상	62.11	73.22	59.21
	모름/무응답	7.27	8.04	7.06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다.

4) 흡연경험자 중 현재 흡연 여부³¹⁾

흡연경험자중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2-7>과 같다. 전체 흡연경험자 중에서 현재에도 흡연자인 사람은 60.75%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54.99%, 일반가구원의 62.26%가 현재에도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7> 흡연경험자 중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피움	60.75	54.99	62.26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39.17	44.73	37.72
	모름/무응답	0.08	0.28	0.02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다.

5) 하루 평균 흡연량

다음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2-8>과 같다. 전체 흡연자의 38.44%가 반 갑 이내, 47.48%가 한 갑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하루에 두갑 이내라고 응답한 사람도 12.14%였으며, 두갑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0.67%로 극히 낮은 비율이었다. 소득계층별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10-2-8> 하루평균 흡연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반갑 이내	38.44	40.75	37.83
	한갑 이내	47.48	43.87	48.43
	두갑 이내	12.14	13.40	11.81
	두갑 이상	0.67	0.85	0.62
	모름/무응답	1.27	1.13	1.31
	계	100.00	100.00	100.00

31) 전체 가구원(비흡연자 포함) 중에서 현재 흡연자의 비중은 23.4%로 나타났다.

6) 하루이상 금연시도 여부

최근 1년 동안 하루(24시간)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한 결과는 <표 10-2-9>와 같다. 전체 흡연자 중에서 41.19%가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8.2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흡연자중 37.84%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흡연자는 41.9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60.79%가 하루이상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는 57.71%가 하루 이상 금연 시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0-2-9〉 하루이상 금연 시도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1.19	37.84	41.97
	없다	58.29	60.79	57.71
	모름/무응답	0.52	1.37	0.32
	계	100.00	100.00	100.00

7) 금연 계획

현재 흡연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금연 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10-2-10>과 같다.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42.42%가 금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흡연자는 46.98%로 가장 많았다. 1개월 안에 금연 계획이 있다는 흡연자는 3.66%이고 6개월 안에 금연계획이 있다는 흡연자는 5.49%에 그쳐서 전반적으로 금연에 관한 계획이 미약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10-2-10〉 향후 금연 계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3.66	1.87	4.08
6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5.49	3.92	5.86
6개월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계획 있음		46.98	44.46	47.56
현재로선 금연 계획 없음		42.42	47.02	41.35
모름/무응답		1.45	2.73	1.15
계		100.00	100.00	100.00

8) 간접흡연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정 또는 직장의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시간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0-2-11>과 같다. 담배연기에 노출된 경험이 없다 라는 응답이 전체의 55.43%를 차지하였다.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13%이고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12.58%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간접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3.80%이었으며 일반가구에서는 53.2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0-2-11〉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55.43	63.80	53.22
1시간 미만		28.13	23.67	29.31
1시간 이상		12.58	9.18	13.47
모름/무응답		3.86	3.35	4.00
계		100.00	100.00	100.00

9) 간접흡연 노출시간

실내에서의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담배연기 노출시간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0-2-12>와 같다. 하루 평균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1%로 가장 높았고 3시간이 20.02%, 1시간이 18.68% 그리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17.68%에 이르렀다.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의 담배연기 노출시간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10-2-12> 담배연기 노출 시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18.68	18.75	18.66
	2시간	30.21	29.05	30.44
	3시간	20.02	18.38	20.33
	4시간	7.38	6.62	7.52
	5시간 이상	17.68	16.54	17.90
	모름/무응답	6.03	10.66	5.15
	계	100.00	100.00	100.00

(2) 음주에 관한 생활습관

1) 평균음주 회수

2007년 1년 동안 평균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2-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주 1회 이하로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41.12%로 가장 높았다.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은 33.77%였으며 주 2~3회는 17.44%, 주 4회 이상 마시는 경우는 7.62%였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50.09%가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주 1회 이하(29.31%), 주 2~3회(10.98%), 주 4회 이상은 8.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경우는 29.26%가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주 1회 이하는 44.22%, 주 2~3

회는 19.14%, 주 4회 이상은 7.32%였다.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와 주 4회 이상은 저소득 가구가 높았고, 주1회 이하 와 주 2~3회는 일반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2-13〉 평균음주 회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 1회 이하		41.12	29.31	44.22
주 2~3회		17.44	10.98	19.14
주 4회 이상		7.62	8.77	7.32
전혀 마시지 않는다		33.77	50.09	29.26
모름/무응답		0.05	0.04	0.06
계		100.00	100.00	100.00

2) 평균 음주량

〈표 10-2-14〉는 술을 주 1회 이상 마시는 가구원들의 2007년 1년간 평균 음주량을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1~2잔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4잔 정도(23.41%), 7~9잔 정도(20.01%)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도 평균 1~2잔 정도(37.60%), 3~4잔 정도(21.94%), 7~9잔 정도(19.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원 역시 평균 1~2잔 정도(28.14%), 3~4잔 정도(23.68%), 7~9잔 정도(20.17%) 순이었다. 10잔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16.24%,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13.05%, 일반가구의 가구원 16.82%로 나타났다.

〈표 10-2-14〉 평균 음주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2잔 정도		29.61	37.60	28.14
3~4잔 정도		23.41	21.94	23.68
5~6잔 정도		10.72	8.14	11.19
7~9잔 정도		20.01	19.19	20.17
10잔 이상		16.24	13.05	16.82
모름/무응답		0.01	0.08	0.00
계		100.00	100.00	100.00

3) 평소의 일을 음주로 인해 하지 못한 횟수

평소 같았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2-1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88.07%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는 년 1~2회(8.06%), 월 1~2회(3.29%), 주 1~2회(0.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 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해 보아도, 양 집단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2-15> 평소의 일을 음주로 인해 하지 못한 횟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8.07	89.07	87.90
년 1-2회		8.06	5.96	8.44
월 1-2회		3.29	3.44	3.26
주 1-2회		0.56	1.45	0.39
모름/무응답		0.02	0.08	0.01
계		100.00	100.00	100.00

4) 음주에 대한 인식

음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2-1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98%, 없다는 72.39%였다. 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이 귀찮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44%, 없다는 86.96%이었다. 그리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응답은 11.42%, 없다는 83.95%로 나타났다.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2%, 없다는 93.15%였다. 저소득가 구에서는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23.11%, 없다는 72.47%,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5%, 없다는 86.73%였다.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응답은 13.88%, 없다는 81.70%로 나타났다.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 없다는 91.77%였다. 일반가구의 가구원 가운데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96%, 없다는 72.38%이었고,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는 8.36%, 없다는 87.00%,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비율은 10.96%, 없다는 84.38%로 나타났다.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비율은 1.93%, 없다는 93.41%였다. 양 집단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10-2-16〉 음주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아니오	무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22.98	72.39	4.63	23.11	72.47	4.42	22.96	72.38	4.66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8.44	86.96	4.60	8.85	86.73	4.42	8.36	87.00	4.64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11.42	83.95	4.63	13.88	81.70	4.42	10.96	84.38	4.66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2.22	93.15	4.63	3.81	91.77	4.42	1.93	93.41	4.66

(3) 출산 경험

2007년 1년간 출산경험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7>과 같다. 전체 가구원 중 1.75%만이 출산을 경험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0.6%, 일반가구 가구원의 2.05%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가구원의 출산경험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저소득 가구의 여성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온 결과로 예상된다.

〈표 10-2-17〉 출산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5	0.6	2.05
	없다	51.24	58.11	49.43
	비해당(남성)	47.01	41.29	48.52
	계	100.00	100.00	100.00

(4) 우울에 대한 인식

조사일 직전 1주일간 우울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1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표 10-2-18>은 각 문항 합계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1.41점, 저소득 가구는 1.66점, 일반 가구는 1.35점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이 좀 더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8〉 우울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41	1.66	1.35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 {1 :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 4 :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하고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 하위문항 ㉓, ㉔는 역점수 처리함.

(5)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가족구성원의 소득집단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9>와 같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09점, 저소득 가구 2.85점, 일반 가구 3.15점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0-2-19〉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3.09	2.85	3.15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 항상 그렇다)하고 총합의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 하위문항 ㉔, ㉕, ㉖, ㉗, ㉘는 역점수 처리함.

(6) 가족생활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만족도

1) 가족생활 만족도

조사 당시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표 10-2-20〉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족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47.1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7.25%,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6.34%였다. 반면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64%에 불과하였다(비해당 0.60%). 가족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보면, 일반가구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은 49.04%로 높고, 그 다음이 매우 만족(18.58%), 보통이 15.55%로 나타났다(비해당 0.26%). 일반가구 가구원 가운데 불만족하는 경우의 합은 4.67%이고, 만족하는 비율은 75.45%였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만족하는 비율이 39.86% 다음 보통이라는 응답이 23.69% 약간만족이 10.60%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 가운데 불만족하는 경우의 합은 12.83%이고 만족하는 비율이 58.31%였다. 전반적으로 일반가구의 가구원에 비해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들 간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0-2-20〉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6.34	7.85	18.58
만족		47.15	39.86	49.04
약간 만족		8.40	10.60	7.83
보통		17.25	23.69	15.55
약간 불만족		3.69	6.79	2.88
불만족		2.03	4.64	1.35
매우 불만족		0.64	1.40	0.44
비해당		0.60	1.89	0.26
모름/무응답		3.90	3.28	4.07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의 경우는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표 10-2-21>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혼 뿐만 아니라 별거도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이 30.40%, 매우 만족 14.56%, 보통 11.49%, 약간 만족 5.12%, 약간 불만족 2.86%, 불만족 1.98%, 매우 불만족 0.91%의 순이었다(비해당은 29.10%).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0.08%이고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75%이었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구분하여 보면, 일반 가구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은 만족 32.42%, 매우 만족 16.48%, 보통 11.26%, 약간 만족 5.04%, 약간 불만족이 2.74%, 불만족 1.70%, 매우 불만족 0.76%, 비해당 25.90%이었다. 일반가구의 가구원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3.94%로 절반이 넘었고, 반면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20%이었다. 저소득 가구 가구원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은 만족 22.66%, 보통은 12.39%, 매우 만족은 7.21%, 약간 만족 5.44%, 약간 불만족이 3.32%, 불만족은 3.06%, 매우 불만족 1.47%, 비해당은 41.32%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의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29.87%이며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4.53%였다. 전반적으로 배우자와

의 관계 만족도는 저소득 가구원이 일반 가구원보다 낮았다.

〈표 10-2-21〉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4.56	7.21	16.48
만족		30.40	22.66	32.42
약간 만족		5.12	5.44	5.04
보통		11.49	12.39	11.26
약간 불만족		2.86	3.32	2.74
불만족		1.98	3.06	1.70
매우 불만족		0.91	1.47	0.76
비해당		29.10	41.32	25.90
모름/무응답		3.58	3.13	3.70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3)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 당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표 10-2-22>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은 만족이 37.22%, 매우 만족이 22.08%, 보통이 8.31%, 약간 만족이 4.93%, 약간 불만족이 2.30%, 불만족 0.96%, 매우 불만족 0.38%, 비해당 20.23%이었다. 가구원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64.23%,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3.64%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만족이 36.31%, 매우 만족이 24.62%, 보통은 7.07%, 약간 만족 4.47%, 약간 불만족 1.59% 불만족 0.47%, 매우 불만족 0.14%이며 비해당 21.63%이었다. 일반가구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65.40%이고,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2.20%에 불과하였다. 저소득 가구는 만족이 40.67%, 보통이 13.02%, 매우 만족은 12.42%, 약간 만족 6.68% 약간 불만족 5.02%, 불만족 2.83%, 매우 불만족 1.28%이며 비해당은 14.9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9.77%이며 불만족 하는 비율의 합은 9.13%이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구

원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일반가구원의 만족도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0-2-22〉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2.08	12.42	24.62
만족		37.22	40.67	36.31
약간 만족		4.93	6.68	4.47
보통		8.31	13.02	7.07
약간 불만족		2.30	5.02	1.59
불만족		0.96	2.83	0.47
매우 불만족		0.38	1.28	0.14
비해당		20.23	14.91	21.63
모름/무응답		3.59	3.17	3.70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 : 자녀가 없는 경우

4)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 당시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는 <표 10-2-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이 32.81%, 매우 만족은 15.49%, 보통 7.86%, 약간 만족 5.35%, 약간 불만족 2.12%, 불만족 0.79%, 매우 불만족 0.17%, 비해당 31.85% 였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3.65%로 절반을 넘었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3.08%였다. 일반가구도 만족이 31.68%, 매우 만족은 16.68%, 보통 6.64%, 약간 만족 4.84%, 약간 불만족 1.89%, 불만족 0.53%, 매우 불만족 0.04%이었다. 일반가구의 가구원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3.20% 이고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2.46%, 비해당이 34.04%이었다. 저소득가구는 만족이 37.05%, 보통이 12.54%, 매우 만족 10.95%, 약간 만족 7.29%, 약간 불만족 2.98%, 불만족 1.81%, 매우 불만족 0.68%이었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5.29%이고 불만족하는 비율의 합은 5.47% 이고 비해당이 23.53%였다.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는 저소득 가

구의 만족하는 비율의 합(55.29%)이 일반가구의 만족 비율의 합(53.20%) 보다 약간 높았으며 불만족의 합의 비율 또한 저소득가구는 5.47%이며 일반가구는 2.46%로 나타났다.

〈표 10-2-23〉 자녀의 형제자매 관계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49	10.95	16.68
만족		32.81	37.05	31.68
약간 만족		5.35	7.29	4.84
보통		7.86	12.54	6.64
약간 불만족		2.12	2.98	1.89
불만족		0.79	1.81	0.53
매우 불만족		0.17	0.68	0.04
비해당		31.85	23.53	34.04
모름/무응답		3.56	3.17	3.66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제11장 생활실태·만족 및 자원활동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1.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가구구성원의 인터넷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62.27%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26.54%, 일반 가구는 71.67%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소득집단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1-1〉 인터넷 사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62.27	26.54	71.67
	아니다	37.70	73.46	28.29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가구구성원의 노동환경 유해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다(57.22%)라는 응답이 그렇다(8.66%)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1-2〉 노동환경 유해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34.09	51.82	29.42
	그렇다	8.66	7.61	8.94
	아니다	57.22	40.57	61.60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

가구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매우만족+대체로만족) 비율 (46.64%)이 불만족(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족) 비율 (24.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 (48.83%)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51.9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3> 건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6.42	16.92	3.66
대체로 불만족		17.93	31.91	14.25
그저 그렇다		24.65	20.93	25.63
대체로 만족		40.29	22.91	44.86
매우 만족		6.35	3.53	7.10
모름/무응답		4.36	3.80	4.51
계		100.00	100.00	100.00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족 비율(40.08%)이 만족 비율(2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불만족비율(65.84%)이 만족비율(6.61%)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반가구의 경우 불만족 비율(33.31%)이 만족비율(28.6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1-1-4>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9.34	22.45	5.89
대체로 불만족		30.74	43.39	27.42
그저 그렇다		31.50	23.76	33.53
대체로 만족		21.89	6.20	26.02
매우 만족		2.15	0.41	2.61
모름/무응답		4.38	3.80	4.53
계		100.00	100.00	100.00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57.21%)이 불만족 비율(1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19.07%, 일반 가구가 12.47%로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주거 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5〉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18	4.57	1.55
대체로 불만족		11.66	14.50	10.92
그저 그렇다		24.57	27.52	23.80
대체로 만족		49.24	43.32	50.80
매우 만족		7.97	6.28	8.42
모름/무응답		4.36	3.81	4.51
계		100.00	100.00	100.00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76.81%)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61.78%, 일반 가구의 80.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에서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6〉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81	2.25	0.43
대체로 불만족		3.55	7.30	2.56
그저 그렇다		14.44	24.80	11.72
대체로 만족		57.72	52.29	59.14
매우 만족		19.09	9.49	21.62
모름/무응답		4.39	3.86	4.53
계		100.00	100.00	100.00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4.23%로 가장 많았고, 만족 비율(41.11%)이 불만족 비율(22.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35.22%)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46.0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7>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5.72	11.71	4.14
대체로 불만족		16.66	23.51	14.86
그저 그렇다		32.08	38.49	30.40
대체로 만족		34.23	19.22	38.18
매우 만족		6.88	3.21	7.85
모름/무응답		4.42	3.87	4.57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9.4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58.20%, 일반 가구의 72.3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8>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73	1.63	0.50
대체로 불만족		4.27	8.69	3.11
그저 그렇다		21.18	27.66	19.48
대체로 만족		57.18	48.56	59.44
매우 만족		12.25	9.64	12.93
모름/무응답		4.39	3.83	4.54
계		100.00	100.00	100.00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33.83%), 만족한다(32.51%), 불만족한다(29.26%) 순으로 응답했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39.28%)이 만족 비율(20.11%)보다 높고,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35.78%)이 불만족 비율(26.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1-9>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5.40	9.94	4.20
대체로 불만족		23.86	29.34	22.42
그저 그렇다		33.83	36.80	33.04
대체로 만족		28.13	17.63	30.90
매우 만족		4.38	2.48	4.88
모름/무응답		4.40	3.81	4.55
계		100.00	100.00	100.00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9%로 가장 많았고, 만족 비율(48.52%)이 불만족 비율(9.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26.09%)이 불만족 비율(20.06%)보다 높고,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54.42%)이 불만족 비율(6.5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11-1-10>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89	2.73	0.41
대체로 불만족		8.44	17.33	6.09
그저 그렇다		37.68	49.88	34.47
대체로 만족		45.49	24.31	51.06
매우 만족		3.03	1.78	3.36
모름/무응답		4.47	3.97	4.61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89.43%, 하고 있다는 비율은 10.5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12.13%)가 저소득 가구(4.37%)에 비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0.51	4.37	12.13
	아니다	89.43	95.63	87.80
	모름/무응답	0.06	0.00	0.08
	계	100.00	100.00	100.00

연간 기부액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258.55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99.64천원, 일반 가구에서 273.64천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2> 연간 기부액수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60.00	258.55	23.26
	저소득	0.00	99.64	31.08
	일반	60.00	273.64	25.88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14.47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평균 19.29회, 일반 가구는 평균 14.01회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의 평균 자원봉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0	14.47	1.57
	저소득	6.00	19.29	2.95
	일반	3.00	14.01	1.73

제3절 가구의 생활여건, 식생활, 주관적 최저생계비

1. 가구의 생활여건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5.62%, 경험했다는 비율은 2.10%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4.97%)가 일반 가구(1.06%)에 비해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비율이 약 4.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10	4.97	1.06
	없다	35.62	35.98	35.49
	비해당	62.28	59.04	63.45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7년 1년 내내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임.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3.10%, 경험했다는 비율은 6.90%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11.78%)가 일반 가구(5.12%)에 비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비율이 약 2.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90	11.78
없다		93.10	88.22	94.88
계		100.00	100.00	100.00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9.26%, 경험했다는 비율은 0.74%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1.92%)가 일반 가구(0.31%)에 비해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비율이 약 6.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74	1.92
없다		99.26	98.08	99.69
계		100.00	100.00	100.00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8.13%, 경험했다는 비율은 0.40%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0.65%)가 일반 가구(0.30%)에 비해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비율이 약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0	0.65	0.30
없다		38.13	23.10	43.60
비해당 ³²⁾		61.48	76.25	56.10
계		100.00	100.00	100.00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7.57%, 경험했다는 비율은 2.43%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7.54%)가 일반 가구(0.57%)에 비해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비율이 약 13.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43	7.54	0.57
없다		97.57	92.46	99.43
계		100.00	100.00	100.00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7.35%, 경험했다는 비율은 2.65%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6.55%)가 일반 가구(1.23%)에 비해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비율이 약 5.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65	6.55	1.23
없다		97.35	93.45	98.77
계		100.00	100.00	100.00

32)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는 비해당임.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3.86%, 경험했다는 비율은 6.14%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9.97%)가 일반 가구(4.74%)에 비해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비율이 약 2.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14	9.97	4.74
없다		93.86	90.03	95.26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1.55%, 경험했다는 비율은 2.03%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3.39%)가 일반 가구(1.54%)에 비해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비율이 약 2.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03	3.39	1.54
없다		91.55	75.12	97.53
비해당 ³³⁾		6.42	21.49	0.93
계		100.00	100.00	100.00

33) 2007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는 가구는 비해당임.

2. 가구의 식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자주 그렇다+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4.3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12.99%)가 일반 가구(1.15%)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비율이 약 11.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9>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44	1.49	0.06
	가끔 그렇다	3.87	11.50	1.09
	전혀 그렇지 않다	95.68	86.98	98.85
	모름/거부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자주 그렇다+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12.0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31.54%)가 일반 가구(4.97%)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비율이 약 6.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2.54	8.04	0.53
	가끔 그렇다	9.53	23.50	4.44
	전혀 그렇지 않다	87.93	68.43	95.03
	모름/거부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는 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5.15%)가 일반 가구(0.40%)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비율이 약 12.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7	5.15	0.40
없다		98.25	94.68	99.55
모름/거부		0.08	0.17	0.05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경험했다는 비율이 42.9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거의 매월” 경험했다는 비율이 저소득 가구(29.81%)가 일반 가구(21.60%)에 비해 약 1.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월		28.37	29.81	21.60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42.91	44.24	36.69
1~2개월 동안		28.72	25.95	41.71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는 비율이 1.6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4.23%)가 일반 가구(0.73%)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비율이 약 5.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63	4.23	0.73
	아니다	98.36	95.74	99.27
	모름/거부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는 비율이 0.9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2.78%)가 일반 가구(0.27%)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비율이 약 10.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94	2.78	0.27
	아니다	99.03	97.19	99.70
	모름/거부	0.03	0.03	0.03
	계	100.00	100.00	100.00

3. 주관적 최저생계비

다음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표 11-3-15>와 같다. 2007년 1년 동안 1인가구 기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평균 991.47천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636.60천원, 일반가구의 경우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1,160.79천원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약 1.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5〉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894.43	991.47	6.68
	저소득	577.35	636.60	4.25
	일반	1,039.23	1,160.79	4.93

주: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2007년 월평균 기준)?”라는 문항을 통해 응답한 값이다. 제시된 평균값은 1인 가구 기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값(주관적 최저생계비/√가구원수)한 값이다.

제 Ⅲ 부

복지욕구 및 수급실태

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1. 공적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의 가입여부를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 12-1-1>과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비해당³⁴⁾이 53.91%, 가입이 32.41%, 수급이 5.87%, 수급하면서 가입이 0.10%, 미가입³⁵⁾이 7.71%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비해당비율(71.28%)이 일반가구(49.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입율(12.57%)은 일반가구(37.2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급률은 저소득가구 8.91%, 일반가구 5.14%로 저소득가구의 수급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은 일반가구가 7.82%, 저소득가구가 7.25%로 나타났다.

<표 12-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3.91	71.28	49.71
수급		5.87	8.91	5.14
가입		32.41	12.57	37.21
수급하면서 가입		0.10	0.00	0.12
미가입		7.71	7.25	7.82
계		100.00	100.00	100.00

34) 만 18세 미만, 만6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무소득 배우자,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35) 특수직역연금은 입직과 동시에 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일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같은 경우를 미가입으로 본다.

앞의 <표 12-1-1>에서 공적연금 가입(가입+수급하면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묻은 결과는 다음 <표 12-1-2>와 같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90.79%), 공무원연금(7.69%), 사학연금(0.92%), 군인연금(0.49%), 별정직우체국 직원연금(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저소득가구(99.84%)가 일반가구(9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은 저소득가구에서는 가입비율이 잡히지 않았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공무원연금 8.30%, 사학연금 1.00%, 군인연금 0.53%,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12%로 나타나 특수지역연금의 가입비율은 일반가구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90.79	99.84	90.06
공무원연금	7.69	0.16	8.30
사학연금	0.92	0.00	1.00
군인연금	0.49	0.00	0.53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11	0.00	0.12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의 종별 가입실태는 다음 <표 12-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업장가입자(56.64%)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역가입자(42.7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임의가입(0.46%)도 소수이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해 볼 때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의 비중이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78.04%)가 사업장가입자(20.60%)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사업장가입자(59.9%)가 지역가입자(39.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은 저소득가구(1.16%)가 일반가구(0.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은 저소득가구 0.20%, 일반가구 0.10%로 나타났다.

〈표 12-1-3〉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업장가입	56.64	20.60	59.90
	지역가입	42.79	78.04	39.60
	임의가입	0.46	1.16	0.40
	임의계속가입	0.11	0.20	0.10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여부를 설문한 결과는 아래 <표 12-1-4>와 같다.³⁶⁾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71.74%)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28.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미납률이 58.88%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가구는 25.48%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하고 있다	71.74	41.12	74.52
	납부하지 않고 있다	28.26	58.88	25.48
	계	100.00	100.00	100.00

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납부예외의 경우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실제로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해 보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해당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게 되는 납부예외가 전체적으로 86.46%를 차지해 보험료 미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소득계층별로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납부기한을 모르고 지나쳐버려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12-1-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예외		86.46	86.13	86.52
실제 보험료 미납		13.54	13.87	13.48
계		100.00	100.00	100.00

이 같은 납부예외를 사유별로 구분해보면 아래 <표 12-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실직, 휴직, 사업중단(55.0%)의 사유가 절반 이상이었고, 생활곤란(43.03%)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업(1.05%), 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기타사유(0.30%), 3개월 이상 입원(0.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서와 비중은 소득계층별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저소득가구의 경우 실직, 휴직, 사업중단(51.91%)이 일반가구(55.64%)에 비해 낮은 반면, 생활곤란에 따른 납부예외 비율은 저소득가구(46.90%)가 일반가구(42.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6〉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직, 휴직, 사업중단		55.00	51.91	55.64
생활곤란		43.04	46.90	42.23
학업(재학)		1.05	0.44	1.18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0.30	0.00	0.36
3개월 이상 입원		0.61	0.75	0.59
계		100.00	100.00	100.00

납부예외 기간은 전체적으로 85.60%가 10~12개월로 나타나 납부예외자 대부분이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7〉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6.83	5.95	7.01
	4 ~ 6개월	4.23	3.85	4.30
	7 ~ 9개월	3.34	5.03	2.99
	10 ~ 12개월	85.60	85.17	85.69
	계	100.00	100.00	100.00

납부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미납한 미납사유는 아래 <표 12-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79.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17.45%)과 불필요(0.9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거의 대부분(96.14%)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76.03%)은 저소득가구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21.24%), 불필요(0.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8〉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79.62	96.14	76.03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17.45	0.00	21.24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어서		0.94	3.03	0.49
계		2.00	0.84	2.25

그리고 이 같은 실제 보험료 미납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장기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납기간이 10~12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가구 84.02%, 저소득가구 81.40%, 일반가구 84.60%로 나타났다.

〈표 12-1-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6.56	8.18	6.20
	4 ~ 6개월	6.64	5.20	6.96
	7 ~ 9개월	2.78	5.22	2.24
	10 ~ 12개월	84.02	81.40	84.60
	계	100.00	100.00	100.00

앞선 <표 12-1-1>에서 파악된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미가입 사유는 아래 <표 12-1-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54.0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가입 불필요(33.63%),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8.23%), 기타(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역시 경제적 부담(85.1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가입 불필요(10.29%), 불신(2.5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가구에서는 경제적 부담(47.12%)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입 불필요(38.88%)와 불신(9.51%)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0〉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4.08	85.10	47.1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8.23	2.57	9.51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3.63	10.29	38.88
기타		1.39	0.21	0.21
모름/무응답		2.70	1.80	2.90
	계	100.00	100.00	100.00

2. 공적연금 수급실태

공적연금 수급실태는 다음 <표 12-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에서 수급 가구는 8.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수급비율(12.14%)은 일반가구(7.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1> 공적연금 수급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8.48	12.14	7.51
	비수급	91.52	87.86	92.49
	계	100.00	100.00	100.00

공적연금 종류별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1-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70.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연금(15.96%), 보훈연금(6.96%), 군인연금(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보훈연금, 공무원연금과 보훈연금을 같이 수급하는 경우도 극히 낮은 비중이나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국민연금(88.25%), 공무원 연금(2.10%), 군인연금(0.43%), 보훈연금(7.72%)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는 국민연금(63.41%), 공무원연금(21.86%), 사학연금(2.71%), 군인연금(3.01%), 보훈연금(6.64%)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7) <표 12-1-11>에서 공적연금 수급률 8.48%는 <표 12-1-1>의 5.97%(수급 5.87%, 수급하면서 가입 0.10%)과 차이가 난다. <표 12-1-1>의 수치는 가구용 조사표를, <표 12-1-11> 수치는 가구원용 조사표를 각각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가구용 조사표의 경우 대표가구원이 주로 응답을 한 반면, 가구원용 조사표는 당사자가 직접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일련의 사유로 인해 미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조사표에서 각각의 무응답 비율이 다른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표 12-1-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70.82	88.25	63.41
	공무원연금	15.96	2.10	21.86
	사학연금	1.90	0.00	2.71
	군인연금	2.24	0.43	3.01
	별정직 우체국연금	0.01	0.00	0.02
	보훈연금	6.96	7.72	6.6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0.30	0.00	0.42
	국민연금, 군인연금	0.53	0.00	0.76
	국민연금, 보훈연금	1.16	1.51	1.01
	공무원연금, 보훈연금	0.12	0.00	0.17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12-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노령연금(88.19%)의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유족연금(9.45%)과 장애연금(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노령연금 84.51%, 유족연금 11.65%, 장애연금 2.45%, 반환일시금 0.15%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는 노령연금 90.32%, 유족연금 8.17%, 장애연금 1.26%로 나타났다.

〈표 12-1-1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령연금	88.19	84.51	90.32
	장애연금	1.70	2.45	1.26
	유족연금	9.45	11.65	8.17
	분할연금	0.00	0.00	0.00
	반환일시금	0.06	0.15	0.00
	모름/무응답	0.61	1.23	0.25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의 연간 수급 개월 수는 다음 <표 12-1-14>와 같다. 전체적으로 10~12개월이 91.1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3개월과 4~6개월, 7~9개월

이 각각 3.56%, 2.85%, 2.49%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수급기간이 10~12개월인 경우가 저소득가구 95.20%, 일반가구 88.72%로 나타났다.

〈표 12-1-14〉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3.56	1.13	4.98
	4 ~ 6개월	2.85	2.17	3.24
	7 ~ 9개월	2.49	1.50	3.06
	10 ~ 12개월	91.11	95.20	88.72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일시금 평균 수급액은 <표 12-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일시금 2,351천원, 연금이 2,245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일시금이 1,603천원, 연금이 1,78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이 2,597천원, 연금은 2,516천원으로 나타나 일시금과 연금 수급액은 일반가구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15〉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2,351	1,603	2,597
	연금	2,245	1,781	2,516

보훈연금 급여 수급자의 연간 수급 개월 수는 아래 <표 12-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97.89%가 10~12개월의 장기수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93.70%, 일반가구는 100.00%로 나타났다.

〈표 12-1-16〉 보훈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1.26	3.77	0.00
	4 ~ 6개월	0.84	2.53	0.00
	7 ~ 9개월	0.00	0.00	0.00
	10 ~ 12개월	97.89	93.7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보훈연금 연평균 수급액은 다음 <표 12-1-17>과 같다. 전체가구 평균 일시금은 70,000천원, 연금은 8,730천원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70,000천원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가구의 경우 일시금 수급 가구가 없었다. 평균 연금 수급액은 일반가구(10,741천원)가 저소득가구(4,724천원)보다 약 2.27배 높게 나타났다.

〈표 12-1-17〉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70,000	70,000	-
	연금	8,730	4,724	10,741

특수지역연금 수급자의 급여종류별 수급현황은 다음 <표 12-1-18>과 같다. 특수지역연금은 2개 이상의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급여(1순위)와 작은 급여(2순위)를 같이 조사했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급여는 전체가구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90.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족급여가 8.18%, 재해보상급여가 1.18%로 나타났다. 2순위는 모두 퇴직수당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1순위로 응답한 급여종류는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모두에서 퇴직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족급여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퇴직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8〉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퇴직급여	90.63	75.14	91.21
		유족급여	8.18	24.86	7.56
		재해보상급여	1.18	0.00	1.23
		퇴직수당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순위		퇴직수당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이 같은 특수직역연금 급여의 연간 수급 개월 수를 살펴보면, <표 12-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97.41%가 10~12개월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한 가구는 모두 10~12개월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97.31%가 10~12개월의 장기수급으로 나타났다.

〈표 12-1-19〉 특수직역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0.15	0.00	0.15
	4 ~ 6개월	2.45	0.00	2.54
	7 ~ 9개월	0.00	0.00	0.00
	10 ~ 12개월	97.41	100.00	97.31
	계	100.00	100.00	100.00

특수직역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다음 <표 12-1-20>과 같다. 전체가구의 연평균 일시금 수급액은 818천원, 연금은 20,988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연평균 일시금 수급액은 95천원, 연금은 8,971천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일시금으로 845천원을, 연금으로 21,434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20〉 특수지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금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연금		818	95	845
		20,988	8,971	21,434

제2절 건강보험 가입 실태

건강보험 가입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2-1>과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93.12%, 미가입자가 6.88%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가입률(76.53%)이 일반가구(99.1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종류별로 보면 64.23%는 직장가입자, 35.77%는 지역가입자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지역가입자 비율이 저소득가구에서 48.88%로 일반가구 3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가구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1종(60.81%), 의료급여 2종(31.21%)을 수급하고 있다.

〈표 12-2-1〉 건강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93.12	76.53	99.16
	직장	64.23	51.12	67.90
	지역	35.77	48.88	32.10
	소계	100.00	100.00	100.00
미가입		6.88	23.47	0.84
	의료급여 1종	60.81	65.33	10.63
	의료급여 2종	31.21	30.72	36.58
	보훈병원 무료진료	7.93	3.89	52.80
	기타	0.05	0.05	0.00
	소계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앞의 <표 12-2-1>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 가구의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경험상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 <표 12-2-2>와 같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73.70%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본인 부담대비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12.29%), 일반 환자와의 차별대우(10.06%),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3.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2-2-2>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73.70
혜택범위가 좁다(본인부담이 많다)		12.29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다		3.58
차별대우를 받는다		10.06
기타		0.38
계		100.00

건강보험료 납부실태는 다음 <표 12-2-3>과 같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4.01%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일반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있는 가구는 3.30%인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6.50%로 나타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가구에서 미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2-3>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미납경험 있음		4.01	6.50	3.30
미납경험 없음		95.99	93.50	96.70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 그 사유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2-4> 와 같다. 전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79.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라는 응답은 11.90%로 나타났다. 그 밖에 건강보험 이용빈도가 낮은 이유가 4.26%, 제도에 대한 불신은 1.15%로 파악되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은 일반가구(72.21%)보다 저소득가구(93.71%)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4>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4.26	2.83	5.04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79.83	93.71	72.21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1.02	1.77	0.61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1.15	0.00	1.78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11.90	1.69	17.51
기타		1.84	0.00	2.85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료 미납기간은 <표 1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1~3개월의 단기미납이 42.43%, 10~12개월의 장기미납이 29.01%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장기미납 비율이 단기미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단기미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2-5>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42.43	35.53	46.26
4~6개월		20.47	15.48	23.24
7~9개월		8.09	8.69	7.77
10~12개월		29.01	40.30	22.73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표 12-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에 특별한 문제없다는 응답이 68.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월보험료 부담이 20.95%,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0.44%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특별한 문제없음이 74.33%, 월보험료 부담이 17.72%,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7.62%로 각각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특별한 문제없음이 66.33%, 월보험료 부담이 21.86%,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1.24%로 나타났다.

<표 12-2-6>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 없음		68.09	74.33	66.33
월보험료 부담		20.95	17.72	21.86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10.44	7.62	11.24
기타		0.50	0.33	0.55
계		100.00	100.00	100.00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1. 고용보험 가입실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실태³⁸⁾는 아래 <표 12-3-1> 과 같다. 전체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1.30%, 미가입률은 38.55%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입률(25.48%)이 일반가구의 가입률(64.73%)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8)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자, 농어민, 비경제활동인구 및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등은 고용보험의 비해당자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12-3-1〉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1.30	25.48	64.73
	미가입	38.55	73.63	35.19
	모름/무응답	0.16	0.89	0.09
	계	100.00	100.00	100.00

2. 고용보험 수급실태

2007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3-2>와 같다. 전체가구 중에서 고용보험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는 1.4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1.56%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비해 고용보험으로부터 수급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3-2〉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0	0.80	1.56
	없다	98.60	99.20	98.44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³⁹⁾ 수급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3-3>과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1순위는 실업급여가 84.4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모성보호급여 1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

39)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를, 기타 현금급여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현물급여는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위탁 훈련지원, 근로자 학자금대부 등 현물지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구는 94.71%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며, 5.29%가 기타현금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83.07%가 실업급여를, 15.82%가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3〉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실업급여	84.46	94.71	83.07
	모성보호급여	13.94	0.00	15.82
	기타 현금급여	1.61	5.29	1.11
	계	100.00	100.00	100.00
2순위	실업급여	21.88	-	21.88
	모성보호급여	21.30	-	21.30
	기타 현금급여	36.80	-	36.80
	현물급여	20.02	-	20.02
	계	100.00	-	100.00

2007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 개월 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3-4>와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1~3개월 수급이 5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4~6개월이 5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은 37.9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1~3개월의 비중(57.22%)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개월(33.84%)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4〉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54.92	37.95	57.22
	4 ~ 6개월	36.17	53.38	33.84
	7 ~ 9개월	6.83	3.38	7.30
	10 ~ 12개월	2.08	5.29	1.64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지급액은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3,23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3,466천원, 일반가구는 3,19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가구의 지급액이 높은 것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고용보험 급여 중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12-3-3>, <표 12-3-4> 참조).

<표 12-3-5> 고용보험 급여 연간 지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간현금급여액		3,231	3,466	3,199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지급실태

1. 산재보험 가입실태

산재보험 가입실태⁴⁰⁾는 아래 <표 12-4-1>과 같다. 전체가구는 가입(60.89%)이 미가입(38.95%)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미가입(72.87%)이 가입(26.33%)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가구는 전체가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2-4-1>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0.89	26.33	64.49
미가입		38.95	72.87	35.42
모름/무응답		0.16	0.80	0.10
계		100.00	100.00	100.00

40)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농어민, 비경활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은 산재보험의 비해당자로 분류하여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2. 산재보험 지급실태

2007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지급경험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4-2>와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지급경험이 없다가 9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지급경험이 있는 가구가 극소수라는 특징은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고용보험과는 달리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12-4-2〉 산재보험 급여 지급경험

(단위: %)

특성	구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5	0.45	0.33
없다		99.65	99.55	99.67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은 다음 <표 12-4-3>과 같다. 먼저 1순위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는 휴업급여(43.13%), 장해연금(35.28%), 장해일시금(13.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휴업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순이었다. 2순위는 전체가구의 경우 장해일시금,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일반가구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3〉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요양급여	3.21	0.00	4.36
		휴업급여	43.13	29.40	48.04
		장해급여-연금	35.28	28.09	37.84
		장해급여-일시금	13.41	28.54	8.00
		유족급여-연금	4.97	13.97	1.76
		계	100.00	100.00	100.00
2순위		요양급여	20.26	38.02	0.00
		휴업급여	33.04	61.98	0.00
		장해급여-일시금	46.70	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 개월 수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4-4>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는 10~12개월의 장기수급이 49.36%로 가장 많았고 1~3개월의 단기수급이 26.23%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10~12개월(52.16%), 1~3개월(21.74%), 4~6개월(20.71%), 일반가구의 경우는 10~12개월(48.43%), 1~3개월(27.73%), 4~6개월(12.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4-4〉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26.23	21.74	27.73
	4 ~ 6개월	14.40	20.71	12.30
	7 ~ 9개월	10.01	5.38	11.54
	10 ~ 12개월	49.36	52.16	48.43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산재보험급여 연간 평균 수급액은 다음 <표 1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일시금은 12,636천원, 연금은 11,829천원을 각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가구는 일시금으로 18,973천원, 연금으로 7,602천원을, 일반가구는 일시금으로 8,240천원을, 연금으로 13,233천원을 각각 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5〉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연금		12,636	18,973	8,240
		11,829	7,602	13,233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1. 적용 및 가입실태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⁴¹⁾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1>과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52.98%가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46.82%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불과 17.90%만이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81.36%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56.83%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퇴직금 적용에 있어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적용 미적용 모름/무응답		52.98	17.90	56.83
		46.82	81.36	43.03
		0.19	0.75	0.13
계		100.00	100.00	100.00

41) 경제활동 참여 상태 중에서 퇴직금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에 응답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실태는 다음 <표 12-5-2>와 같다. 전체적으로 3.71%가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적용비율(4.08%)이 저소득가구의 적용비율(0.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2-5-2> 퇴직연금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적용	3.71	0.39	4.08
	미적용	94.32	97.83	93.93
	모름/무응답	1.97	1.78	1.99
	계	100.00	100.00	100.00

개인연금 가입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3>과 같다. 시중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개인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신보험 가입여부도 본 문항에서 같이 설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81.31%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입자의 비율이 4.42%인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22.05%가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5-3>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18.60	4.42	22.05
	미가입	81.31	95.44	77.88
	모름/무응답	0.08	0.13	0.07
	계	100.00	100.00	100.00

2. 수급실태

2007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4>와 같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99.79%) 응답자가 수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12%, 일반가구의 경우 0.23%가 개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4〉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1	0.12	0.23
없다		99.79	99.88	99.77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개인연금 연간 수급 개월 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5>와 같다. 개인연금을 수급하는 일반가구의 94.94%가 10 ~ 12개월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수급개월 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표 12-5-5〉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5.06	-	5.06
10 ~ 12개월		94.94	-	94.94
무응답		-	100.00	-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개인연금의 연간 평균 수급액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일시금 1,240천원, 연금 5,465천원을 수급하였으며,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1,482천원, 일반가구는 일시금 1,113천원, 연금 5,465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6〉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금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연금		1,240	1,482	1,113
		5,465	-	5,465

2007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인 96.00%가 수급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1.29%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4.70%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7〉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없다		3.99	1.29	4.70
		96.00	98.71	95.29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 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가구의 경우 1~3개월이 53.56%, 7~9개월이 31.62%, 10~12개월이 14.82%로 나타났다. 퇴직보험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은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표 12-5-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7 ~ 9개월 10 ~ 12개월		53.56	-	53.56
		31.62	-	31.62
		14.82	-	14.82
모름/무응답		-	100.00	-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평균 수령액은 다음 <표 12-5-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시금으로 6,605천원을 받았고, 연금형태의 퇴직보험금은 1,913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2,439천원, 일반가구는 일시금 6,908천원, 연금 1,913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9>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지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6,605	2,439	6,908
	보험금	1,913	-	1,913

제13장 공공부조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net)이다. 2007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표 13-1-1>과 같이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1.39%, 없는 가구가 전체의 98.61%로 나타났다.

<표 13-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있다		1.39
	없다		98.61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표 13-1-2>와 같이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9.46%)라는 응답과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5.66%)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3-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유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1.40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9.46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0.00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5.66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0.00
	기타	0.00
	모름/무응답	3.48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여부는 <표 13-1-3>과 같다. 급여 신청 가구 중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가구는 전체의 46.40%, 선정되지 않았다는 가구는 전체의 53.60%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신청을 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의 이유(19.6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8.5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1-3〉 수급자 선정 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 선정 여부	그렇다	46.40
	그렇지 않다	53.60
	모름/무응답	0.00
계		100.00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5.23
	자동차가 있어서	7.81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8.53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42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1.78
	기타	19.60
	잘 모르겠다	1.63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가구의 생계문제 해결방안 1순위는 다음 <표 13-1-4>와 같다.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했다는 응답(21.69%)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19.50%)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표 13-1-4>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생계문제의 주된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38.30
	빛을 내어서 생활	6.83
	민간단체의 도움	0.0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21.69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4.82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0.66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9.50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28
	기타	2.16
	모름/무응답	5.76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가구의 생계문제 해결방안 2순위는 다음 <표 13-1-5>와 같다. 1순위만 응답하고 2순위는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약 51.60% 나타났고,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했다는 응답이 1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빛을 내어서 생활(9.84%)하거나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8.48%)을 받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표 13-1-5〉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생계문제의 주된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8.48
	빚을 내어서 생활	9.84
	민간단체의 도움	0.92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12.22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5.74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0.7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7.92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2.59
모름/무응답	51.60	
계	100.00	

제2절 수급 및 탈피

2007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수급기간⁴²⁾을 살펴보면, <표 13-2-1>과 같이 대부분(89.20%)의 가구가 12개월 동안 수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 11.80%가 1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1〉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비율
3개월 미만	1.8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76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63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61
12개월	89.20
모름/무응답	0.00
계	100.00

42) 2006년 10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가구를 생성하여 2007년도 이전부터 수급을 받기 시작한 가구는 2007년도 이후의 수급 개월 수만 고려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13-2-2>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응답이 3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15.67%)라는 응답과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11.2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3-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0.79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38.97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7.74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15.67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9.80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91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1.25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26
기타	3.16
모름/무응답	1.44
계	100.00

3차 조사 때 추가된 질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표 13-2-3>과 같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51.2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부족하다(23.02%), 보통이다(16.62%)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매우 적절하다	0.61
적절하다	6.86
보통이다	16.62
부족하다	51.25
매우 부족하다	23.02
모름/무응답	1.65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3-2-4>와 같이 2007년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75.50%가 앞으로도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1년 이내에 수급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비율은 3.46%에 불과하였다.

〈표 13-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

(단위: %)

구분	비율
6개월 이내	2.43
6개월 후 ~ 1년 이내	1.03
1년 후 ~ 3년 이내	2.42
3년 후	6.27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75.50
잘 모르겠다	11.09
무응답	1.27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으로는 <표 13-2-5>와 같이 의료비 지원(55.60%)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주거비 지원(23.55%)과 교육비 지원(15.01%)도 대체로 높은 비율로 계속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13-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55.60
교육비 지원	15.01
주거비 지원	23.55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관련 지원	2.62
없다	1.69
기타	1.52
모름/무응답	0.00
계	100.00

2007년 말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가구의 탈피 사유를 물어본 결과, <표 13-2-6>과 같이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37.4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졌기 때문(26.59%), 기타(8.38%) 등이 뒤를 이었다.

<표 13-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의 주된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4.19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37.46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7.83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3.99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4.4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3.75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26.59
기타	8.38
모름/무응답	3.40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은, <표 13-2-7>과 같이 의료비 지원이 65.47%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원(14.78%)이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 수급 가구가 탈피 후 아쉬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항목의 순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3-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65.47
교육비 지원	13.60
주거비 지원	14.78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관련 지원	0.00
없다	2.75
기타	0.00
모름/무응답	3.40
계	100.00

제3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를 받고 있는 가구⁴³⁾ 중 60.81%가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2종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31.21%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7.93%로 나타났다.

〈표 13-3-1〉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수급여부 (200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의료급여 수급형태	의료급여(1종)	60.81
	의료급여(2종)	31.21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7.93
	기타	0.05
	모름/무응답	0.00
계		100.00

43) 전체 의료급여수급가구수가 전체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가구수보다 적은 이유는 첫째,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가구는 2007년 1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이고, 둘째,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의 경우 대표적인 가구주를 기준으로 (공적)건강보험가입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1. 생계비 지원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 생계비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 가구 중 9.04%만이 생계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일반가구 중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1.68%로 극히 낮았으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가구의 이용경험자 역시 29.28%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생계비 지급에 대한 요건, 절차 단순화, 홍보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1〉 생계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04	29.28	1.68
	없다	90.96	70.72	98.3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 동안 생계비나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아 보았다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이용만족도는 다음 표와 같다. 생계비 지원에 따른 만족도는 39.68% (매우 만족 5.12%, 대체로 만족 34.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39.85%로 전체의 만족도와 비슷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향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14-1-2〉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5.12	4.98	5.98
	대체로 만족	34.56	34.87	32.57
	그저 그렇다	23.90	23.47	26.60
	대체로 불만족	25.89	27.58	15.14
	매우 불만족	6.61	6.05	10.16
	모름/무응답	3.92	3.04	9.54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을 통해 받고 있었다. 이는 현금급여(생계비) 지원은 공적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는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유일하였다.

〈표 14-1-3〉 생계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5.55	96.67	88.45
	사회복지관련기관	-	-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27	0.00	2.01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모름/무응답	4.17	3.33	9.54
	계	100.00	100.00	100.00

2. 의료비 지원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 의료비 지원 경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본 가구는 9.88%에 불과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03%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 가구는 단지 2.91%만이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1-4〉 의료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88	29.03	2.91
없다		90.11	70.97	97.07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본 가구들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 제공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17.41%, 대체로 57.43%)는 의견이 74.84%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75.79%, 일반 가구는 71.44%로 나타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서비스 혜택 대상 확대 및 홍보가 잘 된다면 전체적인 효용이나 만족도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1-5〉 의료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7.41	17.56	16.89
대체로 만족		57.43	58.23	54.55
그저 그렇다		14.42	14.35	14.66
대체로 불만족		6.11	6.66	4.12
매우 불만족		1.49	1.90	0.00
모름/무응답		3.14	1.30	9.78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비 지원을 제공한 기관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94.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병원 1.33%, 보건소 0.54% 순으로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97.10%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도 이와 비슷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 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원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므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보건소나 병원 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6〉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4.12	97.10	83.38
	사회복지관련기관	0.37	0.00	1.7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0.54	0.68	0.00
	병원	1.33	0.12	5.70
	학교	0.04	0.05	0.00
	기타	0.32	0.30	0.37
	모름/무응답	3.28	1.74	8.84
	계	100.00	100.00	100.00

3.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실제로 물품지원 서비스를 받아 본 응답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7.10%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23.28%였지만, 전체적인 비율로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일반 가구의 경험은 1.21%밖에 되지 않았다.

〈표 14-1-7〉 물품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10	23.28	1.21
없다		92.89	76.70	98.78
모름/무응답		0.00	0.02	0.01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물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다음의 <표 14-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4.24%(매우 8.77%, 대체로 45.47%)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만족한다는 응답은 54.63%로 일반가구의 만족 비율 51.58% 보다 약간 높았다. 향후 물품지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8〉 물품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8.77	8.41	11.30
대체로 만족		45.47	46.22	40.28
그저 그렇다		34.03	33.93	34.67
대체로 불만족		9.19	9.65	6.00
매우 불만족		1.67	1.50	2.82
모름/무응답		0.88	0.30	4.93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물품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준 기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80.1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관련기관과 종교/사회단체가 각각 8.65%, 8.74%로 응답되었다. 물품지원 서비스를 받는 기관의 분포는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와 보건소에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였다. 물품지원 서비스 분야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공유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9〉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0.14	80.56	77.21
	사회복지관련기관	8.65	8.31	11.0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8.74	9.58	2.93
	보건소	0.55	0.07	3.90
	병원	-	-	-
	학교	0.81	0.92	0.00
	기타	0.28	0.32	0.00
	모름/무응답	0.83	0.24	4.93
	계	100.00	100.00	100.00

4. 가정봉사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가정봉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0.90%, 저소득가구는 2.66%, 일반가구는 0.26%로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표 14-1-10〉 가정봉사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0	2.66	0.26
	없다	99.06	97.19	99.74
	모름/무응답	0.04	0.14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살펴 본 가정봉사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응답가구의 58.64%(매우 15.34%, 대체로 43.3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봉사서비스는 저소득가구가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과반수가 넘는 63.0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봉사서비스는 각 가구의 생활현장 및 사생활이 직접 노출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단독가구 등 특수한 계층이나 가구를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11〉 가정봉사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34	19.23	0.00
	대체로 만족	43.30	43.80	41.33
	그저 그렇다	11.72	14.18	2.01
	대체로 불만족	9.91	4.59	30.89
	매우 불만족	0.92	1.15	0.00
	모름/무응답	18.82	17.07	25.76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받은 가구의 36.23%가 공공기관을 통해 가정봉사서비스를 받았고, 26.77%는 사회복지관련기관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적인 분포와 유사하였다.

〈표 14-1-12〉 가정봉사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6.23	35.56	38.90
	사회복지관련기관	26.77	32.43	4.45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0.34	12.96	0.00
	보건소	6.25	0.00	30.89
	병원	-	-	-
	학교	-	-	-
	기타	1.59	1.99	0.00
	모름/무응답	18.82	17.07	25.76
	계	100.00	100.00	100.00

5.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1.41%의 응답가구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저소득 가구도 4.60%에 불과해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4-1-13〉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1	4.60	0.25
없다		98.56	95.30	99.75
모름/무응답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의 해당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76.63%가 만족한다(매우 21.08%, 대체로 55.55%)는 의견을 보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 가구의 75.8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표 14-1-14〉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1.08	21.30	19.63
대체로 만족		55.55	54.56	62.31
그저 그렇다		10.03	10.53	6.67
대체로 불만족		7.00	8.04	0.00
매우 불만족		0.65	0.74	0.00
모름/무응답		5.68	4.84	11.39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사회복지관 연기관이 38.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34.51%, 공공기관

19.0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전체가구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 반면 일반가구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15〉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9.09	18.69	21.84
	사회복지관련기관	38.40	39.58	30.4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34.51	34.23	36.36
	보건소	-	-	-
	병원	1.80	2.07	0.00
	학교	-	-	-
	기타	0.51	0.59	0.00
	모름/무응답	5.68	4.84	11.39
	계	100.00	100.00	100.00

6.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경험해 본 응답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0.64%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2.16%, 일반 가구는 0.09%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표 14-1-16〉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4	2.16	0.09
	없다	99.33	97.74	99.91
	모름/무응답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80.44%가 만족한다(매우 28.85%, 대체로 51.59%)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84.29%로 나타났다.

며, 일반 가구는 44.5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택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17〉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8.85	31.95	0.00
	대체로 만족	51.59	52.34	44.59
	그저 그렇다	8.54	7.80	15.43
	대체로 불만족	4.01	3.66	7.25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7.01	4.25	32.73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67.07%, 사회복지관련기관이 18.95%로 응답되었다. 주택관련 서비스를 받은 저소득 가구도 이와 유사하였다. 일반 가구는 사회복지관련기관을 통한 주택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저소득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나, 주택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18〉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7.07	69.54	44.06
	사회복지관련기관	18.95	18.49	23.2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76	1.95	0.00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5.21	5.77	0.00
	모름/무응답	7.01	4.25	32.73
	계	100.00	100.00	100.00

7.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47%의 가구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경험자는 3.44%, 일반 가구는 2.11%로 각각 나타나 해당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1-19〉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47	3.44	2.11
없다		97.50	96.46	97.89
모름/무응답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관련 복지서비스를 경험해 본 가구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49.20%(매우 2.85%, 대체로 46.35%)로 나타나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51.87%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및 저소득 가구보다 다소 낮은 47.5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취업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일반가구에서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14-1-20〉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85	2.16	3.28
대체로 만족		46.35	49.71	44.29
그저 그렇다		33.19	25.89	37.65
대체로 불만족		9.81	11.74	8.64
매우 불만족		3.73	5.18	2.84
모름/무응답		4.07	5.33	3.3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89.80%, 사회복지관련기관이 2.08%로 병원이 1.11%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공공기관이 각각 85.55%, 92.39%로 가장 높았으나, 2순위 제공기관은 저소득 가구는 병원인 반면, 일반 가구는 사회복지관련기관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14-1-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9.80	85.55	92.39
	사회복지관련기관	2.08	2.32	1.93
	보건소	-	-	-
	병원	1.11	2.93	0.00
	학교	-	-	-
	기타	0.77	0.00	1.24
	모름/무응답	6.24	9.20	4.43
	계	100.00	100.00	100.00

8.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음의 <표 14-1-22>와 같이 0.20%만 이용하였다고 응답해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이용 경험은 각각 0.66%, 0.04%로 나타났다.

〈표 14-1-22〉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0	0.66	0.04
	없다	99.76	99.21	99.96
	모름/무응답	0.04	0.13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의 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52.91%가 만족한다(매우 3.99%, 대체로 48.92%)고 응답하여 만족도 면에서도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만족한다는 응답은 56.78%였으나, 일반 가구의 만족도는 23.13%로 매우 낮았다. 향후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률,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인 대책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3〉 상담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99	4.51	0.00
	대체로 만족	48.92	52.27	23.13
	그저 그렇다	14.62	16.52	0.00
	대체로 불만족	8.92	10.08	0.00
	매우 불만족	-	-	-
	모름/무응답	23.54	16.62	76.87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연기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보건소, 병원 등이 응답되었으며, 공공기관은 없었다. 그러나 사례수가 지극히 적어서 분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표 14-1-24〉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회복지관련기관	9.21	10.4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1.96	13.51	0.00
	보건소	7.96	8.99	0.00
	병원	47.33	50.47	23.13
	학교	-	-	-
	기타	-	-	-
	모름/무응답	23.54	16.62	76.87
	계	100.00	100.00	100.00

9.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약물(알코올) 상담에 대한 이용경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중 0.04%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다.

〈표 14-1-25〉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4	0.04	0.05
없다		99.93	99.86	99.95
모름/무응답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약물(알코올)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 생략하였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응답한 1가구의 경우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제공기관에 응답한 1가구는 병원에서 약물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10.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전체에서 학대 혹은 가정폭력에 관련한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가구는 2가구로 거의 없었다.

〈표 14-1-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2	0.01	0.03
없다		99.95	99.89	99.97
모름/무응답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고 응답률이 저조하여 생략하였다. 전반적으로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1.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 중 0.27%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14-1-2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7	0.36	0.23
없다		99.70	99.54	99.77
모름/무응답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아 본 응답 가구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의 31.86%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54.04%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16.1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6.13%로 저소득 계층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은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8〉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	-	-
대체로 만족		31.86	54.04	16.12
그저 그렇다		32.83	0.00	56.13
대체로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	-	-
모름/무응답		35.31	45.96	27.74
계		100.00	100.00	100.00

2007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련기관, 학교, 종교/시민단체 순으로 각각 22.79%, 22.69%, 9.74%를 나타내었다. 저소득 가구는 종교/시민단체가 23.46%, 사회복지관련기관은 23.35%를 나타내었으나, 일반 가구는 학교가 33.67%, 사회복지관련기관이 22.39%로 저소득 가구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가 매우 적어서 역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표 14-1-29〉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회복지관련기관		22.79	23.35	22.39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9.74	23.46	0.00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22.69	7.22	33.67
기타		9.47	0.00	16.19
모름/무응답		35.31	45.96	27.74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전체 가구중 30.66%인 1,936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1년간 노인관련 서비스 이용경험과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2-1>~<표 14-2-27>과 같다.

(1) 경로연금

경로연금을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1>와 같다. 전체노인가구의 13.89%인 269가구가 경로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23.47%로 일반가구(2.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1> 경로연금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3.89	23.47	2.59
없다		85.90	76.43	97.07
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경로연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2>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50.37%, 그저 그렇다가 25.00%, 대체로 불만족 13.81% 매우 만족이 8.21%, 매우 불만족이 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대체로 만족의 응답 비율은 저소득가구(58.8%)와 일반가구(26.09%)로 저소득가구가 높게 나왔다.

〈표 14-2-2〉 경로연금 급여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8.21	7.80	8.70
	대체로 만족	50.37	51.00	17.39
	그저 그렇다	25.00	25.70	17.39
	대체로 불만족	13.81	13.50	43.48
	매우 불만족	2.61	2.00	13.04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표 14-2-3>과 같이 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100%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3〉 경로연금 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관련기관	-	-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2)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4>와 같다. 전체노인가구의 14.46%인 280가구가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 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22.25%로 일반가구(5.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4〉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46	22.25	5.29
없다		85.33	77.65	94.38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5>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61.79%, 매우 만족이 20.00%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81.7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족도가 일반가구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표 14-2-5〉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0.00	20.17	-
대체로 만족		61.79	61.37	-
그저 그렇다		13.21	12.45	17.02
대체로 불만족		4.29	5.15	63.83
매우 불만족		0.71	0.86	19.15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표 14-2-6>과 같이 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96.39%)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병원(2.17%), 보건소(1.08%), 기타(0.36%) 등이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6〉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6.39	97.84	89.13
사회복지관련기관		-	-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1.08	1.30	-
병원		2.17	0.43	10.87
학교		-	-	-
기타		0.36	0.43	-
계		100.00	100.00	100.00

(3) 노인무료급식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2-7>과 같다. 노인전체 가구의 3.72%인 72가구가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5.64%로 일반가구(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72	5.64	1.46
없다		96.02	94.17	98.20
모름/무응답		0.26	0.19	0.34
계		100.00	100.00	100.00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8>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61.64%, 매우 만족이 23.29%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84.93%는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가구에서 매우 만족하다는 비율이 28.33%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가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4-2-8〉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3.29	28.33	-
	대체로 만족	61.64	60.00	69.23
	그저 그렇다	13.70	10.00	30.77
	대체로 불만족	1.37	1.67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4-2-9>와 같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제공을 받은 경우가 6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서 공공기관(22.86%),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10.00%)의 순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반가구의 가구 수가 13가구로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2-9〉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2.86	28.07	-
	사회복지관련기관	60.00	54.39	84.6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0.00	12.28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7.14	5.26	15.38
	계	100.00	100.00	100.00

(4) 물품지원

물품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2-10>과 같다. 노인전체가구의 10.69%인 207가구가 물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18.62%로 일반가구(1.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10〉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69	18.62	1.35
없다		89.10	81.28	98.31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물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11>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50.72%, 매우 만족이 10.63%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61.35%는 물품지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만족도는 일반가구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가구의 표본수가 12가구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2-11〉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0.63	10.31	15.38
대체로 만족		50.72	50.52	53.85
그저 그렇다		30.92	31.44	23.08
대체로 불만족		6.28	6.70	-
매우 불만족		1.45	1.03	7.69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12>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74.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사회복지 관련기관(13.5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11.11%) 등이 있었다.

<표 14-2-12>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4.40	75.77	53.85
사회복지관련기관		13.53	12.37	30.7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1.11	11.34	7.69
보건소		0.48	-	7.69
병원		-	-	-
학교		-	-	-
기타		0.48	0.52	-
계		100.00	100.00	100.00

(5) 가정봉사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2-13>과 같다. 노인 전체가구의 1.34%인 26가구만이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2.20%이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은 0.34%였다.

<표 14-2-13>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34	2.20	0.34
없다		98.45	97.70	99.32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14>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55.56%이고 매우 만족이 18.52%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4.08%는 가정봉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가구의 가정봉사서비스 이용가구가 3가구 밖에 되지 않아서 저소득 가구의 만족도와 전체가구의 만족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14-2-14〉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8.52	20.83	-
	대체로 만족	55.56	50.00	100.00
	그저 그렇다	14.81	16.67	-
	대체로 불만족	7.41	8.33	-
	매우 불만족	3.70	4.17	-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15>와 같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46.15%이고 공공기관이 34.6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19.23%를 차지했다.

〈표 14-2-15〉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4.62	30.43	66.67
	사회복지관련기관	46.15	47.83	33.3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9.23	21.74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6) 식사 배달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2-16>과 같다. 노인전체가구의 2.69%인 52가구가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4.30%로 일반가구(0.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16>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69	4.30	0.79
	없다	97.10	95.60	98.87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17>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50.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이 27.45%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8.43%는 식사배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이용만족도 양상은 비슷하다.

<표 14-2-17>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7.45	27.27	28.57
	대체로 만족	50.98	50.00	57.14
	그저 그렇다	17.65	18.18	14.29
	대체로 불만족	3.92	4.55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2-18>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기관(40.82%)과 종교 혹은 시민단체(42.85%)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공공기관(16.33%)등이 있었다.

<표 14-2-18>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6.33	16.28	16.67
사회복지관련기관		40.82	41.86	33.3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2.85	41.86	50.00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7)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19>와 같다. 노인전체가구의 2.38%인 46가구가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3.92%로 일반가구(0.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2-19> 노인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38	3.92	0.56
없다		97.41	95.98	99.10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노인에 대한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 60.00%, 매우 만족이 24.44%로 나타나 약 84.44%의 가구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20〉 노인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만족	24.44	25.00	20.00
	대체로 만족	60.00	62.50	40.00
	그저 그렇다	15.56	12.50	40.00
	대체로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21>과 같이 보건소에서 제공한 경우가 81.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공공기관이 각각 6.82%로 나타났다.

〈표 14-2-21〉 노인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82	7.50	-
	사회복지관련기관	6.82	7.50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81.81	82.50	75.00
	병원	4.55	2.50	25.00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8) 교통수단 지원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22>와 같다. 전체노인 가구의 0.52%가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0.76%로 일반가구(0.2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2-22>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2	0.76	0.22
없다		99.27	99.14	99.44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23>과 같이 그저 그렇다가 44.45%, 매우 만족이 33.33%, 대체로 만족이 22.22% 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10가구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표 14-2-23>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3.33	28.57	50.00
대체로 만족		22.22	28.57	-
그저 그렇다		44.45	42.86	50.00
대체로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24>와 같이 공공기관(33.34%)과 사회복지 관련기관(22.22%)과 병원(22.22%)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11.11%)와 기타(11.11%)가 있다.

〈표 14-2-24〉 노인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3.34	33.33	33.34
	사회복지관련기관	22.22	16.67	33.33
	종교 단체 및 시민단체	11.11	-	33.33
	보건소	-	-	-
	병원	22.22	33.33	-
	학교	-	-	-
	기타	11.11	16.67	-
	계	100.00	100.00	100.00

(9) 주간보호 서비스

노인 가구 중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수가 0가구이다.

(10)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 가구 중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수가 0가구이다.

(11)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25>와 같다. 전체 노인가구의 1.60%의 가구가 노인일자리 사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2.68%로 일반가구(0.34%)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25〉 노인 일자리 사업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0	2.68	0.34
	없다	98.19	97.22	99.32
	모름/무응답	0.21	0.10	0.34
	계	100.00	100.00	100.00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26>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7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저그렇다가 12.90%, 매우 만족이 9.68%, 대체로 불만족이 3.23%를 차지하였다.

〈표 14-2-26〉 노인 일자리사업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9.68	10.71	-
	대체로 만족	74.19	71.43	100.00
	그저 그렇다	12.90	14.29	-
	대체로 불만족	3.23	3.57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27>와 같이 공공기관(96.6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3.33%를 차지하였다.

〈표 14-2-27〉 노인 일자리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6.67	96.30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3.33	3.70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제3절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전체 가구 중 16.13%인 1,019가구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1년간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과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3-1> ~ <표 14-3-33>과 같다.

1.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1) 장애수당

<표 14-3-1>에서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수당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이다. 전체장애인가구중 장애수당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1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이용 경험률이 34.78%인 것에 비해 일반가구 이용률은 불과 2.75%로 매우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 장애수당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49	34.78	2.75
없다	81.06	62.70	94.84
모름/무응답	2.45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수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2>와 같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9.05%, 그저 그렇다 30.77%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불만족이 20.71%, 매우 불만족은 5.92%였다. 저소득층의 이용경험이 월등히 높아서 전체 이용만족도와 저소득의 이용만족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14-3-2〉 장애수당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55	3.92	-
	대체로 만족	39.05	38.56	43.75
	그저 그렇다	30.77	29.41	43.75
	대체로 불만족	20.71	21.57	12.50
	매우 불만족	5.92	6.54	-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3>에서는 장애수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표 14-3-3〉 장애수당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	-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2)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다음 <표 14-3-4>와 같다. 전체장애인 가구중 아동 부양수당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1.08%인 11 가구에 불과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이용경험은 2.29%이며 일반가구의 이용경험은 0.17%였다.

〈표 14-3-4〉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8	2.29	0.17
없다		96.46	95.19	97.42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부양수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5>와 같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3.64%, 그저 그렇다 27.27%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 9.09%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수가 11가구 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3-5〉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	-	-
대체로 만족		63.64	60.00	100.00
그저 그렇다		27.27	30.00	-
대체로 불만족		9.09	10.00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6>에서는 장애 아동부양수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100.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3-6〉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	-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표 14-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7.35%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0	0.46	-
없다		97.35	97.02	97.59
모름/무응답		2.45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의 경우 자립자금 대여 경험가구가 2가구이어서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4)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의 경우 경험여부와 이용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율이 1가구 여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5)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다음으로 <표 14-3-8>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2.85%(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4.59%이며, 일반가구에서는 1.55%였다.

<표 14-3-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85	4.59	1.55
없다		94.69	92.88	96.04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9>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이 44.82%, 매우 만족이 37.9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이용 만족도의 비교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저소득 가구에서는 90.48% 일반가구에서는 62.50%를 차지하여 저소득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4-3-9〉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7.93	38.10	37.50
	대체로 만족	44.82	52.38	25.00
	그저 그렇다	6.90	4.76	12.50
	대체로 불만족	6.90	4.76	12.50
	매우 불만족	3.45	-	12.50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10〉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68.96%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기관(24.14%)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도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8.96	65.00	77.78
	사회복지관련기관	24.14	30.00	11.1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3.45	5.00	-
	병원	3.45	-	11.11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6) 의료재활서비스

다음으로 <표 14-3-11>에서는 의료재활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4.33%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이용경험은 7.34%였으며, 일반가구의

이용경험은 2.07%였다.

〈표 14-3-11〉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33	7.34	2.07
없다		93.21	90.14	95.52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12>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3.47%를 차지하였고, 매우 만족한다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21.74%를 차지하였다.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4-3-12〉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1.74	21.21	23.08
대체로 만족		43.47	39.4	53.85
그저 그렇다		21.74	24.24	15.38
대체로 불만족		8.7	9.09	7.69
매우 불만족		4.35	6.06	-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13>에서는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79.55%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사회복지관련 기관(6.82%)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90.9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공공기관이 45.45%, 병원이 36.37%를 차지하여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4-3-13〉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9.55	90.91	45.45
	사회복지 관련기관	6.82	6.06	9.09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2.27	3.03	-
	보건소	2.27	-	9.09
	병원	9.09	-	36.37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7) 가사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3-14>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장애인 가구) 중 가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2.55%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5.26%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52%로 이용해 본 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4〉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55	5.26	0.52
	없다	95.00	92.22	97.07
	모름/무응답	2.45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15>와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이 52.00%, 매우 만족이 28.00%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4-3-15〉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8.00	31.82	-
대체로 만족		52.00	45.45	100.00
그저 그렇다		12.00	13.64	-
대체로 불만족		8.00	9.09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16>에서는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2.0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36.00%를 차지했다.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와 보건소, 기타의 기관에서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각각 4.00%를 차지하였다.

〈표 14-3-16〉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52.00	45.44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36.00	40.91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4.00	4.55	-
보건소		4.00	4.55	-
병원		-	-	-
학교		-	-	-
기타		4.00	4.55	-
계		100.00	100.00	100.00

(8) 이동편의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3-17>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전체장애인가구 중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1.67%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2.52%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1.03%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

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17〉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7	2.52	1.03
	없다	95.68	94.96	96.22
	모름/무응답	2.65	2.52	2.75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18>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3.75%, 매우 만족 한다는 응답이 31.25%로 분포 되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5.00%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4-3-18〉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1.25	45.45	-
	대체로 만족	43.75	45.45	40.00
	그저 그렇다	18.75	-	60.00
	대체로 불만족	6.25	9.10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19>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3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29.41%, 다음으로 병원이 11.76%를 차지하였다.

〈표 14-3-19〉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5.30	25.00	6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29.41	25.00	40.00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5.88	8.33	-
	보건소	-	-	-
	병원	11.76	16.67	-
	학교	-	-	-
	기타	17.65	25.00	-
	계	100.00	100.00	100.00

(9)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다음으로 <표 14-3-20>에서는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0.79%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1.38%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34%로 나타나 이용경험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4-3-20〉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79	1.38	0.34
	없다	96.56	96.10	96.91
	모름/무응답	2.65	2.52	2.75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및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은 총 사례수가 8가구인 관계로 생략하였다.

(10)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다음으로 <표 14-3-21>에서는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0.2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0.46%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0%로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1>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0	0.46	-
없다		97.34	97.02	97.59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에 대한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응답은 2가구 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11)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다음으로 <표 14-3-22>에서는 직업재활 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직업재활 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0.69%로 나타났다.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1.14%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2〉 직업재활 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9	1.14	0.34
없다		96.86	96.34	97.25
모름/무응답		2.45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가구가 7가구로 나온 관계로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12)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3-23>에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장애인가구중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98%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일반가구의 이용률은 1.60%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3-23〉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8	1.60	0.52
없다		96.57	95.88	97.07
모름/무응답		2.45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24>과 같이 살펴본 결과,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0.00%를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이 각각 25.0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수가 10가구 밖에 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3-24〉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	-	-
대체로 만족		25.00	33.33	-
그저 그렇다		50.00	50.00	50.00
대체로 불만족		25.00	16.67	50.00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25〉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60.00%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병원이 각각 20.00%를 차지하였다.

〈표 14-3-25〉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0.00	42.86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20.00	28.57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20.00	28.57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13)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다음으로 <표 14-3-26〉에서는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장애인가구중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0.59%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0.46%이며 일반가구는 0.96% 였다.

〈표 14-3-26〉 장애인 사회복귀훈련·사회적응훈련·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9	0.46	0.69
없다		96.95	97.02	96.90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가구가 6가구 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14)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다음으로 <표 14-3-27>에서는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장애인가구중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79%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0.46%이고, 일반가구의 경우는 1.0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7〉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79	0.46	1.03
없다		96.75	97.02	96.56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가구가 8가구 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15)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3-28>에서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장애인가구중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1.7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의 0.69%, 일반가구의 2.58%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매우 낮다.

〈표 14-3-28〉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7	0.69	2.58
없다		95.77	96.79	95.01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29>와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5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저 그렇다가 26.32%, 매우 만족이 10.5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만족도가 저소득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29〉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0.53	-	12.50
대체로 만족		57.89	33.34	62.50
그저 그렇다		26.32	33.33	25.00
대체로 불만족		5.26	33.33	-
매우 불만족		-	-	-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관을 <표 14-3-30>와 같이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에서 제공 받은 경우가 100%였다.

<표 14-3-30>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	-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16)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다음으로 <표 14-3-31>에서는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장애인가구중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97%로 나타났다. 소득구분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에서는 11.93%, 일반가구에서는 32.99%의 비율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가구의 장애인의 차량 소유율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표 14-3-31>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3.97	11.93	32.99
없다		73.57	85.55	64.60
모름/무응답		2.46	2.52	2.41
계		100.00	100.00	100.00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3-32>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8.49%와 51.57%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14-3-32>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7.35	5.66	7.81
	대체로 만족	53.06	58.49	51.57
	그저 그렇다	30.20	30.19	30.21
	대체로 불만족	6.53	1.89	7.81
	매우 불만족	2.86	3.77	2.60
	계	100.00	100.00	100.00

<표 14-3-33>에서는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100.00%를 차지하였다.

<표 14-3-33>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 관련기관	-	-	-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제4절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전체 6,314가구 중 42.22%인 2,666가구가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저소득가구 392가구, 일반 가구 2,274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1년간 아동관련 서비스 이용경험과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4-1>~<표 14-4-27>과 같다.

(1)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40%, 있었다는 2.91%에 불과하다. 가구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에서 이용하였다는 응답비율이 2.99%로, 일반 가구 2.90%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4-1>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91	2.99	2.90
	없다	96.40	96.09	96.45
	모름/무응답	0.69	0.92	0.65
	계	100.00	100.00	100.00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98.49%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4-4-2〉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8.49	93.21	99.43
	사회복지관련기관	1.51	6.79	0.5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이며,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는 전체 가구의 88.26%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불만족하다는 응답비율은 4.18%였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이 90.43%인데 반해, 저소득가구는 76.07%로 낮았다.

〈표 14-4-3〉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8.81	7.99	32.51
	대체로 만족	59.45	68.08	57.92
	그저 그렇다	7.56	19.44	5.45
	대체로 불만족	4.18	4.49	4.12
	매우 불만족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2)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받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82.99%)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6.50%만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비교해 볼 때, 있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가 17.68%로 일반가구 16.30%에 비해 더 많은 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4〉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가구
	있다	16.50	17.68	16.30
	없다	82.99	81.61	83.21
	모름/무응답	0.51	0.71	0.47
	계	100.00	100.00	100.00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제 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97.9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0.58%로 나타났다. 가구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100.00%로 일반가구 97.54%보다 높았다.

〈표 14-4-5〉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7.94	100.00	97.54
	사회복지 관련기관	0.58	-	0.69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0.81	-	0.97
	모름/무응답	0.67	-	0.80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이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1%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가구가 15.71%로 저소득가구의 10.42%보다 높았다.

〈표 14-4-6〉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0.00	20.51	19.91
대체로 만족		51.81	51.84	51.79
그저 그렇다		12.96	17.23	12.16
대체로 불만족		13.28	10.42	13.82
매우 불만족		1.59	-	1.89
모름/무응답		0.36	-	0.43
계		100.00	100.00	100.00

(3)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 가운데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 문제 등)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0.22%에 불과하였다. 이중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1.09%였으며, 일반 가구 중에서는 0.07%였다.

〈표 14-4-7〉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2	1.09	0.07
없다		99.15	98.04	99.34
모름/무응답		0.63	0.87	0.59
계		100.00	100.00	100.00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가구는 6가구에 불과하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30.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아동가구의

42.14%가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가구 아동은 기타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6가구에 불과한 만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14-4-8〉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4.65	20.38	-
사회복지 관련기관		17.62	24.51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30.29	42.14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9.33	12.97	-
기타		28.11	-	100.00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모두 대체로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4-4-9〉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	-	-
대체로 만족		100.00	100.00	100.00
그저 그렇다		-	-	-
대체로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4)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다음은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언어치료, 놀이치료)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0.54%였으며,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0.60%, 일반 가구 중에서는 0.53%였다.

〈표 14-4-10〉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4	0.60	0.53
	없다	98.83	98.47	98.90
	모름/무응답	0.63	0.93	0.57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병원,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 가구는 저소득 가구와 달리 공공기관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 이외에 병원과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4-4-11〉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44.26	66.39	39.96
	사회복지 관련기관	39.14	33.61	40.2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10.17	-	12.15
	학교	6.43	-	7.68
	기타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한다는 응답이 61.09%였다. 가구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60.26% 응답하였다. 일반 가구는 저소득가구와 달리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도 13.26% 있어 (매우)만족하다는 61.26%가 응답하였다.

〈표 14-4-12〉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1.10	-	13.26
	대체로 만족	49.99	60.26	48.00
	그저 그렇다	22.25	-	26.57
	대체로 불만족	16.66	39.74	12.17
	매우 불만족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5) 방과 후 지도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방과 후 지도(공부 방 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방과 후 지도를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라는 전체의 가구는 2.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가구 유형별로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8.75%가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의 1.46%보다 5.99배 높았다.

〈표 14-4-13〉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53	8.75	1.46
	없다	96.85	90.47	97.95
	모름/무응답	0.62	0.78	0.59
	계	100.00	100.00	100.00

방과 후 지도 서비스를 받은 해당가구의 이용기관은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31.73%,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31.64%, 학교가 26.89%이었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방과 후 지도 서비스를 학교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2.83%). 저소득가구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은 사회복지관련기관(41.41%)이었다.

〈표 14-4-14〉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1.73	26.38	37.27
사회복지 관련기관		31.64	41.41	21.54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9.74	11.07	8.36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26.89	21.14	32.83
기타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방과 후 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체 가구의 81.53%는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86.57% (매우)만족하는 반면, 저소득가구는 76.67%가 (매우)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5〉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7.17	15.54	18.86
대체로 만족		64.36	61.13	67.71
그저 그렇다		12.51	14.94	10.00
대체로 불만족		2.22	4.36	-
매우 불만족		3.74	4.03	3.43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6) 무료급식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4-16>과 같다. 무료급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가구의 17.33%에 해당하였다. 일반아동가구는 11.51%로 10가구 가운데 1가구인 반면, 저소득아동가구는 51.07%로 2가구 중 1가구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표 14-4-16>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33	51.07	11.51
	없다	82.08	48.31	87.90
	모름/무응답	0.59	0.62	0.59
	계	100.00	100.00	100.00

무료급식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가구가 이용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85.47%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13.6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4-4-17>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5.47	86.64	84.57
	사회복지 관련기관	-	-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88	0.37	1.27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13.65	12.99	14.16
	기타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무료급식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86.98%가 (매우)만족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별로도 저소득가구의 89.74%, 일반가구의 84.87%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4-18〉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2.44	24.16	21.13
	대체로 만족	64.54	65.58	63.74
	그저 그렇다	6.93	6.36	7.37
	대체로 불만족	5.98	3.64	7.76
	매우 불만족	0.11	0.26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7) 학비지원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지원(장학금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4-4-19>와 같다. 전체가구의 8.32%만 학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5.04%로 낮은 반면, 저소득가구는 27.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4-4-19〉 학비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8.32	27.35	5.04
	없다	91.04	72.03	94.32
	모름/무응답	0.64	0.62	0.64
	계	100.00	100.00	100.00

학비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기관은 공공기관(72.32%)이었고, 학교(15.76%), 기타(8.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아동가구는 공공기관이 60.75%, 학교가 17.28%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순

위는 같지만, 공공기관을 통한 학비지원이 84.66%로 일반가구보다 높았고, 학교는 14.14%로 낮았다. 일반 가구는 그 외에도 종교 단체 혹은 시민단체와 기타 기관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20〉 학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2.32	84.66	60.75
사회복지 관련기관		-	-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87	-	5.57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15.76	14.14	17.28
기타		8.47	-	16.40
모름/무응답		0.58	1.20	-
계		1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학비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가구의 91.12%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가구의 학비지원에 대한 (매우)만족한다는 응답이 94.44%로, 저소득 가구의 87.57%보다 다소 높았다.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일반가구는 0.84%, 저소득가구는 4.44%였다.

〈표 14-4-21〉 학비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6.93	21.85	31.69
대체로 만족		64.19	65.74	62.75
그저 그렇다		5.72	6.77	4.72
대체로 불만족		2.11	3.47	0.84
매우 불만족		0.47	0.97	-
모름/무응답		0.58	1.20	-
계		100.00	100.00	100.00

(8) 예체능 교실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예체능 교실(컴퓨터, 영어, 미술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1.17%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저소득가구 가운데 5.51%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가구 0.43%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표 14-4-22〉 예체능 교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7	5.51	0.43
	없다	98.11	93.63	98.88
	모름/무응답	0.72	0.86	0.69
	계	100.00	100.00	100.00

예체능 교실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44.15%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43.80%,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8.94%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 가구는 공공기관이 43.37%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28.88%, 학교가 27.75%이다. 그러나 저소득아동가구 가운데 예체능 교실서비스를 받은 기관은 학교가 5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44.50%이었다.

44) 설문내용이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만 해당되고 비용을 스스로 전부 부담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4-23〉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44.15	44.50	43.37
	사회복지 관련기관	8.94	-	28.88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88	2.72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43.80	51.00	27.75
	기타	1.23	1.78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72.04%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 가구는 85.08%의 비율이 (매우)만족하였고, 저소득 가구 가운데서는 6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4-24〉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3.91	15.15	43.45
	대체로 만족	48.13	51.05	41.63
	그저 그렇다	14.37	20.82	-
	대체로 불만족	9.17	6.58	14.92
	매우 불만족	4.42	6.40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9) 문화활동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 서비스 (문화유산답사, 연극, 견학, 방학 중 캠프 등)를 받아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6%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아동 가구 가운데 문화 활동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7.21%로 일반 가구 아동의 0.70% 보다는 높았다.

〈표 14-4-25〉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6	7.21	0.70
없다		97.63	91.96	98.61
모름/무응답		0.71	0.83	0.69
계		100.00	100.00	100.00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기관은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47.66%, 공공기관이 35.23%,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9.33%의 순이었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학교(36.73%)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43.90%로 높았다. 저소득아동가구는 학교에서 문화활동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53.81%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30.36%로 나타났다.

〈표 14-4-26〉 문화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5.23	30.36	43.90
사회복지 관련기관		6.14	4.93	8.3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9.33	8.35	11.06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47.66	53.81	36.73
기타		-	-	-
모름/무응답		1.64	2.55	-
계		100.00	100.00	100.00

주: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이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이고, 병원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을 의미한다.

문화 활동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0.47%의 높은 비율이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소득구분에 따른 가구별로 보면, 일반아동가구 가

운데서는 83.17%가 (매우)만족한 반면, 저소득아동가구 가운데 문화 활동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4.51%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4-27〉 문화 활동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8.34	15.74	22.97
	대체로 만족	72.07	78.77	60.15
	그저 그렇다	4.22	2.97	6.44
	대체로 불만족	5.37	2.52	10.44
	매우 불만족	-	-	-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2. 아동의 건강

(1) 추가아동 여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질문하였다⁴⁵⁾. 조사결과, 전체 아동 가구 가운데 9.55%의 가구에서 2007년에 새로 아동이 추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는 일반가구는 9.88%, 저소득가구는 7.66%로 일반가구가 다소 높았다.

〈표 14-4-2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55	7.66	9.88
	없다	90.45	92.34	90.12
	계	100.00	100.00	100.00

45) 새로 추가된 아동은 신생아를 비롯하여, 입양이나 친척아동 등 같이 살게 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가구원의 기준이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추가된 아동만이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추가 아동 여부와 출생 당시 체중과 선천성 기형 또는 질환 여부에 응답하였다.

(2) 출생 당시 체중

2007년에 추가된 아동 229명의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인지 살펴본 결과, 6.48%의 아동가구가 2.5kg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 추가된 아동가구 가운데 2.5kg 미만은 4.51%였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에 추가된 아동 가구의 19.40%로 일반 아동가구보다 4.3배 높았다.

〈표 14-4-29〉 출생당시 체중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2.5Kg 이상	85.98	68.32	88.68
	2.5kg 미만	6.48	19.40	4.51
	모름/무응답	7.54	12.28	6.81
	계	100.00	100.00	100.00

(3)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2007년에 새로 추가된 아동 229명이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추가 아동가구 중 0.93%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선천성 기형이 보다 많아서 4.23%이었고 일반 가구의 경우 0.43%에 불과하였다.

〈표 14-4-30〉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3	4.23	0.43
	없다	91.39	82.45	92.76
	모름/무응답	7.68	13.32	6.81
	계	100.00	100.00	100.00

3. 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1)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2007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동 중 한명이라도 학교 교육 이외의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85.89%,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아동가구의 13.96% 였다. 일반가구는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88.82%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69.06%로 낮게 나타났다. 자연히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저소득아동가구는 30.36%로, 일반 가구 11.10% 보다 2.73배 높았다.

〈표 14-4-31〉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함	85.89	69.06	88.82
	이용하지 않음	13.96	30.36	11.10
	모름/무응답	0.15	0.58	0.08
	계	100.00	100.00	100.00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2,290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각 아동 별로 최대 5개까지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 외 사교육 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이용 기관수는 2.35개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평균 2.02개, 일반가구는 평균 2.40개로 나타났다.

〈표 14-4-32〉 사교육·보육기관 평균 이용 기관 수

(단위: 개)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2.35	2.02	2.40
	표준오차	0.03	0.06	0.03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들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은 크게 민간학원 및 사교육이 66.32%로 가장 높고, 보육시설이 19.02%,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12.28%, 기타는 2.38%였다. 세부적으로는 학원이라는 응답이 4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지(19.41%)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볼 때, 저소득아동가구에서 학원을 이용한 비율은 38.22%, 일반아동가구는 43.09%, 개인·그룹과외를 받는 아동은 일반가구아동의 5.09%, 저소득가구아동은 1.38%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아동 가운데 민간학원 및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68.19%였다. 이는 저소득아동가구 55.61%보다 높은 수치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일반 가구는 18.92%, 저소득아동가구는 19.61%였다. 저소득아동가구가 일반가구보다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일반가구는 10.36%였으나, 저소득아동가구는 23.23%로 2배 이상 저소득가구가 높았다. 반면 일반 가구는 친인척 혹은 이웃, 민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한 경우가 있으나 저소득가구는 전혀 없었다. 올해 처음 조사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는 저소득가구는 0.52% 이용하는 반면에 일반 가구는 0.24%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4-33〉 사교육·보육 이용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2.74	3.44	2.62
	민간어린이집	9.97	9.98	9.97
	사설놀이방	0.74	0.69	0.75
	직장보육시설	0.03	0.17	-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1.95	1.89	1.9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3.59	3.44	3.62
민간학원 및 사교육	학원	42.37	38.22	43.09
	개인·그룹과의 학습지	4.54	1.38	5.09
	학습지	19.41	16.01	20.01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8.64	14.80	7.56
	방과후 교실	3.64	8.43	2.80
기타	친·인척	0.51	-	0.60
	이웃	0.15	-	0.1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0.28	0.52	0.24
	민간아이돌보미	0.26	-	0.30
	기타	1.10	0.69	1.18
	모름/무응답	0.08	0.34	0.03
계		100.00	100.00	100.00

(2)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 5천원이었다. 소득에 따른 가구별로는 저소득층은 19만 4천원인 반면, 일반아동가구는 42만 2천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8만 4천원이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7천원, 일반가구 아동은 22만 3천원으로 아동당 월 평균 지출도 일반가구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자녀)이 있는 가구의 13.00%는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았다⁴⁶⁾(일반가구: 12.50%, 저소득가구: 16.69%).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34.49%는 월 2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가구별로는 일반가구에서는 31.55%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56.50%의 대다수가 월 2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

46) 사교육비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포함된다.

였다. 월 평균 가구 사교육비 지출이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8.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이하(16.28%)로 많았다. 일반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지출한다는 가구가 20.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저소득 가구(0.00%)와 달리 100만원 넘게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가구도 4.8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가 22.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17.16%)이었다.

〈표 14-4-34〉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단위: %,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원		13.00	16.69	12.50
5만원 이하		8.25	16.81	7.11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9.96	17.16	8.99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6.28	22.53	15.45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11.29	8.91	11.61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10.77	7.54	11.21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7.50	7.52	7.50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8.71	2.84	20.82
100만원 초과		4.24	-	4.81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가구 평균(표준오차)		394.80 (7.71)	193.53 (12.30)	421.79 (8.41)
1인당 평균(표준오차)		184.09 (3.77)	100.72 (5.49)	222.78 (3.99)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는 9만 7천원으로 저소득층 4만원, 일반가구 10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보육비를 지출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은 4만 3천원이고 저소득가구 아동은 1만 9천원, 일반가구 아동은 5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자녀)가 있는 가구의 64.37%는 보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일반가구는 63.07%, 저소득가구의 73.94%는 보육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20만원 초과~

47) 보육비 역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해당된다

3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비율이 9.76%로 가장 높다. 보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20만원 초과~30만원이하를 지출하는 비율이 10.68%로 가장 높았고, 저소득가구는 5만원 이하가 11.67%로 가장 높았다. 100만원 넘게 보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저소득가구 가운데서는 한 사례도 없는 반면에 일반 가구는 6가구(0.29%)가 존재하였다.

〈표 14-4-35〉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단위: %,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원		64.37	73.94	63.07
5만원 이하		6.88	11.67	6.24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65	5.80	4.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6.97	2.79	7.53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9.76	2.93	10.68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3.26	1.88	3.4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1.76	0.70	1.90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10	0.29	2.34
100만원 초과		0.25	-	0.29
모름/무응답		-	-	-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표준오차)		96.91 (3.99)	39.97 (6.30)	104.55 (4.42)
1인당 평균 (표준오차)		42.92 (2.01)	19.24 (2.59)	52.85 (2.11)

제 IV 부

장애인 부가조사 결과

제15장 장애인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장애인 부가조사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유형별 분포 상에서 지체장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체 장애와 비등록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유형을 모두 표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지체장애와 비등록 장애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부가조사의 응답시점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이다. 3차년도 장애인 부가조사에는 총 878명이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878명 중 군대, 사회복지시설 군복무 등의 이유로 조사가 미완된 8명을 제외하고 총 870명, 99.1%가 조사 완료되었다. 본 분석은 조사 완료된 응답만을 대상으로 표준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자 중 남성은 58.05%, 여성은 41.95%로 분석되었다. 만 18세~65세 미만의 성인이 가장 많아 총 응답자 중 57.8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도 40.92%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26%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다. 장애종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38.06%, 뇌병변장애가 11.38%, 시각장애가 12.99%, 청각장애가 9.20%, 정신지체가 5.63%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3급이 가장 많아 19.43%, 그 다음이 6급으로 18.39%이었다. 1급의 중증장애도 10.34%로 분석되었다. 교육 상태를 고려한 최종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 42.85%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은 11.84%에 불과하였다. 가구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59.20%, 일반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40.80%로 나타나 저소득층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5-1-1〉 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특성		구분	비율	
성	남		58.05	교육수준	무학		42.85	
	여		41.95		초등학교		20.00	
	계		100.00		중학교		25.40	
연령대	미취학		0.00		고등학교		5.75	
	초등~고등		1.26		전문대학		4.94	
	성인		57.82		대학교		1.15	
	어르신		40.92		계		100.00	
	계		100.00					
장애종류	지체장애		38.06		장애등급	1급		10.34
	뇌병변장애		11.38			2급		17.47
	시각장애		12.99			3급		19.43
	청각장애		9.20			4급		13.22
	언어장애		1.26			5급		12.30
	정신지체		5.63			6급		18.39
	발달장애		0.57			7급		8.85
	정신장애		4.71	계			100.00	
	신장장애		3.56	소득수준	일반		40.80	
	심장장애		1.38		저소득	계	59.20	
	호흡기장애		1.15					
	간장애		0.11					
	안면장애		0.23					
	장루, 요루장애		0.69					
	간질장애		0.46					
	비등록장애인		8.62					
	계		100.00					

제2절 (공통1) 장애 원인 및 상황

1. 장애발생원인

장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아 51.15%이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선천적 원인과 출생과정상의 원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8.55%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5.36%보다 높았다. 반면에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의 비중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32.23%) 보다 일반 가구 장애인(38.31%)이 높았다.

〈표 15-2-1〉 장애 발생 원인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선천적 원인		5.86	6.80	4.51
출생시 원인		1.38	1.75	0.85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51.15	52.23	49.57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34.71	32.23	38.31
원인불명		6.90	6.99	6.76
계		100.00	100.00	100.00

2. 장애발생시기 및 당시 소득수준

(1) 장애발생시기

장애가 처음 발생한 나이는 전체적으로 38.69세 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연령이 일반가구 보다 높아 41.23세인 반면에 일반가구는 35.01세 이었다. 앞서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선천적 원인과 출생시 원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 보다 높다는 점과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양 소득집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보다 병원을 찾는 시기가 늦고 이로 인해 장애판정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2-2〉 장애 발생 시기

(단위: 세)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38.69	41.23	35.01
	표준오차	1.36	2.15	1.14
	계	870	515	355

(2) 장애 발생 당시 가구 소득수준

장애 발생 당시의 가구 소득수준에 대해 전체 가구의 42.53%가 가난하거나 매우 가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장애 발생시기부터 가난하거나 매우 가난한 경우가 49.91%였던 반면에 일반가구는 31.83%에 불과하였다.

〈표 15-2-3〉 장애 발생 당시 가구 소득 수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부유	1.49	1.75	1.13
	부유	8.51	6.80	10.99
	보통	47.47	41.54	56.05
	가난	32.76	37.09	26.48
	매우 가난	9.77	12.82	5.35
	계	100.00	100.00	100.00

3. 장애의 현재 상태

장애가 지난 3년간 어떤 상태인지를 질문하였다. 장애 등급 판정은 3년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였다. 고착되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71.27%로 나타났다.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26.80%로 일반 가구의 장애인 18.31%에 비해 약 8.49%p 더 높았다. 반면에 호전(개선)되고 있다는 장애인은 저소득가구 장애인은 4.47%로 일반 가구의 6.48%보다 낮았다.

〈표 15-2-4〉 장애의 현재 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호전(개선)되고 있다		5.29	4.47	6.48
고착되어 있다		71.27	68.73	74.93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다		23.33	26.80	18.31
모름/무응답		0.11	0.00	0.28
계		100.00	100.00	100.00

4. 현재 이용 중인 의료 서비스

현재 의료 중인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 66.55%로 가장 높은 이용 비중을 보였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45.04%가 의료 급여 1종 또는 2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4.51%에 불과하였다.

〈표 15-2-5〉 현재 이용 중인 의료 서비스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의료 급여 1종		22.30	35.91	2.54
의료 급여 2종		6.21	9.13	1.97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4.60	3.50	6.20
건강보험		66.55	51.46	88.44
기타		0.34	0.00	0.85
계		100.00	100.00	100.00

5. 장애 치료의 충분 여부 및 불충분 이유

(1) 장애 치료의 충분 여부

지난 한 달 동안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870명 중 38.05%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61.95%는 그렇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62.72%가 응답하여 일반 가구의 60.85%보다 높았다.

〈표 15-2-6〉 장애 치료의 충분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충분한 치료를 받음)		38.05	37.28	39.15
아니오(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음)		61.95	62.72	60.85
계		100.00	100.00	100.00

(2) 장애 치료의 불충분 이유

지난 한 달 동안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539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36.9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24.46%)이 일반 가구 장애인(12.50%)보다 1.95배 높았다. 이동의 불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3.41%로 나타나 일반 가구 장애인의 0.93%보다 높았다.

〈표 15-2-7〉 장애 치료의 불충분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9.67	24.46	12.50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		6.12	4.02	9.26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30.24	30.03	30.56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36.92	33.12	42.58
치료받기 싫어서		2.23	2.48	1.85
주위의 시선 때문에		0.00	0.00	0.00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0.37	0.62	0.00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0.74	0.62	0.93
치료 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이동의 불편)		2.41	3.41	0.93
기타		1.11	0.93	1.39
모름/무응답		0.19	0.31	0.00
계		100.00	100.00	100.00

6.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 방법

(1)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유치원(보육시설)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유치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100.00% 가 비해당에 응답하였다.

〈표 15-2-8〉 유치원(보육시설)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00	0.00	0.00
안받았다		0.00	0.00	0.00
비해당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2) 초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초등학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100.00% 가 비해당에 응답하였다.

〈표 15-2-9〉 초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00	0.00	0.00
안받았다		0.00	0.00	0.00
비해당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3) 중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중학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은 한 명(0.11%)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가구의 장애인인 이 한 명의 장애인은 중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10〉 중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11	0.00	0.28
안받았다		0.00	0.00	0.00
비해당		99.89	0.00	99.72
계		100.00	100.00	100.00

중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을 받았다는 일반 가구 장애인은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5-2-11〉 중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0.00	-	0.00
참는다		0.00	-	0.00
항의한다		100.00	-	100.00
고발한다		0.00	-	0.00
기타		0.00	-	0.00
계		100.00	-	100.00

4) 고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고등학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은 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저소득 가구 장애인 한 명(0.11%)은 고등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을 경

험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아무도 없었다.

〈표 15-2-12〉 고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11	0.19	0.00
	안받았다	0.69	0.58	0.85
	비해당	99.20	99.93	99.15
	계	100.00	100.00	100.00

고등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한 명의 장애인은 저소득층 학생이었으며, 이 학생은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5-2-13〉 고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0.00	0.00	-
	참는다	0.00	0.00	-
	항의한다	100.00	100.00	-
	고발한다	0.00	0.00	-
	기타	0.00	0.00	-
	계	100.00	100.00	-

5) 대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자료에서 지난 1년간 대학교 입학, 전학을 경험한 장애인은 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모두 대학교 입학, 전학 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5-2-14〉 대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00	0.00	0.00
	안받았다	0.46	0.19	0.85
	비해당	99.54	99.81	99.15
	계	100.00	100.00	100.00

(2) 학교 생활시(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교사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비율은 0.23%이며 1.49%는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98.28%는 비해당이였다.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 각각 0.19% 와 0.28% 이였다.

〈표 15-2-15〉 교사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23	0.19	0.28
	안받았다	1.49	0.78	2.54
	비해당	98.28	99.03	97.18
	계	100.00	100.00	100.00

교사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각각 무시한다(50.00%), 항의한다(50.00%)로 응답하였다. 항의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였다. 일반 가구 장애인은 무시한다로 응답하였다.

〈표 15-2-16〉 교사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50.00	0.00	100.00
	참는다	0.00	0.00	0.00
	항의한다	50.00	10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해당 장애인 중에서 0.34%명이었다. 이 중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0.19%이었으며, 일반 가구의 장애인은 0.56%이었다.

〈표 15-2-17〉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34	0.19	0.56
	안받았다	1.38	0.00	2.25
	비해당	98.28	100.00	97.18
	계	100.00	100.00	100.00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해서는 3명의 학생이 각각 무시한다, 참는다, 항의한다로 각기 다른 응답을 하였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1명)은 참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가구 장애인은 무시한다(50.00%)와 항의한다(50.00%)로 각각 응답하였다.

〈표 15-2-18〉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33.34	0.00	50.00
	참는다	33.33	100.00	0.00
	항의한다	33.33	0.00	5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3)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중 0.11%만이 받았다고 응답을 하고, 나머지 1.61%은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었다.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모두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5-2-19〉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11	0.19	0.00
	안받았다	1.61	0.78	2.82
	비해당	98.28	99.03	97.18
	계	100.00	100.00	100.00

학부모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한 명의 장애인은 저소득층 장애인이었으며 참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5-2-20〉 학부모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0.00	0.00	-
	참는다	100.00	100.00	-
	항의한다	0.00	0.00	-
	고발한다	0.00	0.00	-
	기타	0.00	0.00	-
	계	100.00	100.00	-

(3) 결혼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결혼 전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는 지난 1년간 결혼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1.15%이었다. 결혼 전 차별 경험에 대해 비해당이 아니면서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결혼 전에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1.69%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에 비해 결혼 전 차별 경험(0.7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5-2-21〉 결혼 전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1.15	0.78	1.69
	안받았다	2.07	1.17	3.38
	비해당	96.55	97.66	94.93
	모름/무응답	0.23	0.39	0.00
	계	100.00	100.00	100.00

결혼 전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무시한다가 20.00%, 참는다가 80.00%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과 일반 가구 장애인 모두 결혼 전 차별에 대처하는 방식

은 참는다가 무시한다보다 높게 나왔다.

〈표 15-2-22〉 결혼 전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20.00	25.00	17.00
	참는다	80.00	75.00	83.00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결혼 생활 중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지난 1년간 결혼 생활 중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3.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1.61%는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5.06%는 비해당이였다. 결혼 생활 중 차별 경험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4.27%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차별 경험 1.97%보다 2.17배 높았다.

〈표 15-2-23〉 결혼 생활 중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3.33	4.27	1.97
	안받았다	61.61	55.73	70.14
	비해당	35.06	40.00	27.89
	계	100.00	100.00	100.00

결혼 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참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장애인이 60.7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항의한다는 응답도 14.29%에 이르렀으며, 고발한다는 응답도 7.14%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결혼 생활 중 차별에 대해 무시하거나, 참는다는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에 항의한다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항의한다와 고발한다는 비중이 저소득가구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5-2-24〉 결혼 생활 중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17.87	18.18	16.67
	참는다	60.70	63.63	49.99
	항의한다	14.29	13.64	16.67
	고발한다	7.14	4.55	16.67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4) 취업시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취업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취업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4.94%이었다. 11.38%은 취업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3.68%는 비해당이었다. 취업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5.63%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차별 경험 응답(3.94%)보다 높았다.

〈표 15-2-25〉 취업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4.94	5.63	3.94
	안받았다	11.38	7.77	16.62
	비해당	83.68	86.60	79.44
	계	100.00	100.00	100.00

취업 시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응답 중 무시한다가 24.40%, 참는다가 68.90%, 항의한다가 6.70%로 나타났다. 취업 시 차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항의한다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26〉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24.40	22.58	28.57
	참는다	68.90	67.74	71.43
	항의한다	6.70	9.68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5) 직장생활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소득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소득(임금)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3.45%이었다. 34.72%는 직장생활 중 소득(임금)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1.83%는 비해당이었다. 직장생활 중 소득(임금) 차별 경험에 대해 저소득 가구는 69.51%가 비해당인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50.71%가 비해당이었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일반 가구에서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5-2-27〉 직장생활 중 소득(임금)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3.45	3.11	3.94
안받았다		34.72	27.38	45.35
비해당		61.83	69.51	50.71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생활 중 소득(임금)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 중 무시한다가 16.50%, 참는다가 77.42%, 항의한다가 3.04%로, 기타 응답도 3.04%이었다. 소득(임금) 차별에 대해 저소득층은 참는 방식(82.36%)으로 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생활 소득(임금)차별에 대해 항의한 장애인은 일반 가구의 장애인이었다.

〈표 15-2-28〉 직장생활 소득(임금)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16.50	11.76	21.43
참는다		77.42	82.36	71.43
항의한다		3.04	0.00	7.14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3.04	5.88	0.00
계		100.00	100.00	100.00

2)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2.18%이었다. 18.39% 은 직장생활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79.43%는 비해당이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3.10%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 1.55%보다 2배 높았다. 이는 일반 가구 장애인이 동료가 있는 직장생활을 경

험하는 비중이 보다 높기 때문일 수 있다.

〈표 15-2-29〉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2.18	1.55	3.10
	안받았다	18.39	10.87	29.30
	비해당	79.43	87.58	67.61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생활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무시한다가 15.50%, 참는다가 85.50%으로 나타났다.

〈표 15-2-30〉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15.50	22.22	9.09
	참는다	85.50	77.78	90.91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3) 승진에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1.26%이었다. 14.94%는 직장생활 중 승진문제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3.80%는 비해당이었다. 승진에서의 차별 경험 여부도 일반 가구 장애인이 저소득 가구 장애인보다 높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가구 장애인이 승진의 기회가 있는 직장을 보다 많이 다니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표 15-2-31〉 승진에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1.26	0.97	1.69
	안받았다	14.94	7.96	25.07
	비해당	83.80	91.07	73.24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생활 중 승진에서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 중 무시한다가 18.18%, 참는다가 81.8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5-2-32〉 승진에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18.18	20.00	16.67
	참는다	81.82	80.00	83.33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6)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모두 저소득층 이었으며, 전체 장애인 중 0.34%이었다. 2.99%은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96.67%는 비해당이었다.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모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었다.

〈표 15-2-33〉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34	0.58	0.00
안받았다		2.99	1.94	4.51
비해당		96.67	97.48	95.49
계		100.00	100.00	100.00

운전면허 제도상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는다는 저소득층 장애인 3명은 무시한다가 33.33%, 참는다가 33.34%, 항의한다가 33.33%의 방식으로 각각 대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2-34〉 운전면허 제도상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33.33	33.33	-
참는다		33.34	33.34	-
항의한다		33.33	33.33	-
고발한다		0.00	0.00	-
기타		0.00	0.00	-
계		100.00	100.00	-

(7) 보험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보험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보험 제도상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6.78%이었다. 10.80%는 보험 제도상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2.42%는 비해당이였다. 보험 제도상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7.32%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6.41%보다 높았지만, 이는 지난 1년간 보험을 가입하려는 시도를 일반 가구가 더 많이 했기 때문

일 수 있다. 이는 보험 제도상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일반 가구가 16.06%로 저소득 가구의 7.18%보다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15-2-35〉 보험 제도상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6.78	6.41	7.32
안받았다		10.80	7.18	16.06
비해당		82.42	86.41	76.62
계		100.00	100.00	100.00

보험 제도상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중 무시한다가 37.24%, 참는다가 55.96%, 항의한다가 5.10%, 기타가 1.70%이었다. 보험제도상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일반가구간에 일반 가구 장애인이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던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5-2-36〉 보험 제도상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37.24	39.39	34.62
참는다		55.96	54.55	57.68
항의한다		5.10	6.06	3.85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1.70	0.00	3.85
계		100.00	100.00	100.00

(8)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4.48%이었다. 90.69%는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83%는 비해당이었다.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6.21%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응답(1.97%)보다 3.15배 높았다.

〈표 15-2-37〉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4.48	6.21	1.97
안받았다		90.69	90.10	91.55
비해당		4.83	3.69	6.48
계		100.00	100.00	100.00

의료기관 이용 시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 중 무시한다가 23.08%, 참는다가 61.54%, 항의한다가 15.38%이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참는다는 응답 비중이 65.62%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무시한다와 참는다가 같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15-2-38〉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23.08	18.75	42.86
참는다		61.54	65.62	42.86
항의한다		15.38	15.63	14.28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9)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정보통신 이용 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모두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전체 장애인 중 0.57%이었다.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정보 통신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아무도 없었다.

〈표 15-2-39〉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57	0.97	0.00
안받았다		81.61	79.42	84.79
비해당		17.82	19.61	15.21
계		100.00	100.00	100.00

정보통신 이용 시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았다는 저소득층 장애인은 무시한다 20.00%, 참는다 80.00%의 방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40〉 정보통신 이용 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20.00	20.00	-
참는다		80.00	80.00	-
항의한다		0.00	0.00	-
고발한다		0.00	0.00	-
기타		0.00	0.00	-
계		100.00	100.00	-

(10)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여부 및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1)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여부 및 대처 방법

본 분석에서 지난 1년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전체 장애인 중 3.22%이었다. 84.14%는 지역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2.64%는 비해당이였다. 지역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89.01%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80.77%)보다 높았다.

〈표 15-2-41〉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3.22	3.50	2.82
	안받았다	84.14	80.77	89.01
	비해당	12.64	15.73	8.17
	계	100.00	100.00	100.00

지역사회생활에서 받은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 중 무시한다가 40.74%, 참는다가 51.85%, 항의한다가 7.41%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장애인은 지역사회생활 차별에 대해 무시한다는 대처 방식이 참는다는 대처 방식보다 높은 반면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참는다는 대처 방식이 보다 높았다.

〈표 15-2-42〉 지역사회생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가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무시한다	40.74	35.29	50.00
	참는다	51.85	58.83	40.00
	항의한다	7.41	5.88	1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7. 외출 정도 및 외출 하지 않는 이유

(1) 외출 정도

지난 한 달 동안 외출(목발, 전동 휠체어등 보조기구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외출 포함)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물었다.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은 전체 69.20% 으로 나타났다. 주 3~4회 외출했다는 응답도 10.92%이었다. 주 1~2회 외출했다는 장애인은 7.59%이었다.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장애인도 8.97%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한다가 73.80%이었으나,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거의 매일 외출한다가 66.02%로 보다 적었다. 월 3회 이내로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13.20%)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1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43〉 외출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일	69.19	66.02	73.80
	주 3~4회	10.92	12.82	8.17
	주 1~2회	7.59	7.96	7.04
	월 3회 이내	3.33	3.88	2.54
	거의 외출하지 않음	8.97	9.32	8.45
	계	100.00	100.00	100.00

(2) 외출하지 않는 이유

지난 한 달 동안 월 3회 이내로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60.75%로 가장 높았다. 일반 가구 장애인과 달리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경우 교통 불편이나 편의 시설의 부족을 외출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15-2-44〉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교통이 불편해서		0.93	1.47	0.00
장애인 편의 시설의 부족		0.93	1.47	0.00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60.75	57.36	66.68
시간이 없어서		0.00	0.00	0.00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4.30	23.53	25.64
주위의 시선 때문에		1.87	1.47	2.56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87	2.94	0.00
기타		4.67	5.88	2.56
모름/무응답		4.67	5.88	2.56
계		100.00	100.00	100.00

제3절 (공통2) 일상생활

1.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도움 주는 사람, 도움의 충분성

(1)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63.33%로 가장 많았다.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아 16.90% 였다.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

움이 필요한 정도는 저소득가구의 장애인과 일반가구의 장애인이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5-3-1〉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63.33	62.34	64.80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10.23	10.29	10.14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6.90	17.57	15.77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83	5.63	3.66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71	4.08	5.63
계		100.00	100.00	100.00

(2)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움시간이 많은 순으로 3명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원 번호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1순위에 대해 가장 많은 52.63%가 배우자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모 17.84%, 자녀 16.10%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1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배우자와 친구, 이웃인 비중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도움을 주는 1순위가 무료가정 봉사원인 경우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만이 있었다.

〈표 15-3-2〉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배우자		52.63	55.30	48.33
부모		17.84	15.60	21.35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16.10	12.77	21.35
형제자매		3.04	2.13	4.49
조부모		0.87	0.71	1.12
손자녀		0.43	0.71	0.00
기타자녀		0.43	0.00	1.12
친척		0.87	0.71	1.12
친구		1.30	2.13	0.00
이웃		1.30	2.13	0.00
유료가정봉사원		0.43	0.71	0.00
유료 간병인		1.30	1.42	1.12
유료 활동보조인		0.00	0.00	0.00
무료 가정봉사원		1.30	2.13	0.00
무료 간병인		0.00	0.00	0.00
무료 활동보조인		0.00	0.00	0.00
기타		1.30	2.13	0.00
없음		0.43	0.71	0.00
모름/무응답		0.43	0.71	0.00
계		100.00	100.00	100.00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2순위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와주는 사람 2순위로는 자녀가 가장 많아 46.39%이었다. 도와주는 사람 2순위가 자녀인 경우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39.24%)보다 일반 가구 장애인(55.93%)이 보다 높았다. 도와 주는 사람 2순위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무료가정봉사원(8.70%)이었다. 일반 가구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2순위가 무료 가정 봉사원, 무료 활동보조인이라는 응답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무료 가정봉사원(15.19%), 무료 활동보조인(6.33%)으로 나타났다.

〈표 15-3-3〉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배우자		5.80	5.06	6.78
부모		7.97	7.59	8.48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46.39	39.24	55.93
형제자매		8.70	6.33	11.86
조부모		2.90	2.53	3.39
손자녀		3.62	2.53	5.08
기타자녀		2.90	1.27	5.08
친척		2.17	2.53	1.70
친구		0.72	1.27	0.00
이웃		2.90	5.06	0.00
유료가정봉사원		0.72	0.00	1.70
유료 간병인		0.00	0.00	0.00
유료 활동보조인		0.72	1.27	0.00
무료 가정봉사원		8.70	15.19	0.00
무료 간병인		0.00	0.00	0.00
무료 활동보조인		3.62	6.33	0.00
기타		2.17	3.80	0.00
없음		0.00	0.00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로는 자녀가 가장 많아 25.7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14.29%를 차지하였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에 이웃(15.00%), 무료 활동보조인(15.00%)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0.00%)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유료 활동보조인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라고 응답한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아무도 없는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13.33%가 유료 활동 보조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15-3-4〉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배우자	0.00	0.00	0.00
	부모	14.29	15.00	13.33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25.72	25.00	26.67
	형제자매	5.71	5.00	6.67
	조부모	0.00	0.00	0.00
	손자녀	11.43	5.00	20.00
	기타자녀	0.00	0.00	0.00
	친척	5.71	0.00	13.33
	친구	2.86	5.00	0.00
	이웃	8.57	15.00	0.00
	유료가정봉사원	0.00	0.00	0.00
	유료 간병인	0.00	0.00	0.00
	유료 활동보조인	5.71	0.00	13.33
	무료 가정봉사원	2.86	5.00	0.00
	무료 간병인	0.00	0.00	0.00
	무료 활동보조인	8.57	15.00	0.00
	기타	8.57	10.00	6.67
	없음	0.00	0.00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3)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의 충분성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이 충분한지를 물었다. 부족한 편이라고 28.70%가 응답하였다. 5.22%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층의 장애인은 일반가구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41.13%로 일반가구의 21.47%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표 15-3-5〉 도움의 충분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충분하다	19.57	13.48	29.21
	충분한 편이다	46.51	45.39	48.32
	부족한 편이다	28.70	33.33	21.35
	매우 부족하다	5.22	7.80	1.12
	계	100.00	100.00	100.00

2.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장래이용 희망, 이용시 부담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장래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용한다면 본인부담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6.09%에 불과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8.51%인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2.25%에 불과하였다.

〈표 15-3-6〉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6.09	8.51	2.25
	이용하지 않는다	93.91	91.49	97.75
	계	100.00	100.00	100.00

(2)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희망여부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향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가 응답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40.43%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래 이용 의향은 저소득층 장애인 중 44.68%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가구의 장애인은 33.71%만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15-3-7〉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40.43	44.68	33.71
	이용하지 않는다	59.57	55.32	66.29
	계	100.00	100.00	100.00

(3)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시 희망하는 본인부담 정도

향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서비스가 주당 10시간 이용시 7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자기부담이 있다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5.90%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당 7천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21.5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경우 자기 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49%로 일반가구 장애인의 40.00%보다 높았다. 반면에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일반 가구 장애인은 6.67%인 반면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1.59%에 불과하였다.

〈표 15-3-8〉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3.23	1.59	6.67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즉 주당 2만 8천원정도)		8.60	4.76	16.67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즉 주당 2만 1천원정도)		5.38	4.76	6.67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즉 주당 1만 4천원정도)		5.38	1.59	13.33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즉 주당 7천원 정도)		21.51	23.81	16.67
자기 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55.90	63.49	40.00
계		100.00	100.00	100.00

3.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K-ADL(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보았다. 기본적 일상생활이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등을 말한다.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경증 기준은 12개 항목 중 1개의 부분도움에서 4개의 부분도움이나 2개의 완전도움이며, 중증은 경증을 초과한 항목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장애인 중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83.68%로 나타났다. 경증은 8.50%, 중증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7.82%이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과 일반가구 장애인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9〉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상없음		83.68	83.50	83.95
경증		8.50	8.74	8.17
중증		7.82	7.76	7.88
계		100.00	100.00	100.00

4.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K-IADL(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수단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보았다. 수단적 일상생활이란 몸 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 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등을 말한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10개 항목 중 1개의 부분도움에서 2개의 부분도움이나 1개의 완전도움을 경증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증은 경증을 초과한 항목 수부터 10개의 부분도움이나 5개의 완전도움까지, 최종증은 중증을 초과한 항목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장애인 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64.67%로 나타났다. 경증은 10.50%, 중증은 13.45%이었으며, 최종증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11.38%에 이르렀다. 저소득 장애인 중 수단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중증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24.86%, 일반 가구 장애인은 24.79%로 비슷하였다.

〈표 15-3-10〉 수단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상없음		64.67	62.91
경증		10.50	12.23	7.89
중증		13.45	13.98	12.68
최중증		11.38	10.88	12.11
계		100.00	100.00	100.00

5.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시 주변의 도움 여부 및 도움의 횟수

다음으로 지난 1개월 동안 경제적 또는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물질적 혹은 보살핌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질문하였다.

(1)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같이 사는 가구원이 아닌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보다 많아 58.17%이었다. 저소득가구 장애인(45.05%)은 일반 가구 장애인(36.90%)에 비해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더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표 15-3-11〉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의 도움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41.72	45.05	36.90
	안받았다	58.17	54.76	63.10
	모름/무응답	0.11	0.1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같이 사는 가구원이 아닌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물질적 도움은 평균 1.33회, 보살핌은 3.7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장애인이 받는 월 평균 물질적 도움의 횟수(1.50회)도 일반 가구 장애인(1.05회)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보살핌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지난 1개월간 평균 4.51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3.29회 보다 높았다.

〈표 15-3-12〉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33	0.10	1.50	0.14	1.05	0.11
	보살핌	3.73	0.32	3.29	0.38	4.51	0.59

(2)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3.79%에 불과하였다. 친척(3촌 이상)으로 받은 도움여부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과 일반 가구 장애인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표 15-3-13〉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3.79	3.69
안받았다		96.10	96.12	96.06
모름/무응답		0.11	0.1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도움은 평균 0.64회, 보살핌은 2.48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 저소득 장애인이 받는 물질적 도움(0.53회)과 보살핌(1.79회)은 일반 가구 장애인이 받는 것보다 적었다.

〈표 15-3-14〉 친척(3촌 이상)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0.64	0.15	0.53	0.14	0.79	0.30
보살핌		2.48	0.90	1.79	0.33	3.43	2.08

(3)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친구 및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4.94%로 나타났다. 친구 및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5.05%, 일반 가구 장애인은 4.79%이었다.

〈표 15-3-15〉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4.94	5.05	4.79
안받았다		94.83	94.56	95.21
모름/무응답		0.23	0.3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친구 및 동료로부터 받은 물질적 도움은 평균 1.49회, 보살핌은 4.07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일반 가구 장애인보다 물질적 도움이나 보살핌을 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3-16〉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49	0.70	2.35	1.14	0.18	0.13
보살핌		4.07	1.40	4.73	2.28	3.05	0.62

(4)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6.21%로 나타났다.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은 일반 가구 장애인(3.38%)보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8.16%)이 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17〉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6.21	8.16	3.38
안받았다		93.68	91.65	96.62
모름/무응답		0.11	0.1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1.91회, 보살핌은 7.70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웃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나 일반 가구 장애인이나 비슷하였으나 보살핌은 오히려 일반 가구 장애인(9.17회)이 저소득 가구 장애인(7.29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표준오차도 일반 가구 장애인이 3.64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보살핌 표준오차 1.87로 높아 이러한 차이가 저소득 가구 장애인과 일반 가구 장애인간에 일반화가 가능한 차이인지는 차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15-3-18〉 이웃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91	0.50	1.90	0.45	1.92	1.65
보살핌		7.70	1.65	7.29	1.87	9.17	3.64

(5)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5.98%이었다.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역시 일반 가구 장애인(3.38%)보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7.77%)이 더 많이 받았다.

〈표 15-3-19〉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5.98	7.77
안받았다		93.79	91.84	96.62
모름/무응답		0.23	0.3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1.54회, 보살핌은 2.65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종교 단체로부터 저소득 가구장애인은 물질적 도움에 있어서는 일반 가구 장애인 보다 더 많이 받는 반면에 보살핌은 일반 가구 장애인 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3-20〉 종교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54	0.32	1.73	0.38	0.92	0.50
보살핌		2.65	0.62	2.48	0.78	3.25	0.80

(6)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2.76%이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3.69% 도움을 받은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1.41%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3-21〉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2.76	3.69
안받았다		97.01	95.92	98.59
모름/무응답		0.23	0.3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0.67회, 보살핌은 3.38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지난 1개월간 물질적 도움은 0.68회 보살핌은 평균 4.00회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 보살핌을 보다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22〉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0.67	0.20	0.68	0.25	0.60	0.25
보살핌		3.38	1.15	4.00	1.42	1.00	0.32

(7)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으로부터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7.93%이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도움도 저소득 가구 장애인(11.95%)이 일반 가구 장애인(2.54%)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23〉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7.93	11.95
안받았다		91.84	87.96	97.46
모름/무응답		0.23	0.39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1.62회, 보살핌은 2.81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으로부터 물질적 도움(1.78회)을 일반 가구 장애인(0.56회)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보살핌에 있어서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2.47회)보다 일반 가구 장애인(5.11회)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비중이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11.95%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2.54%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생각하면 보살핌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 장애인과 일반 가구 장애인의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는 역전될 것이다.

〈표 15-3-24〉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62	0.49	1.78	0.55	0.56	0.44
보살핌		2.81	0.50	2.47	0.48	5.11	2.07

(8)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21.26%이었다.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도움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33.40% 받는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3.66%에 불과하였다.

〈표 15-3-25〉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21.26	33.40	3.66
안받았다		78.51	66.41	96.06
모름/무응답		0.23	0.19	0.28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1.11회, 보살핌은 0.22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평균 1.07회 물질적 도움을 받은 반면에, 일반 가구 장애인은 1.69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앞서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와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구 비중이 33.40%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3.66%보다 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적 수치 면에서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물질적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표 15-3-26〉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11	0.09	1.07	0.07	1.69	0.87
보살핌		0.22	0.06	0.22	0.67	0.23	0.12

(9)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0.46%에 불과하였다. 이는 분석대상 중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저소득 장애인은 0.19%이었다. 나머지 0.85%는 일반 가구 장애인이었다.

〈표 15-3-27〉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0.46	0.19
안받았다	99.31	99.62	98.87	
모름/무응답	0.23	0.19	0.28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3.25회, 보살핌은 25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저소득장애인 1명은 물질적 도움은 받지 못했으며, 보살핌만 지난 1개월간 20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가구 장애인은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로부터 평균 4.33회의 물질적 도움을 받았으나 표준오차도 4.33으로 나타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0과 유의미하게 다른 차이는 아니었다. 일반 가구 장애인은 학교로부터 보살핌은 지난 1개월간 평균 26.67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3-28〉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3.25	3.25	0.00	-	4.33	4.33
보살핌		25.00	8.66	20.00	-	26.67	12.02

(10) 기타의 도움 및 도움의 횟수

지난 1개월간 위의 문항에 있지 않은 기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장애인 중 4.25%로 나타났다. 기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비중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6.41%로 일반 가구 장애인 1.13%보다 5.7배 정도 높았다.

〈표 15-3-29〉 기타의 도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받았다	4.25	6.41
안받았다		95.52	93.90	98.59
모름/무응답		0.23	0.19	0.28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간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1.62회, 보살핌은 2.32회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기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움의 횟수도 일반 가구 장애인보다 많았다.

〈표 15-3-30〉 기타의 물질적 도움, 보살핌

(단위: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물질적도움		1.62	0.52	1.76	0.57	0.50	0.29
보살핌		2.32	0.61	2.55	0.67	0.50	0.29

제4절 (개별1)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48)

1. K-CBCL 우울/불안 척도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우울/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학생의 우울/불안 정도를 조사하였다. 학생의 현재나 지난 6개월 내 경향을 14문항으로 파악하였다. 장애 학생 12명 중 응답하지 않은 한 학생을 제외한 전체 평균은 28점 만점에 3.01점으로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는 5.76점으로 일반가구 1.92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절대적으로도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소득가구 장애인 학생의 우울/불안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5-4-1〉 K-CBCL 우울/불안 척도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우울/불안		3.01	4.66	5.76	7.12	1.92	3.37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계산한 값.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은 것임. 일반적으로 12-17세 남학생을 기준으로 평균은 3.31, 표준오차는 3.47, 여학생을 기준으로 평균은 4.18, 표준오차는 4.08을 나타냄.

48) 미취학 아동(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설문의 사례수는 하나도 없었다.

2.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서비스 필요여부 및 지난 한 달 간 이용여부를 질문하였다. 전체 11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필요여부

장애 학생 중에서 특수학급(일반학교)은 54.10%, 특수학교는 50.54%, 진로상담은 50.19%, 학교 방과 후 활동은 49.13%, 부모교육은 45.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도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나, 저소득가구에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필요성은 6.98%로 매우 낮은 반면 심리치료의 필요성은 43.59%로 높았고, 이와 반대로 일반가구에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필요성은 81.61%로 매우 높았다.

〈표 15-4-2〉 서비스 필요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특수학교		50.54	37.74	11.72	23.88	44.32	31.80	66.10	33.90	0.00
특수학급(일반학교)		54.10	34.18	11.72	6.98	61.22	31.80	81.61	18.39	0.00
학교 방과 후 활동		49.13	39.15	11.72	43.59	24.61	31.80	52.36	47.64	0.00
복지관 방과 후 활동		34.52	53.76	11.72	6.98	61.22	31.80	50.60	49.40	0.00
물리치료(초음파 치료 등)		7.26	81.02	11.72	19.71	48.49	31.80	0.00	100.00	0.00
언어치료(발음교정 등)		18.30	69.98	11.72	6.98	61.22	31.80	24.90	75.10	0.00
심리치료(상담 등)		31.79	56.49	11.72	43.59	24.61	31.80	24.90	75.10	0.00
작업치료(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 중심)		24.53	63.75	11.72	23.88	44.32	31.80	24.90	75.10	0.00
놀이치료(모래치료 등)		2.57	85.71	11.72	6.98	61.22	31.80	0.00	100.00	0.00
음악치료(노래부르기 등)		13.28	75.00	11.72	16.89	51.31	31.80	11.17	88.83	0.00
미술치료(그림그리기 등)		16.77	71.51	11.72	16.89	51.31	31.80	16.70	83.30	0.00
주간보호		10.54	77.74	11.72	0.00	68.20	31.80	16.70	83.30	0.00
단기보호		7.05	81.23	11.72	0.00	68.20	31.80	11.17	88.83	0.00
그룹홈		9.62	78.66	11.72	6.98	61.22	31.80	11.17	88.83	0.00
장기시설보호		15.85	72.43	11.72	23.88	44.32	31.80	11.17	88.83	0.00
진로상담		50.19	38.09	11.72	43.59	24.61	31.80	54.05	45.95	0.00
부모교육		45.63	42.65	11.72	43.59	24.61	31.80	46.83	53.17	0.00

(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장애 학생 중에서 특수학교는 40.19%, 특수학급(일반학교)은 31.13%, 진로상담은 29.57%, 복지관 방과 후 활동은 24.90%가 이용하였다. 저소득가구에서는 학교 방과 후 활동이 19.71%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특수학급(일반학교)와 미술치료는 16.89%가 이용하였다. 반면 일반가구는 특수학교 이용률이 59.58%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상담 이용률도 46.83%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저소득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표 15-4-3〉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미이용	모름 /무응답	이용	미이용	모름 /무응답	이용	미이용	모름 /무응답
특수학교		40.19	48.09	11.72	6.98	61.29	31.80	59.58	40.42	0.00
특수학급(일반학교)		31.13	57.15	11.72	16.89	51.31	31.80	39.44	60.56	0.00
학교 방과 후 활동		17.81	70.47	11.72	19.71	48.49	31.80	16.70	83.30	0.00
복지관 방과 후 활동		24.90	63.38	11.72	0.00	68.20	31.80	39.44	60.56	0.00
물리치료(초음파 치료 등)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언어치료(발음교정 등)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심리치료(상담 등)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작업치료(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 중심)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놀이치료(모래치료 등)		2.57	85.71	11.72	6.98	61.22	31.80	0.00	100.00	0.00
음악치료(노래부르기 등)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미술치료(그림그리기 등)		9.72	78.56	11.72	16.89	51.31	31.80	5.53	94.47	0.00
주간보호		3.49	84.79	11.72	0.00	68.20	31.80	5.53	94.47	0.00
단기보호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그룹홈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장기시설보호		0.00	88.28	11.72	0.00	68.20	31.80	0.00	100.00	0.00
진로상담		29.57	58.71	11.72	0.00	68.20	31.80	46.83	53.17	0.00
부모교육		7.05	81.23	11.72	0.00	68.20	31.80	11.17	88.83	0.00

3. CESD-11 우울척도

CESD-11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 간 우울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1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장애학생 전체 평균은 4.0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저소득가구 평균이 6.21점으로 일반가구 평균인 3.21점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절대적 수준은 역시 낮았다.

〈표 15-4-4〉 CESD-11 우울척도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우울		4.06	6.59	6.21	4.95	3.21	7.27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 (1 :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 4 :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하여 우울척도를 계산함. 하위문항 ①, ②는 역점수 처리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이며,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이 의심됨.

4.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1)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현재 이용여부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학생의 26.01%였다. 저소득가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반면, 일반가구의 41.19%가 이용하였다.

〈표 15-4-5〉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26.01	0.00	41.19
이용하지 않는다		62.27	68.20	58.81
모름 / 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장래 이용희망여부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향후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전체 장애학생의 46.19%, 저소득가구의 43.59%, 일반가구의 47.71%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수준의 이용희망여부를 나타내었다.

〈표 15-4-6〉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46.19	43.59	47.71
이용하지 않겠다		42.09	24.61	52.29
모름 / 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5.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이용 시 부담정도

(1)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현재 이용여부

지역혁신사업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다.

〈표 15-4-7〉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한다		0.00	0.00	0.00
이용하지 않는다		88.28	68.20	100.00
모름 / 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장래 이용희망여부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가구의 40.7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는 23.88%만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의 50.6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사를 나타내었다.

〈표 15-4-8〉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40.75	23.88	50.60
	이용하지 않겠다	47.53	44.32	49.40
	모름 / 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3)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 정도

향후 지역혁신사업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6명의 장애인에게 지역혁신사업서비스가 주당 5회 이용 시 최소 3만 5천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30%까지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30.3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7.00%로 가장 높았다. 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5-4-9〉 지역혁신사업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40.79	0.00	67.00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즉, 주당 1만 4천원에서 6만원 정도)	0.00	0.00	0.00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즉, 주당 1만 5백원에서 4만 5천원 정도)	11.87	30.34	0.00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즉, 주당 7천원에서 3만원 정도)	0.00	0.00	0.00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즉, 주당 3천 5백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20.09	0.00	33.00
	자기 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4.91	12.54	0.00
	모름 / 무응답	22.34	57.12	0.00
	계	100.00	100.00	100.00

6. 학교생활

(1) 학교출석 여부

지난 한 달 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장애학생의 응답자 전원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4-10〉 학교출석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학교에 다닌다	88.28	68.20	100.00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0.00	0.00	0.00
	모름 / 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학교적응 정도

학교에 다닌다고 응답한 장애학생에 대해 학교 적응 정도를 질문하였다. 전체가구의 82.05%(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38.85%, 잘 적응하고 있다 43.20%)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저소득가구는 51.31%(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44.33%, 잘 적응하고 있다 6.98%)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 100%에 비해 학교 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5-4-11〉 학교적응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38.85	44.33	35.66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43.20	6.98	64.34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6.23	16.89	0.00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3) 학교생활 문제

현재 학교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 장애학생의 대부분인 68.11%가 문제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24.62%가 문제없다고 응답하였고, 19.71%와 16.89%는 각각 등하교 불편과 친구들의 이해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반가구에서는 93.49%가 문제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51%는 전문교사 부족을 문제점으로 나타냈다.

〈표 15-4-12〉 학교생활 문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문제없다		68.11	24.62	93.49
등하교 불편(교통수단 이용)		7.26	19.71	0.00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		0.00	0.00	0.00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0.00	0.00	0.00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		0.00	0.00	0.00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6.23	16.89	0.00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0.00	0.00	0.00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0.00	0.00	0.00
전문교사 부족		4.11	6.98	6.51
교육도구(기자재) 사용시 불편		0.00	0.00	0.00
교육내용의 부적합		0.00	0.00	0.00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2.57	0.00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4) 방과 후 생활

방과 후에 주로 어떻게 지내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장애학생의 36.72%가 집에서 혼자 지내며, 34.68%는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는 41.51%가 집에서 혼자 지내며, 19.71%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였다. 일반가구는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는 응답이 54.93%로 가장 많아 저소득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표 15-4-13〉 방과 후 생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집에서 혼자 지낸다		36.72	41.51	33.90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		34.68	0.00	54.93
장애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시설에서 보낸다		0.00	0.00	0.00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낸다		0.00	0.00	0.00
일반 보육시설에서 보낸다		0.00	0.00	0.00
가정에서 방문교사가 지도한다		0.00	0.00	0.00
복지시설(기관)에서 보낸다		0.00	0.00	0.00
학원에서 보낸다		0.00	0.00	0.00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14.31	19.71	11.17
기타		2.57	6.98	0.00
모름/무응답		11.72	31.80	0.00
계		100.00	100.00	100.00

(5) 학교결석 이유

질문에 응답한 11명의 학생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본 문항은 생략하였다.

제5절 (개별2)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1.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서비스 필요여부 및 지난 한 달 간 이용여부를 질문하였다. 전체 549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필요여부

전체 성인장애인 중에서 취업알선의 필요가 1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직업상담이 16.65%를 나타내었다. 저소득과가구와 일반가구 역시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필요성이 일반가구의 서비스 필요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5-1〉 서비스 필요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직업상담		16.65	82.40	0.95	20.05	79.72	0.23	13.89	84.57	1.54
취업알선		18.02	81.03	0.95	22.72	77.05	0.23	14.22	84.24	1.54
직업능력평가		5.45	93.14	1.41	4.31	95.46	0.23	6.38	91.25	2.37
일상생활훈련		5.63	93.42	0.95	6.38	93.39	0.23	5.03	93.43	1.54
직업준비훈련		6.84	92.21	0.95	6.59	93.18	0.23	7.04	91.42	1.54
보호작업		1.38	97.67	0.95	1.02	98.75	0.23	1.67	96.79	1.54
주간보호		1.82	97.23	0.95	3.18	96.59	0.23	0.72	97.74	1.54
단기보호		1.61	97.44	0.95	2.79	96.98	0.23	0.65	97.81	1.54
그룹홈		1.51	97.54	0.95	1.72	98.05	0.23	1.33	97.13	1.54
장기시설보호		2.79	96.26	0.95	3.83	95.94	0.23	1.94	96.52	1.54
여가활동프로그램		11.06	87.99	0.95	12.54	87.23	0.23	9.86	88.60	1.54
가사원조		8.62	90.43	0.95	12.29	87.48	0.23	5.64	92.82	1.54
외출보조		9.59	89.46	0.95	14.00	85.77	0.23	6.01	92.45	1.54
물리치료(적외선치료 등)		13.47	85.58	0.95	14.24	85.53	0.23	12.84	85.62	1.54
방문간호		6.68	92.37	0.95	8.23	91.54	0.23	5.41	93.05	1.54
이동목욕		4.55	94.50	0.95	3.37	96.40	0.23	5.50	92.96	1.54

(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 수준 낮았다. 저소득가구에서는 가사원조의 이용률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에서는 물리치료의 이용률이 4.8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절대적인 수준의 이용률은 상당히 낮으므로 향후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률 증대가 요구된다.

〈표 15-5-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미이용	모름 /무응답	이용	미이용	모름 /무응답	이용	미이용	모름 /무응답
직업상담		1.43	97.12	1.45	1.27	98.50	0.23	1.56	96.00	2.44
취업알선		1.10	97.36	1.54	0.78	98.99	0.23	1.35	96.05	2.60
직업능력평가		0.28	98.27	1.45	0.00	99.77	0.23	0.51	97.05	2.44
일상생활훈련		0.26	98.29	1.45	0.58	99.19	0.23	0.00	97.56	2.44
직업준비훈련		1.13	97.42	1.45	0.58	99.19	0.23	1.57	95.99	2.44
보호작업		0.15	98.27	1.58	0.33	99.15	0.52	0.00	97.56	2.44
주간보호		0.27	98.15	1.58	0.61	98.87	0.52	0.00	97.56	2.44
단기보호		0.00	98.42	1.58	0.00	99.48	0.52	0.00	97.56	2.44
그룹홈		0.00	98.42	1.58	0.00	99.48	0.52	0.00	97.56	2.44
장기시설보호		0.11	98.31	1.58	0.24	99.24	0.52	0.00	97.56	2.44
여가활동프로그램		1.52	96.90	1.58	2.34	97.14	0.52	0.85	96.71	2.44
가사원조		2.77	95.78	1.45	4.85	94.92	0.23	1.08	96.48	2.44
외출보조		1.91	96.75	1.34	3.70	96.07	0.23	0.45	97.32	2.23
물리치료(적외선치료 등)		3.39	95.16	1.45	1.53	98.24	0.23	4.89	92.67	2.44
방문간호		1.95	96.71	1.34	3.00	96.77	0.23	1.09	96.68	2.23
이동목욕		0.50	98.16	1.34	0.57	99.20	0.23	0.45	97.32	2.23

2. CESD-11 우울척도

CESD-11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 간 우울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1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성인장애인 평균은 12.50점이었다. 저소득가구 평균이 16.92점으로 일반가구 평균인 8.92점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더군다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우울증이 의심되는 16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15-5-3〉 CESD-11 우울척도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우울		12.50	11.78	16.92	13.22	8.92	9.03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 {1 :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 4 :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하여 우울척도를 계산함. 하위문항 ④, ⑤는 역점수 처리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이며,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이 의심됨.

(1) 취업여부

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후,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을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성인장애인 중에서 39.76%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19.33%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39.96%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50.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5-5-4〉 취업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취업		39.76	29.27	48.27
취업희망		19.33	19.80	18.94
취업불원(희망하지 않음)		39.96	50.70	31.25
모름/무응답		0.95	0.23	1.54
계		100.00	100.00	100.00

(2) 취업일자리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의 55.87%가 일반사업체에서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29%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15-5-5〉 취업일자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영업		30.29	37.81	26.68
일반사업체		55.87	51.99	57.73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		6.09	4.85	6.6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0.00	0.00	0.00
장애인 관련 기관		0.65	0.00	0.96
기타		4.75	4.56	4.85
모름/무응답		2.35	0.79	3.09
계		100.00	100.00	100.00

(3) 취업 희망 일자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의 37.02%가 일반사업체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19.68%는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8%를 나타내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15-5-6〉 취업 희망 일자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영업		7.73	9.91	5.99
일반사업체		37.02	36.20	37.65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		19.68	16.43	22.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19	11.88	1.68
장애인 관련 기관		12.38	14.84	10.43
기타		6.01	2.36	8.91
모름/무응답		10.99	8.38	13.07
계		100.00	100.00	100.00

(4) 취업불원 이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가구의 63.24%가 장애가 심해서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응답도 11.45%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장애가 심해서 오래 전에 포기했다는 응답이 71.77%로 일반가구의 52.49%보다 다소 높았으며,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7.12%로 일반가구의 16.92%보다 낮았다.

〈표 15-5-7〉 취업불원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가 심해서 오래 전에 포기했음		63.24	71.77	52.4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음		3.29	1.83	5.13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11.45	7.12	16.92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충족해서		1.94	3.48	0.00
학력, 기술, 기능이 부족해서		4.20	1.30	7.84
취업, 창업정보를 몰라서		0.00	0.00	0.00
일자리가 없어서		1.09	1.16	0.99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0.42	0.76	0.00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심해서		3.08	5.02	0.63
육아 혹은 가사 때문에		2.76	1.42	4.44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0.47	0.84	0.00
기타		5.73	4.84	6.86
모름/무응답		2.33	0.46	4.70
계		100.00	100.00	100.00

4.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이용 시 부담정도

(1) 근로지원인서비스의 현재 이용여부

현재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전체 성인장애인의 0.44%가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도 각각 0.33%, 0.53%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내었다. 향후 서비스의 이용 증대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15-5-8〉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0.44	0.33	0.53
	이용하지 않는다	98.61	99.44	97.93
	모름/무응답	0.95	0.23	1.54
	계	100.00	100.00	100.00

(2)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미래 이용희망여부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성인장애인의 8.29%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는 9.94%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의 6.9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사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이 낮아 근로지원서비스의 공급 시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등이 요구된다.

〈표 15-5-9〉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8.29	9.94	6.96
	이용하지 않겠다	90.76	89.83	91.50
	모름 / 무응답	0.95	0.23	1.54
	계	100.00	100.00	100.00

(3)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 정도

향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장애인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주당 10시간 이용 시 7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44.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1.44%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7.66%로 일반가구의 22.55%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4.48%로 저소득가구의 3.46%보다 훨씬 많았다.

〈표 15-5-10〉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9.05	3.46	14.48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2만 8천원 정도)		7.44	5.41	9.42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즉, 주당 2만 1천원 정도)		2.43	4.92	0.00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즉, 주당 1만 4천원 정도)		4.54	0.00	8.94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즉, 주당 7천원 정도)		21.44	16.25	26.49
자기 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44.78	67.66	22.55
모름 / 무응답		10.32	2.30	18.12
계		100.00	100.00	100.00

제6절 (개별3)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1.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서비스 필요여부 및 지난 한 달 간 이용여부를 질문하였다. 전체 317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필요여부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이 전체 어르신의 25.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간병) 서비스가 24.46%로 높았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상기 두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한편 저소득가구에서는 급식지원의 필요성이 21.13%로 일반가구의 필요성인 6.54%보다 훨씬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며 차이를 보였다.

〈표 15-6-1〉 서비스 필요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서비스		3.54	93.03	3.43	2.52	96.30	1.18	5.20	87.72	7.08
정서적 서비스		12.05	84.52	3.43	16.03	82.79	1.18	5.62	87.30	7.08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6.63	79.94	3.43	16.77	82.05	1.18	16.39	76.53	7.08
급식지원		15.55	81.02	3.43	21.13	77.69	1.18	6.54	86.38	7.08
전문 상담 서비스		6.45	89.34	4.21	7.45	90.97	1.58	4.84	86.68	8.48
주거지원		15.59	81.28	3.13	19.58	79.24	1.18	9.12	84.58	6.30
여가생활		9.87	87.00	3.13	12.07	86.75	1.18	6.33	87.37	6.30
요양시설보호		8.75	87.82	3.43	9.60	89.22	1.18	7.38	85.54	7.08
주·야간보호		6.60	89.97	3.43	5.17	93.65	1.18	8.91	84.01	7.08
단기보호		5.97	90.60	3.43	6.48	92.34	1.18	5.15	87.77	7.08
가사지원 서비스		15.63	80.94	3.43	18.51	80.31	1.18	10.97	81.95	7.08
물리치료 및 재활		25.52	71.05	3.43	29.93	68.89	1.18	18.38	74.54	7.08
방문간호(간병)		24.46	72.11	3.43	28.85	69.97	1.18	17.38	75.54	7.08
방문 및 이동목욕		13.38	83.19	3.43	13.35	85.47	1.18	13.44	79.48	7.08

(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가 전체 어르신에서 5.38%의 이용률을 나타내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간병) 서비스가 3.73%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절대적인 수준의 이용률은 상당히 낮으므로 향후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률 증대가 요구된다.

〈표 15-6-2〉 서비스 현재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서비스		0.00	95.41	4.59	0.00	97.60	2.40	0.00	91.88	8.12
정서적 서비스		0.47	95.41	4.12	0.35	97.60	2.05	0.68	91.87	7.4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75	93.88	4.37	2.38	95.57	2.05	0.72	91.16	8.12
급식지원		3.07	92.56	4.37	4.02	93.93	2.05	1.54	90.34	8.12
전문 상담 서비스		0.78	94.51	4.71	1.11	96.29	2.60	0.25	91.63	8.12
주거지원		2.51	93.12	4.37	3.05	94.90	2.05	1.63	90.25	8.12
여가생활		0.89	94.45	4.66	1.00	96.65	2.35	0.72	90.88	8.40
요양시설보호		1.32	94.66	4.02	1.57	96.54	1.89	0.93	91.62	7.45
주·야간보호		0.65	94.57	4.78	0.61	96.67	2.72	0.72	91.16	8.12
단기보호		0.07	95.15	4.78	0.12	97.16	2.72	0.00	91.88	8.12
가사지원 서비스		2.60	92.74	4.66	3.58	94.07	2.35	1.01	90.59	8.40
물리치료 및 재활		5.38	90.10	4.52	5.75	91.53	2.72	4.79	87.76	7.45
방문간호(간병)		3.73	91.49	4.78	5.17	92.11	2.72	1.40	90.48	8.12
방문 및 이동목욕		1.73	93.93	4.34	1.46	95.82	2.72	2.16	90.87	6.97

2. CESD-11 우울척도

CESD-11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 간 우울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1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어르신 평균은 15.88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저소득가구 평균이 16.84점으로 일반가구 평균인 14.14점보다 다소 높고, 그 절대적 수준은 둘 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노인 장애인 우울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표 15-6-3〉 CESD-11 우울척도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우울		15.88	13.04	16.84	13.31	14.14	12.43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 {1 :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 4 :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하여 우울척도를 계산함. 하위문항 ④, ⑤는 역점수 처리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이며,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이 의심됨.

3. 취업

(1) 취업여부

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후,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을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어르신의 19.58%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5.31%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72.26%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띄었음을 볼 때 대부분의 노인 장애인은 취업을 희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5-6-4〉 취업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취업		19.58	18.74	20.94
취업희망		5.31	4.71	6.28
취업불원(희망하지 않음)		72.26	75.37	67.23
모름/무응답		2.85	1.18	5.55
계		100.00	100.00	100.00

(2) 취업일자리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6.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28.43%를 기록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농어업 종사 비율이 57.7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반가구에서는 농어업과 자영업의 종사 비율이 각각 32.23%, 29.2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15-6-5〉 취업일자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영업		28.43	27.73	29.27
일반사업체		5.29	0.00	11.72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6.76	7.53	5.82
농어업		46.24	57.77	32.23
친목회, 종교기관, 지역사회단체 등		0.58	1.06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2.70	5.91	20.96
계		100.00	100.00	100.00

(3) 구직활동 여부

취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해보았는지 질문한 결과,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51.9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의견이 20.86%로 일반가구의 5.48%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15-6-6〉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		12.33	20.86	5.48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		51.91	57.27	47.60
모름/무응답		35.76	21.87	46.92
계		100.00	100.00	100.00

(4)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취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가구에서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원하는 경우가 43.66%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원하는 경우가 20.58%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다

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

〈표 15-6-7〉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0.00	0.00	0.00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		43.66	51.55	37.33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일		20.58	26.58	15.75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35.76	21.87	46.92
계		100.00	100.00	100.00

(5) 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지원

취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것을 질문한 결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길 원하는 의견이 48.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에 대한 의견이 12.82%를 기록했다. 저소득가구 및 일반가구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5-6-8〉 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지원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부지원 필요 없음		0.00	0.00	0.00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48.42	60.77	38.51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12.82	10.63	14.57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0.00	0.00	0.00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0.00	0.00	0.00
노인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3.00	6.73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35.76	21.87	46.92
계		100.00	100.00	100.00

4. 용돈

식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 전기, 교통비 등 한 달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생활비 이외에 용돈으로 얼마 정도 쓰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어르신들의 평균은 52,880원을 기록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42,580원을 나타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은 70,160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용돈의 분포를 보면 저소득가구는 5만원 미만의 비율이 59.83%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5만원 이상의 비율이 58.75%를 차지해 가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5-6-9〉 용돈

(단위: %,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18.65	18.80	18.38
	1만원	11.04	14.99	4.66
	2만원	8.55	12.11	2.81
	3만원	11.10	12.77	8.41
	4만원	1.26	1.16	1.44
	5만원	17.93	14.47	23.52
	5만원 초과 ~ 10만원 미만	4.48	5.08	3.50
	10만원	16.20	15.30	17.66
	10만원 초과	7.47	3.38	14.07
	모름/무응답	3.32	1.94	5.55
	평균	52.88	42.58	70.16
	표준오차	63.04	53.16	73.90
	계	100.00	100.00	100.00

5.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희망여부, 이용 시 부담정도

(1) 노인돌보미서비스의 현재 이용여부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전체 어르신들의 2.11%가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는 2.80%로 일반가구 1.01%보다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표 15-6-10〉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2.11	2.80	1.01
이용하지 않는다		95.04	96.02	93.44
모름/무응답		2.85	1.18	5.55
계		100.00	100.00	100.00

(2)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장래 이용희망여부

현재 이용 중인 경우와 현재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가구의 23.80%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이용률의 10배 수준으로 향후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15-6-11〉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희망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23.80	25.69	20.74
이용하지 않겠다		73.35	73.13	73.71
모름 / 무응답		2.85	1.18	5.55
계		100.00	100.00	100.00

(3)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 정도

향후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어르신들의 장애인에게 노인돌보미서비스가 한 달에 27시간 이용 시 주당 3만 6천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체 어르신의 48.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2.30%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

답이 61.25%로 일반가구의 28.72%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이용 금액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6-12〉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이용 시 희망하는 본인부담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1.65	0.00	4.38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4천원 정도)	3.92	2.32	6.57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즉, 주당 1만원 정도)	5.22	2.43	9.83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즉, 주당 7천원 정도)	7.24	2.90	14.40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즉, 주당 3천원 정도)	22.30	26.72	14.99
자기 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48.98	61.25	28.72
모름 / 무응답	10.69	4.38	21.11
계	100.00	100.00	100.00

참고문헌

-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자유아카데미, 2000.
- 김종호, 『표본조사법』, 자유아카데미, 1991.
- 노대명 외,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노동부,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
- 박홍래,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1989.
- 백화종 외,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_____, 『차상위·빈곤패널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2006.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년도
- 이봉주 외,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 이용하,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무응답 오차』, 자유아카데미, 2000.
- 홍종선 외, 『설문조사자료의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2007.
- Biemer, P. P., Lyberg, L. E.,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Wiley and Sons, 2003.
- Brewer, K., *Combined Survey Sampling Inference*, Arnold, 2002.

Chambers, P. L, Skinner, C. J., *Analysis Of Survey Data*, London, John Wiley & Sons, 2003.

Cochran. W. G., *Sampling Techniques*, John & Wiley Sons, Inc., 1977.

Groves, R. M., et al., *Survey Nonresponse*, John Wiley and Sons, 2002.

Groves, R. M., et al.,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John Wiley & Sons, Inc., 1992.

Lohr, S.L.,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1999.

SAS/STAT User's Guide, Version 8, SAS Publishing.

Scheaffer, R.L., Mendenhall, W. & Ott, R.L., *Elementary Survey Sampling, 6th Ed.*, Duxbury Press, 2004.

Thompson, S.K., *Sampling 2nd Ed.*, John & Wiley Inc., 2002.

Tourangean, R., *Survey Methodology*, John Wiley and Sons, 2004.

<http://www.koweps.re.kr>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psidonline.isr.unich.edu> (미국 PSID)

http://www.kli.re.kr/30_labp/01_labor_p/main.asp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HILDA Website)

<http://www.sipp.census.gov/sipp/> (미국 SIPP)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캐나다 통계청: SLID)

<http://www.statistics.gov.uk> (영국 통계청)

부 록

- 부록1. 200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 481
- 부록2. 200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신규가구용(유형2) / 519
- 부록3. 200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 557
- 부록4. 200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신규가구원용(유형4) /572
- 부록5. 200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589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73, 8149, 8311, 8352, 835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1차 가구: 01 -2차 신규가구: 02 -1차 0, 2차 X, 3차 0: 01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1차 가구: 01 -2차 신규가구: 첫 번째 분리가구: 01 -2차 신규가구: 두 번째 분리가구: 02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동·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① 비해당(완료) ② 낮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무향 미완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조사거부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⑦ 이새(주소추적불가)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⑧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⑨ 기타 추적불가사유 ⑩ 기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주를 가구원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07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패널ID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를 그대로 이기하고, 3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 운 개인패널ID를 부여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원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① 남 ② 여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문5-1)	문5-2)
-3차 가구진입 가구원: 03 -재진입 가구원: 최초 진입차수 -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1		0	1	0			① 미취학 (만 7세이하) ② 무학 (만 8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2								
		3								
		4								
		5								
		6								
		7								
		8								
		9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 | |
|---|---|
| 010. 가구주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⑦ 발달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⑯ 비등락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락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① 비해당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남18세 이상 여16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복자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문12)	의료급여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의료급여1종(가구) ② 의료급여2종(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개인)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부자: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단,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한다.)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저하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가구원중 일부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의료특례, 18세미만 입양아동,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1, 2 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중 일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II. 건강 및 의료 A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건강상태	문2) 2007년 1년간 의료기관 이용			문3)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①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①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과를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 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①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07년 1년 동안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07년 1년간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 1 없음 → 0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위염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사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 감기와 같이 계절성 질환의 경우는 '㉞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 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2>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㉞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2>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ex)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 **CI(Critical Illness)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
- ※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직장단체가입이 많음).
-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 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암(위, 간, 폐, 기관지등)	⑩ 폐결핵, 결핵	⑱ 고지혈증	㉘ 치아우식증(충치)
②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⑪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⑲ 치질(치핵)	㉙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③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	⑫ 천식	⑳ 만성부비동염(축농증)	㉚ 기타질환(급성질환 등)
④ 만성간염, 간경변	⑬ 백내장, 녹내장	㉑ 기관지확장증	㉛ 희귀난치성 질환
⑤ 당뇨병	⑭ 만성중이염	㉒ 알레르기성 비염	㉜ 저혈압
⑥ 갑상선 질환	⑮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㉓ 턱관절질환	㉝ 없음
⑦ 고혈압	⑯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㉔ 아토피성 피부염	
⑧ 중풍, 뇌혈관질환	⑰ 골다공증	㉕ 요실금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	⑱ 빈혈	㉖ 우울증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시 만15세 이상(1992.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V. 의로 B]로 넘어갑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V. 의로 B]로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④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중) → [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으로 갈 것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농업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2007년 1년간 주되게 해온 일자리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 문6)으로 갈 것 ② 전일제 → 문6)으로 갈 것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자-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사실상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자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지만, 사용자-종속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일용대기, 독립도급,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 방문학습지도사, 보험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일을 시작할 때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 ②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자

가구원 번호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음.	※ [지침서] <부록 3> 산업분류코드 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는 "97"로 기입.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 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지침서] <부록4> 직업분 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 자리를 기입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 1000명 이상으로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학업 ④ 가사 ⑤ 양육 ⑥ 간병 ⑦ 구직활동포기 ⑧ 근로의사 없음 ⑨ 기타 ※ 재수생은 ③ 학업 선택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지도 ② 군복무로 응답
1				직업명	직업코드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예. 6개월, 1년, 2년, 3년 등)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7) 근로지속가능성

※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 한 경우

< 유의사항 >

문10) 사업장 규모

-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단,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 업체의 지휘 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며, 명확하게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아는 경우 주인(고용주)을 포함 하되,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로 간주한다.
-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기 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아래 [문1] 공적연금 가 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1)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 음 →문5)로 갈 것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 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원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 지만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임.
1						
2						
3						
4						
5						
6						
7						
8						
9						

문 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수급대기 중에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지침서] 참조)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고 해서 ① 비해당으로 응답하면 안되고 ① 연금수급으로 기록함.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 가입으로 봄.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보훈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지만 어떠한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신고서 받지 않은 경우나 신고서를 받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는 공적연금 가입(국민연금 지역가입자)으로 분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 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07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같 것 ※ 2007년 1년 기준임.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12월 31일 이전에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2007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다? —문9)로 같 것 ※ 2007년 1년 기준임.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응답하며,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로 가입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① 비해당', 고용주는 사업장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 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기록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① 비해당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 ※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아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 제도임. ※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1					
2					
3					
4					
5					
6					
7					
8					
9					

V. 의료 B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댁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1-2)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 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의료급여(1종) → **문1-3)으로 갈 것**

② 의료급여(2종) → **문1-3)으로 갈 것**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문4)로 갈 것**

④ 기타(적을 것: _____) → **문4)로 갈 것**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2종
정의	- 외래, 입원 진료시 전액 무료	- 외래 진료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임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③ 차별대우를 받음

②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② 적용기간의 제한

응답 후 문4)로 가십시오.

문 2) 귀댁에서는 2007년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07년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Ⅱ.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07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보험료 합계 백 십 일 만원

VI. 주거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일반아파트

⑥ 영구임대아파트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⑨ 오피스텔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⑫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탑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3.3㎡)

m²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6)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① 자가 → **문7)로 갈 것**
- ② 전세 → **문7)로 갈 것**
- ③ 보증부월세 → **문7)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 **문10)으로 갈 것**
- ⑤ 기타 → **문10)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기타' 가 됩니다.
- * 점유형태 '⑤기타' 에는 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 7)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유의사항 >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목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8)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9)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가	2007년 1년간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만원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r> <tr> <td>십억</td> <td>억</td> <td>천</td> <td>백</td> <td>십</td> <td>일</td> </tr> </table>							십억	억	천	백	십	일
십억	억	천	백	십	일									
나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원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r> <tr> <td>십억</td> <td>억</td> <td>천</td> <td>백</td> <td>십</td> <td>일</td> </tr> </table>							십억	억	천	백	십	일
십억	억	천	백	십	일									

< 유의사항 >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 없음 =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9-1) 2007년 1년간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 ② 1회
- ③ 2~3회
-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 주택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또는 2007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10)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1)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떨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2) 2007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경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영구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공공(국민)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의 경우 2007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07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 ㉤, ㉥의 경우는 2007년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 유의사항 〉

- ※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07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 기입합니다. 따라서 2006년에 할부로 구입한 후 2007년에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식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혹은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외식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2)	주거비 (주택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기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3)	광열수도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조명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피출부, 청소비 등), 기저귀 값 등 ※ 보육료(베이비시터, 놀이방) 포함(단, 유치원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5)	피복신발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피복신발비는? ※ 외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6)	보건의료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7-2) 사교육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8)	교양오락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	교통통신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TV수신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기타소비지출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담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 관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u>관혼상비 등</u>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사이적전 가구원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체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세금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u>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u> ※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총생활비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u>총생활비 = 1~13의 합계</u>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을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2.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⑦의 주된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 으로 표시)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 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⑦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해당 여부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경제 활동은 응답자의 응답에 따르며 다른 하나는 부업활동으로 처리함.
- ※ 2007년 1년 동안에 경제 활동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변화되기 전후의 경제 활동에 모두 “1” 표시를 함. 이 때, 변화된 후의 경제 활동 란에 변화시점을 월로 표시해 줌. (예. 2007년 6월에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자로 전업한 경우 ①, ③의 해당여부에 모두 “1” 표시 해 주고 ③의 변화된 월에 “06” 표시해 준다)
- ※ 가구원 번호의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같은 기간에 주된 활동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없다. 주된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활동(아르바이트, 투잡, 부업 등)을 병행하여 소득을 발생 시켰다면 이는 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⑦에 기재하도록 함.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 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 동일 경제활동 내에서 두세 번 변화된 경우 마지막 변화된 월을 기준으로 기재함.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 경 영 주 : 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2007. 12. 31. 시점에 10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변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무직자, 연로자, 취업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했던 경우 등

문 2) 상용근로자: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p> <p>→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보조기입란 3-a]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p>※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07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p> <p>예) 2007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의 월 5회, 7~12월까지의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12개월) 기재</p>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천원

3-1.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 (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p>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p>[보조기입란 4-a]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p>[보조기입란 4-b]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p>4-1.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p> <p>→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p>4-2.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07년 2,000만원을 벌어서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원 기입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p> <p>→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전입소득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5-1.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 = 3.3 m²

- ① 논
- ② 밭
-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 없음 0

총										m ²
총										m ²
총										m ²
총										m ²

[보조기입란 5-a]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메벼, 햅쌀, 찰벼, 잡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여름 채소 : 샐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영,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젖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 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 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 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 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b].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 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농기계 할부금 포함),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질문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1년 (2007.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 (A+B+C+D-E)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보조기입란 6-a]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일억	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만원

※ 없음 0

6-2.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만원

[보조기입란 6-b]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총지출금액			
		연간	십억	일억	만원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6-3.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만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연간 순소득(A+B+C+D-E)	
연간	만원

문 7) 부업소득: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주된 활동으로 인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부업소득은 주된 활동 이외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주부 및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투잡(two-job), 농한기의 농어가 소득활동 등이 포함됨.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부업소득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2007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2007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2007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기 타 정 부 보 조 금	2007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급식비 지원, 문구대, 수련회비, 정부할인보조금(전기료, 전화비, 인터넷, 장애인 LPG 등), 노인위생비, 자활사업,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⑥⑦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①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로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노인교통비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모부자가정수당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영유아 보육료지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학비지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⑩ 기타()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07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① 증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껌돈,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07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 제외 ※ 보육대가 포함	부모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2007년 1년 동안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2007년 1년 동안 귀댁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지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혼수용품이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규적인 소득만을 기입함.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2007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007년 1년 동안 정부(동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현금급여)금액은? ※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 수급 개월수는 2007년 수급 개월수를 적고, 연간 금액은 월평균(현금급여액)×수급개월수로 계산하여 기입(예, 2007년 3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았다면, 수급개월수에는 03, 금액에는 60만원 기입)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개월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태	2007.12.31 기준 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 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 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⑥ 기타부채에 포함.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카드빚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외상, 미리탄 계돈 ※ 미리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여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기타부채(_____)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이자	2007년 1년(2007.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연체한 경우 0	①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타 연간 이자(주거이자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없음 0

※ 귀하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3)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 월평균 기준) ※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h> <th colspan="5"></th> <th style="text-align: center;">만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일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일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2007.12.31 기준 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주택외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게)·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점부동산	2007.12.31 기준 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3)	금융자산	<p>2007.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p> <p>※ 가구원 전부 파악</p>	① 예금(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타기 전 부은 계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계	<p>2007.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p> <p>※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p>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콤바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축산물	<p>2007.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p> <p>※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p>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재고농산물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동차	<p>2007.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p> <p>※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를 가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지침서 [부록 7]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p>	보유대수	단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대							
문 7)	기재 자산	<p>2007.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p>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영업용 자동차·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2007년 1년 동안**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2007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 2007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 2007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 2007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2007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 2007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 2007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
㉧ 2007년 1년 동안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 유의사항 〉

- ※ ㉠ 문항의 경우 2007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 인 경우 ‘③비해당’ 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 인 경우 ‘③비해당’ 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2007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07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 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2007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 에 응답합니다.
- ※ 연속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자격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고 표시합니다.

문 2) **2007년 1년 동안**에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2007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2007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2007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 로 갈 것	② → ㉡ 로 갈 것	③ → ㉢ 로 갈 것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2007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2007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플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가구와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문 1) 귀댁은 2007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07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 **문2)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07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07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08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07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07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 1-3)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은 2007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2007년 1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 → XIII.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2007년 이전부터 2007년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3)으로 갈 것
- ③ 2007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07년 말까지 받았다
- ④ 2007년 이전부터 받아오다가 2007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 ⑤ 2007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07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응답 후 문 4)로 갈 것

문 2-1)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2007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2	0	0	7	년			월	~	2	0	0	7	년			월
두 번째	2	0	0	7	년			월	~	2	0	0	7	년			월
세 번째	2	0	0	7	년			월	~	2	0	0	7	년			월

< 유의사항 >
 ※ 2007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2007년 이전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2007년 01월부터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2-2)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2007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유의사항 >
 ※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3-1)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귀댁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XIII.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4)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1)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없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07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약물(알코올)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모부자가정지원 등의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보육료 지원비 등은 포함 안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1,2종,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단,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상담: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아동을 위한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말한다.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7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경로연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간보호 서비스 (낮 동안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단기보호 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하는 것)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를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는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7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성격, 정서문제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언어치료, 놀이치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과후 지도(공부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무료급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예체능 교실(컴퓨터, 영어, 미술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댁에 가구원으로 2006. 4. 1 ~ 2007. 3. 31 동안에 새롭게 추가된 아동(자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아동(자녀)은 누구입니까?
 (※ 2쪽의 가구원현황과 3차년도에 추가된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해주시시오.)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는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시오)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는 중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는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5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 문 6) 한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사교육비를 제외한 아동에게 투입된 비용을 모두 보육비로 간주합니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구 분	< 보 기 >	
보육시설 (만 6세 미만)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② 민간어린이집 ③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④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⑥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⑦ 학원 ⑧ 개인·그룹과외	⑨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⑩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⑪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⑫ 친·인척 ⑬ 이웃 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 보육사) ⑮ 민간 아이돌보미 ⑯ 기타(적을 것: _____)(※ 친인척과 이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 만원
				B		
				C		
				D		
				E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7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
 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장애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이동부양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판 매대 등 사업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할인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 재활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이동편의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LPG 차량 등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XVII. 가족

문 1) 2007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 ①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 ②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 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
- ④ 가구원의 건강
- ⑤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
- ⑦ 가구원간 관계
- ⑧ 가구원의 가출
- ⑨ 주거관련 문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07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 1) 귀댁은 조사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1년 내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입니까?

년 월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이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직장이동
② 집을 늘리기 위해서
③ 가구원수 변동
④ 집세가 올라서
⑤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⑥ 자녀교육 때문에 | ⑦ 집값이 올라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⑧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⑨ 분가
⑩ 합가
⑪ 계약기간 만료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1-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이사를 가신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실 계획(또는 희망)입니까?

_____도/시 _____시/군/구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원의 평가
<p>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p> <p>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p> <p>③ 보통이다</p> <p>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p> <p>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p>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73, 8149, 8311, 8352, 835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분가사유
<small>*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small>	<small>-3차 신규가구: 03</small>	<small>-첫번째 3차 신규가구: 01 -두번째 3차 신규가구: 02</small>	
	0 3		① 결혼 ② 직장 ③ 학업 ④ 이혼 ⑤ 별거 ⑥ 위탁 ⑦ 기타(*기타내용은 가구정보란에 기록)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번호	휴대폰	성명	가구원번호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I. 가구일반사항

※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신규가구는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생성된 가구만 해당됩니다(10월 1일 이후 생성 가구는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

※ 신규가구 생성 시기 ([인포시트] 내용 이기) 년 월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가구 생성 시점 ~ 2007년 12월 31일까지 3/4 이상 생계를 같이하였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패널ID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① 남 ② 여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문5-1)	문5-2)	
-3차 가구진입 가구원: 03 -재진입 가구원: 최초 진입차수 -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 십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여 확인)	① 미취학 (만 7세이하) ② 무학 (만 8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를 그대로 이기하고 3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 운 개인패널ID를 부여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1		0 1 0						
			2								
			3								
			4								
			5								
			6								
			7								
		8									
		9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 | |
|---|---|
| 010. 가구주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⑦ 발달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⑯ 비등락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락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① 비해당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남18세 이상 여16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복자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문12)	의료급여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의료급여1종(가구) ② 의료급여2종(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개인)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부자: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단,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한다.)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저하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 가구원중 일부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의료특례, 18세미만 입양아동,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1, 2 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중 일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II. 건강 및 의료 A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건강상태	문2) 2007년 1년간 의료기관 이용			문3)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020 없음→000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①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①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과를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 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①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07년 1년 동안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07년 1년간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 1 없음 → 0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위염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사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 감기와 같이 계절성 질환의 경우는 '㉞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 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2>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㉞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2>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ex)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 **CI(Critical Illness)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
- ※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직장단체가입이 많음).
-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 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암(위, 간, 폐, 기관지등)	⑩ 폐결핵, 결핵	⑱ 고지혈증	㉘ 치아우식증(충치)
②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⑪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⑲ 치질(치핵)	㉙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③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	⑫ 천식	⑳ 만성부비동염(축농증)	㉚ 기타질환(급성질환 등)
④ 만성간염, 간경변	⑬ 백내장, 녹내장	㉑ 기관지확장증	㉛ 희귀난치성 질환
⑤ 당뇨병	⑭ 만성중이염	㉒ 알레르기성 비염	㉜ 저혈압
⑥ 갑상선 질환	⑮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㉓ 턱관절질환	㉝ 없음
⑦ 고혈압	⑯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㉔ 아토피성 피부염	
⑧ 중풍, 뇌혈관질환	⑰ 골다공증	㉕ 요실금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	⑱ 빈혈	㉖ 우울증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시 만15세 이상(1992.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V. 의로 B]로 넘어갑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V. 의로 B]로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0' 비 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④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중) → [V. 사회보험]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으로 갈 것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농업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2007년 1년간 주되게 해온 일자리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 문6)으로 갈 것 ② 전일제 → 문6)으로 갈 것 ※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사실상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지만, 사용-종속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일용대기, 독립도급,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 방문학습지도사, 보험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일을 시작할 때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 ②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자

가구원 번호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지침서] <부록 3> 산업분류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십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는 "97"로 기입.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지침서] <부록4>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 1000명 이상으로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학업 ④ 가사 ⑤ 양육 ⑥ 간병 ⑦ 구직활동포기 ⑧ 근로의사 없음 ⑨ 기타 ※ 재수생은 ③ 학업 선택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지도 ② 군복무로 응답
1				직업명	직업코드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예. 6개월, 1년, 2년, 3년 등)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7) 근로지속가능성

※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 한 경우

문10) 사업장 규모

-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단,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 업체의 지휘 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며, 명확하게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아는 경우 주인(고용주)을 포함 하되,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로 간주한다.
-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기 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1)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 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 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원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 지만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임.
1						
2						
3						
4						
5						
6						
7						
8						
9						

문 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수급대기 중에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지침서] 참조)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고 해서 ① 비해당으로 응답하면 안되고 ① 연금수급으로 기록함.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 가입으로 봄.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보훈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지만 어떠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신고서 받지 않은 경우나 신고서를 받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는 공적연금 가입(국민연금 지역가입자)으로 분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 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07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같 것 ※ 2007년 1년 기준임.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12월 31일 이전에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2007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다? →문9)로 같 것 ※ 2007년 1년 기준임.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응답하며,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이므로 가입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① 비해당', 고용주는 사업장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 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기록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① 비해당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 ※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아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 제도임. ※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1					
2					
3					
4					
5					
6					
7					
8					
9					

V. 의료 B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댁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1-2)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 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의료급여(1종) → **문1-3)으로 갈 것**

② 의료급여(2종) → **문1-3)으로 갈 것**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문5)로 갈 것**

④ 기타(적을 것: _____) → **문5)로 갈 것**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2종
정의	- 외래, 입원 진료시 전액 무료	- 외래 진료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저하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저하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과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건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③ 차별대우를 받음

①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② 적용기간의 제한

응답 후 문 5)로 가십시오.

문 2) 귀택에서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택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체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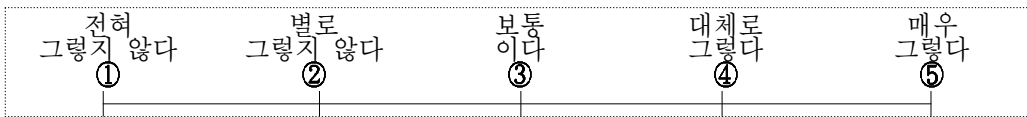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택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택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귀택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 6) (“Ⅱ.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07년 12월 기준으로 귀택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보험료 합계 백 십 일 만원

VI. 주거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일반아파트
⑥ 영구임대아파트 |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⑨ 오피스텔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2)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 | | |
|--------|------|
| ① 지하층 | ③ 지상 |
| ② 반지하층 | ④ 옥탑 |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사용하였던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댁의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1평≒3.3㎡)

m²

< 유의사항 >

※ 미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 ① 자가 → 문6)으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 문9)로 갈 것 |
| ② 전세 → 문6)으로 갈 것 | ⑤ 기타 → 문9)로 갈 것 |
| ③ 보증부월세 → 문6)으로 갈 것 | |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기타'가 됩니다.
 ※ 점유형태 '⑤기타'에는 **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 6)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문 7)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8)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관련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8-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 ② 1회
- ③ 2~3회
-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또는 2007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9)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0)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떨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귀택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경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영구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공공(국민)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전부터 입주하여 2007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 ㉤의 경우는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 동안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 유의사항 〉

- ※ 생활비 : 신규가구 생성이후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 예) 2007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 기입합니다. 따라서 2006년에 할부로 구입한 후 2007년에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지출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신규가구 생성이후 3/4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 정 식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혹은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외 식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우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주 거 비 (주택구입비 제외)	문 2-1) 월 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기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2-2) 주 거 관 리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거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광 열 수 도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가 구 가 사 용 품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조명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 청소비 등), 기저귀 값 등 ※ 보육료(베이비시터, 놀이방) 포함(단, 유치원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피 복 신 발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피복신발비는? ※ 외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보 건 의 료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나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7)	교 육 비	문 7-1) 공 교 육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7-2) 사 교 육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8)	교 양 오 락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9)	교 통 통 신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TV수신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0)	기 타 소 비 지 출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담배, 이미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종교관련(십일조)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관혼상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	사 적 이 전	문 11-1) 비 동 거 가 구 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2) 기 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세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세금?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신규가구 생성이후 납부한 총납세액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월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3)	사 회 보 장 부 담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총 생활비는? ※ 총생활비 = 1~13의 합계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 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 활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2.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⑦의 주된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 으로 표시)
 ※ 단, 2006.10.1~2006.12.31 사이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면 됩니다.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 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⑦ 부업활동여부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변화된 月	해당 여부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경제 활동은 응답자의 응답에 따르며 다른 하나는 부업활동으로 처리함.
- ※ 2007년 1년 동안에 경제 활동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변화되기 전후의 경제 활동에 모두 “1” 표시를 함. 이 때, 변화된 후의 경제 활동 란에 변화시점을 월로 표시해 줌. (예. 2007년 6월에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업한 경우 ①, ③의 해당여부에 모두 “1” 표시 해 주고 ③의 변화된 月에 “06” 표시해 준다)
- ※ 가구원 번호의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같은 기간에 주된 활동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없다. 주된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활동(아르바이트, 투잡, 부업 등)을 병행하여 소득을 발생 시켰다면 이는 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⑦에 기재하도록 함.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 동일 경제활동 내에서 두세 번 변화된 경우 마지막 변화된 월을 기준으로 기재함.

-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경 영 주 : 판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2007. 12. 31. 시점에 10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무직자, 연로자, 취업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했던 경우 등

문 2)	<p>상용근로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주된 활동이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의 월평균)는 얼마였습니까?</p> <p>※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p> <p>→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p>임시·일용근로자</p> <p>※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보조기입란 3-a]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p>※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07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p>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주된 활동이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는 얼마였습니까?</p>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보조기입란 4-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주된 활동이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 ※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매출액 (A)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4-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주된 활동이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총비용 (B)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주된 활동이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순소득은 월평균 총매출액에서 월평균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순소득 (A-B)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주된 활동이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1,500만원을 벌어 1,0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500만원을 신규가구 생성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값을 기입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전입소득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5-1.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²

① 논	총								m ²
② 밭	총								m 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²
※ 없음 0	총								m ²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²

[보조기입란 5-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찹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고구마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여름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빵잎,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젖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단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단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단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단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농업관련 월평균 기타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월평균										만원																			
십억										억				천				백				십				일			

[보조기입란 5-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농업경영비)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농기계 할부금 포함), 영농잡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 개월수(내구 개월수)를 질문하여 그 사용가능 개월수로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2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만원(=1200만원÷120개월)으로 기재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만원																			
십억										억				천				백				십				일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구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월평균				만원															
십억										억				천				백				십				일			

문 6)	어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보조기입란 6-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월평균 판매량 (a)	월평균 자가소비량 (b)	월평균 이전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월평균 판매수입 (만원) (A=a*p÷10)	월평균 자가소비액 (만원) (B=b*p÷10)	월평균 이전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계 (A+B+C)			
월	평	균	단	월	평	균	단	월	평	균	단	월	평	균	단
십	억	일	천	십	억	일	천	십	억	일	천	십	억	일	천
백	십	일	원	백	십	일	원	백	십	일	원	백	십	일	원

※ 없음 0

6-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어업관련 월평균 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월	평	균	단	월	평	균	단
										십	억	일	천	십	억	일	천
										백	십	일	원	백	십	일	원

[보조기입란 6-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지출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십억 일천 백십 일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십억 일천 백십 일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월평균 십억 일천 백십 일 만원							

6-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	평	균	단	월	평	균	단
										십	억	일	천	십	억	일	천
										백	십	일	원	백	십	일	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문 7)	부업소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위에 응답한 주된 활동으로 인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 부업소득은 주된 활동 이외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주부 및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투잡(two-job), 농한기의 농어가 소득활동 등이 포함됨.	성명	가구원 번호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부업소득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신규생성기간이 5개월이라면 10+20만원=30만원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받은 사회보험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월평균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타 금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p> <p>※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4번 문항에 기입</p> <p>※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급식비 지원, 문구대, 수련회비, 정부할인보조금(전기료, 전화비, 인터넷, 장애인 LPG 등), 노인위생비, 자활사업,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p> <p>※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p> <p>※ ⑥⑦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p>	①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② 경로연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③ 노인교통비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④ 모부자가정수당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⑥ 영유아 보육료지원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⑦ 학비지원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⑩ 기타()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p>이 외에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기타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p> <p>※기타소득은 일시금이므로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누어 기입함.</p>	① 증여·상속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② 경조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⑥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쟁돈,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등)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 없음 0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금 액						
문 13)	부 모 나 자 녀 로 부 터 의 보 조 금 (현 금 및 현 물)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금액은?</p> <p>※ 분가이후 주택구입용, 결혼자금 제외</p> <p>※ 보육대가 포함</p> <p>※ 신규가구에서 분리되었거나 새로 들어온 가구원 중, 신규가구 '생성시점~2007.12' 기간 중 3/4 미만 동안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은 기타에 기입</p>	부모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자녀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기타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민 간 보 조 금 (현 금 및 현 물)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은?</p> <p>※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p>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만원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금 여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급개월수와 월평균 금액(현금급여)은?</p> <p>※ 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p> <p>※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p> <p>※ 수급 개월수는 신규 가구생성이후 급여를 받은 개월수를 적고, 월평균 금액액을 기입.(예,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5월에 급여 중지 되었다면, 수급개월 수에는 05, 금액에는 20만원 기입</p>	총 수급 개월수							
			개월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원

* 없음 0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 채 태	2007.12.31 기준 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 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⑥ 기타부채에 포함. ※ 주거부채 ,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외상, 미리탄 계돈 ※ 미리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_____)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 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까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총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u>신규가구의 월평균 이자 계산방법</u> : [(생성시점~2007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자) ※ 연체하는 경우 0	①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월평균						만원
			② 기타이자(주거이자 제외)	월평균						

※ 없음 0

※ 귀하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3)	귀하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금액	월평균					만원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 부 등 유 산	2007.12.31 기준 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과 가격(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택 외 건물(가축명의로 사업장(가게)·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점 부 등 유 산	2007.12.31 기준 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의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타(퀵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기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융자산	2007.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의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타기 전 부은 계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계	2007.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 유형의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콤바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축산물	2007.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 유형의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채고농산물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동차	2007.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지침서 [부록 7]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대							
문 7)	기재 자산	2007.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 유형의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영업용자동차 ·자동차번호 값·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 유의사항 〉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 인 경우 '③비해당' 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 '대학원생(석·박사)' 인 경우 '③비해당' 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 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 에 응답합니다.
- ※ 연속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자격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고 표시합니다.

문 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2007년 1월 1일 이전(2006.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7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아니로 같 것	② → 아니로 같 것	③ → 아니로 같 것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가구와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문 1) 귀댁은 신규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07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 **문2)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07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07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08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07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07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 1-3)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은 신규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받은 적이 없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같 것
- ②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3)으로 같 것
- ③ 가구생성 이후 받아오다가 2007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4)로 같 것

문 2-1)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 이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2	0	0	7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	2	0	0	7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2	0	0	7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	2	0	0	7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 유의사항 >
 ※ 2007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원가구원이 분가를 하여 생성된 신규가구가 생성 이전부터 수급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은 가구생성시점부터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2-2)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3)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유의사항 >
 ※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②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3-1) (문2)의 ②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귀택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XIII.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4) (문2)의 ③번 응답자만) 귀택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1) (문2)의 ③번 응답자만) 귀택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없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 구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 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 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약물(알코올)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모부자가정지원 등의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보육료 지원비 등은 포함 안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1,2종,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단,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상담: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아동을 위한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말한다.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경로연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간보호 서비스 (낮 동안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단기보호 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하는 것)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를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는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㉑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㉒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㉓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성격, 정서문제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㉔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언어치료, 놀이치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㉕ 방과후 지도(공부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㉖ 무료급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㉗ 학비 지원(장학금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㉘ 예체능 교실(컴퓨터, 영어, 미술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㉙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 문2-1)~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1) 귀댁의 아동(자녀) □□□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귀댁의 아동(자녀) □□□는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시오)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는 중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는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위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5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문 6) 한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오른쪽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사교육비를 제외한 아동에게 투입된 비용을 모두 보육비로 간주합니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구 분	< 보 기 >
보육시설 (만 6세 미만)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② 민간어린이집 ③ 시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④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⑥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⑦ 학원 ⑧ 개인·그룹과외 ⑨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⑩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만6세 이상으로 학교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⑪ 방과후 교실 (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⑫ 친·인척 ⑬ 이웃 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 보육사) ⑮ 민간 아이돌보미 ⑯ 기타(적을 것 : _____)(※ 친인척과 이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C		
				D		
				E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 시점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장애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아동부양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판매대 등 사업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할인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 재활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이동편의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LPG 차량 등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XVII. 가족

문 1) 가구 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①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②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
④ 가구원의 건강
⑤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
⑦ 가구원간 관계
⑧ 가구원의 가출
⑨ 주거관련 문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구생성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어떠하엿습니까?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①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조사기준 시점 동안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 1) 귀댁은 조사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1년 내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입니까?

				년			월
--	--	--	--	---	--	--	---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이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장이동 ② 집을 늘리기 위해서 ③ 가구원수 변동 ④ 집세가 올라서 ⑤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⑥ 자녀교육 때문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집값이 올라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⑧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⑨ 분가 ⑩ 합가 ⑪ 계약기간 만료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1-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이사를 가신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실 계획(또는 희망)입니까?

_____도/시 _____시/군/구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73, 8149, 8311, 8352, 835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감옥수감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⑩ 기타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현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07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_____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_____
- ④ 군인연금 _____ → **문1-4)로 갈 것**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_____
- ⑥ 보훈연금 _____ → **문1-6)로 갈 것**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② 장애연금
- ⑥ 반환일시금
- ③ 유족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④ 분할연금

문 1-3)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일억</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d style="width: 2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천	백	십	일	만원
십	일																	
천	백	십	일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퇴직급여
- ④ 퇴직수당
- ② 유족급여
- ⑤ 부조급여
- ③ 재해보상급여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일	만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일	만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②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 ④ 현물급여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위탁훈련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07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td> </tr> <tr> <td>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7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td> </tr> <tr> <td>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7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td> </tr> <tr> <td>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 ② 자영업, 고용주 └───┘ → **문2)로 갈 것**
- ③ 무급 가족 종사자 ┌───┐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가구용(유형1) 6쪽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업 등과 같이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구분하지 않고 주된 근로유형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고용되어 월급, 일당 등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07.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활동 의사가 없는 자)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5)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2007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② 정리해고로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④ 정년퇴직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⑮ 학업, 군 입대 등의 이유로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⑰ 출산, 육아 때문에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07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사업)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일	시	분
---	---	---	---	---

년	월
---	---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07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과 8월에 20일씩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 = 14.25$ 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07년 1년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 유의사항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2007년 기준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8) 자활사업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은 문 6) ~ 문 7)까지는 미취업자용(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6)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6-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6-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부업(아르바이트)을 제외한 주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1) (문6)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6-2) (문6)의 ①번 응답자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직상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성차별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외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경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건강문제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신용불량자라서	①	②	③	④	⑤
가구 특성	가사일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①	②	③	④	⑤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①	②	③	④	⑤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①	②	③	④	⑤

문 6-3) (문6)의 ①번, ②번 응답자 모두)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7)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일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 다음 문8) ~ 문9)까지는 모든 취업 및 미취업용 질문입니다.

문 8) (문1)의 ①~④번 응답자) 2007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활사업	경험 여부		참여기간			만족도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있다	없다	※ 2007년 1년간 참여 개월 수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구직알선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적응훈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③ 직업훈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④ 창업지원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⑤ 자활공동체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⑦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⑧ 인턴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⑩ 재활프로그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⑪ 지역봉사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자활지원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장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②없다'면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표기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문 8)의 ①부터 ⑪까지 모두 '② 없다'고 응답한 경우 — 문9)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8-1) (문8)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① 있다'는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신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9) 귀하는 2007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기술사
- ② 기능장
- ③ 기사
- ④ 산업기사
- ⑤ 기능사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⑧ 없다 → **C.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문 9-1) (문 9)의 ① ~⑦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기계·금속
- ② 화공·세라믹
- ③ 전기·전자
- ④ 통신
- ⑤ 조선
- ⑥ 항공
- ⑦ 섬유
- ⑧ 토목·건축
- ⑨ 광업자원
- ⑩ 정보처리
- ⑪ 국토개발
- ⑫ 농림
- ⑬ 해양
- ⑭ 산업디자인
- ⑮ 에너지
- ⑯ 환경
- ⑰ 안전관리
- ⑱ 산업응용
- ⑲ 교통
- ⑳ 공예
- ㉑ 사무관리
- ㉒ 음료품·식료품
- ㉓ 위생
- ㉔ 보건·의료·사회
- ㉕ 금융·무역·유통
-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㉗ 외국어·관광
- ㉘ 기타

< 유의사항 >
※ 문9)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 다음은 귀하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유의사항 >
※ 집이 아닌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그렇다'에 응답합니다.

문 2) 귀하는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비해당

< 유의사항 >
※ 2007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부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문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①	②	③	④	⑤
㉡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 직업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 그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의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주거환경의 경우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 직업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7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셨습니다습니까

연간 총액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07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다습니까

연간 회

문 2)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다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2-2) 2007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

- ① 5갑(100개비) 미만 → 문 2)로 갈 것
- ② 5갑(100개비) 이상 → 문 2)로 갈 것
- ③ 피운 적 없음 → 문 5)로 갈 것

문 2)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세

문 3)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배를 주기적으로 피우던 시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연하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총 흡연기간 년 개월

문 4)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움 → 문 4-1), 문4-2) 문 4-3)에 응답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 문 4-1)에 응답 후,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과거흡연자는 과거 흡연하던 때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응답합니다)

개비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가정 또는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0시간(없음)

→ 문 6)으로 갈 것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 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가정 또는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2007년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주 1회 이하

② 주 2~3회

③ 주 4회 이상

④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6-1)로 갈 것

→ 문 7)으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③번 응답자만 그럼, 2007년에 귀하는 술을 마실 때 보통 몇 잔 정도 마셨습니까

① 1~2잔 정도

② 3~4잔 정도

③ 5~6잔 정도

④ 7~9잔 정도

⑤ 10잔 이상

문 6-2) (문 6)의 ①~③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는 평소 같았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년 1~2회

③ 월 1~2회

④ 주 1~2회

문 6-3) (문 6)의 ㉠~㉣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①	②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간(2007. 1. 1 ~ 2007.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문 4)로 갈 것**
- 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
- 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 } ---> **문 2)로 갈 것**
- 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문 2) (②~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①일반계(일반)	⑥실업계(농업)	⑩실업계(종합)	고등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②일반계(특목과학교)	⑦실업계(공업)	⑪기타(국제고 등)	
③일반계(특목:외국어고)	⑧실업계(상업)		
④일반계(특목:예술고)	⑨실업계(수산 및 해양)		
⑤일반계(특목:체육고)	⑫실업계(가사 및 실업)		

〈 유의사항 〉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 (③~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대학교의 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단위까지 기재) 예) 경기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예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 유의사항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4) 귀하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73, 8149, 8311, 8352, 835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 응답 사유코드	①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대리 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⑩ 기타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현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⑥ 조사거부 ⑦ 뇌병변장애 ⑧ 정신지체, 발달장애 1,2급 ⑨ 사망 ⑩ 기타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07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_____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_____
- ④ 군인연금 _____ → **문1-4)로 갈 것**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_____
- ⑥ 보훈연금 _____ → **문1-6)로 갈 것**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② 장애연금
- ⑥ 반환일시금
- ③ 유족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④ 분할연금

문 1-3)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일	천	백	십	일	만원				
일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천	백	십	일	만원
십	일											
천	백	십	일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퇴직급여
- ④ 퇴직수당
- ② 유족급여
- ⑤ 부조급여
- ③ 재해보상급여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십	백	천	억	원

 만원

연금 연간

일	십

 개월 연간 총액

일	십	백	천	억	원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십	백	천	억	원

 만원

연금 연간

일	십

 개월 연간 총액

일	십	백	천	억	원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②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 ④ 현물급여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위탁훈련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07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일	십

 개월 연간 총액

일	십	백	천	억	원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07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td> </tr> <tr> <td>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7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td> </tr> <tr> <td>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7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td> </tr> <tr> <td>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d style="width: 20%;">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_____
- ② 자영업, 고용주 _____ → **문2)로 갈 것**
- ③ 무급 가족 종사자 _____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6)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가구용(유형2) 6쪽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업 등과 같이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구분하지 않고 주된 근로유형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고용되어 월급, 일당 등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07.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5)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② 정리해고로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④ 정년퇴직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⑰ 출산, 육아 때문에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07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사업)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일	시	분
---	---	---	---	---

년	월
---	---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07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과 8월에 20일씩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일(2일+15일+20일+20일)÷4개월=14.25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07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 유의사항 >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2007년 기준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무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8) 자활사업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은 문 6) ~ 문 7)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6)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6-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6-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부업(아르바이트)을 제외한 주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1) (문6)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6-2) (문6)의 ①번 응답자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직상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성차별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외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경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건강문제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신용불량자라서	①	②	③	④	⑤
가구 특성	가사일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①	②	③	④	⑤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①	②	③	④	⑤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①	②	③	④	⑤

문 6-3) (문6)의 ①번, ②번 응답자 모두)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7)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원
---	---	---	---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 다음 문 8)은 모든 취업 및 미취업 응답자용 질문입니다.

문 8) (문1)의 ①~④번 응답자) 2007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활사업	경험 여부		참여기간			만족도(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있다	없다	※ 2007년 1년간 참여 개월 수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구직알선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적응훈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③ 직업훈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④ 창업지원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⑤ 자활공동체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⑦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⑧ 인턴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⑩ 재활프로그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⑪ 지역봉사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자활지원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장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②없다'면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표기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문 8)의 ①부터 ⑪까지 모두 '② 없다'고 응답한 경우 → C.생활실태 민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문 8-1) (문8)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① 있다'는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신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 다음은 귀하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유의사항 >

※ 집이 아닌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그렇다'에 응답합니다.

문 2) 귀하는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비해당

< 유의사항 >

※ 2007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부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문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①	②	③	④	⑤
㉁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 직업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 그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주거환경의 경우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 직업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7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7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셨습니까

연간 총액

 만원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07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연간 회

문 2)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2-2) 2007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

- ① 5갑(100개비) 미만 → 문 2)로 갈 것
 ② 5갑(100개비) 이상 → 문 5)로 갈 것
 ③ 피운 적 없음 → 문 5)로 갈 것

문 2)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세

문 3)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배를 주기적으로 피우던 시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연하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총 흡연기간 년 개월

문 4)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움 → 문 4-1), 문4-2) 문 4-3)에 응답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 문 4-1)에 응답 후,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과거흡연자는 과거 흡연하던 때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응답합니다)

개비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가정 또는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0시간(없음) → 문 6)으로 갈 것
 ② 1시간 미만 → 문 5-1)로 갈 것
 ③ 1시간 이상 → 문 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가정 또는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2007년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① 주 1회 이하
 - ② 주 2~3회
 - ③ 주 4회 이상
 - ④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6-1)로 갈 것
- 문 7)으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③번 응답자만) 그럼, 2007년에 귀하는 술을 마실 때 보통 몇 잔 정도 마셨습니까

- ① 1~2잔 정도
- ② 3~4잔 정도
- ③ 5~6잔 정도
- ④ 7~9잔 정도
- ⑤ 10잔 이상

문 6-2) (문 6)의 ①~③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는 평소 같았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년 1~2회
- ③ 월 1~2회
- ④ 주 1~2회

문 6-3) (문 6)의 ①~③번 응답자만) 2007년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①	②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7년 1년간(2007. 1. 1 ~ 2007.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비해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G.개인사로 갈 것**
- 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 -----
- 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 } → **문 2)로 갈 것**
- 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
- ⑤ 대학원 이상 -----

문 2) (②~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①일반계(일반)	⑥실업계(농업)	⑩실업계(종합)	고등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②일반계특목·과학고	⑦실업계(공업)	⑪기타(국제고 등)	
③일반계(특목:외국어고)	⑧실업계(상업)		
④일반계(특목:예술고)	⑨실업계(수산 및 해양)		
⑤일반계(특목:체육고)	⑩실업계(가사 및 실업)		

< 유의사항 >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 (③~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대학교의 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단위까지 기재) 예) 경기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예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 유의사항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개인사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② 중소도시(기타 시도)
- ③ 농어촌(읍면지역)
- ④ 외국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가난
- ② 가난
- ③ 보통
- ④ 부유
- ⑤ 매우 부유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 ② 없다 → **문4)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년	~			년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한 직업 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07년 12월 31일로부터)				년	~			년	
주된 일자리 A				년	~			년	
주된 일자리 B				년	~			년	
주된 일자리 C				년	~			년	
주된 일자리 D				년	~			년	
주된 일자리 E				년	~			년	

< 보기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 종사자, 가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
-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 자영업자: 유급고용인 없이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겐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합니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장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기술사
- ② 기능장
- ③ 기사
- ④ 산업기사
- ⑤ 기능사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⑧ 잘 모르겠다 → **문5)로 갈 것**
- ⑨ 없다

문 4-1) (문 4)의 ①~⑩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① 기계·금속
② 화공·세라믹
③ 전기·전자
④ 통신
⑤ 조선
⑥ 항공
⑦ 섬유
⑧ 토목·건축
⑨ 광업·자원
⑩ 정보처리 | ⑪ 국토개발
⑫ 농림
⑬ 해양
⑭ 산업디자인
⑮ 에너지
⑯ 환경
⑰ 안전관리
⑱ 산업응용
⑲ 교통 | ⑳ 공예
㉑ 사무관리
㉒ 음료품·식료품
㉓ 위생
㉔ 보건·의료·사회
㉕ 금융·무역·유통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㉗ 외국어·관광
㉘ 기타 |
|--|--|---|

〈 유의사항 〉
 ※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는 경우 그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

항 목	경험 여부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모름	
㉠ 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만__세
㉡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만__세
㉢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진학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만__세
㉣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만__세

〈 유의사항 〉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합니다.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모
---	---

- | | | |
|---------------------------|---------------------------------|--------------------------|
| ① 무학
② 서당수학
③ 초등학교졸 | ④ 중학교졸
⑤ 고등학교졸
⑥ 대학(전문대)졸 | ⑦ 대학교졸
⑧ 대학원졸
⑨ 모름 |
|---------------------------|---------------------------------|--------------------------|

〈 유의사항 〉
 ※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문 7) 귀하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습니까)?

부	모
---	---

- | | |
|---|---|
| ① 비해당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③ 전문가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⑤ 사무종사자
⑥ 서비스 종사자
⑦ 판매 종사자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⑩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⑪ 단순 노무 종사자
⑫ 직업군인
⑬ 주부
⑭ 무직
⑮ 기타(적을 것 : _____)
⑯ 모름 |
|---|---|

〈 유의사항 〉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8) 귀하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8-1)로 갈 것**

② 없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마련자금 또는 전세자금),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정도의 비정기적 증여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쌀, 대학등록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가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④ 약간 도움이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⑤ 매우 큰 도움이 됨

③ 보통

문 9) 귀하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73, 8149, 8311, 8352, 835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불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⑨ 장애(고등학생 이상) ⑩ 연령(고등학생 이하) ⑪ 기타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원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⑥ 비해당(원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사망
⑦ 기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장애인이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응답하고, 그 외는 본인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해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대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 혹은 일 주일 이내입니다.

(공통 I) 장애 원인 및 상황

문 1)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원인의 경우 주원인 하나만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선천적 원인
- ② 출생시 원인
- ③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 ④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 ⑤ 원인불명

※ 장애원인구분

① 선 천 적 원 인	1) 유전성 2) 기타 염색체이상 3) 선천성·발육기형	4) 모체의 만성질환(당뇨,빈혈,고혈압, 알콜중독,약물남용) 5) 모체의 감염(풍진,매독,독소플라스마증,후천성면역결핍증) 6) 미상
② 출 생 시 원 인	1) 조산 2) 난산	3) 출산시 외상 4) 미상
③ 후 천 적 원 인	1) 신경계질환 2) 정신질환 3)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질환 4) 심혈관 질환 5) 호흡기질환 6) 소화기계 질환 7)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8)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9) 근골격계 질환 10) 신생물(종양)질환 11) 중독성 질환 12) 감염성 질환 13) 미상
④ 원 인 불 명	1) 폭력에 의한 사고 2) 가정내 사고 3) 교통사고(탑승자) 4) 교통사고(보행자) 5)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6) 화상 7) 약물 사고 8) 기타 사고 및 외상 9) 전상 10) 미상
④ 원 인 불 명	: 원인을 모름	

문 2)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처음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문 2-1) 당시연령: 만 _____ 세 (※출생시 생긴 장애는 0세로 표시합니다.)

문 2-2) 당시의 가구 소득수준: ①매우 부유 ②부유 ③보통 ④가난 ⑤매우 가난

문 3)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는 지난 3년간 어떤 상태입니까?

- ① 호전(개선)되고 있다.
- ② 고착되어 있다
- ③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다.

문 4)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다음 중 어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로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의료급여 1종
- ② 의료급여 2종
-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④ 건강보험
- ⑤ 기타(적을 것: _____)

문 5)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는 지난 한달동안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6)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5-1)로 갈 것**

문 5-1)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
- ③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 ④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 ⑤ 치료받기 싫어서
- ⑥ 주위의 시선 때문에
- ⑦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 ⑧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⑨ 치료 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이동의 불편)
- ⑩ 기타

문 6)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의 대처방법은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구 분	차별 정도			대처방법					구 분	차별 정도			대처방법								
	① 받았다	② 안 받았다	③ 비해당	① 무시 한다	② 참는다	③ 항의 한다	④ 고발 한다	⑤ 기타		① 받았다	② 안 받았다	③ 비해당	① 무시 한다	② 참는다	③ 항의 한다	④ 고발 한다	⑤ 기타				
1) 입학·전학	01)유치원 (보육시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6)운전면허 제도상 (취득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2)초등학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7)보험제도상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3)중학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8)의료기관 이용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4)고등학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9)정보통신 이용시 (방송 포함)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5)대학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학교 생활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01)교사로부터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8)의료기관 이용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02)또래 학생으로부터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9)정보통신 이용시 (방송 포함)				①	②	③	①	②	③	④
	03)학부모로부터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3) 결혼	01) 결혼 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9)정보통신 이용시 (방송 포함)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2) 결혼 생활 중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4) 취업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생활	01)소득(임금)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2)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03)승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0)지역사회생활 (음식점,극장, 공연장,체육 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문 7)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는 지난 한달 동안 어느 정도 외출(목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외출 포함)을 하셨습니까?

- ① 거의 매일 _____ → **문 8)로 갈 것**
- ② 주 3~4회 _____
- ③ 주 1~2회 _____
- ④ 월 3회 이내 _____ → **문 7-1)로 갈 것**
- ⑤ 거의 외출하지 않음 _____

문 7-1) (문 7)에서 ④~⑤에 응답한 사람만) 그럼,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불편해서
- ②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 ③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 ④ 시간이 없어서
- 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 ⑥ 주의의 시선 때문에
- ⑦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 ⑧ 기타

(공통 II) 일상생활

문 8)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 **문 10, 5쪽으로 갈 것**
-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문 8-1)로 갈 것**
-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 8-1) (문 8)에서 ③~⑤에 응답한 사람만) 그럼,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도움시간이 많은 순으로 3명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구원일 경우는 가구용 조사표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가구원이 아니면 공란으로 합니다.)

1순위	가구원 번호	2순위	가구원 번호	3순위	가구원 번호	
------------	-----------	------------	-----------	------------	-----------	--

- | | | |
|--|---|--|
|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 ⑦ 기타가족
⑧ 친척
⑨ 친구
⑩ 이웃
⑪ 유료가정봉사원
⑫ 유료 간병인 | ⑬ 유료 활동보조인
⑭ 무료 가정봉사원
⑮ 무료 간병인
⑯ 무료 활동보조인
⑰ 기타(적을 것:)
⑱ 없음 |
|--|---|--|

문 8-2)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부족한 편이다
- ④ 매우 부족하다

*** 다음은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9) 문 9-1) 문 9-2)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상생활과 이동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한 달에 최저 30시간에서 최고 90시간 제공되며(독거장애인 노인은 120시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문 9)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한다
-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9-1)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 중이라면, 향후 이용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이용하겠다 → **문9-2)으로 갈 것**

② 이용하지 않겠다 → **문 10)으로 갈 것**

문 9-2) 활동보조서비스는 주당 10시간 이용 시 7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일부를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래 보기를 ①부터 차례대로 읽어주고 각각에 대해 부담 의사를 확인합니다.)

①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②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2만 8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③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 (즉 주당 2만 1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④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4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⑤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 (즉 주당 7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⑥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문 10)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항목별 자립정도 판단에 대한 지침은 면접원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항 목	자 립 정 도		
㉠ 옷 벗고 입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세수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양치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목욕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식사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체위변경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일어나 앉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옮겨 타기(앉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방밖으로 나오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화장실 사용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대변 조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소변 조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문 11)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항목별 자립정도 판단에 대한 지침은 면접원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항 목	자 립 정 도		
㉠ 몸단장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집안일 하기 (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식사준비 하기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빨래하기 (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없이)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사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금전관리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전화사용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약 챙겨 먹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문 12)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개월 동안 경제적 또는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적 지원'과 '보살핌'을 구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물질적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보살핌'은 현금/현물지원을 제외한 전화통화, 가사지원, 자녀양육, 보일러 점검 등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도움 제공자	도움 여부		도움 받은 횟수				
	있다	없다	물질적 지원		보살핌		
㉠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같이 사는 가구원 제외)	①	②			회		회
㉡ 친척(3촌 이상)	①	②			회		회
㉢ 친구 및 동료(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①	②			회		회
㉣ 이웃(동네사람 등)	①	②			회		회
㉤ 종교단체(성당, 교회, 절 등)	①	②			회		회
㉥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①	②			회		회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①	②			회		회
㉧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①	②			회		회
㉨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	①	②			회		회
㉩ 기타 (적을 것: _____)	①	②			회		회

※ 응답완료 후 조사대상 장애인이

미취학 아동인 경우 (만 0세 ~ 초등학교 입학 전) → 미취학 아동 설문으로 갈 것

학생인 경우 (초등학생 ~ 고등학생) → 학생설문으로 갈 것

성인인 경우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성인설문으로 갈 것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어르신 설문으로 갈 것

(개별 I)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문 1) 다음의 항목을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6개월 내에 귀댁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 4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만 응답합니다. 아동이 만 3세 이하인 경우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 그런다	가끔 그런다
㉠ 외롭다고 불평한다.	①	②	③
㉡ 잘 운다.	①	②	③
㉢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①	②	③
㉣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다.	①	②	③
㉥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①	②	③
㉫ 의심이 많다.	①	②	③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②	③
㉭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문 2) 귀댁 자녀는 다음 ①~⑭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까? 또는 불필요합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귀댁 자녀는 지난 한 달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⑭ 항목의 필요여부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물어본 후, ①~⑭ 항목의 현재 이용여부를 차례대로 다시 묻습니다)

서비스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① 조기특수교육	①	②	①	②
② 장애전담 어린이집	①	②	①	②
③ 물리치료(초음파 치료 등)	①	②	①	②
④ 언어치료(발음교정 등)	①	②	①	②
⑤ 심리치료(심리사회 상담 등)	①	②	①	②
⑥ 작업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동작중심 치료)	①	②	①	②
⑦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등)	①	②	①	②
⑧ 음악치료(노래부르기 등)	①	②	①	②
⑨ 미술치료(그림그리기 등)	①	②	①	②
⑩ 주간보호	①	②	①	②
⑪ 단기보호	①	②	①	②
⑫ 장기시설보호	①	②	①	②
⑬ 진로상담	①	②	①	②
⑭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 다음은 지역혁신사업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3) 문 3-1) 문 3-2)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지역혁신사업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사회 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한 주에 최저 1회에서 최고 5회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회당 가격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최소 7천원(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최고 3만원(특별히 고용된 전문가에 의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문 3) 귀댁의 자녀는 현재 지역혁신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이용 한다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3-1) 귀댁의 자녀는 지역혁신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계실 경우,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 하겠다 → 문 3-2)로 갈 것

② 이용하지 않겠다 → 문 4)로 갈 것

문3-2) 지역혁신사업 서비스는 주당 5회 이용기준으로 최소 3만 5천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일부를 귀댁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래 보기를 ①부터 차례대로 읽어주고 각각에 대해 부담 의사를 확인합니다.)

①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②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4천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③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5백원에서 4만 5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④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 (즉 주당 7천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⑤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 (즉 주당 3천 5백원에서 1만 5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⑥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문 4) 귀댁의 자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보육시설(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 문 4-1)으로 갈 것

② 아니요 → 문 5)으로 갈 것

문 4-1) 귀댁의 자녀가 지난 한 달 동안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유치원)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일반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② 일반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내 특수반

③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

④ 기타

문 4-2) 귀댁의 자녀가 이용 중인 보육시설(유치원)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불만족

문 4-3) 귀댁의 자녀는 보육시설(유치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 ②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 ③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④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 4-4) 귀댁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제없다
- ② 등하교 불편(교통수단 이용)
- ③ 보육시설 내 편의시설 부족
- ④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 ⑤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
- ⑥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 ⑦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 ⑧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⑨ 전문교사 부족
- ⑩ 교육도구(기자재) 사용시 불편
- ⑪ 교육내용의 부적합
- ⑫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 ⑬ 기타

문 5) 귀댁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장애 때문에
- ③ 주위의 편견 때문에
- ④ 보육시설(유치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 ⑤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 ⑥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 ⑦ 다니기 싫어해서
- ⑧ 기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II) 학생 (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문 1) 다음의 항목을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6개월 내에 귀댁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 그런다	가끔 그런다
㉠ 외롭다고 불평한다.	①	②	③
㉡ 잘 운다.	①	②	③
㉢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①	②	③
㉣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다.	①	②	③
㉥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①	②	③
㉫ 의심이 많다.	①	②	③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②	③
㉭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문 2) 귀댁 자녀는 다음 ①~⑰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까? 또는 불필요합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귀댁 자녀는 지난 한 달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⑰ 항목의 필요여부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물어본 후, ①~⑰ 항목의 현재 이용여부를 차례대로 다시 묻습니다)

서비스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① 특수학교	①	②	①	②
② 특수학급(일반학교)	①	②	①	②
③ 학교 방과 후 활동	①	②	①	②
④ 복지관 방과 후 활동	①	②	①	②
⑤ 물리치료(조음과 치료 등)	①	②	①	②
⑥ 언어치료(발음교정 등)	①	②	①	②
⑦ 심리치료(상담 등)	①	②	①	②
⑧ 작업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동작중심 치료)	①	②	①	②
⑨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등)	①	②	①	②
⑩ 음악치료(노래부르기 등)	①	②	①	②
⑪ 미술치료(그림그리기 등)	①	②	①	②
⑫ 주간보호	①	②	①	②
⑬ 단기보호	①	②	①	②
⑭ 그룹홈	①	②	①	②
⑮ 장기시설보호	①	②	①	②
⑯ 진로상담	①	②	①	②
⑰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문 3) 귀댁의 자녀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4) 문 4-1) 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 들 가운데 담임교사 외에 별도의 요원에 의하여 학생지도 보조, 개인육구 지원, 교육활동 지원, 문제행동 관리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교육보조원을 각 학교에서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4) 귀댁의 자녀는 현재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이용 한다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4-1) 귀댁의 자녀는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계실 경우,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 하겠다

② 이용하지 않겠다

※ 다음은 지역혁신사업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5) 문 5-1) 문 5-2) 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지역혁신사업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한 주에 최저 1회에서 최고 5회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회당 가격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최소 7천원(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최고 3만원(특별히 고용된 전문가에 의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문 5) 귀댁의 자녀는 현재 지역혁신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이용 한다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5-1) 귀댁의 자녀는 지역혁신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계실 경우,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 하겠다 → **문 5-2)으로 갈 것**

② 이용하지 않겠다 → **문 6)으로 갈 것**

문 5-2) 지역혁신사업 서비스는 주당 5회 이용기준으로 최소 3만 5천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일부를 귀댁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래 보기를 ①부터 차례대로 읽어주고 각각에 대해 부담 의사를 확인합니다.)

①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②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4천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③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④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 (즉 주당 7천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⑤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 (즉 주당 3천 5백원에서 1만 5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⑥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문 6) 귀댁의 자녀는 지난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 **문6-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7)로 갈 것**

문 6-1) 귀댁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②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③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 6-2) 귀댁의 자녀가 현재 학교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제없다

② 등하교 불편(교통수단 이용)

③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

④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⑤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

⑥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⑦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⑧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⑨전문교사 부족

⑩교육도구(기자재) 사용시 불편

⑪교육내용의 부적합

⑫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⑬기타

문 6-3) 귀댁의 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① 집에서 혼자 지낸다

②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

③ 장애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시설에서 보낸다

④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낸다.

⑤ 일반 보육시설에서 보낸다

⑥ 가정에서 방문교사가 지도한다

⑦ 복지시설(기관)에서 보낸다

⑧ 학원에서 보낸다

⑨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⑩ 기타

문 7) 귀댁의 자녀가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② 장애 때문에

③ 주위의 편견 때문에

④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⑤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⑥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⑦다니기 싫어서

⑧기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III) 성인 (만 18-65세 미만) 설문

문 1)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다음 ①~⑯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까? 또는 불필요합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한 달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⑯ 항목의 필요여부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물어본 후, ①~⑯ 항목의 현재 이용여부를 차례대로 다시 묻습니다)

서비스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① 직업상담	①	②	①	②
②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③ 직업능력평가	①	②	①	②
④ 일상생활훈련	①	②	①	②
⑤ 직업준비훈련	①	②	①	②
⑥ 보호작업	①	②	①	②
⑦ 주간보호	①	②	①	②
⑧ 단기보호	①	②	①	②
⑨ 그룹홈	①	②	①	②
⑩ 장기시설보호	①	②	①	②
⑪ 여가활동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⑫ 가사원조	①	②	①	②
⑬ 외출보조	①	②	①	②
⑭ 물리치료(적외선치료 등)	①	②	①	②
⑮ 방문간호	①	②	①	②
⑯ 이동목욕	①	②	①	②

문 2)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3)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일(취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럼 향후에는 일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 ① 취업 → **문3-1)로 갑 것**
- ② 취업희망 → **문3-2)로 갑 것**
- ③ 취업불원(희망하지 않음) → **문3-3)로 갑 것**

문 3-1) (문 3)의 1번 응답자(취업자) 그럼, 현재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 ② 일반사업체
- ③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⑤ 장애인 관련기관
- ⑥ 기타(적을 것: _____)

응답 후 문 4)으로 이동할 것

문 3-2) (문 3)의 2번 응답자(취업희망자) 그럼, 향후에 어떤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자영업
- ② 일반사업체
- ③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⑤ 장애인 관련기관
- ⑥ 기타(적을 것: _____)

응답 후 문 4)으로 이동할 것

문 3-3)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애가 심해서 오래전에 포기했음
- ②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음
- ③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④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충족해서
- ⑤ 학력, 기술, 기능이 부족해서
- ⑥ 취업, 창업정보를 몰라서
- ⑦ 일자리가 없어서
- ⑧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 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심해서
- ⑩ 육아 혹은 가사 때문에
- ⑪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 ⑫ 기타

※ 다음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4) 문 4-1) 문 4-2) 질문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신규로 취업하는 장애인의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지원 사업수행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4)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한다
-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4-1) 그럼,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계실 경우,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이용 하겠다 → **문 4-2)으로 갑 것**
- ② 이용하지 않겠다 → **종결**

문 4-2)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주당 10시간 이용 시 7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일부를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 부담하셔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아래 보기를 ①부터 차례대로 읽어주고 각각에 대해 부담 의사를 확인합니다.)
- ①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 ②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2만 8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 ③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 (즉 주당 2만 1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 ④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4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 ⑤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 (즉 주당 7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 ⑥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IV)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문 1)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다음 ①~⑭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까? 또는 불필요합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난 한 달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⑭ 항목의 필요여부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물어본 후, ①~⑭ 항목의 현재 이용여부를 차례대로 다시 묻습니다)

서비스 유형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①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 서비스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취업준비, 교육 등)	①	②	①	②
② 정서적 서비스 (말벗, 전화안부, 책 읽어주기 등)	①	②	①	②
③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업무대행, 차량지원, 외출동행, 장보기, 심부름 등)	①	②	①	②
④ 급식지원 (식사배달, 급식지원, 밀반찬배달, 영양식지원 등)	①	②	①	②
⑤ 전문 상담 서비스 (개별/집단/가족상담, 심리사회적 상담, 정신건강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⑥ 주거지원 (주거제공 및 주거개조; 도배, 상하수도, 해충박멸, 주방개조 등)	①	②	①	②
⑦ 여가생활 (여가시간 활용, 문화 및 레저관련 활동)	①	②	①	②
⑧ 요양시설보호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시설 케어)	①	②	①	②
⑨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시간의 일시적 케어)	①	②	①	②
⑩ 단기보호 (단기적 소규모 시설 보호)	①	②	①	②
⑪ 가사지원 서비스 (청소, 취사, 세탁 등의 가사지원)	①	②	①	②
⑫ 물리치료 및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및 재활훈련 서비스)	①	②	①	②
⑬ 방문간호(간병) (방문 진료, 투약, 체온/혈압/혈당 측정, 신체간병 등)	①	②	①	②
⑭ 방문 및 이동 목욕 (재가노인을 위한 목욕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문 2)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2008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3)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향후 일하길 원하십니까?

- ① 취업 → **문 3-1)로 갈 것**
- ② 취업희망 → **문 3-2)로 갈 것**
- ③ 취업불원(희망하지 않음) → **문 6)로 갈 것**

문 3-1) (문 3)의 1번 응답자(취업자) 그럼, 현재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 ④ 농어업
- ② 일반사업체
- ⑤ 친목회, 종교기관, 지역사회단체 등(자원봉사가 아닌 유급직)
- ③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 ⑥ 기타()

응답 후, 문 6)로 갈 것

문 3-2) (문 3)의 2번 응답자(취업희망자))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난 1년 간 구직활동을 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4)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①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②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
③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일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 다음 중 무엇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십니까?
① 정부 지원 필요 없음 ⑤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②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⑥ 노인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③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문 6)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식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 전기, 교통비 등 한 달을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생활비 이외에 용돈으로 얼마 정도를 쓰십니까?

월평균 용돈: 약

	천	백	십	원

※ 다음은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7) 문 7-1) 문 7-2)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한 달에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능상태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및 세탁)과 활동보조(신체수발,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는 소득수준, 재산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문 7)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이용한다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7-1)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앞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계실 경우, 앞으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 하겠다 → **문 7-2)으로 같 것** ② 이용하지 않겠다 → **타**

문 7-2)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한 달에 27시간 이용 시 주당 3만 6천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일부를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부담하셔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래 보기를 ①부터 차례대로 읽어주고 각각에 대해 부담 의사를 확인합니다.)
①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하겠다.
② 총 이용금액의 4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 4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③ 총 이용금액의 30% 정도까지, (즉 주당 1만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④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까지, (즉 주당 7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⑤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까지, (즉 주당 3천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⑥ 자기부담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겠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0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미정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미정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미정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미정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미정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미정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미정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미정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미정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미정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미정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미정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미정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미정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미정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미정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미정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미정
연구 08-24-1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08-24-5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미정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미정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미정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미정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상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